

연구보고서 2024-18

# 프랑스의 인구정책 사례 연구

이소영  
최인선·이지혜·손동기·김영아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연구진

연구책임자	이소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진	최인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이지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손동기	송실대학교 강사
	김영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연구보고서 2024-18

## 프랑스의 인구정책 사례 연구

발행일	2024년 12월
발행인	강혜규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전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a href="http://www.kihasa.re.kr">http://www.kihasa.re.kr</a>
등록	1999년 4월 27일(제2015-000007호)
인쇄처	(사)대한민국공무원공상유공자회 인쇄사업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ISBN 979-11-7252-035-9 [93330]  
<https://doi.org/10.23060/kihasa.a.2024.18>

## 발|간|사

우리나라의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인구 변동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현상으로 장기화되면서 고착화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 문제에 있어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할 수 있다. 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며,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8.2%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72년 노인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47.7%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간 정부는 급격한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국외의 효과적인 정책을 발굴하여 벤치마크하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출산 대응에 성공한 나라로 잘 알려진 프랑스의 정책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오랫동안 적극적으로 인구 문제에 개입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프랑스의 인구 변화와 이에 대응한 인구정책을 살펴보고, 한국의 인구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프랑스의 인구 변동과 인구 변화에 관한 인식을 분석하고 프랑스의 직·간접적인 인구정책 현황을 파악하며 프랑스의 인구정책 효과성 평가를 수행한 연구를 분석하는 등 충분한 맥락적 상황을 토대로 우리나라 인구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 인구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 연구는 이소영 연구위원의 책임하에 원내에서 최인선 연구원, 이지혜 부연구위원과 한국노동연구원 김영아 연구위원, 손동기 박사의 참여로

---

수행되었다. 이 연구를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서울대학교 이철희 교수와 원내 자문위원으로 큰 도움을 주신 정은희 연  
구위원에게 감사드린다.

2024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직무대행  
강혜규



# 목 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요 약 .....	1
<b>제1장 서 론 .....</b>	<b>9</b>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9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12
<b>제2장 프랑스 인구와 인구정책의 변화 .....</b>	<b>15</b>
제1절 인구 변화와 인구 현황 .....	17
제2절 인구 전망 .....	36
제3절 인구정책의 변화 .....	58
<b>제3장 프랑스 인구정책 현황 .....</b>	<b>81</b>
제1절 소득·주거 지원 정책 .....	83
제2절 양육·보육 지원 정책 .....	110
제3절 건강 지원 정책 .....	134
제4절 고령화 대응 정책 .....	148
제5절 지역 인구 변화 대응 정책 .....	162

<b>제4장 프랑스 인구정책의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b> .....	<b>167</b>
제1절 가족정책의 주요 성과 .....	169
제2절 가족정책 효과에 관한 실증 분석 결과 .....	183
제3절 고령화 대응 정책의 성과 .....	201
<b>제5장 프랑스인의 인식과 가치관</b> .....	<b>217</b>
제1절 조사 개요 .....	219
제2절 결혼 및 출산에 관한 인식 .....	221
제3절 성역할 및 가사·육아 분담에 관한 인식 .....	267
제4절 사회에 관한 인식 .....	279
제5절 인구 변화와 인구정책에 관한 인식 .....	292
제6절 소결 .....	334
<b>제6장 결론</b> .....	<b>337</b>
제1절 결과 종합 .....	339
제2절 시사점 .....	349
<b>참고문헌</b> .....	<b>355</b>
<b>부록</b> .....	<b>373</b>
<b>Abstract</b> .....	<b>383</b>

# 표 목차



〈표 2-1〉 프랑스 지역의 인구성장률(1995~2070) .....	50
〈표 2-2〉 한국의 시도별 인구성장률(2021~2050) .....	57
〈표 3-1〉 임신부와 부부 RSA 수급액(2024) .....	86
〈표 3-2〉 기초수당의 전액(€ 193.31)을 지급받는 대상의 소득상한선(2024) .....	87
〈표 3-3〉 기초수당의 일부(€ 96.65)를 지급받는 대상의 소득상한선(2024) .....	87
〈표 3-4〉 자녀가 2명일 경우 가족수당(2024) .....	88
〈표 3-5〉 자녀가 3명일 경우 가족수당(2024) .....	89
〈표 3-6〉 자녀가 4명일 경우 가족수당(2024) .....	89
〈표 3-7〉 임시정액수당 지급 기준(2024) .....	90
〈표 3-8〉 가족보충수당 지급 기준(2024) .....	91
〈표 3-9〉 PreParE 연장을 위한 소득 상한선(2024) .....	94
〈표 3-10〉 자녀 수별 신학기수당(Ars) 소득 한도(2024) .....	95
〈표 3-11〉 자녀연령별 신학기수당(Ars) 지원금액(2024) .....	95
〈표 3-12〉 소득 수준 및 자녀 수에 따른 수당 금액(2024) .....	99
〈표 3-13〉 자녀 수별 가족계수(2024) .....	100
〈표 3-14〉 부양 자녀 수별 가족보조금(2024) .....	103
〈표 3-15〉 이사회지원금 최대 지원금액(2024) .....	104
〈표 3-16〉 자녀 수별 다자녀 가구 카드 기차 요금 할인율(2024) .....	105
〈표 3-17〉 APL을 받기 위한 최대 임대료(2024) .....	107
〈표 3-18〉 ALF 소득 기준(2024) .....	108
〈표 3-19〉 자녀의 출생순위에 따른 휴가 기간(2024) .....	111
〈표 3-20〉 다태아의 경우 휴가 기간(2024) .....	111
〈표 3-21〉 입양휴가의 기간 (2024) .....	115
〈표 3-22〉 출생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2024) .....	118
〈표 3-23〉 입양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2024) .....	118
〈표 3-24〉 집단 보육시설의 유형 .....	120
〈표 3-25〉 만 3세 미만 아동의 평일 주된 보육 유형(2002~2021) .....	124

〈표 3-26〉 만 3세 미만 아동의 평일 주된 보육 및 보조 보육 유형(2021) .....	125
〈표 3-27〉 연령별 유아학교 등록률(2022) .....	126
〈표 3-28〉 보육시설에 청구되는 시간당 보육료 .....	128
〈표 3-29〉 가족/부모에게 청구되는 시간당 보육료 .....	129
〈표 3-30〉 보육료의 상한과 하한 .....	129
〈표 3-31〉 보육유형 자유선택 보조금(Cmg) 보조금 척도(직접고용) (2024) .....	131
〈표 3-32〉 보육유형 자유선택 보조금(Cmg) 보조금 척도(보육기관 등을 통해 이용) (2024) .....	131
〈표 3-33〉 인구 1,000명 의료인력 현황(2020) .....	134
〈표 3-34〉 인구 1,000명 의료장비(2020) .....	134
〈표 3-35〉 인구 100만 명당 병원 수(2020) .....	135
〈표 3-36〉 병원 수(2020) .....	135
〈표 3-37〉 병원 특성에 따른 기관 현황(2020) .....	136
〈표 3-38〉 국민의료비 현황 .....	139
〈표 3-39〉 APA 평가 항목과 내용 .....	144
〈표 3-40〉 APA 등급별 서비스 .....	144
〈표 3-41〉 APA 서비스 유형별 금액 .....	145
〈표 3-42〉 APA 시설별 특징 .....	146
〈표 3-43〉 2005년 12월 31일 거주자 수와 2011년 이후 변화 .....	147
〈표 3-44〉 프랑스 노인의 생활 수준과 빈곤율(2018) .....	149
〈표 3-45〉 일반사회기여금의 요율 변화(1991~2022) .....	161
〈표 4-1〉 가족부서(la branche famille)의 사업 집행 현황(2010~2023) .....	170
〈표 4-2〉 가족정책 수급자 현황(2010~2022) .....	170
〈표 4-3〉 PAJE 도입이 여성고용률에 미친 영향 .....	186
〈표 4-4〉 PAJE의 효과 분석 관련 문헌 .....	187
〈표 4-5〉 APE 제도 도입의 효과 분석 관련 문헌 .....	191
〈표 4-6〉 PAJE-CLCA 제도 도입의 효과 분석 관련 문헌 .....	193



〈표 4-7〉 PreParE 도입의 효과 분석 관련 문헌 .....	195
〈표 4-8〉 세제 혜택 효과 분석 관련 문헌 .....	197
〈표 4-9〉 아동돌봄서비스와 여성 노동공급 관련 문헌 .....	199
〈표 5-1〉 조사 대상자 일반 특성 .....	220
〈표 5-2〉 결혼 의향 .....	222
〈표 5-3〉 향후 자녀 출산 의향 .....	224
〈표 5-4〉 가족(자녀 출산) 계획 시 중요도_1) 가정의 경제적 여건 .....	226
〈표 5-5〉 가족(자녀 출산) 계획 시 중요도_2) 본인의 건강 .....	228
〈표 5-6〉 가족(자녀 출산) 계획 시 중요도_3) 배우자의 건강 .....	231
〈표 5-7〉 가족(자녀 출산) 계획 시 중요도_4) 본인의 취업 상태 .....	233
〈표 5-8〉 가족(자녀 출산) 계획 시 중요도_5) 배우자의 취업 상태 .....	235
〈표 5-9〉 가족(자녀 출산) 계획 시 중요도_6) 주거 여건 .....	237
〈표 5-10〉 가족(자녀 출산) 계획 시 중요도_7) 일-생활 균형 .....	239
〈표 5-11〉 가족(자녀 출산) 계획 시 중요도_8) 경력 단절의 가능성 .....	241
〈표 5-12〉 가족(자녀 출산) 계획 시 중요도_9) 보육/양육 서비스 이용 가능성 .....	243
〈표 5-13〉 가족(자녀 출산) 계획 시 중요도_10) 정부의 충분한 지원 .....	245
〈표 5-14〉 가족(자녀 출산) 계획 시 중요도_11)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 불확실성 ..	247
〈표 5-15〉 향후 계획 자녀 수 .....	250
〈표 5-16〉 이상 자녀 수 .....	251
〈표 5-17〉 자녀 출산 시 삶의 영향력_1)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진다 .....	253
〈표 5-18〉 자녀 출산 시 삶의 영향력_2) 삶에서 얻는 기쁨과 만족이 커진다 .....	255
〈표 5-19〉 자녀 출산 시 삶의 영향력_3) 나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 ....	257
〈표 5-20〉 자녀 출산 시 삶의 영향력_4) 배우자(파트너 포함)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 .....	259
〈표 5-21〉 자녀 출산 시 삶의 영향력_5) 노년기에 받을 수 있는 보살핌과 안정감이 커진다 .....	261

〈표 5-22〉 자녀 출산 시 삶의 영향력_6) 배우자(파트너 포함)와의 친밀감이 높아진다 ..	263
〈표 5-23〉 자녀 출산 시 삶의 영향력_7) 경제적 부담이 늘어난다 .....	265
〈표 5-24〉 남성과 여성 역할 수행에 대한 인식_1)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일하면서 돈을 버는 일 .....	267
〈표 5-25〉 남성과 여성 역할 수행에 대한 인식_2) 음식 준비, 청소, 빨래 등 일상적 가사일 .....	269
〈표 5-26〉 남성과 여성 역할 수행에 대한 인식_3) 어린 자녀를 돌보는 일 .....	271
〈표 5-27〉 가사분담 비율 .....	274
〈표 5-28〉 육아분담 비율 .....	276
〈표 5-29〉 일과 가사 및 육아 병행 시 어려움 정도 .....	277
〈표 5-30〉 사회 구조에 대한 인식 .....	280
〈표 5-31〉 '전반적으로 공정한 사회이다'라는 의견에 동의하는 정도 .....	280
〈표 5-32〉 '소득격차가 너무 크다'라는 의견에 동의하는 정도 .....	282
〈표 5-33〉 '가장 부유한 1%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너무 많다'라는 의견에 동의하는 정도 .....	284
〈표 5-34〉 성공(출세)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 .....	286
〈표 5-35〉 부모님 세대 대비 현재 생활 수준 변화 .....	288
〈표 5-36〉 본인 대비 자녀들의 생활 수준 변화(예상) .....	290
〈표 5-37〉 인구 변화에 대한 동의 여부_1) 최근 출산율은 적당한 수준이다 .....	292
〈표 5-38〉 인구 변화에 대한 동의 여부_2) 출산율 감소는 나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294
〈표 5-39〉 인구 변화에 대한 동의 여부_3) 출산율 감소는 미래 세대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296
〈표 5-40〉 인구정책에 대한 인지도_1) 임신, 출산 지원(의료보험 등) .....	298
〈표 5-41〉 인구정책에 대한 인지도_2) 출산을 하었을 경우 수당이나 물품 지급 (출산장려금, 출산용품 지원 등) .....	300
〈표 5-42〉 인구정책에 대한 인지도_3) 출산 및 육아 휴직제도 .....	302



〈표 5-43〉 인구정책에 대한 인지도_4) 보육 지원(보육시설 확충, 보육료 지원 등) .....	304
〈표 5-44〉 인구정책에 대한 인지도_5) 자녀에 대한 수당(아동수당, 가족수당 등) .....	306
〈표 5-45〉 인구정책에 대한 인지도_6) 조세 혜택(세금 경감) .....	308
〈표 5-46〉 인구정책에 대한 인지도_7) 다자녀 가구 추가 지원 .....	310
〈표 5-47〉 인구정책에 대한 인지도_8) 지역 인구 균형을 위한 정책 .....	312
〈표 5-48〉 ‘정부는 출산율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다’에 대한 동의 정도 .....	314
〈표 5-49〉 일·생활 균형 정책의 활용 가능성_1) 여성의 육아휴직 .....	316
〈표 5-50〉 일·생활 균형 정책의 활용 가능성_2) 남성의 육아휴직 .....	318
〈표 5-51〉 일·생활 균형 정책의 활용 가능성_3) 유연근로제 .....	320
〈표 5-52〉 일·생활 균형 정책의 활용 가능성_4) 출산휴가 .....	323
〈표 5-53〉 일·생활 균형 정책의 활용 가능성_5) 가족돌봄휴가 .....	325
〈표 5-54〉 우리 사회 돌봄에 대한 인식_1) 미취학 아동에 대한 돌봄 .....	327
〈표 5-55〉 우리 사회 돌봄에 대한 인식_2) 취학 아동에 대한 방과 후 돌봄 .....	329
〈표 5-56〉 자녀 출산과 양육을 위한 정부 예산 투입 방향 .....	332

# 그림 목차

---

[그림 1-1]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 추이(1970~2023)	9
[그림 1-2] 프랑스의 합계출산율	11
[그림 2-1] 프랑스의 출산과 산모 연령 변화 추이	17
[그림 2-2] 프랑스의 출생(Births), 사망(Deaths), 자연증가(Natural balance) (1982~2023)	19
[그림 2-3] 한국의 출생, 사망, 자연증가(1970~2023)	20
[그림 2-4] 프랑스의 인구 변화 요인: 자연증가(Natural balance), 순이동(Net migration), 조정분(Adjustment) (1982~2023)	21
[그림 2-5] 프랑스의 조출생률(1994~2023)	22
[그림 2-6] 프랑스의 출생아 수, 혼외 및 혼내 출산 비중(2014~2022)	23
[그림 2-7] 한국의 혼인 외의 출생아 수 및 비중(2012~2022)	24
[그림 2-8] 프랑스의 합계출산율(1994~2023)	25
[그림 2-9] 한국의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25
[그림 2-10] 프랑스의 출생코호트별 이민자와 비이민자의 출생아 수	26
[그림 2-11] 프랑스의 연령별 합계출산율(2013, 2023)	27
[그림 2-12] 한국의 연령별 합계출산율(2023)	28
[그림 2-13] 평균 출산 연령	29
[그림 2-14] 혼인 및 시민연대협약(PACS) 체결 건수(2000~2023)	30
[그림 2-15] 프랑스의 조사망률(1994~2023)	31
[그림 2-16] 한국의 사망자 수 및 조사망률 (1970~2023)	31
[그림 2-17] 프랑스의 성별 기대수명(1994~2023)	32
[그림 2-18] 한국의 성별 기대수명(1970~2022)	33
[그림 2-19] 성별 인구 규모(1990~2024)	34
[그림 2-20] 프랑스의 인구피라미드(2024)	34
[그림 2-21] 한국의 인구피라미드(2024)	35
[그림 2-22] 프랑스의 인구 변화 전망(1970~2070)	36
[그림 2-23] 프랑스의 출생, 사망, 인구 이동 전망(1970~2070)	37



[그림 2-24] 프랑스의 시나리오별 인구 전망(2015~2070) .....	39
[그림 2-25] 프랑스 가구 구성 .....	40
[그림 2-26] 한국의 총인구 및 인구성장률(1960~2072) .....	41
[그림 2-27] 한국의 출생, 사망, 자연증가(1985~2072) .....	41
[그림 2-28] 프랑스의 인구피라미드(1970, 2021, 2070) .....	43
[그림 2-29] 한국의 인구피라미드(1960, 2020, 2070) .....	44
[그림 2-30] 프랑스의 연령별 집단별 인구구성비(1970~2070) .....	45
[그림 2-31] 프랑스의 노년부양비(1970~2070) .....	46
[그림 2-32] 연령 집단별 인구구조 및 인구구성비(1960~2072) .....	47
[그림 2-33] 연령 집단별 인구구성비(1960~2072) .....	47
[그림 2-34] 한국의 노년부양비(1970~2070) .....	48
[그림 2-35] 데파르트망(départements)별 인구 규모 최대치가 되는 시기 .....	51
[그림 2-36] 65세 이상 인구 비율(2018, 2040, 2070) .....	52
[그림 2-37] 인구 자연증감률(2022) .....	56
[그림 2-38] 20세기 이후 프랑스 출산율 변화 추이 및 주요 정책 .....	61
[그림 3-1] 혜택을 받는 가정의 만 3세 미만 아동의 연령별 공식 보육 이용 비율(2021) ·	126
[그림 3-2] 프랑스의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	137
[그림 3-3] 프랑스 전체 인구의 평균 소득과 은퇴자의 평균 연금 비교(2012~2019) ·	149
[그림 3-4] 55-64세 고용률 유럽 국가 비교(2023) .....	151
[그림 3-5] 연령별 고용률(Taux d'emploi) 변화(1975~2023) .....	152
[그림 3-6] 프랑스 2021년 사회보장 기본 레짐 분야별 재정구조 .....	158
[그림 3-7] 프랑스 일반사회기여금(CSG)의 요율 변화(1991~2020) .....	160
[그림 3-8] 2040년 프랑스 지역별 인구분포 전망 .....	163
[그림 3-9] 지역보조금 배분 현황(2019) .....	164
[그림 3-10] 프랑스 지역별 고령화 정도 및 사회주택 충족률 .....	166
[그림 4-1] 가족수당 및 세금 혜택이 가구 유형별 가구소득에 미치는 영향(2022) .....	172
[그림 4-2] 자녀돌봄으로 인한 연금기간 인정 제도의 수혜자 수 .....	173

[그림 4-3] 가족정책 적용 단계별 소득격차 비율의 변화(2022) .....	175
[그림 4-4] 소득 수준별 가족정책 수급액(2022) .....	176
[그림 4-5] 빈곤가구에 속해 있는 아동 비율(2004~2021) .....	177
[그림 4-6] 1901년 이후 프랑스 본토의 출생아 1,000명당 영아 사망률 .....	178
[그림 4-7] 자녀 유무/자녀 수에 따른 20~64세 남녀 고용률(2022) .....	179
[그림 4-8] OECD 국가들의 가족정책 GDP 대비 지출 현황 비교(2019) .....	184
[그림 4-9] 연금의 소득대체율(65~74세 연금수급액과 50~59세 근로소득 비교) .....	202
[그림 4-10] 전체 인구 대비 은퇴자의 소득 수준 비교 .....	203
[그림 4-11] 성별 빈곤율 - 은퇴자 .....	204
[그림 4-12] 성별 연금수령액 비교 .....	205
[그림 4-13] 고령자 연령대별 고용률 .....	206
[그림 4-14] 연금재정전망 - 노동생산성 시나리오별 비교 .....	208
[그림 4-15] APA 수급자 추이 .....	209
[그림 4-16] 60세 이상 인구 중 APA 수급자 비중(2022) .....	210
[그림 4-17] 2022년 지역별 APA 수혜자 비율 및 평균 지출액 .....	210
[그림 4-18] GIR 등급별 1인당 연간 자립생활 지원 비용(2020) .....	211
[그림 4-19] 시설요양서비스 및 재가서비스의 1인당 연평균 비용(2020) .....	212
[그림 4-20] 2024년 등급별 지원금 상한선 및 소득 수준별 수혜자 부담금 .....	212
[그림 4-21] APA-재가서비스 수혜자 비중(등급별) .....	213
[그림 4-22] 프랑스 의료-사회 시설 및 서비스 수(2021) .....	215
[그림 4-23] 고령자 1,000명당 시설 수 .....	216
[그림 6-1] 출산을 결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사항 .....	343
[그림 6-2] 자녀가 삶에 미치는 영향 .....	344
[그림 6-3] 성역할 인식 .....	345
[그림 6-4] 사회에 대한 인식 .....	346
[그림 6-5] 인구 변화에 대한 인식 .....	347
[그림 6-6] 인구 변화에 대한 인지도 .....	348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국은 오랜 기간 저출산과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인구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적응하는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저출산 현상이 고착화되면서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회의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동시에 국외의 효과적인 정책을 발굴하여 벤치마크하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국외의 정책을 국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검토와 맥락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프랑스는 저출산 대응에 성공한 나라로 잘 알려져 있다. 프랑스의 저출산 문제는 1920년대 말 시작되었는데, 어느 정도 안정된 수준으로 있다가 1963년 합계출산율 2.9명에서 이후 급감하였고, 2000년 이후 증가하여 2006년부터 2.0명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러다 2016년부터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2020년 1.8명으로 감소하였고 2023년 1.7명 미만으로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오랫동안 적극적으로 인구 문제에 개입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프랑스의 인구 변화와 이에 대응한 인구정책을 살펴보고, 한국의 인구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첫째, 프랑스의 인구 변동과 인구 변화에 관한 인식을 분석하고, 둘째, 프랑스의 직·간접적인 인구정책 현황을 파악하며, 셋째, 프랑스의 인구정책 효과성을 평가한 기존 연구를 분석하고, 넷째, 우리나라 인구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2. 주요 연구 내용

프랑스의 총인구는 2024년 1월 1일 현재 6,840만 명으로 2023년 대비 0.3% 증가한 수준이며, 프랑스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약 1.68명으로 한국(0.72명)의 약 2.3배이다. 프랑스의 평균 출산 연령은 2023년 31.0세로 한국(33.6세)보다 5.6세 낮은 수준이다. 프랑스에서 인구정책은 가족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추진 중이며, 2024년 현재 더 강한 프랑스를 위한 ‘인구재정비 계획’이 수립되어 추진 중이다. 프랑스는 아동 양육과 관련된 직간접적인 비용의 경감을 위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족에게 다양한 수당을 지급하고 자녀 양육으로 인해 직업이 없는 전업주부에게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를 지원하며 소득세의 가족계수를 통해 세금을 경감하도록 지원하는 등 포괄적인 가족지원 정책을 통해 출산율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수당 정책은 가족수당을 제외하고는 일정 소득 이상의 가구에게까지 지원되는 수당이 없다는 것과 수당 금액이 소득 수준과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또한 세금 감면을 위한 가족계수(quotient familial)를 설정하고 많은 지원 정책에 활용하고 있으며 전업주부(parent au foyer)가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전업주부(재택부모) 노령보험(L'assurance vieillesse du parent au foyer, AVPF)이 추진되고 있다. 다자녀 가구를 지원하는 이사지원금(La prime de déménagement)과 다자녀 가구 카드(Carte familles nombreuses) 지원이 추진되고 있으며 주거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개인 맞춤형 주거 지원(Aide personnalisée au logement, APL), 가족 주거 지원금(Allocation de logement familiale, ALF), 사회주택수당(Allocation de logement sociale, ALS) 등이 청년을 포함하여, 젊은 세대,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다.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출산휴가(Congé de ma-

ternité), 배우자 출산휴가 및 자녀돌봄휴가(Congé de paternité et d'accueil de l'enfant), 입양휴가(Congé d'adoption), 육아휴직(Congé parental d'éducation) 등이 체계적으로 설계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보육 지원 정책으로 단일서비스수당(PSU) 및 보육유형 자유선택 보조금(CMS) 정책과 세액 공제(Impôt sur le revenu-Crédit d'impôt) 등이 추진되고 있다. 임신과 출산 관련 비용은 건강보험(Assurance maladie)에서 100% 보장되고 있으며, 난임 퇴치를 위해 20세 전후 모든 사람에게 '난임 검사'가 제공되고 있다. 한편, 프랑스의 연금제도는 노후의 경제적 안전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게 되면서 연금개혁이 추진되어 법정퇴직연령은 2023년 9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늘어나 2030년에 64세가 적용되는 한편 최소 연금 수령액은 최저임금의 75%에서 85%로 확대되었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프랑스 사회보장 재정(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의 개혁에 있어서 일반사회기여금(CSG) 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근로소득을 기반으로 하는 부담금뿐 아니라 모든 가용 소득에 대해 부담금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CSG는 점진적으로 증가해 오면서 프랑스 복지재정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다만, 소득에 있어서 높은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CSG의 경우 부자들에 대한 부담은 크지 않고,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부담이 더 크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프랑스 가족정책의 성과를 평가한 선행연구에서는 20세기 초부터 시행되어 온 프랑스의 가족정책이 비교적 높은 출산율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그리고 아동 및 유자녀 가구의 낮은 빈곤율 등에 기여했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정책의 일관성, 정책 간의 조화, 자녀가 성장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 정책이 유지될 것이라는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등도 프랑스 가족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언급되고 있다(Fesseau &

#### 4 프랑스의 인구정책 사례 연구

Ricroch, 2005; Thévenon, 2013).

2024년 7월 현재 프랑스에 거주하는 20~49세 이하 성인 남녀 2,500명을 대상으로 인식과 가치관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출산 시 고려하는 사항에 있어서 ‘전혀 중요하지 않다’부터 ‘매우 중요하다’까지 5점 척도로 분석한 결과, 배우자의 건강(4.37점), 본인의 건강(4.35점), 주거(4.26점), 일생활 균형(4.23점), 본인의 취업 상태(4.15점), 가정의 경제적 여건(4.14점), 배우자의 취업 상태(4.08점),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3.91점), 보육/양육 서비스 이용 가능성(3.77점), 경력 단절의 가능성(3.63점), 정부의 충분한 지원(3.52점) 순으로 중요도가 도출되었다. 자녀가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프랑스인은 경제적 부담 증가(4.02점), 기쁨과 만족(3.87점), 자유의 제한(3.74점), 노년기 부양(3.43점), 본인 일할 기회 축소(3.31점), 파트너 일할 기회 축소(3.16점), 파트너 친밀감 증가(3.13점) 순으로 나타났다. 프랑스인은 ‘노년기에 받을 수 있는 보살핌과 안정감이 커진다’의 항목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항목에서 한국인과 비교해서 자녀가 삶에 미치는 영향을 적게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프랑스인의 사회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사회에 대한 평가 의견에 대해 5점 척도로 동의 정도를 파악한 결과, 프랑스인은 프랑스 사회에 대해 한국인과 비교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의 변화와 관련된 인식과 의견을 조사한 결과, 프랑스인은 한국인보다 ‘정부가 출산을 감소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으며, ‘최근의 출산율은 적당한 수준’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또한, 출산율 감소가 본인과 미래 세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인식이 한국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프랑스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인구정책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모든 정책에 대해 프랑스인의 약 70% 이상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프랑스인이 인구 현상과 정부의 인구정책 추진에 관해 비교적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반영한 결과이다.

### 3. 결론 및 시사점

프랑스는 과거에 저출산을 극복하였고 최근 프랑스 자국의 출산율 감소에 대한 사회적 염려와 대조적으로 출산율은 2023년 현재 1.68명으로 높은 수준이다. 프랑스가 비교적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프랑스인의 관련 인식과 무관하지 않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인식 조사 결과는 한국과 비교해서 프랑스인이 자녀 출산 및 인구와 인구정책에 있어서 보다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출산 시 고려하는 사항에 있어서 한국인은 가정의 경제적 여건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 프랑스인은 정부의 충분한 지원을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 한국인은 모든 항목의 중요도를 프랑스인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주목할 만한 차이이다. 프랑스 사회에 대해서도 한국인과 비교해서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인은 한국인에 비해 출산율은 적당한 수준이며 정부가 출산율 감소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다. 이에 따라 세 부적인 인구정책에 대해서 약 70% 이상이 인지하고 있고 한국인에 비해 정부가 출산율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다. 실제로 프랑스에서는 상당한 수준의 예산을 투입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구축하고 보완하고 있다. 프랑스는 1930년대부터 인구정책을 추진하였고, 출산율 장려하는 기조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인구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장기적 시계를 가지고 꾸준하게 일관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 사회의 근본적,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완화하기 위한 노력과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주요 용어: 프랑스, 인구변화, 가족정책, 인구정책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제 1 장

##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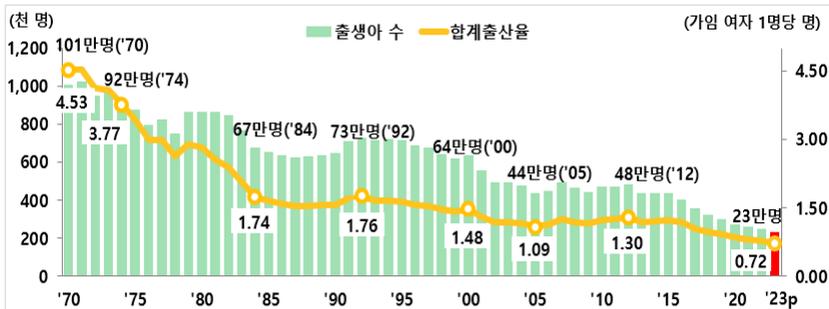


# 제 1 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국은 오랜 기간 저출산과 인구의 고령화로 대표되는 인구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가임기(15~49세) 여성이 가임 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인 2.1명 미만으로 낮은 저출산 현상은 지속 기간, 하락의 폭과 속도에 있어서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현상이다. 한국은 1983년에 합계출산율이 2.06명으로 하락하면서 약 40년 동안 저출산의 늪에 빠져 있다. 또한 2002년부터는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의 초저출산 국가가 되었고, 2018년부터 합계출산율이 1.0명 미만으로까지 하락하여 지속되고 있다. 통계청(2024)의 ‘2023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까지 하락하였다. 한국의 저출산 현상 또는 초저출산 현상은 장기적으로 지속화되며 고착화되고 있다.

[그림 1-1]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 추이(1970~2023)



출처: “2023년 출생 통계,” 통계청, 2024a, p. 1.

정부는 이러한 저출산 현상을 문제로 인식하면서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하고, 인구 변화를 국가 의제로서 다루고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특히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20조를 근간으로 하여 2006년부터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한 범부처의 5년 단위 중장기 계획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현재까지 네 차례에 걸쳐서 수립·추진되고 있다. 2024년 현재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이 추진되고 있다(대한민국 정부, 2020).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2025년까지 추진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2025년에는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같은 범국가적 중장기 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인구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적응하는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었으나 저출산 현상은 지속되고 있으며 인구의 고령화 및 인구의 감소가 지속되면서 추진되고 있는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회의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동시에, 국외의 효과적인 정책을 발굴하여 벤치마크하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국외 정책의 면밀한 검토와 맥락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국외 정책 사례를 도입하여 인구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프랑스는 저출산 대응에 성공한 나라로 잘 알려져 있다. 프랑스의 저출산 문제는 1920년대 말 시작되었는데, 어느 정도 안정된 수준으로 있다가 1963년 합계출산율 2.9명에서 이후 급감하였고, 2000년 이후 증가하여 2006년부터 2.0명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러다 2016년부터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2020년 1.8명으로 감소하였고 2023년 1.7명 미만으로 더욱 감소하였다(World bank DATA, 2024). 프랑스 정부는 인구감소와 출산율 회복을 위한 정책을 오랜 시간 동안 적극 추진하였는데, 특히 가족 수당을 포함한 가족정책이 저출산 정책으로서 지속해서 추진되고 있다.

[그림 1-2] 프랑스의 합계출산율



출처: “Fertility rate, total(birth per woman),” Worldbank, 2024.

엠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2024년 1월 16일 ‘인구 재무장(réarmement démographique)’을 발표하며 1945년 이후 가장 낮아진 신생아 수를 높일 것이라고 발표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출산율 감소는 국가의 쇠퇴라는 인식 아래 프랑스 성장을 위해 출생률을 높일 것이라 밝혔다. 브뤼노 코트르(Bruno Cautre)는 ‘프랑스 인구통계가 악화된 것에 대한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역동적인 출산율은 프랑스의 인구학적 예외라는 자부심이었다’고 강조했다(Par Elsa Conesa, 2024).

한편, 프랑스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국가로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960년 12%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21년 전체의 21%에 이른다(World bank DATA, 2021). 이에 따라 연금으로 대표되는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됐다. 프랑스의 인구정책은 저출산 정책을 중심으로 단편적이고 분절적으로 소개되어 왔으나 전반적인 인구정책에 대한 분석은 미흡한 수준이다. 따라서 전체적인 인구정책의 틀과 내용 및 정책의 추진 체계, 인구정책이 수립되고 추진되는

배경과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인구 변화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해 우리나라 인구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오랫동안 적극적으로 인구 문제에 개입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프랑스의 인구 변화와 이에 대응한 인구정책을 살펴보고, 한국의 인구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세부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프랑스의 인구 변동과 인구 변화에 관한 인식 분석, 둘째, 프랑스의 직·간접적인 인구정책 현황 파악, 셋째, 프랑스의 인구정책 효과성 평가 연구 분석, 넷째, 우리나라 인구정책의 시사점 도출이다.

##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인구정책은 ‘인구가 국가와 사회에 유리하도록 변화하기를 직·간접적으로 유도하는 정책(인구정책50년사편찬위원회, 2016, 이소영 외 2021, p.36)’이다. 한국의 인구정책은 인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진행되어 인구 억제정책, 인구자질향상정책,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순서로 추진되었다(이소영, 2023 p.68). 현재 한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인구정책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3조(정의)에서 제시하고 있는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정책’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프랑스의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라는 인구 변화에 대응한 인구정책을 그 범위로 한다.

프랑스의 인구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한국의 인구정책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의 내용과 방법을 기술한다. 제2장에

서는 프랑스의 인구 현황과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 이에 대응한 인구정책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전체 및 지역별 인구 규모와 인구 구성비, 부양비 등 주요 인구통계 지표를 포함한 인구학적 특성의 현황과 추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인구 규모와 인구 구조, 그리고 인구 전망을 포함하여 제시한다. 또한, 제3절에서 프랑스 인구정책의 수립 배경과 정책의 변화를 기술하고자 한다. 특히 프랑스의 저출산 대책으로 볼 수 있는 가족정책과 인구 고령화와 같은 인구 변화에 대응한 정책의 맥락적 배경과 발전 과정을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프랑스 인구정책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프랑스 저출산 대응 정책으로서 다양한 수당, 세금 지원 등 소득 및 주거 지원 정책, 양육시간을 지원하는 정책, 보육 지원 정책 등의 현황을 제시하고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에 대응한 건강 지원 정책의 현황을 제시한다. 또한 인구의 고령화에 대응한 연금개혁과 사회보장 재정 개선 노력을 중심으로 관련 정책의 현황을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프랑스에서 추진되고 있는 인구정책의 효과성에 대해 연구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프랑스 인구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제5장에서는 프랑스의 인구 변화 및 인구정책에 관한 인식 조사를 수행한 결과를 분석한다. 프랑스인이 느끼는 인구 변화와 관련된 인식 및 인구정책 관련 인지도, 필요도, 만족도 등을 한국인의 인식과 비교하여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프랑스의 인구정책이 한국의 인구정책 수립과 추진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우선 프랑스 통계데이터 및 행정데이터 분석을 실시한다. 인구 규모, 인구 구성비, 지역별 인구 규모 및 구성비, 합계출산율, 초혼 연령, 초산 연령, 부양비, 고령화 지수 등 주요 인구 통계 지표를 분석하고자 한다. OECD 국가의 관련 통계 자료(database)를 통해 주요 인구지표에 대한 비교 분석을 포함한다. 또한 프

#### 14 프랑스의 인구정책 사례 연구

랑스의 저출산 대책 또는 가족정책과 인구 고령화에 대응한 정책에 관한 문헌 분석을 실시한다. 그리고 프랑스인의 인구 및 인구정책 관련 인식 조사를 프랑스에서 수행하고 그 결과를 한국인 대상 인식 조사의 결과와 비교하고자 한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제2장

### 프랑스 인구와 인구정책의 변화

제1절 인구 변화와 인구 현황

제2절 인구 전망

제3절 인구정책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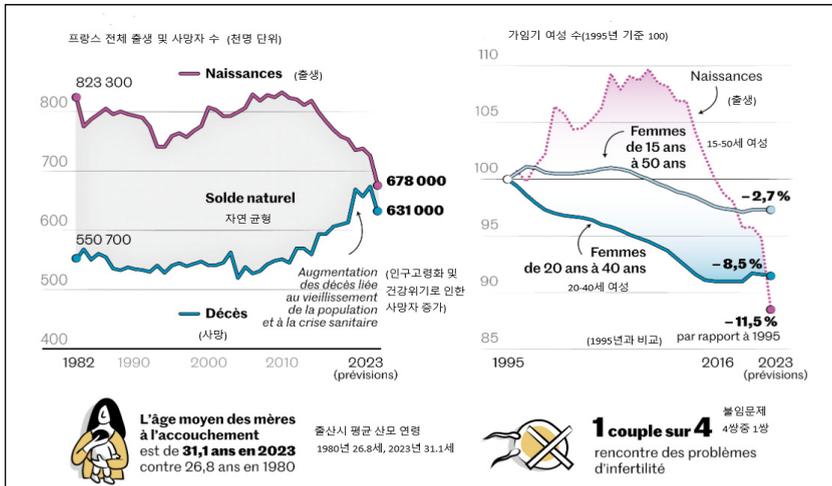


## 제 2 장 프랑스 인구와 인구정책의 변화

### 제1절 인구 변화와 인구 현황

2010년 이후 프랑스의 합계출산율은 여성 1인당 자녀 수 2명 이상을 유지하다가 2023년 1.7명 미만으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연간 출생아 수는 83만 명 이상에서 68만 명 미만으로 감소했다. 1945년 이후 이 수준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일일 평균 출생아 수는 2024년 3월 기준, 2,000명 미만으로 떨어졌다. 이는 코로나로 인한 1차 봉쇄 이후 9개월이 지난 2021년 1월의 저수위를 제외하면 최근 역사상 가장 낮은 수치이다.

[그림 2-1] 프랑스의 출산과 산모 연령 변화 추이



출처: "Rapport sur les causes d'infertilité," Samir Hamamah, Salomé Berliou, 2022,

[그림 2-1]에서 알 수 있듯이 프랑스에서 자연적인 인구 변화는 감소하는 추세이다. 특히 출생아 수의 감소가 2010년 이후 급격히 이뤄지고 있다. 출생아 수 위기와 관련해서 경제적 위기, 산모의 고령화 등 다양한 요인이 언급되고 있다. 산모의 평균 연령이 1980년 26.8에서 2023년 31.1세로 높아졌다. 특히 20~40세 연령에서 1995년과 비교해 출생아 수가 11.5%나 줄었다(Par Elsa Conesa, 2024). 이처럼 산모의 나이가 많아지고, 출산 시기가 늦어지면서 난임에 대한 어려움도 증가하고 있다. 실제 네 커플 중 한 커플이 난임의 문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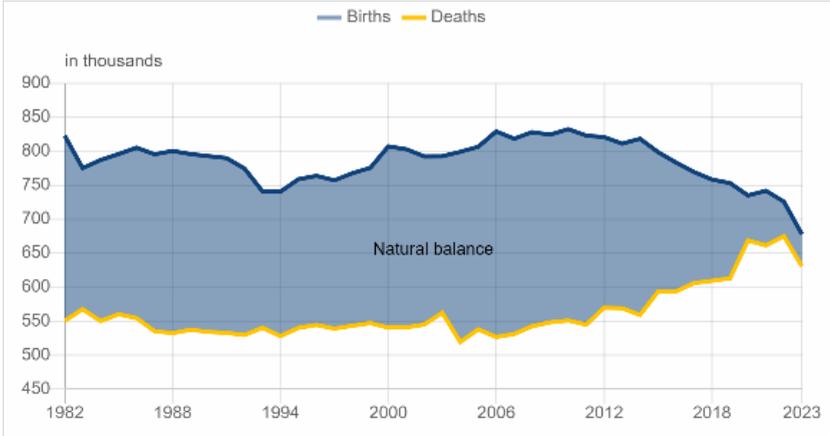
## 1. 인구 규모

### 가. 총인구

프랑스의 총인구는 2024년 1월 1일 현재 6,840만 명으로 2023년 대비 0.3% 증가한 수준이다. 인구 규모는 출생, 사망, 이동이라는 인구 변동요인에 의해 직접적으로 결정된다. [그림 2-2]는 1982년부터 2023년까지의 출생아 수, 사망자 수,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자연증가(Natural Balance)를 보여준다. 2023년의 경우 출생아 수는 678,000 명이고 사망자 수는 631,000명으로 약 47,000명의 자연증가가 발생했다. 이러한 자연증가는 2020년부터 급감하여 2023년 가장 낮은 수준에 이르렀다.

[그림 2-2] 프랑스의 출생(Births), 사망(Deaths), 자연증가(Natural balance)  
(1982~2023)

(단위: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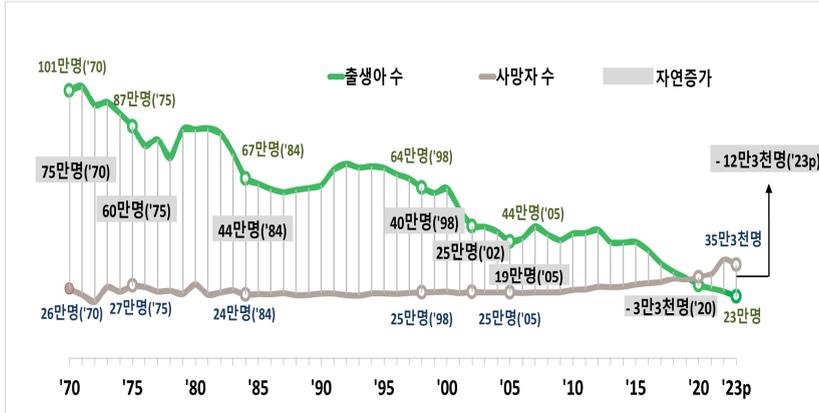
출처: “French Economy Dashboard,” INSEE, 2024b.

한국의 2024년 현재 인구는 5,175만 명으로 2023년 5,171만 명에서 다소 증가한 수준이다. 1970년부터 2023년까지의 출생아 수, 사망자 수,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자연증가는 [그림 2-3]과 같다. 한국에서는 2020년에 처음으로 자연감소가 발생하였고, 이후 한국의 인구는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2023년 출생아 수는 약 230,000명으로 프랑스의 약 1/3 수준이고 사망자 수는 약 352,700명으로 프랑스의 절반이 조금 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23년 자연증가는 -12만 2,800명으로 2022년에 비해 1천 명 증가하였다.

20 프랑스의 인구정책 사례 연구

[그림 2-3] 한국의 출생, 사망, 자연증가(1970~2023)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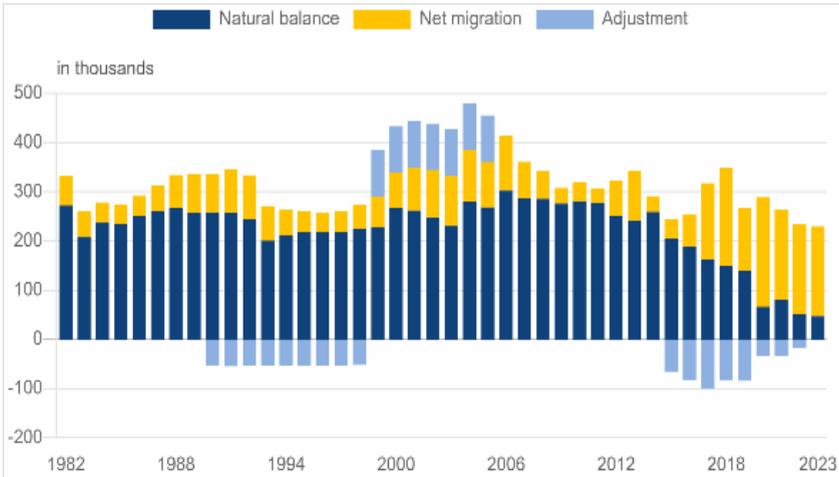


출처: “2023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 통계청, 2024b.

프랑스의 인구를 자연증가 외에 인구 규모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인구 이동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인구 유입(전입)에서 인구 유출(전출)을 뺀 순이동(Net migration) 또는 사회증가를 포함하여 프랑스의 인구 규모의 변화는 [그림 2-4]에서 살펴볼 수 있다. 1982년부터 2016년까지는 대체로 인구의 자연증가가 사회증가보다 크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양(+)의 자연증가는 프랑스 인구 규모의 증가가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많은 현상에서 기인함을 의미한다. 2017년부터는 순이동이 급증하였고 특히 2018년과 2020년에는 순이동이 각 200,500명, 223,000명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2020년대 들어서 프랑스 인구증가율의 감소는 인구의 자연증가 규모의 감소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4] 프랑스의 인구 변화 요인: 자연증가(Natural balance), 순이동(Net migration), 조정분(Adjustment)(1982~2023)

(단위: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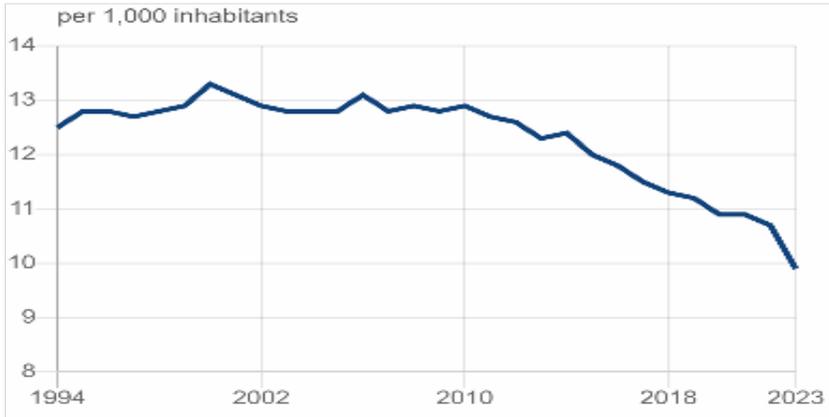
출처: "French Economy Dashboard," INSEE, 2024b.

## 나. 출생

프랑스의 2023년 출생아 수는 678,000명으로 2022년 대비 약 6.6% 감소하였고 출생아 수가 마지막 정점에 이른 2010년 대비 약 20% 감소한 수준이다. 인구 천 명당 출생아 수인 조출생률은 2023년 현재 9.9명으로 1994년부터 2023년의 기간을 살펴보았을 때 2000년 13.3명을 정점으로 하여 대체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림 2-5] 프랑스의 조출생률(1994~2023)

(단위: 인구 천 명당 명)



출처: “French Economy Dashboard,” INSEE, 2024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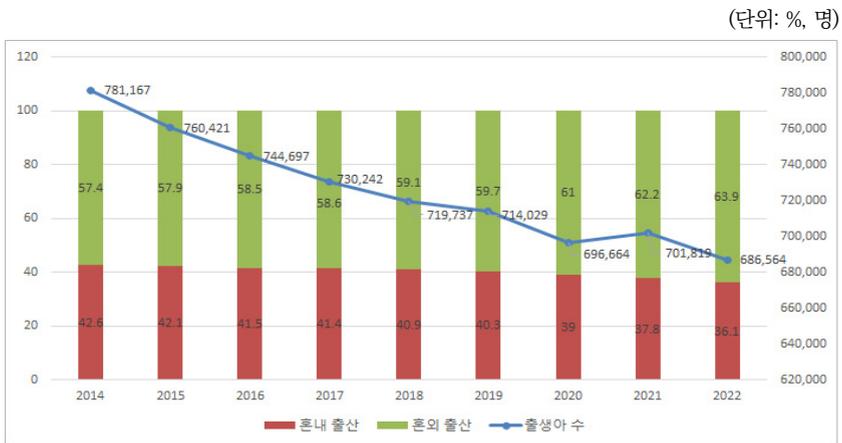
한국의 2023년 출생아 수는 230,000명으로 2022년 대비 약 7.7% 감소하였다. 한국의 인구 천 명당 출생아 수인 조출생률은 2023년 현재 4.5명으로 프랑스와 비교해서 절반 미만의 수준이다. 조출생률은 2013년 8.6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프랑스에서 출생의 대부분은 프랑스 부모를 통해 이루어진다. 2022년 기준 프랑스 부모에 의한 출생은 74.0%, 외국인 부모에 의한 출생은 11.5%, 외국인과 프랑스인 부모에 의한 출생은 14.4% 수준이다. 따라서 프랑스의 출산율에 이민자가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다(Insee, 2024f). 한편, 프랑스 출생아 수의 과반은 혼외 출생아로 구성된다. 프랑스의 혼외 출산의 비율은 2013년 56.4%에서 2022년 63.9%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는 프랑스의 동거문화와 관련이 있다. 민법 515-1(article 515-1 et suivants du code civil)에 규정된 1999년 시민연대협약(Pacte Civil de Solidarité, 이후 PACS)이 시작된 이후 혼외 출산이 증가하였다. PACS 초기에는 동성 커플의 동거를 인정하기 위한 측면이

있었지만, 현재 결혼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젊은 커플들이 활용하는 제도로 자리를 잡았다. PACS는 결혼을 통해 보장받는 법적인 권리와 지위와 비슷한 수준(사회보험, 소득세, 상속세 등)을 보장받을 수 있고, 프랑스 내 체류하는 외국 국적의 파트너와도 맺을 수 있다(Legalplace, n.d).

실제로 PACS가 동거문화로 자리를 잡은 이후 혼외 출산 비율이 증가하였다. 1901년부터 1978년까지 혼외 출산은 전체 출산에서 10% 미만이었으나 1979년 이후 혼외 출생 자녀의 비율이 10%를 넘었고, 1986년 20%, 1997년 40%를 넘어 2006년 처음으로 50.5%를 넘었다. 이러한 혼외 출산의 비율은 산모가 20대인 경우에 더 높다. 2017년 혼외 출산은 25세 미만 모에게서 출생한 경우의 79.8%, 25세 미만 부에게서 출생한 경우의 89.3%로 나타났다(Insee, 2024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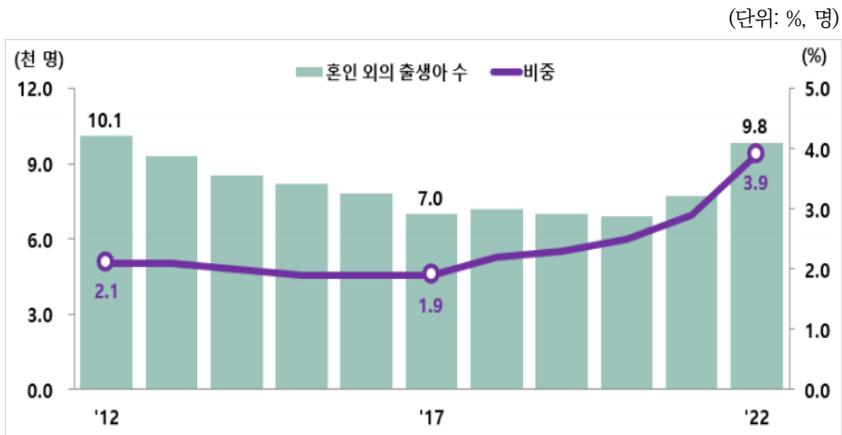
[그림 2-6] 프랑스의 출생아 수, 혼외 및 혼내 출산 비중 (2014~2022)



출처: “Statistiques d’état civil sur les naissances et Bilan démographique,” INSEE, 2024e.

한국의 혼인 외의 출생아 수의 비중은 2022년 현재 3.9%로 프랑스의 1/16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한국의 혼인 외의 출생아 수 비율은 2012년과 2013년 2.1% 수준에서 다소 감소하다가 2018년 2.2%, 2019년 2.3%, 2020년 2.5%, 2021년 2.9%로 꾸준히 점차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림 2-7] 한국의 혼인 외의 출생아 수 및 비중(2012~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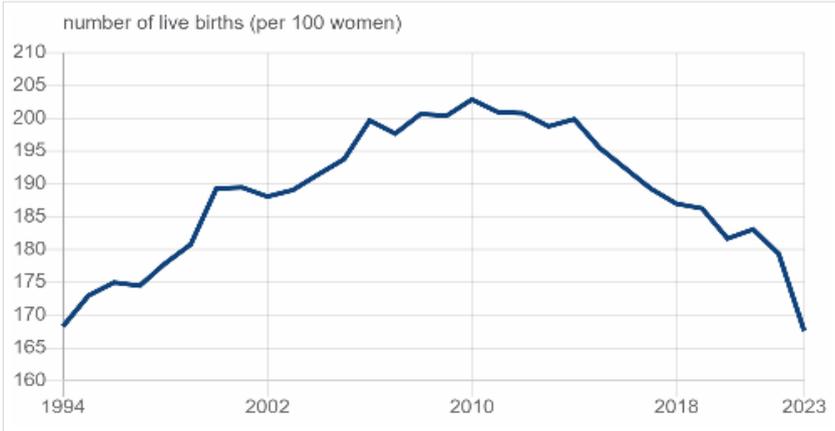


출처: “2022년 출생통계,” 통계청, 2023c, p.10.

프랑스의 가임기(15~49세) 여성 1명이 가임 기간 동안 출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2023년 약 1.68명으로 2022년 대비 0.11명 감소한 수준이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약 1.7명으로 가장 낮았던 1993년과 1994년의 수준이다. 그럼에도 프랑스의 합계출산율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비교적 높은 편이다.

[그림 2-8] 프랑스의 합계출산율(1994~2023)

(단위: 여성 100명당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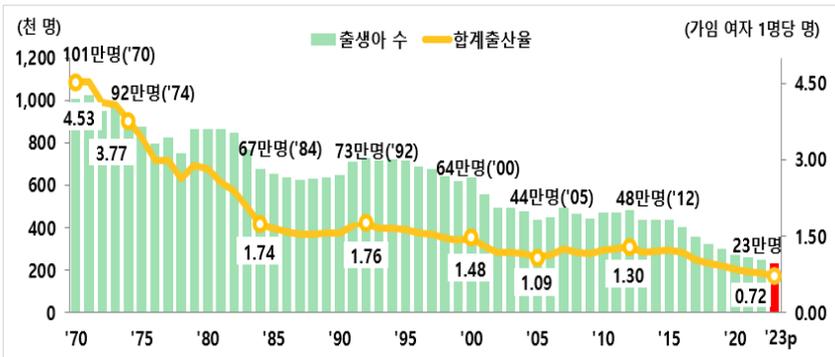


출처: “French Economy Dashboard,” INSEE, 2024b. [https://www.insee.fr/en/outil-interactif/5543645/details/20\\_DEM/22\\_NAI](https://www.insee.fr/en/outil-interactif/5543645/details/20_DEM/22_NAI)에서 24.1.16. 인출함.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소폭의 증가가 있었으나 대체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2018년부터 합계출산율은 1.0 미만으로 낮아졌고, 2023년에는 0.72명까지 낮아졌다.

[그림 2-9] 한국의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단위: 가임 여성 1,000명당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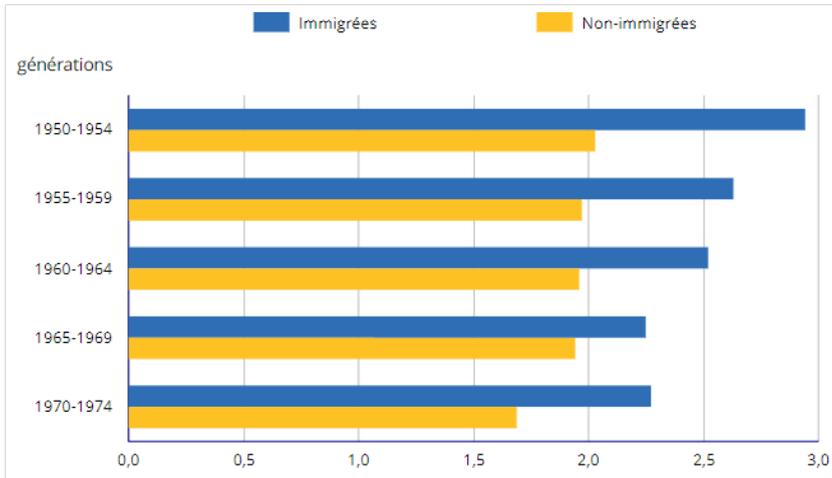


출처: “2023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 통계청, 2024b, p.3.

프랑스의 높은 합계출산율의 원인에서 주목할 점은 프랑스의 비교적 높은 합계출산율이 이민자의 높은 출산율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이민 여성의 수 감소와 이민 여성의 평균 자녀 수의 비교적 급격한 감소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민자는 프랑스의 합계출산율을 약 0.1명 정도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Volant, S., G. Pison & H. Francois, 2019. p.2).

[그림 2-10] 프랑스의 출생코호트별 이민자와 비이민자의 출생아 수

(단위: 명)



출처: “Combien les femmes immigrées ont-elles d’enfants?,” INSEE, 2023. <https://www.insee.fr/fr/statistiques/6801884>에서 23.2.1.인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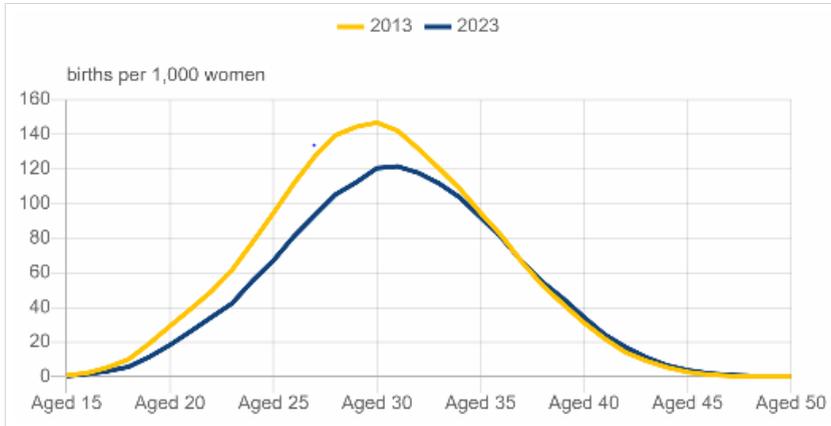
이민 여성의 출산율은 2023년 현재 하락세이다. 국립인구연구소 (INED)의 보고서(Didier, 2023)에 따르면 1950~1970년에 프랑스 거주 이민 여성은 가임 기간 동안 평균 2.35명의 자녀를 낳는 반면, 같은 세대 프랑스에서 태어난 여성은 평균 1.86명의 자녀를 낳아 약 0.49명의 차이를 보였다. 또한 이민자 자녀인 여성의 경우는 평균 1.90명을 낳았다. 즉, 이민 1세대의 출산율이 높고, 세대가 지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부모가 모두 이민자일 경우보다 부모 중 한 명이 이민자인 경우 출산율은 더 크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Didier, 2023).

합계출산율은 연령별 출산율의 합계이므로 여성의 연령별 출산율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23년 현재 프랑스에서 가장 출산율이 높은 연령은 31세로 천 명당 출산율은 121.5명이다. 2013년의 경우 가장 출산율이 높은 연령은 30세로 천 명당 출산율은 146.8명이다. 2013년 연령별 출산율과 비교해서 2023년 연령별 출산율은 전체적으로 낮은 수준인 가운데 약 37세부터 유사한 수준에서 다소 높은 수준이다.

[그림 2-11] 프랑스의 연령별 합계출산율(2013, 2023)

(단위: 여성 천 명당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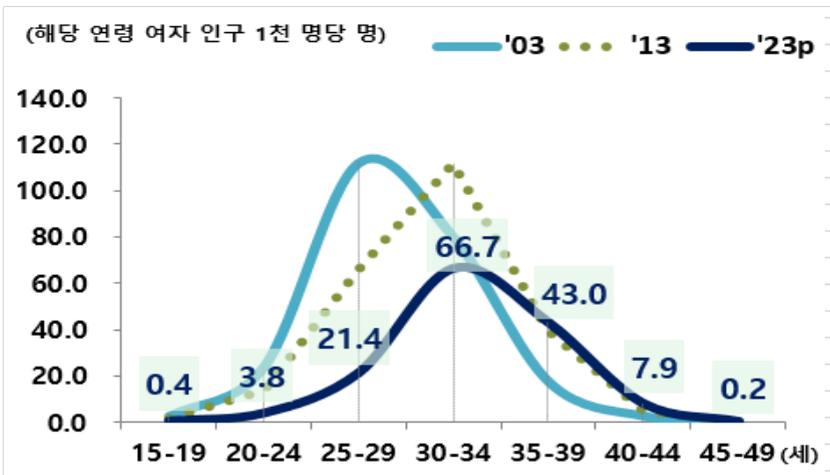


출처: “French Economy Dashboard,” INSEE, 2024b. [https://www.insee.fr/en/outil-interactif/5543645/details/20\\_DEM/22\\_NAI](https://www.insee.fr/en/outil-interactif/5543645/details/20_DEM/22_NAI)에서 24.1.16. 인출함.

한국의 연령별 합계출산율을 살펴보면, 프랑스와 유사하게 출산율이 가장 높은 연령은 30대 초반이다. 30대 초반의 합계출산율은 66.7명으로 프랑스의 30세 합계출산율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30대 초반 여성의 합계출산율은 2013년 111.4명에서 2015년 116.7명으로 증가하다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3년 66.7명까지 감소하였다. 30대 초반 다음으로 합계출산율이 높은 연령대는 30대 후반(43.0명), 20대 후반(21.4명) 순이다.

[그림 2-12] 한국의 연령별 합계출산율(2023)

(단위: 여성 천 명당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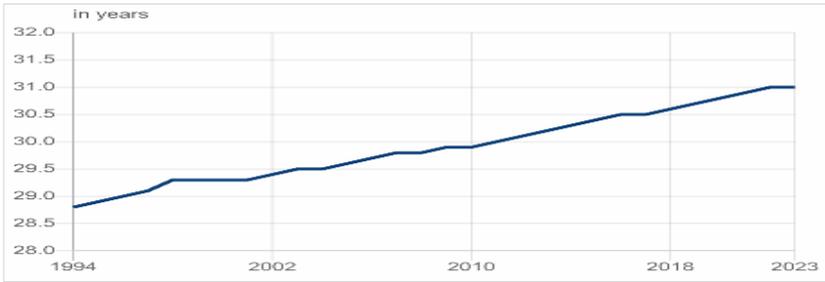
출처: “2023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 통계청, 2024b, p.4.

프랑스의 평균 출산 연령은 1994년 28.8세에서 대체로 지속 증가하여 2023년 31.0세에 도달하였다. 한국의 평균 출산 연령은 2013년 31.8세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3년 33.6세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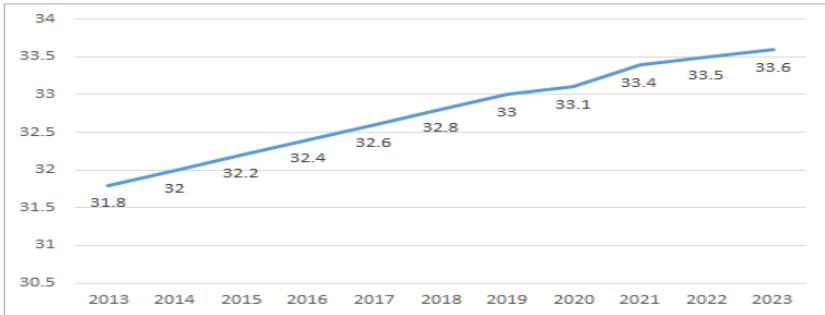
[그림 2-13] 평균 출산 연령

(단위: 세)

<프랑스>



<한국>



출처: 1) "French Economy Dashboard," INSEEb, 2024. [https://www.insee.fr/en/outil-in-teractif/5543645/details/20\\_DEM/22\\_NAI](https://www.insee.fr/en/outil-in-teractif/5543645/details/20_DEM/22_NAI)에서 24.1.16. 인출함.  
 2) "2023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 통계청,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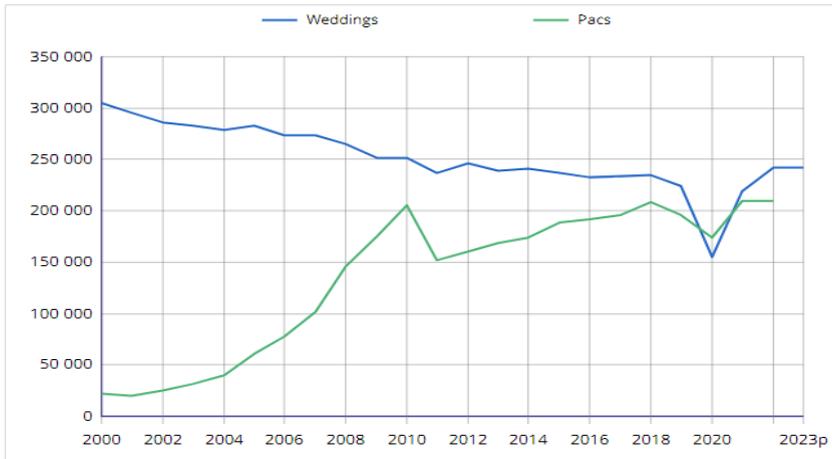
프랑스 국립통계경제연구소(INSEE)의 2024년 인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프랑스의 혼인 건수는 242,000건으로 추정된다. 혼인 건수는 2012년 이후 최고치인 2022년 수준에서 안정화되는 반면, 감소 추세는 다소 둔화되고 있다. 팬데믹으로 인해 2020년에는 혼인 건수가 감소하였고(2019년 대비 -31%), 2021년에 반등하여 다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22년에 체결된 시민연대협약(PACS)<sup>1)</sup>은

1) 시민연대협약(시민연대계약; pacte civil de solidarité, PACS) 또는 공동생활약정은 프랑스에서 시행 중인 두 이성 또는 동성 성인 간의 시민 결합 제도이다.

21만 건으로 2021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2002년 이후 PACS 체결 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Papon, 2024).

[그림 2-14] 혼인 및 시민연대협약(PACS) 체결 건수(2000~2023)

(단위: 건수)



출처: “Demographic Report 2023,” INSEE, 2024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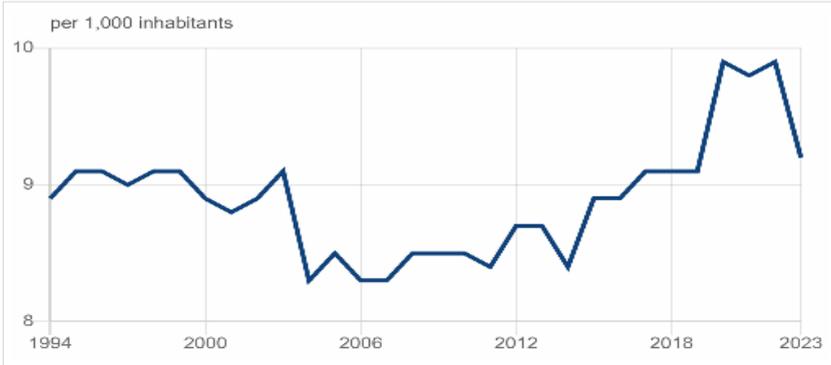
한국의 혼인 건수는 2022년 192,000건으로 전년 대비 0.4% 감소한 수준이다. 2023년 프랑스의 혼인 건수보다 약 50,000건 적은 수준이다.

## 다. 사망

프랑스의 2023년 현재 사망자 수는 약 631,000명으로 2022년 대비 6.5% 감소한 수준이나, 코로나19 이후 지난 3년간 높은 수준의 사망률이 유지되었다는 점에서 감소율은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서 다소 높은 수준이다. [그림 2-15]는 인구 천 명당 사망자 수인 조사망률을 제시하고 있다. 2023년 현재 조사망률은 9.2명으로 2018년 9.1명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그림 2-15] 프랑스의 조사망률(1994~2023)

(단위: 인구 천 명당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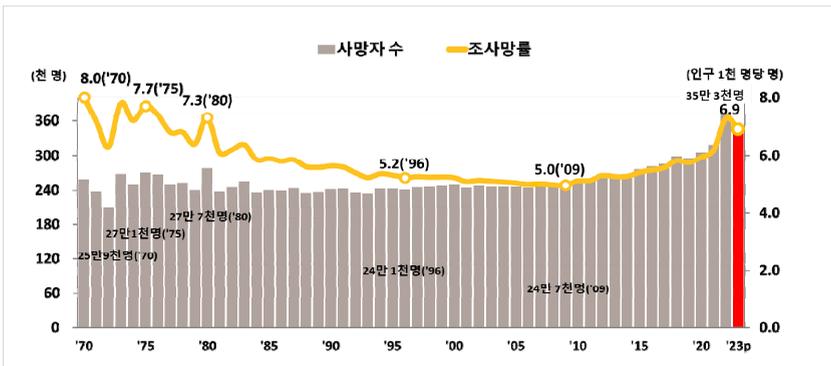


출처: “French Economy Dashboard,” INSEE, 2024b. [https://www.insee.fr/en/outil-inter-actif/5543645/tableau/20\\_DEM/23\\_DME](https://www.insee.fr/en/outil-inter-actif/5543645/tableau/20_DEM/23_DME)에서 24.1.16. 인출함.

한국의 2023년 현재 사망자 수는 약 352,700명으로 2022년 대비 5.4% 감소한 수준이다. 인구 천 명당 사망자 수인 조사망률은 2023년 현재 6.9명으로 2022년 7.3명보다 낮은 수준이며, 프랑스보다 약 2.3명 낮은 수준이다.

[그림 2-16] 한국의 사망자 수 및 조사망률(1970~2023)

(단위: 천 명, 인구 천 명당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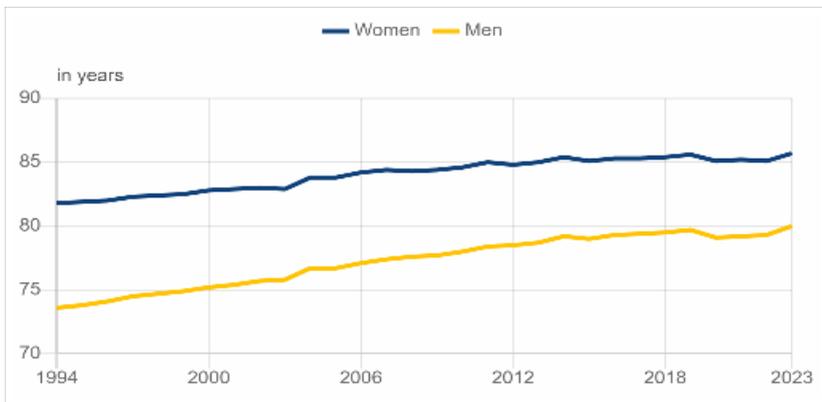
출처: “2023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 통계청, 2024b, p.13.

프랑스에서 0세의 출생자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 연수인 기대수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여성의 경우 1994년 81.8세에서 2023년 85.7세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남성의 경우 1994년 74.6세에서 2023년 80.0세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23년 현재 남성과 여성의 기대수명의 차이는 5.7세이다.

한국의 기대수명은 1970년 62.3세에서 2021년 83.6세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22년 82.7세로 다소 감소하였다. 여성의 경우 1970년 65.8세, 1980년 70.4세, 1990년 75.9세, 2000년 79.7세, 2010년 83.6세, 2020년 86.5세, 2021년 86.6세로 지속 증가하다가 2022년 85.6세로 다소 감소하였다. 남성의 경우 1970년 58.7세, 1980년 61.9세, 1990년 67.5세, 2000년 72.3세, 2010년 76.8세, 2020년 80.5세, 2021년 80.6세로 지속 증가하다가 2022년 79.9세로 다소 감소하였다. 남성과 여성의 기대수명의 차이는 1980년 8.5세에서 감소하여 2022년 현재 프랑스와 동일한 5.7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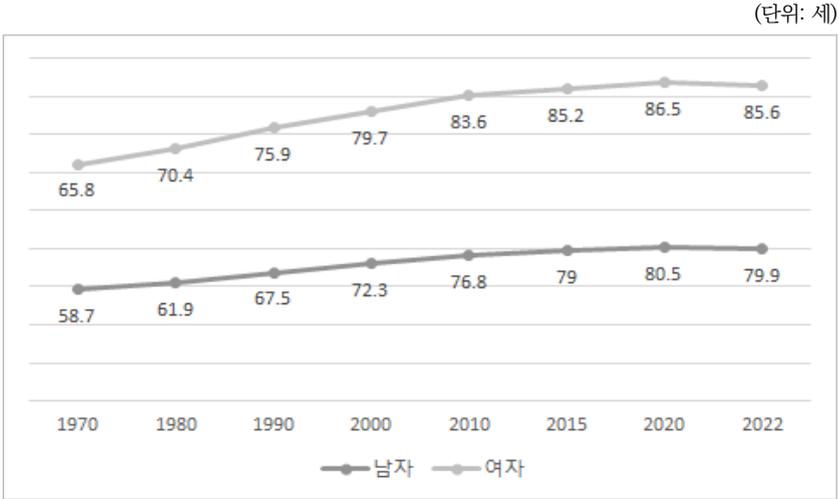
[그림 2-17] 프랑스의 성별 기대수명(1994~2023)

(단위: 세)



출처: “French Economy Dashboard,” INSEE, 2024b.

[그림 2-18] 한국의 성별 기대수명(1970~2022)



출처: “기대수명,” 국가지표체계,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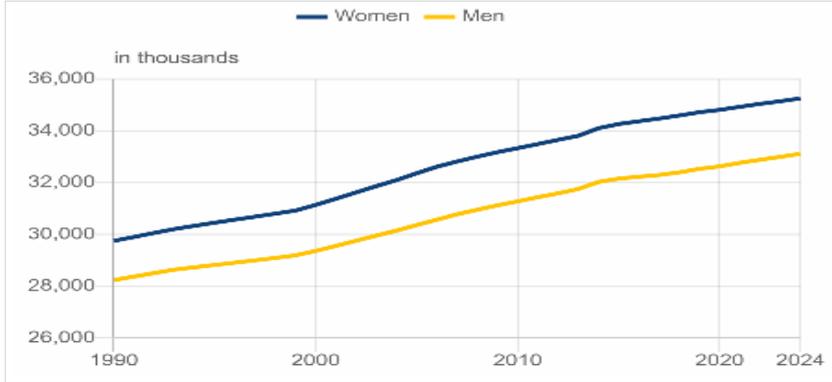
## 2. 인구 구조

2024년 1월 1일 현재 프랑스의 여성은 약 35,256,000명이고 남성은 약 33,118,000명으로 프랑스는 여성이 남성보다 2,138,000명 더 많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1990년부터 2024년까지 여성과 남성의 규모 차이는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1990년 약 1,514,000명에서부터 2018년 2,196,643명까지로 나타났다(INSEE, 2024). 2024년 현재 한국의 총인구는 51,751,065명으로 이 중 여성은 약 25,874,289명이고 남성은 약 25,876,776명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2,4871명 더 많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통계인구지리정보서비스, 2024).

### 34 프랑스의 인구정책 사례 연구

[그림 2-19] 성별 인구 규모(1990~2024)

(단위: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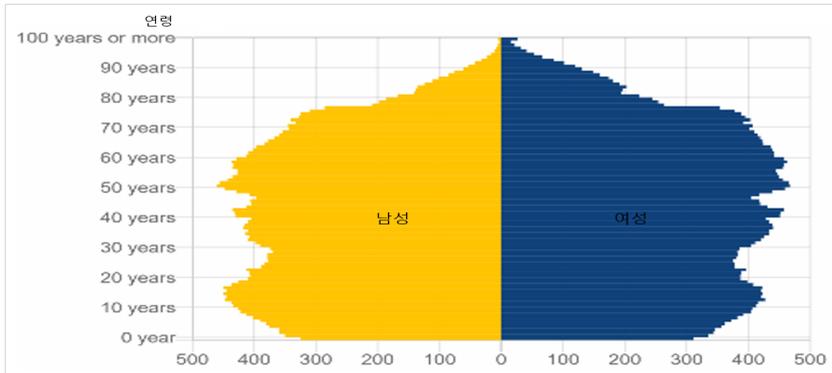


출처: "French Economy Dashboard," INSEE, 2024b.

2024년 1월 1일 현재 프랑스의 연령별 성별 인구 규모를 토대로 구성한 인구피라미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10대와 50대가 많은 구조이며, 가장 많은 연령은 51세로 여성이 약 467,000명, 남성이 약 460,000명으로 나타났다.

[그림 2-20] 프랑스의 인구피라미드(2024)

(단위: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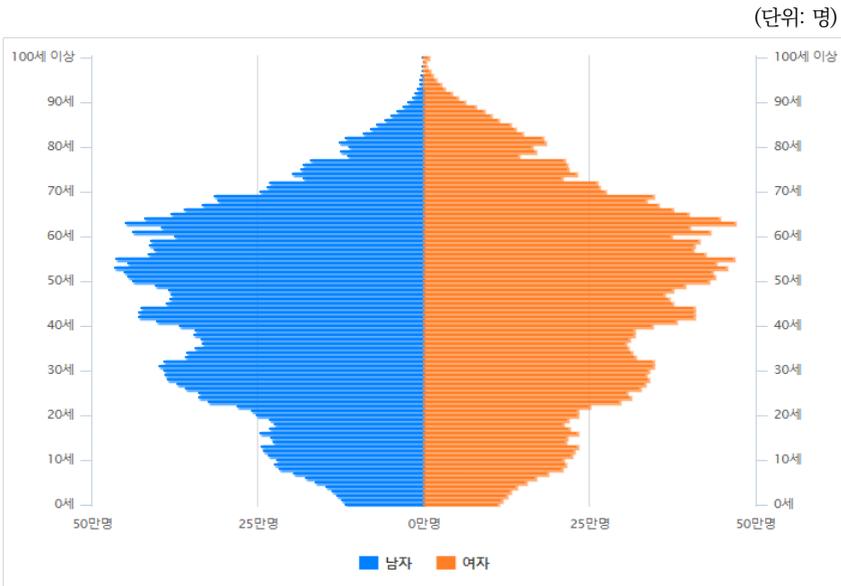


주: 2024. 1. 1. 현재 인구를 제시함.

출처: "French Economy Dashboard," INSEE, 2024b.

2024년 한국의 연령별, 성별 인구 규모를 토대로 구성된 인구피라미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60대 초·중반과 50대 초·중반이 많은 구조이며, 여성의 경우 가장 많은 연령은 63세로 약 470,055명, 남성의 경우 53세로 466,190명이다.

[그림 2-21] 한국의 인구피라미드(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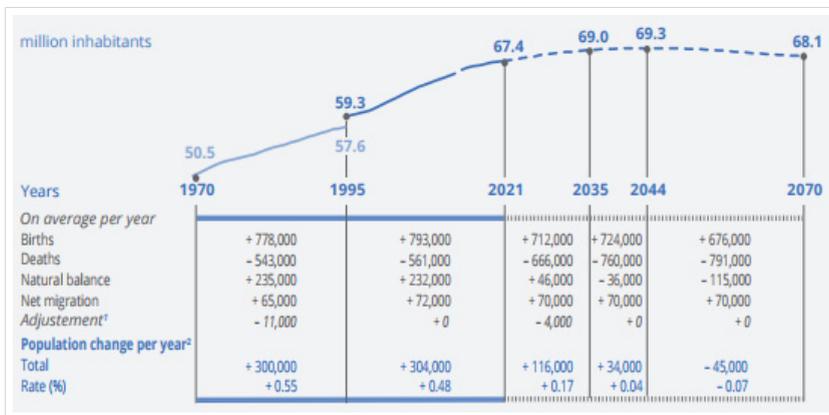
출처: “인구피라미드,” 통계지리정보서비스, 2024.

## 제2절 인구 전망

### 1. 인구 규모

2021년 프랑스 통계청(Insee)에서 작성한 인구 추계에 따르면, 출산, 사망, 인구 이동 등 인구 규모의 변화를 일으키는 세 가지 요인에 있어서 최근의 인구학적 추세가 유지된다고 가정하는 기본 시나리오(baseline scenario)<sup>2)</sup>에 따르면 프랑스의 인구는 2021년 6,740만 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44년 약 6,930만 명에 이르고 이후 조금씩 감소하여 2070년에는 6,81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21년 대비 70만 명 증가한 수준이다.

[그림 2-22] 프랑스의 인구 변화 전망(1970~20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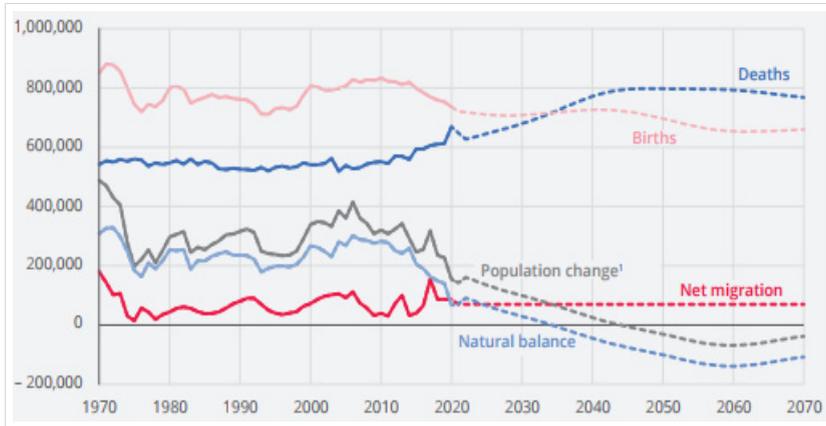
주: 1970년부터 1995년까지 프랑스 본토, 1995년부터 2013년까지 마요트를 제외한 프랑스 전체, 2014년부터 마요트를 포함.

출처: “population estimates, vital statistics and baseline population projection scenario 2021-2070,” INSEE PREMIÈRE No 1881, INSEE, 2024a. p.1에서 재인용.

2) 기본 시나리오는 합계출산율은 1.8명으로 유지되고, 기대수명은 2070년 여성의 경우 4.9년, 남성의 경우 8.4년 증가하며, 인구 이동은 연간 7만 명씩 증가한다고 가정하고 있다.

합계출산율을 1.8명으로 가정하고 있는 기본 시나리오에 따르면, 2021년에서 2035년까지 인구성장률은 연평균 0.17% 수준으로, 인구는 연평균 11만 6천 명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35년 이후부터는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은 인구의 자연감소(음(-)의 자연증가)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2044년까지는 순이동으로 인해 자연감소의 효과는 상쇄되고 인구의 규모는 완만하게 증가하여 2044년에 정점에 이르고 이후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성장률의 경우 2035년부터 2044년까지는 0.04%이었다가 2044년부터 2070년까지는 -0.07%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23] 프랑스의 출생, 사망, 인구 이동 전망(1970~2070)



주: 1970년부터 1995년까지 프랑스 본토, 1995년부터 2013년까지 마요트를 제외한 프랑스 전체, 2014년부터 마요트를 포함.

출처: "Population estimates, vital statistics and baseline population projection scenario 2021-2070, INSEE PREMIÈRE No 1881, INSEE, 2024a, p.1에서 재인용.

인구 전망을 위한 인구 변동의 세 가지 기본 요소인 출산, 사망, 이동을 다양하게 가정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따른 프랑스의 인구 전망은 [그림 2-24]와 같다. 합계출산율이 2.0명으로 증가한다는 가정을 하고 있는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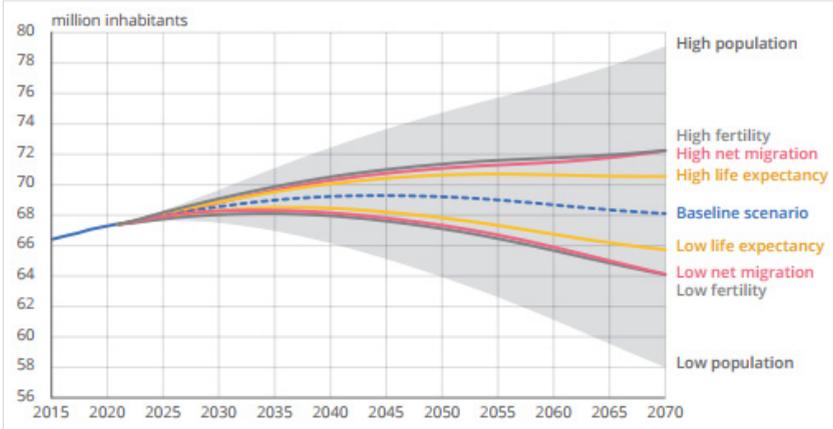
출산(high fertility) 시나리오에 따르면 2046년까지 양(+의 자연증가, 즉 인구의 자연증가가 발생하여 2070년 프랑스의 인구는 기본 시나리오 대비 약 410만 명 증가할 전망이다. 합계출산율이 1.6명으로 감소한다는 가정을 하고 있는 저출산(low fertility) 시나리오에 따르면 2027년부터 음(-)의 자연증가, 즉 인구의 자연감소가 시작되어 2070년 프랑스의 인구는 기본 시나리오 대비 약 400만 명 감소하게 될 전망이다.

양(+의 순이동, 즉 순유입이 기본 시나리오보다 증가하여 연간 120,000명의 순유입이 있다고 가정하는 시나리오(high net migration scenario)에 따르면 2070년 프랑스의 인구는 기본 시나리오 전망과 비교하여 약 410만 명 증가하게 될 전망이다. 연간 순유입이 2만 명 수준이라고 가정하는 시나리오(low net migration scenario)에 따르면 2070년 프랑스의 인구는 기본 시나리오 전망과 비교하여 약 400만 명 감소하게 될 전망이다.

프랑스의 경우 출산이나 인구이동에 비해 사망이 인구 변동에 미치는 영향은 작다. 사망과 기대수명 가정에 따른 시나리오의 인구 추계 결과를 살펴보면, 기대수명이 기본 시나리오 대비 3.5년 증가하거나 감소한다고 가정하는 것에 따라 2070년 인구는 기본 시나리오보다 240만 명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또한 낮은 인구성장 시나리오(low population scenario)는 저출산, 낮은 기대수명, 적은 인구 유입을 가정한다. 이러한 시나리오에 따르면 2070년 프랑스의 인구는 5,800만 명에 이른다. 반면, 고출산, 높은 기대수명, 많은 인구 유입을 가정한 고성장 시나리오(high population scenario) 따르면 2070년 프랑스의 인구는 7,910만 명에 이를 전망이다.

[그림 2-24] 프랑스의 시나리오별 인구 전망 (2015~20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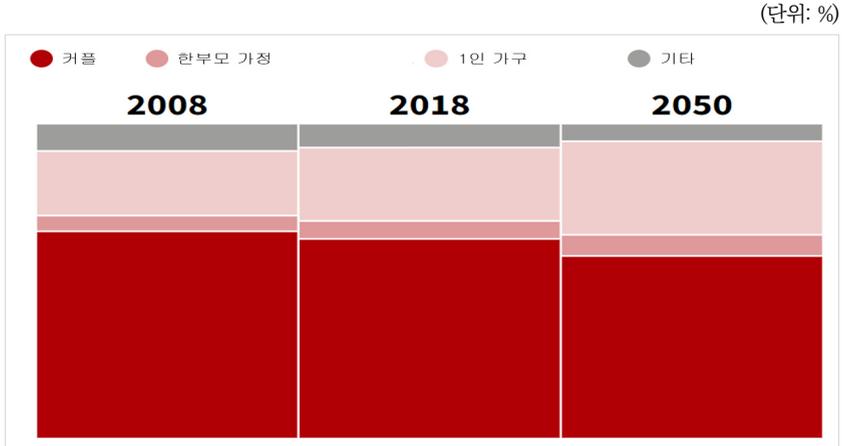


주: 1970년부터 1995년까지 프랑스 본토, 1995년부터 2013년까지 마요트를 제외한 프랑스 전체, 2014년부터 마요트를 포함.

출처: "Population estimates, vital statistics and baseline population projection scenario 2021-2070," INSEE PREMIÈRE No 1881, INSEE, 2024a, p.2에서 재인용.

프랑스에는 가구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프랑스 내 가구 수는 2023년 3,080만 가구에서 2050년까지 3,220만~3,590만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성장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1990년 이후 프랑스에서는 인구통계학적 성장에 힘입어 이미 약 880만 가구가 늘었다. 하지만 프랑스 인구와 마찬가지로, 가구 수의 이러한 증가는 몇 년 내에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프랑스 통계청(INSEE) 2024년 1월에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에서 2030년 사이의 215,000가구에 비해 2030년에서 2050년 사이에는 84,000가구만 추가로 될 것으로 예측된다(Gamblin, 2024).

[그림 2-25] 프랑스 가구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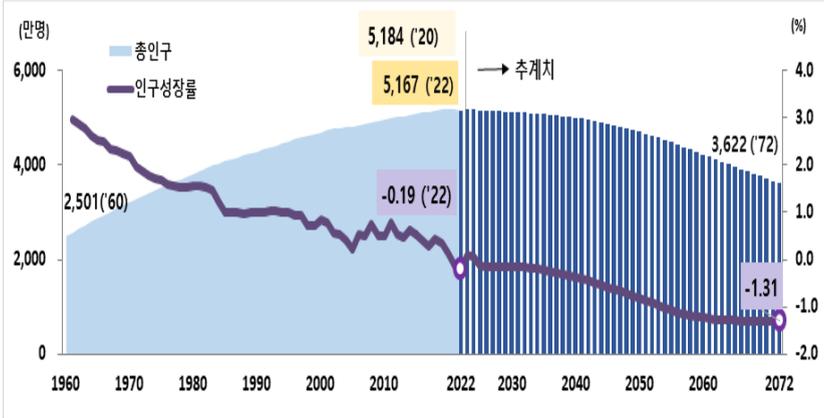
출처: “Démographie : les Français vivent de plus en plus seuls,” Pauline Verge, 2024. <https://www.lesechos.fr/politique-societe/societe/demographie-les-francais-vivent-de-plus-en-plus-seuls-2045499> 2024.4.5. 인출함.

‘동거형태’의 진화는 인구 증가와 인구 고령화에 앞서 가구 수의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프랑스 통계청은 ‘2008~2018년에는 주로 인구 증가로 인해 가구 수가 증가했지만, 2018~2050년에는 동거 방식의 발전이 가구 수 증가의 주요 요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부부, 한부모 가족, 1인 가구 등이 늘어나면서 가구 규모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수학적으로는 인구 규모가 감소하지 않으므로 가구 수가 증가한다.

한국의 총인구는 2020년 5,184만 명에서 2030년 5,131만 명 수준으로 감소하고, 2070년 3,766만 명, 2072년 3,622만 명까지 감소할 전망이다(통계청, 2023,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 중위 추계<sup>3)</sup>). 인구성장률은 2025년 이후 10년간 연평균 -0.16% 수준이고, 이후 감소 속도가 빨라져 2072년에는 -1.31%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3) 통계청(2023b)의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에서의 중위 추계 시나리오는 인구 변동 요인별(출산율, 기대수명, 국제순이동) 중위(중간 수준) 가정 조합한 기준 시나리오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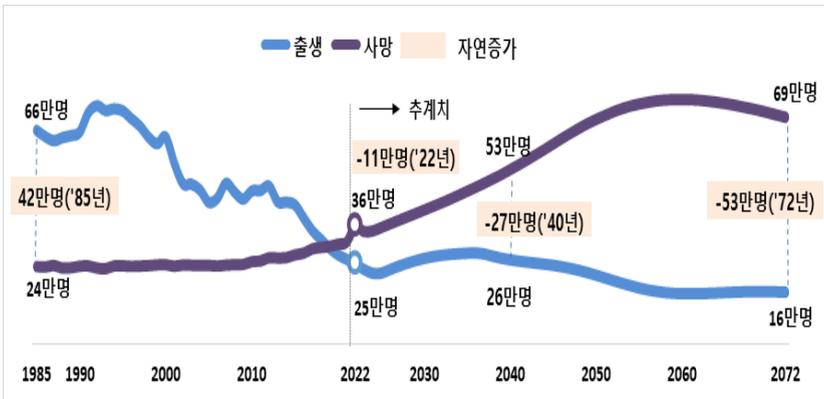
[그림 2-26] 한국의 총인구 및 인구성장률(1960~2072)



출처: “장래인구추계(2022~2027년) 보도자료,” 통계청, 2023b, p.1.

한국의 경우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지는 인구 자연감소는 2019년 11월부터 시작되었다. 자연증가(출생아 수-사망자 수)의 수준은 2022년 -11만 명에서 2040년-27만 명, 2072년 -53만 명 수준으로 전망된다.

[그림 2-27] 한국의 출생, 사망, 자연증가(1985~2072)



출처: “장래인구추계(2022~2027년) 보도자료,” 통계청, 2023b, p.1.

한국의 경우, 출생, 사망, 인구이동이라는 인구 변동의 요인 중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출생이다. 출생아 수는 2022년 25만 명에서 2072년 16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출생아 수의 변화와 달리 사망자 수는 1985년부터 2017년까지 24만 명에서 29만 명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2040년 이후에는 출생뿐만 아니라 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망이 한국 인구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사망자 수는 고연령 인구의 증가에 따라 2022년 36만 명에서 2072년 69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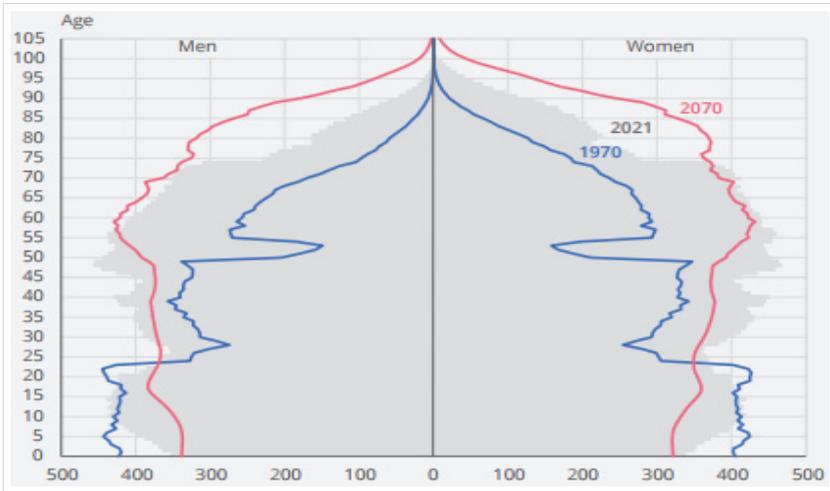
## 2. 인구 구조

앞에서 언급되었듯이, 프랑스의 인구 규모는 기본 시나리오에 따라 2070년 약 6,841만 명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2021년도와 큰 차이는 없는 수준이다. 그럼에도 인구의 구성은 비교적 차이를 보일 전망이다. 프랑스의 성별, 연령별 인구피라미드를 살펴보면 [그림 2-28]과 같다. 비교적 유사한 규모로 전망되는 60~74세 인구를 제외하고 연령별 구성은 2021년과 비교해서 2070년에 변화를 발견할 수 있다. 7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70년까지 약 570만 명 증가하고, 동 기간 60세 미만 인구는 약 500만 명 감소할 전망이다. 결과적으로 2070년 인구피라미드를 2021년과 비교했을 때 인구피라미드의 윗부분은 더 넓어지고 인구피라미드의 아랫부분은 좁아지는 모양으로 변하게 될 전망이다. 이는 상당 부분 기대 수명의 증가에서 기인한다. 또한 1946년 이전 즉 베이비붐 이전에 태어난 2021년 75세 이상 노인과 비교해서 2070년 75세 이상인 노인은 출생아 수가 많았던 1995년 이전 코호트이므로 그러하다. 인구피라미드의 아랫부분이 좁아지는 것은 2021년 이후 출생한 세대의 규모가 작고, 합

계출산율 1.8명이라는 기본 시나리오 가정에 따라 과거 수준보다 낮은 출생아 규모에 기인한다.

한편, 성별 구성을 살펴보면, 2070년 남녀 성별 균형은 보다 균형적인 양상을 보일 전망이다. 2010년부터 2019년 사이 여성의 기대수명은 0.9년 증가한 반면, 남성의 기대수명은 1.7년 증가하였다. 이러한 남성과 여성의 기대수명의 변화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또한 2070년 85세 이상 여성 노인의 비율은 68%에서 59%로, 100세 이상 여성 노인의 비율은 84%에서 71%로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남녀의 성비는 결과적으로 2021년 약 51.7%에서 2070년 약 50.8%로 보다 균형적으로 변화될 전망이다.

[그림 2-28] 프랑스의 인구피라미드(1970, 2021, 2070)



주: 1970년부터 1995년까지 프랑스 본토, 1995년부터 2013년까지 마요트를 제외한 프랑스 전체, 2014년부터 마요트를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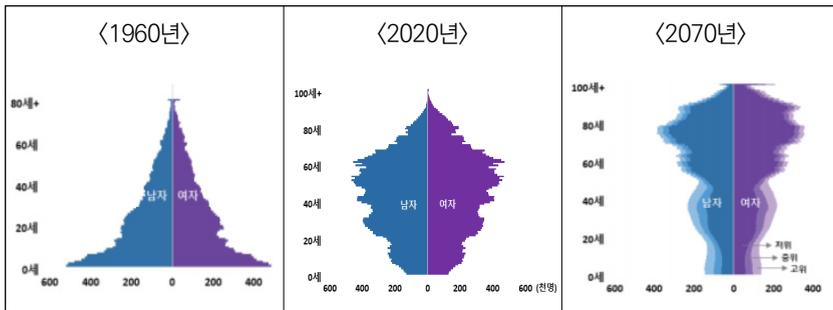
출처: "Population estimates, vital statistics and baseline population projection scenario 2021-2070," INSEE, 2024a, No 1881, p.2에서 재인용.

#### 44 프랑스의 인구정책 사례 연구

한국의 인구피라미드는 프랑스의 인구피라미드와 비교해서 한층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다. 인구 규모를 연령과 성별로 구분하여 구성한 인구피라미드의 형태는 1960년 삼각형에서, 2020년에는 30~50대 연령층이 두터운 형태의 항아리형으로 변했고, 2070년에는 70~80세 연령층이 두터운 역삼각형으로 변화될 전망이다.

[그림 2-29] 한국의 인구피라미드(1960, 2020, 2070)

(단위: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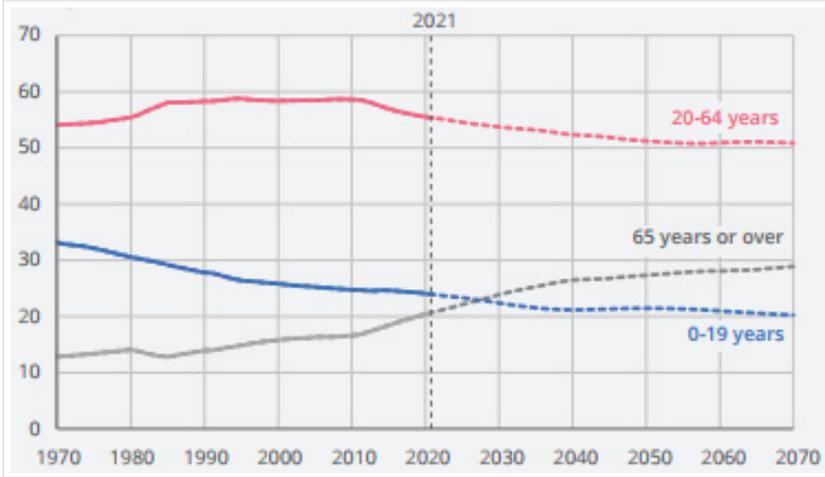
출처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 통계청, 2021, p.18.

인구 구조의 변화는 생산연령인구 대비 고령인구의 비율인 부양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의 기본 시나리오에 따르면 2040년까지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중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65세 이상 노인의 규모가 2021년 현재 전체 인구의 21%에서 2040년 26%로 5%p 증가하는 데 기인한다.

2040년부터는 1974년에 태어난 마지막 베이비붐 세대가 65세 이상 연령 집단에 진입하게 되면서 65세 이상 인구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2070년에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전체 인구의 29%로 2021년과 비교하여 8%p 증가한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그림 2-30] 프랑스의 연령별 집단별 인구구성비(1970~2070)

(단위: %)



주: 1970년부터 1995년까지 프랑스 본토, 1995년부터 2013년까지 마요트를 제외한 프랑스 전체, 2014년부터 마요트를 포함; 기본 시나리오에 의한 전망치임.

출처: "Population estimates, vital statistics and baseline population projection scenario 2021-2070," INSEE, 2024a. No 1881, p.3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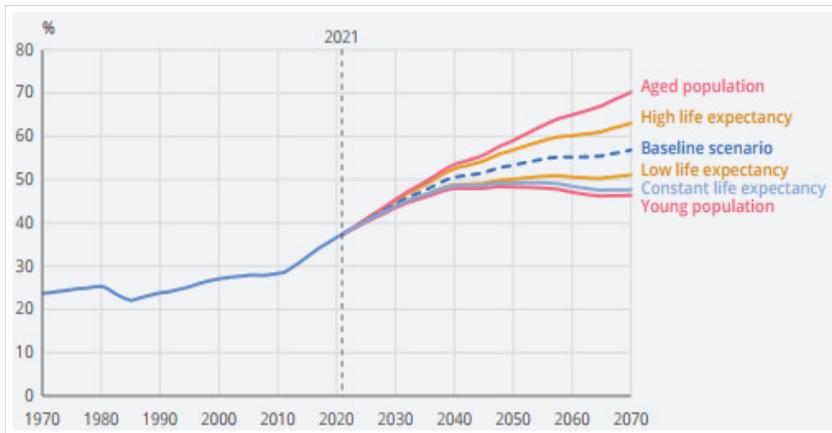
이러한 프랑스의 65세 이상 노인 비율의 증가는 노년부양비의 증가로 이어진다. 2040년까지 인구의 지속적인 고령화에 관해서는 기대수명의 증가나 이미 출생한 세대의 인구수를 통해 비교적 정확하게 그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기본 시나리오에 따르면 노년부양비는 2021년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37명에서 2040년 51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대수명이 2019년 수준으로 유지되는 시나리오(Constant life expectancy scenario)에 따르면 2040년 노년부양비는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49명으로 전망된다. 인구 고령화의 수준을 가장 낮게 가정하고 있는 시나리오(Young population scenario)에 따르면 2040년 노년부양비는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48명에 이르는 반면, 인구 고령화 수준을 가장 높게 가정하고 있는 시나리오(Aged population scenario)에 따르면 2040년

의 노년부양비가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53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040년 이후 2070년까지의 노년부양비 변화는 훨씬 더 불확실하게 전망된다. 이에 따라 시나리오에 따라 변화의 추세까지 다양하게 전망된다. 즉, 2070년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57명인 기준 시나리오에 따라 2040년 대비 노년부양비가 다소 증가할 수도 있고, 인구 고령화 수준을 가장 높게 가정하고 있는 시나리오(Aged population scenario)에 따라 2070년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70명까지 크게 증가할 수도 있는 반면, 인구 고령화의 수준을 가장 낮게 가정하고 있는 시나리오(Young population scenario)에 따라 2070년 노년부양비는 46명으로 2040년 대비 다소 감소할 수도 있다.

[그림 2-31] 프랑스의 노년부양비(1970~207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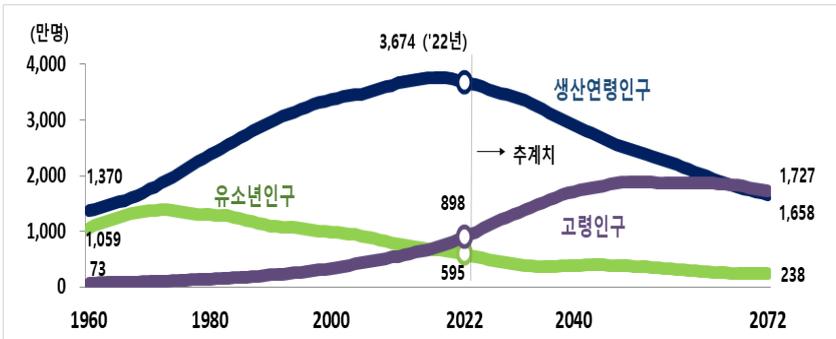


주: 1970년부터 1995년까지 프랑스 본토, 1995년부터 2013년까지 마요트를 제외한 프랑스 전체, 2014년부터 마요트를 포함.

출처: "Population estimates, vital statistics and baseline population projection scenario 2021-2070," INSEE, 2024a. No 1881, p.4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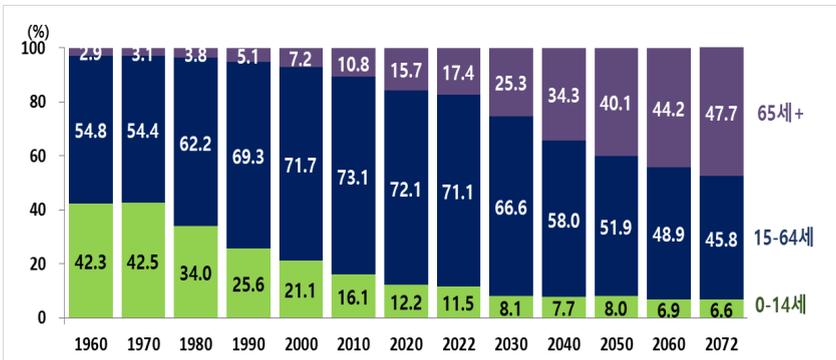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는 2022년 전체 인구의 898만 명(17.4%)에서 크게 증가하여 2050년 1,891만 명(40.1%)에 이르고 이를 정점으로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2072년 1,727만 명(47.7%)에 이를 것으로 전망 된다.

[그림 2-32] 연령 집단별 인구구조 및 인구구성비(1960~2072)



출처: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 통계청, 2023b, p.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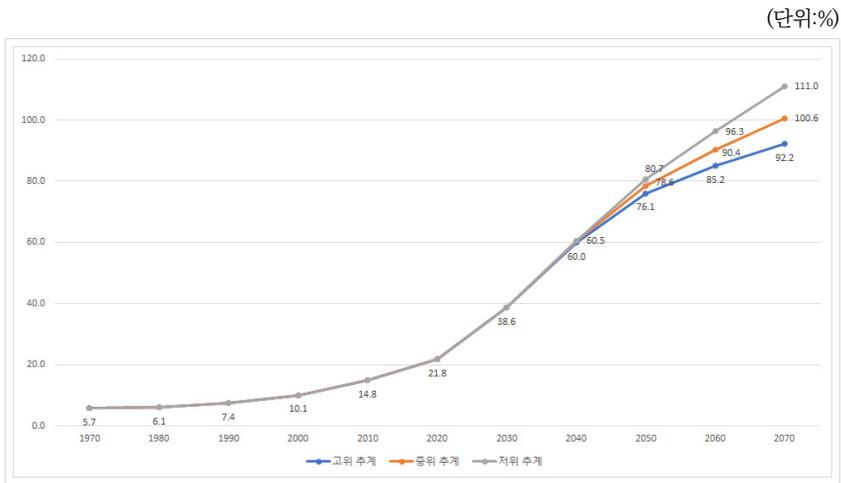
[그림 2-33] 연령 집단별 인구구성비(1960~2072)



출처: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 통계청, 2023b, p.7.

한국의 노년부양비는 인구전망 시나리오에 관계없이 추세에 있어서는 증가할 전망이다. 한국의 생산연령인구(15~64세) 100명당 부양할 노년 인구(65세 이상)인 노년부양비는 2022년 24.4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72년 104.2명에 이를 전망이다. 프랑스와 비교해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증가 속도가 더 빨라 노년부양비도 급속하게 증가할 전망이다.

[그림 2-34] 한국의 노년부양비(1970~2070)



주: 2020년까지 실측치.

출처: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 통계청, 2021.

### 3. 지역 인구

인구 변화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프랑스의 행정구역은 18개의 레지옹(régions), 101개의 데파르트망(départements), 34,970개의 코뮌(communes)으로 구분되어 있다. 한국 행정체제와 비교하면 레지옹(régions)은 광역자치단체, 데파르트망(départements)은 도, 코뮌

(communes)은 시나 군과 유사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15년 ‘새로운 지방행정체제(Nouvelle organisation territoriale de la République, 일명 Loi NOTRe)’에 관한 법으로 인해 레지옹의 역할과 권한이 재조정되었다. 경제발전, 고등학교, 유럽연합펀드, 교통, 지역 개선과 관련한 권한이 커졌다. 이 외에도 스포츠, 관광, 문화에 대해 지역 간 협력에 관여하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을 통해서 볼 때 프랑스에서 인구와 관련해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끼치는 행정단위는 최소 단위라고 볼 수 있는 코뮌(commune)과 광역자치단체로 볼 수 있는 레지옹(région)이라고 볼 수 있다. 2010년 이후에는 코뮌의 광역연합체인 메트로폴(métropole)이 만들어졌다. 메트로폴은 새로운 유형의 자율적인 지방세 권한을 가진 코뮌 간 협력을 위한 협력체로 이를 통해 공공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고 있다(Cdg35, n.d).

〈표 2-1〉은 프랑스의 프랑스 내 13개 레지옹(Région)의 인구성장률과 프랑스 해외영토(Guadeloupe, Guyane, Martinique, La Réunion, Mayotte)의 평균 인구성장률을 제시하고 있다. 레지옹 중 Burgundy-Franche-Comté, Centre-Val de Loire, Grand Est, Hauts-de-France 및 Normandy는 2015년에 인구학적 정점에 도달했으며 나머지 지역은 2044년 이후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1995년부터 2018년까지 모든 레지옹의 인구는 연평균 0.13%에서 1.18% 사이로 증가했다. 2018~2050년 동안 60% 이상의 지역에서는 인구가 이전보다 천천히 증가하고 나머지 약 40%의 지역에서는 계속 감소할 전망이다.

〈표 2-1〉 프랑스 지역의 인구성장률(1995~2070)

(단위: %)

지역(Région)*	(관측치)	기본 시나리오			높은 인구성장 시나리오	낮은 인구성장 시나리오
	1995- 2018	2018- 2050	2050- 2070	2018- 2070	2018- 2070	2017- 2070
Occitanie	0.98	0.37	0.06	0.25	0.52	-0.04
Pays de la Loire	0.80	0.33	0.01	0.21	0.49	-0.09
Corse	1.18	0.30	-0.02	0.18	0.41	-0.07
Bretagne	0.70	0.27	-0.02	0.16	0.43	-0.14
Auvergne-Rhône- Alpes	0.68	0.25	-0.01	0.15	0.44	-0.17
Nouvelle-Aqui- taine	0.62	0.23	-0.03	0.13	0.42	-0.18
Provence-Alpe- s-Côte d'Azur	0.60	0.11	-0.05	0.05	0.29	-0.22
Île-de-France 1	0.51	0.08	-0.10	0.01	0.28	-0.28
Centre-Val de Loire	0.27	-0.09	-0.18	-0.13	0.14	-0.41
Hauts-de-Fran- ce	0.13	-0.16	-0.27	-0.20	0.07	-0.5
Grand Est	0.16	-0.22	-0.37	-0.28	0.01	-0.61
Bourgogne-Fr- anche-Comté	0.13	-0.27	-0.32	-0.29	0.01	-0.62
Normandie	0.20	-0.25	-0.35	-0.29	0.01	-0.61
해외영토**	nd	0.44	0.59	0.50	1.03	-0.06

\*프랑스 13개 Région 및 프랑스 해외영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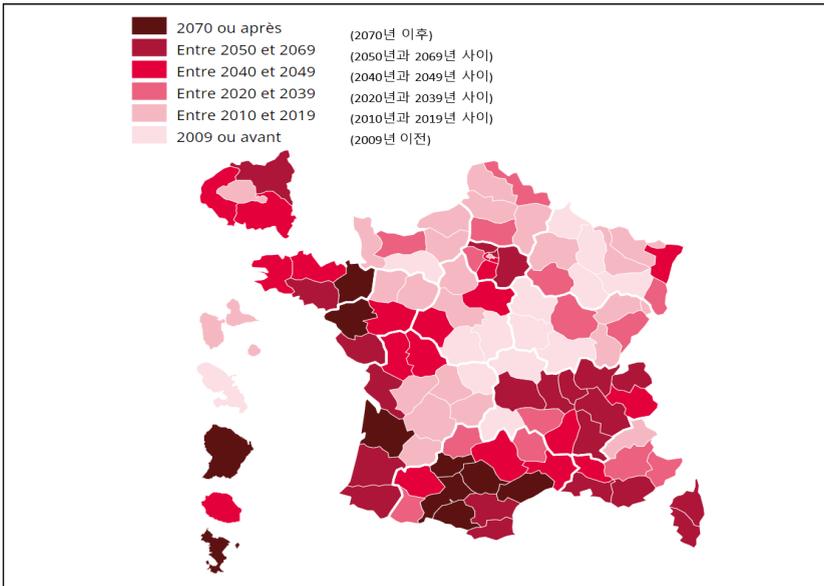
\*\*프랑스 해외영토(Guadeloupe, Guyane, Martinique, La Réunion, Mayotte) 평균

출처: "D'ici 2070, un tiers des régions perdraient des habitants," Cazaubiel, Amel El Guendouz, 2022, p.1

2050년부터 2070년까지 인구증가율의 경우 모든 지역에서도 연간 0.1%를 초과하지 않으리라고 전망된다. 프랑스에서 2018년부터 2070년까지 인구 변화율에 따른 지역 간 순위는 어떤 시나리오에서도 같다. 결과적으로 프랑스 남부와 서부 지역의 인구 전망이 가장 긍정적으로 나타났다(Cazaubiel, Amel El Guendouz, 2022).

프랑스 101개의 데파르트망(départements) 중 14개는 10년 전 이미 인구의 정점을 지났고, 24개의 데파르트망은 2010년을 기점으로 정점을 지났다. 파리를 중심으로 하는 일드프랑스(Île-de-France)<sup>4)</sup>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인구 감소율을 보이고 있고, 파리를 제외한 일드프랑스(Île-de-France) 인구는 10년 전부터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그림 2-35] 데파르트망(départements)별 인구 규모 최대치가 되는 시기



주: 기본 (인구전망) 시나리오 적용 시의 전망치임.

출처: "D'ici 2070, un tiers des régions perdraient des habitants," Cazaubiel, Amel El Guendouz, 2022, p.2

인구전망 시나리오 중 기본 시나리오에 따르면 국가 차원의 합계출산율 지수(l'indice conjoncturel de fécondité, 이하 ICF)는 2018년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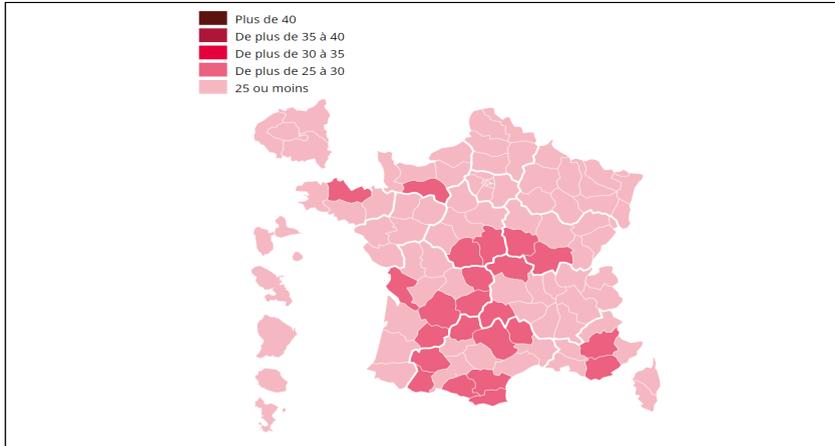
4) 일드프랑스(île-de-france)는 앞에서 언급한 행정체계 중 레지옹(région)에 해당된다. 프랑스 영토의 2.2%에 불과하지만 18.8%의 인구가 몰려 있다. 일드프랑스는 8개의 데파르트망과 1,267개의 코뮌으로 이뤄져 있다.

터 2023년까지 감소하여 가임 여성 1인당 1.8명으로 안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인구전망 시나리오 중 고출산(high fertility) 시나리오에 따르면 합계출산율 지수(ICF)는 점진적으로 증가해 2030년에 여성 1인당 2.0명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출산율이 높아지면 데파르트망(départements)에서 인구 전환점이 지연되거나 심지어 인구가 규모가 작아질 것이라는 우려는 사라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반면 저출산(low fertility) 시나리오에 따르면 다음 그림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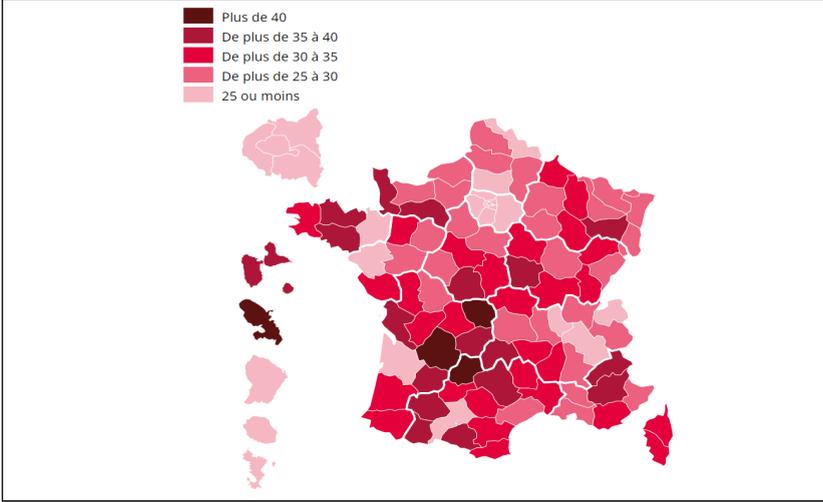
[그림 2-36] 65세 이상 인구 비율(2018, 2040, 207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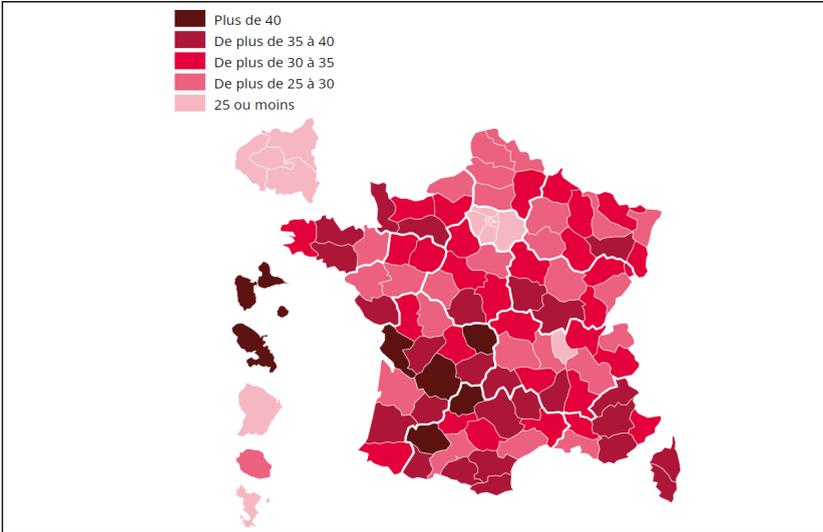
<2018>



<2040>



<2070>



주: 저출산 (인구전망) 시나리오 적용 시의 전망치임.  
출처: "D'ici 2070, un tiers des régions perdraient des habitants," Cazaubiel, Amel El Guendouz, 2022, p.3

2018~2070년 동안의 인구 변화는 인구 규모보다 인구 구성이 훨씬 더 급격하게 변한다는 특성이 있다. 2070년에는 2,000만 명이 65세 이상 노인이 된다. 이는 2018년 20%에서 2070년에는 전체 인구의 29%에 해당한다. 이러한 인구 고령화는 프랑스 본토의 모든 지역에 상당한 비율로 영향을 미친다. 데파르트망(départements)의 중심이 되는 지역의 인구는 다른 지역보다 더 유리한 인구학적 역할을 하게 된다. 인구 전망 기본 시나리오에 따르면 데파르트망(départements)의 중심이 되는 지역은 2070년 인구가 2018년과 비교해 9% 증가하지만, 같은 기간 대부분의 데파르트망(départements)(파리를 중심으로 하는 일드프랑스 제외)에서 인구는 약 3% 감소한다. 데파르트망(départements)의 중심 지역에는 부분적으로 대학과 취업센터가 있어서 인구 고령화가 덜 두드러진다. 프랑스 베이비붐 세대가 노령화되는 2030년대 중반에 가장 두드러지며, 이후 전망 기간이 끝날 때까지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의 지역 간 인구 격차는 2018~2070년 사이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11월에 발표된 프랑스 통계청의 인구통계에 따르면 프랑스에서 2070년까지 레지옹(régions)의 3분의 1에서 인구가 감소하고, 나머지 지역에서도 지역 주민의 수 증가 속도가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Centre-Val de Loire, Hauts-de-France, Grand Est, Bourgogne-Franche-Comte, Normandie 지역은 인구가 감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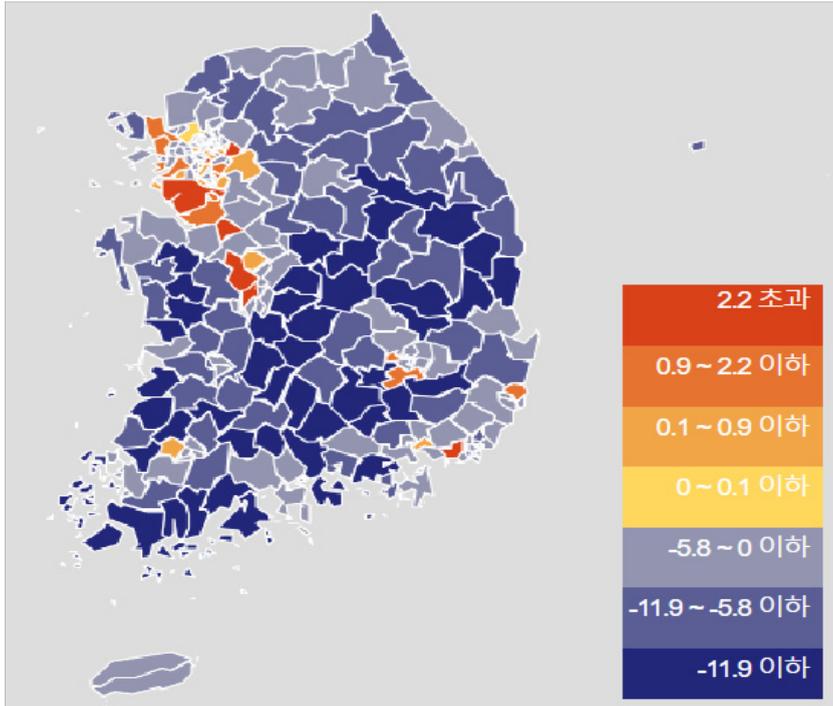
한국의 인구 규모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2020년에 정점을 기록한 후 자연감소하고 있다. 이를 시도별로 구분하였을 때, 2021년 인구성장률이 증가세를 보이는 4개의 시도(세종시(3.62%), 경기도(1.17%), 제주특별자치도(0.50%), 강원특별자치도(0.07%))를 제외하고, 13개 시도는 모두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그중 가장 큰 감소세를 보이는 시도는 울산광역시(-1.23%), 서울특별시(-1.15%)이다.

시군구별 인구 자연증가율을 살펴보면, 2022년 전체 시군구 대비 약 87%인 218개 시군구의 자연증가율이 감소하여 지방소멸의 위기감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지방소멸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 대다수의 시군인 경상남도 합천군(-19.0%), 경상북도 의성군(-19.0%), 경상남도 의령군(-18.2%), 전라남도 고흥군(-17.9%), 경상남도 남해군(-17.4%), 경상남도 산청군(-17.1%), 경상북도 영덕군(-17.0%), 전라남도 곡성군(-17.0%), 경상북도 영양군(16.7%), 전라남도 보성군(-16.4%), 충청남도 부여군(-16.4%), 충청남도 서천군(-16.1%), 충청북도 보은군(16.0%)에서 자연인구 감소세가 높았다. 이와 반대로 증가세를 이루는 시군구는 주로 서울, 경기, 세종의 일부 시군구를 중심으로 한 35개 지역<sup>5)</sup>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경상남도, 경상북도, 충청남도 일부 지역의 감소세가 크게 나타났다.

5) 세종특별자치시, 부산광역시 강서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 화성시, 경기도 과천시,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기도 하남시,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울산광역시 북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기도 김포시, 경기도 시흥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경기도 평택시, 인천광역시 서구, 경기도 오산시가 이에 해당한다.

[그림 2-37] 인구 자연증감률(2022)

(단위: %)



출처: “인구자연증감율,” 통계청, 2023a.

한국의 지역별 인구 규모 변화를 인구 전망 중위 시나리오(중위 추계)에 따라 살펴보면, 2050년까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하고 모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광역지자체 중 감소세가 가장 두드러지는 지역은 울산광역시(-1.43%), 부산광역시(-1.38%), 대구광역시(-1.3%), 경상남도(-1.18%), 광주광역시(-1.06%) 순으로 나타났다. 고위 추계를 하게 되면, 부산광역시(-1.06%), 울산광역시(-1.09)가 1% 이상의 감소 추세를 보이고, 저위 추계를 토대로 살펴보면 약 2/3이상의 시도가 1% 이상의 감소 추세를 보여 전국적으로 인구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표 2-2〉 한국의 시도별 인구성장률(2021~2050)

(단위: %)

지역	관측치	중위 추계			고위 추계	저위 추계
	2021	2022-2030	2022-2040	2022-2050	2022-2050	2022-2050
전국	-0.13	-0.15	-0.38	-0.82	-0.49	-1.19
서울특별시	-1.15	-0.49	-0.50	-0.92	-0.56	-1.32
부산광역시	-0.66	-0.78	-1.03	-1.38	-1.06	-1.73
대구광역시	-0.77	-0.78	-0.94	-1.30	-0.98	-1.64
인천광역시	-0.04	0.23	-0.10	-0.62	-0.29	-0.98
광주광역시	-0.24	-0.59	-0.71	-1.06	-0.71	-1.44
대전광역시	-0.66	-0.46	-0.50	-0.91	-0.56	-1.28
울산광역시	-1.23	-0.78	-1.00	-1.43	-1.09	-1.81
세종특별자치시	3.62	1.62	0.97	0.53	0.80	0.20
경기도	1.17	0.39	-0.06	-0.61	-0.28	-0.97
강원특별자치도	0.07	0.05	-0.13	-0.62	-0.31	-0.95
충청북도	-0.30	0.08	-0.16	-0.68	-0.35	-1.03
충청남도	-0.07	0.21	-0.05	-0.53	-0.20	-0.87
전북특별자치도	-0.76	-0.57	-0.63	-0.96	-0.64	-1.30
전라남도	-0.44	-0.44	-0.50	-0.88	-0.57	-1.23
경상북도	-0.42	-0.43	-0.60	-1.02	-0.70	-1.36
경상남도	-0.75	-0.57	-0.78	-1.18	-0.88	-1.51
제주특별자치도	0.50	0.06	-0.17	-0.57	-0.25	-0.92

주: 인구성장률= $\ln(P_t/P_0)/T * 100$  ( $P_0$  기준연도 인구,  $P_t$  비교연도 인구,  $T$ 는 비교 기간)

출처: “장래인구추계(주요 인구지표(성비, 인구성장률, 인구구조, 부양비 등)/시도),” 통계청, 2023d.

### 제3절 인구정책의 변화

프랑스의 인구정책은 가족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다. 프랑스는 1932년 랑드리법 도입으로 가족수당기금이 의무화되며 가족정책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39년 가족 및 출산법 제정으로 가족정책은 친출산주의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1945년 가족수당기금이 사회보장제도에 통합되며, 가족계수 지표가 도입되었다. 이는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세금 감면을 통해 보상해 주는 제도로, 형평성과 수평적 연대의 원칙에 따라 적용된다. 이러한 제도는 1970년대 초반까지 이어진 베이비붐의 밑거름이 되었다. 1975년 이후 가족정책의 목표는 출산 장려에서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으로 전환되었다. 1975년 이후 가족정책은 출산 장려 목표에서 불평등 해소를 위한 사회정책으로 발전한다. 80년대 이후 변화하는 가족 형태에 맞춰 더 많은 니즈가 있는 가족을 중심으로 수당이 집중되었으며, 2015년 이후 가족수당은 소득별 차등화가 적용되며 보편주의에서 선별주의로 변화되었다. 동시에 80년대 이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가족정책은 일하는 부모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이에 본 절에서는 20세기 이후 프랑스 인구정책으로서의 가족정책의 변화 과정을 살펴본다. 1차 세계대전 이후 가족정책이 출산 장려를 목표로 도입되며 베이비붐 시대를 맞은 1975년 이전, 정책의 목표가 출산 장려에서 일·가정 양립 지원으로 전환된 1975년 이후, 2024년 현재 엠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의 인구재정비 계획까지를 포함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 1. 1945년 이전

프랑스는 1918년 1차 세계대전과 스페인 독감으로 사망률이 22%였다가 1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사망률이 감소하였다. 프랑스의 출산율은 사망률에 비해 변화가 적은 편이다. 1814년에서 1914년 사이 출산율 감소는 일정한 편이었다. 1830년대부터 1880년대까지 프랑스의 출생아 수는 연간 약 100만 명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감소세를 보였다. 1차 세계대전 중인 1916년 혼인을 하락으로 출생아 수는 40만 명으로 급격하게 감소했다. 종전 이후 지연된 출산율이 회복되어 출산율 증가 추세가 1921년까지 이어졌으나, 1929년 경제 위기 이후 다시 감소세를 보였다.

1935년과 1939년의 합계출산율은 인구대체수준을 밑돌았다. 이후 2차 세계대전(1939~1945년)이 발생하였고 출생아 수는 감소하였지만 1차 세계대전 때처럼 급격하게 감소하지는 않았다. 실제, 1941년 출생아 수는 53만 5,500명으로 1차 세계대전 당시의 연간 40만 명의 출생아 수보다 많았다. 이는 2차 세계대전 동안 부부가 별거하는 기간과 빈도가 짧았기 때문이다. 이 시기 출생아 수 감소를 전쟁이라는 사회경제적 상황이 설명할 수 있지만, 프랑스 출산율은 실제 19세기 중반 이후부터 감소하였다. 1840년대생 여성 1인당 평균 자녀 수는 3.4명이었지만, 1895년생 여성의 평균 자녀 수는 2명으로 줄어들었다(De Luca Barrusse, 2016). 50년간 가족 규모가 상당히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평균 자녀 수가 2명이 넘었음에도 상대적으로 높은 사망률로 인해 19세기 말의 세대는 인구대체수준인 2.1명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러한 추세의 원인은 1860년대부터 당시의 통계학자, 인구학자, 경제학자들의 주요 관심사였다. 출산율 감소가 사회와 경제에 미칠 결과를 우려하는 사람들과 출산율 감소가 중요한 사회적 진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충돌하면서 인구는 사회적 논

쟁의 주요 대상이었다. 특히, 전자의 경우 가족 개념을 강화하고 대가족을 장려하는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주장했다(De Luca Barrusse, 2016).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가족정책의 첫 번째 방침이 이 시기에 마련되었다. 1918년부터 사적 지원으로 민간 기업이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직원에게 추가 급여 형태로 지급하던 가족수당을 1932년 랑드리법(Landry Loi) 도입을 통해 공공부문으로 확대하여 모든 기업에 의무 적용하였다. 1936년에는 농업 부문으로 확대 적용하였다. 하지만 국가의 개입은 여전히 제한적이었던 시기로 지방 정부별 최소 요율만 설정하여 수당의 금액은 지역과 직종에 따라 달랐다. 1938년 11월 가족수당 급여는 가족 소득과 관계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지급한다는 원칙이 규정되었으며, 첫 자녀에 대한 수당 지급 기간을 다섯 번째 생일까지로 제한하였다. 1939년 7월에는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을 우대하는 프랑스 가족 및 출산법이 통과되었다. 이 법은 출산을 증가라는 명확한 목표를 명시하였다. 이에 셋째 자녀부터 누진적인 가족수당을 제공하고 수당액의 규모를 늘렸다. 첫째 자녀 수당을 폐지하는 대신, 첫 출산 보너스를 지급하였다. 이는 신혼부부의 첫 출산을 장려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1938년 법령에 추가되었던 홀별이 가구에 대한 보조금은 가정주부 수당(allocation de mère au foyer)으로 전환되었다. 아내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가구에 가정주부 수당을 신설하여, 지역의 평균 임금의 10%를 수당으로 지급하였다. 친출산주의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40~1944년 독일과의 협력을 천명한 비시 정권(Vichy regime)에도 친출산주의 정책이 이어졌다.

[그림 2-38] 20세기 이후 프랑스 출산율 변화 추이 및 주요 정책



주: 세로축은 합계출산율을 나타냄.

출처: "Indicateur conjoncturel de fécondité - France métropolitaine-SÉRIES CHRONOLOGIQUES," INSEE, 2022.

## 2. 1945~1975년

1940~1950년대 프랑스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출산율 회복에 대한 사회적 열망이 높은 시기였다. 1890년 이후 프랑스의 출산율은 1차 세계대전 시기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인구대체수준인 2.1명 수준을 유지했다. 1946년부터 출산율은 인구대체수준보다 30% 높은 수준을 넘어섰고 그 이후 20년간 이 수준을 유지했다. 이는 2차 세계대전 전후에 시작된 출산에 우호적인 가족정책인 1939년의 가족 및 출산법과 1945년에 제도화된 사회보장법(securite sociale)과 관련이 있다.

유럽 국가 중 프랑스의 출산율 수준은 2차 세계대전 전후로 바뀌었다. 1945년까지 프랑스의 출산율은 서유럽 출산율의 평균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었으나, 전쟁 종료 이후 출산율이 증가하여 유럽에서 출산율이 높은 국가가 되었다. 이 시기는 프랑스 가족정책의 전성기로 프랑스 정부의 사

회 관련 지출의 45%가 가족수당에 할애되었다. 1896년에 창설된 프랑스 인구 증가 연맹(alliance nationale pour l'accroissement de la population française)은 창설 당시부터 제2차 세계대전 이후까지 정치적으로 큰 역할을 했다. 출산율 증가를 위한 조치는 제 1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 재건 추진정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였다. 이에 랑드리를 포함한 출산장려주의자인 선출직 정치인들은 프랑스 국립인구연구소(INED)를 1945년에 창설하여 전문적인 인구 연구와 출산율 증가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였다. 인구학자로 초대 프랑스 국립인구연구소의 소장인 알프레드 쏘비(Alfred Sauvy)는 프랑스의 출산율이 카톨릭 교회의 영향이 큰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출산율보다 높으며 프랑스의 가족수당이 신앙보다 효율적임을 강조하였다.

1945년 사회보장제도가 확립되면서 고용주가 홀로 부담하며 지역단위에서 운영됐던 지역가족수당공단은 중앙집권적 구조로 통일된 사회보장제도에 통합된다. 이후 1967년에는 정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가족수당전국공단(Caisse nationale d'allocations familiales, CAF)이 설립된다. 이와 동시에 1945년부터 전국가족협회연합(Union nationale des associations familiale, UNAF)이 가족의 이해관계를 법적으로 대변하게 되어, 정부의 가족정책 구상 시 협상 대상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 1946년 가족계수(quotient familial)를 도입하여 자녀가 한 명 이상인 납세자의 소득세 누진성을 줄이고자 하였다. 이는 자녀 수에 따라 가구의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것으로 가구원 수 기여분에서 어른 1, 자녀 0.5인분으로 계산하여 자녀가 둘인 부부의 경우 3이 된다. 가구소득을 가족계수로 나누어 과세 표준을 계산한다. 자녀 출생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보상하는 조치로 동일한 생활 수준이라면 형평성과 수평적 연대의 원칙에 따라 가족의 규모에 상관없이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었다. 1946년 8월 사회보장제도

내 가족 관련 수당 4가지가 제정되었다. 가족수당은 소득과 관계없이 두 번째 자녀부터 지급되었다. 홑벌이 수당(allocation de salaire unique, ASU)은 첫 번째 자녀부터 지급되었다. 또 산전수당과 출산수당이 지급되었다. 이 시기 가족정책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가톨릭적인 관점에서의 가족과 사회평등 관점의 진보적 이상 사이에서 절충안 역할을 했다. 남성과 여성의 가족 내 역할을 전통적으로 바라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의 아동보육시설도 확산시켰다. 이는 프랑스 공화국민으로서 아동 간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Toulemon, Pailhé et Rossier, 2008). 이러한 환경이 1970년대 초반까지 이어진 베이비붐의 밑거름이 되었다.

프랑스의 베이비붐은 1946년에 시작된 것으로 본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약 30년간 프랑스의 출생아 수는 연간 약 80만 명이었다. 1946~1964년을 기준으로 보면 80만 명을 훨씬 초과하는 출생아 수를 기록하였다. 이는 여성 1명당 2.7~2.9명의 자녀를 출산한 수준이다. 사실, 1965년 이후 출산율은 하락하였지만, 1946년에서 1964년 사이에 태어난 대규모 세대가 가임기에 도래하였기에 출생아 수가 많았다. 경제사 측면에서 프랑스 경제 성장기인 영광의 30년(1945~1973년)은 베이비붐 시기와 맞물려 있다. 이러한 인구학적 변화는 대부분의 유럽과 미국에서 관측되었지만, 프랑스의 베이비붐은 더 오래 지속되었다는 차이점이 있다(De Luca Barrusse, 2016).

인구학적 관점에서 프랑스의 베이비붐은 여러 가지 요인이 결합된 결과이다. 첫째, 비출산이 드물었다. 1900년생 여성의 23%가 자녀가 없었던 반면, 1944년생 여성의 9%만이 자녀가 없었다(De Luca Barrusse, 2016). 각 세대 내에서 어머니 수의 증가는 출산율 증가를 의미한다. 둘째, 가족 형성 시기 관점에서 볼 때, 프랑스의 베이비붐은 결혼과 출산 연령이 빨라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시기 출산 연령은 28.5세에서 26세

로 당겨졌다. 결혼과 첫 자녀 출산 사이뿐 아니라 이어지는 출산 사이 모두 출산 간격이 줄어들었다. 이러한 대를 이은 가족 형성의 집중과 가속화로 출산율이 높아졌다.

다른 유럽 국가와 유사하게 1965년부터 프랑스의 출산율은 떨어졌지만, 출생아 수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하지만 가족 형성 간격은 늘어났다. 실제 프랑스의 출산율은 전쟁 중이던 시절로 돌아가고 있었다. 따라서 베이비붐은 출산율 감소라는 장기적인 인구 변화 추세에서 하나의 특이점이라고 볼 수 있다. 베이비붐 자녀의 상당수가 계획되지 않은 임신에 의한 것이었다. 출산을 장려하는 가족 친화적 환경이 자녀 출생이 가족 삶에 저해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해주어서 피임 관행이 어느 정도 완화되었기 때문이다.

베이비붐으로 출산율이 회복되었지만, 프랑스의 가족정책은 여전히 출산장려주의적이었다. 가족을 지원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이 확대되고 발전했다. 자녀 수에 따라 가족수당이 증가하였고, 산전수당 등 새로운 혜택으로 제도가 확대되었다. 이러한 정책은 가구의 유일한 수입원인 가장(주로 남성)의 급여를 증가시켰는데, 이는 이 시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1960년대까지 프랑스 가족정책은 출산율을 우선시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지 않았다. 이러한 경향은 가족수당이 홀벌이 수당을 통해 전업주부에게만 지원된 것을 통해 알 수 있다(Letablier, 2003).

베이비붐은 여성의 유급 노동 감소를 특징으로 한다. 실제로 프랑스 여성 경제활동참여율은 19세기에 꾸준히 증가했다가 20세기 초부터 1960년대까지 감소하였는데, 특히 자녀를 출산하는 연령대에서 하락하였다. 1935년 이전에 태어난 프랑스 여성의 20%는 유급 노동 경험이 한 번도 없었지만, 같은 시기 영국 여성의 경우 5%였다. 물론 이러한 통계는 농부

나 상인이 배우자를 돕는 무급 가족종사자를 반영하지 않았다(De Luca Barrusse, 2016). 베이비붐 시대는 가정주부의 황금기였다. 출산율 감소가 시작되는 1965년부터 프랑스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은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프랑스의 베이비붐은 1960년대 중반에 종료되었으며 1973년 1차 석유파동 이후 1974년에 시작된 경제 위기는 호황기의 종말을 예고했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변화로 베이비붐은 출산율 급락으로 이어졌다. 1960~1970년대에 이혼이 증가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1965년 부부 법정재산제 개정, 1970년 부권이 엄마 아빠의 공동친권으로 변경, 1967년 피임의 권리 보장, 1975년 낙태 허용 등 가족법과 여성 및 아동의 권리가 탈가족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 속에서 가족정책은 다음의 변화를 맞이한다. 1971년 고아 수당(allocation orphelin)을 신설하여 부모를 잃은 아동뿐 아니라 한부모 가정도 지원하였다. 1972년 보육비 수당(allocation pour frais de garde, AFG), 신혼부부 대출, 그리고 전업주부 연금보험이 제정되었다. 1974년 6세에서 16세 학생을 위한 신학기수당이 도입되었다. 첫째 자녀부터 지급되었지만, 부모 소득에 따라 자격이 부여되었다. 1976년 모든 한부모에게 급여액은 다르지만 수당이 지급되는 한부모 수당이 신설되었다. 1978년 가족보조금(complément familial)이 도입되었고, 셋째 자녀에게 우선권이 주어졌다. 이는 1977년 폐지된 홀벌이 수당, 전업주부 수당(allocation de mère au foyer), 보육비 수당을 대체한 것이다. 수당의 조건이 되었던 경제활동 참여라는 조항(추가 임금이라는 개념 폐기)이 폐지되면서 보편적 수당이 되었다.

### 3. 1976~2015년

1975년 이후 연간 출생아 수는 71만에서 80만 명 사이를 유지했다. 1975년 이후 태어난 세대의 수가 감소함에 따라 이들이 출산 연령에 도달하는 20세기 말의 출산율은 감소 추세를 보였다. 실제 여성 1인당 출산 자녀 수가 변하지 않더라도, 가임기 여성의 수가 적을수록 출생아 수는 감소한다. 21세기 초기 몇 년 동안 출생아 수는 증가세를 보여 1999년 74만 8천 명에서 2000년 77만 5천 명이였다. 2000년 밀레니엄 베이비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면 예측할 수 있는 일시적 증가치였다. 2013년 출생아 수는 78만 1천 명으로 증가했다. 이후 약간의 변동이 있긴 하지만, 출생아 수 증가세는 계속되었다.

출산율은 1975년 이후 하락했다. 1964년 2.91명에서 1974년 2.11명으로 지속해서 감소하다 1975년부터 1.92명으로 평균 2명 이하로 감소하였다. 이후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으로 1.8명 정도를 유지하다 2010년에 2.01명이 된 이후 2015년까지 꾸준히 1.9명 수준을 유지하였다. 1970년대 중반 이후 출산율 감소는 출산 지연과 관련이 있다. 1976년 평균 출산 연령은 26.5세였지만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 30세가 되었다. 출산율 감소는 첫 번째 자녀 출산 자체가 지연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둘째 이상 출산도 지연되었기 때문이다. 평균적으로 첫 번째 출산과 두 번째 출산까지 4년 미만이 걸리며, 둘째에서 셋째 출산까지 4.5년이 걸린다. 1960년 이후 이미 한 명의 자녀가 있는 경우 둘째를 가질 확률은 80%였다. 추가 자녀 출산 가능성은 급격하게 떨어져 2명에서 3명의 자녀를 가질 확률은 45%, 그 이후의 자녀를 가질 확률은 약 30%로 감소했다. 자녀 순위별 출산율 감소는 평균 가족 규모의 감소를 의미한다. 1930년과 1950년 사이 두 자녀가 있는 여성의 비율이 27%에서 40%로 증가하

였지만, 네 자녀 이상이 있는 여성의 비율이 25%에서 10%로 감소하였다. 1970년대 이후 출생 세대의 출산은 완전히 완료되지 않았지만, 출산 연령에서 관측된 추세를 보면, 최종적으로 여성당 2명 이하의 자녀를 가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출산행태는 최근으로 올수록 더욱 동질화되어, 모든 사회계층에서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여성은 드물다. 다른 유럽 국가와 마찬가지로, 사회계층 간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2명의 자녀가 프랑스의 지배적인 가구 형태가 되었다.

1980년을 기점으로 가족정책은 출산 장려에서 일·가정 양립 지원으로 방향이 전환되었다. 1981년 좌파 연합 정권인 프랑수아 미테랑이 대통령이 되면서, 가족정책에서 일하는 부모에 대한 지원이 본격화되었다. 가족 규모와 소득에 기반한 급여의 차등화를 완화하였다. 1981년 7월부터 가족수당 급여는 25% 인상되었고, 수혜자의 규모가 대폭 확대되었다. 1977년부터 노동법에 따라 일하는 여성들은 출산 후 1년 동안 아이가 3세가 될 때까지 연장 가능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유급 휴가가 아니었다. 이에 1985년 자녀 돌봄으로 인해 부모 중 한 명이 경제활동을 중단하거나 줄였을 때 발생하는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육아휴직수당(allocation parentale d'éducation, APE)이 도입되었다. 이는 2명의 부양 자녀가 있는 부모가 3세 미만의 셋째 아이를 돌보기 위해 경제활동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부모 각자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으로, 정액제로 지급되었다. 이와 동시에 영유아를 위한 수당(allocation pour jeune enfant, APJE)이 산전수당, 산후수당, 그리고 가족보조금을 통합하며 도입되었다. 이는 만 3세 미만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임신 3개월부터 자녀가 6개월이 될 때까지 지급되었다. 가구소득 조건에 따라 영유아수당은 자녀가 만 3세가 될 때까지 연장되었다. 1986년에 가정보육수당(allocation de garde d'un enfant à

domicile, AGED)이 신설되었다. 이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만 3세 미만 자녀가 있고 부모가 모두 경제활동을 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가정에서 베이비시터를 고용하여 자녀를 돌보기를 원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수당 금액은 베이비시터 고용으로 발생하는 사회보장 분담금과 고용주 분담금의 평균 금액이었다. 동법에 따라 만 3세 미만 자녀에게 지급되던 영유아를 위한 수당(APJE)은 영유아수당(allocation au jeune enfant, AJE)으로 대체되어, 가구소득 기준 없이 임신 기간과 자녀 생후 3개월까지 수당이 지급되었다. 자녀가 4개월 이후에 가구소득이 조건에 충족하면 수당이 한 번 더 지급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1990년 인가보육사 고용보조금(aide à la famille pour l'emploi d'une assistante maternelle agréée, AFEAMA)이 도입되었다. 이는 가정에서 승인된 베이비시터를 고용하여 특정 연령의 부양 자녀 한 명이 상을 돌보는 가구 또는 개인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보조금은 승인된 베이비시터를 고용할 때 발생하는 고용주와 고용인의 사회 분담금과 동일한 금액이었다. 이후 우파 정권이 주도한 1994년의 가족법 개정으로 육아휴직수당은 두 번째 자녀까지 확대 적용하게 된다. 특히 시간제 근로자까지 포함했으며, 3세 미만 자녀의 부모가 모두 시간제로 일하는 경우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수당이 합산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회사의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임금근로자에게 육아휴직수당 권리를 확대 적용하였다. 가정보육수당과 인가보육사 고용보조금액이 인상되었으며, 입양수당이 도입되었다. 이 시기에 정부는 특정 가족수당의 자녀 연령 제한을 상향 조정하고, 지역의 3세 미만 영아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것도 계획하였다.

1990년대 말 재정적자로 가족정책은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가구를 우선 대상으로 하였다. 1995년 발표된 가족정책 개혁안은 가족 관련

수당을 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계획을 담고 있었다. 또한, 임신 3개월부터 자녀 출생 후 3개월까지 모든 가구에 지급되던 영유아수당(AJE)을 저소득 가구에만 지원하는 것으로, 대상을 축소하는 방안도 담았다. 이 계획에는 어머니의 출산 관련 수당 1일 최대 급여액을 기존 임금의 106%에서 100%로 하향 조정하는 것도 포함되었다. 1997년에는 소득 수준에 따른 가족수당 차등화와 가정 보육수당액 인하 등의 내용을 담은 가족정책 개혁안도 발표되었다. 하지만 가족 관련 수당의 보편성을 옹호하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1995년과 1997년에 제안된 가족정책 개혁안은 1998년에 폐기되었다. 대신 학업 연장으로 인해 독립이 늦어지는 자녀를 고려하여, 가족수당의 지급 기한을 20세까지로 연장하였다. 또한 소득 상위층 가족의 세제 혜택 제한을 목적으로 가족계수의 상한선을 낮추었다. 1998년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함에도 대상이 되지 않았던 가정에 신학기수당(allocation de rentrée scolaire)으로 429프랑을 지급하고, 이듬해 수당 금액을 1,600프랑으로 인상하였다. 1999년 가족보조금의 지급 연령 제한이 기존 20세에서 21세로 연장되었다.

2000년에 중증 질환 아동을 위한 휴가와 자녀 간호 수당(allocation de présence parentale)을 신설하였다. 또한 육아휴직수당 수혜자의 직장 복귀를 위한 보조금(aide à la reprise d'activité pour les bénéficiaires de l'APE)이 도입되었다. 2002년 배우자 출산휴가(congé paternité)가 도입되었다.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아버지에게 11일간의 휴직이 주어졌다. 이는 임금근로자에게 주어진 자녀 출생 후 3일간 유급 휴가와 누적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4년 복잡해진 수당 체계를 단순화하기 위해 영아보육수당(prestati n d'accueil du jeune enfant, PAJE)이 도입되었다. 이는 출산과 영아 보육을 지원하는 4개의 수당을 포함한 것이다. 먼저, 출산장려

금(*prime à la naissance*)과 영아 보육 기초수당(*prestation d'accueil du jeune enfant*)이 지급되었다. 출산장려금은 임신 7개월째에 800유로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출산 5개월 전에 지급되던 기존의 출생수당 보조금을 대체한 것이다. 영아 보육 기초수당은 가구의 소득에 따라 만 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월 160유로가 지급되었다. 추가로 부모의 경제활동 수준과 자녀 보육 방식에 따라 두 가지의 보조금이 지급되었다. 첫 번째는 기존의 육아휴직수당(APE)을 대체한 자유로운 경제활동 선택 보조금(*complément de libre choix d'activité, CLCA*)이다. 이는 기존 육아휴직수당에서 자녀의 순위에 따라 육아휴직수당 기간을 달리 적용한 것이다. 첫째 자녀의 경우 3세가 될 때까지 부모가 나눠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을 최대 6개월간 주었으며, 둘째 이상 자녀는 최대 3년의 육아휴직 기간을 주었다. 육아휴직수당은 정액제로 지급되며, 전일제와 시간제 휴직에 따라 급여액과 급여 기간을 차등화하였다. 두 번째 보조금은 자녀 보육을 다른 곳에 맡기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보육 방식 보조금이다. 보육유형 자유선택 보조금(*complément de libre choix du mode de garde, CMG*)은 기존의 가정보육수당과 인가보육사 고용보조금을 통합하며 대체한 것이다. 보육유형 자유선택 보조금은 가정에서 6세 미만 자녀를 돌보기 위해 베이비시터 등을 고용할 때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승인된 베이비시터가 아동을 돌보는 경우 아동당 지급되고, 가정에서 돌보는 경우 가족당 지급되었다.

2006년 자녀 간호 수당의 기간이 확대되었다. 기존에는 아픈 자녀를 둔 부모가 한 번에 4개월씩 두 번 갱신하여 최대 12개월간 사용할 수 있었지만, 3년에 걸쳐 3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다. 2006년에는 세 자녀 이상을 둔 부모를 위해 자유로운 경제활동 선택옵션 보조금(*complément optionnel de libre choix d'activité, COLCA*)을 도

입하여 좀 더 짧은 기간 동안 더 많은 수당을 받도록 하였다. 이는 최소 3명의 자녀를 둔 부모가 일을 완전히 중단하는 경우 자유로운 경제활동 선택 보조금(CLCA) 대신 받을 수 있는 수당으로, 지급 기간은 1년이었다. 이는 셋째 자녀를 둔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을 막으려는 조치였다. 2000년대 초반부터 가족정책은 제한된 예산에 맞춰 아동 보육시설의 질적 개선과 양적 확충에 힘썼다. 2006년 가족부가 발표한 '영아 계획'은 3세 미만 영아들의 보육 서비스 다양화와 확대를 목표로 어린이집 증원, 3~9명의 어린이를 수용할 수 있는 마이크로 어린이집 승인 등 어린 자녀를 둔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2012년에는 가족수당 지급액을 동결하고, 가족계수(quotient familial)를 통한 세제 감면과 영아보육수당(PAJE)의 상한선을 낮추었다. 2013년 가족정책 혁신 조치에서도 영아 돌봄 공급 확대는 주요 정책이었다. 이와 동시에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아버지의 육아휴직 사용을 적극 장려하였다.

2014년 8월 4일 실질 양성평등법이 발표되었다. 여성의 고용 증가와 자녀 돌봄 책임의 공평한 남녀 분담을 장려하기 위해 육아휴직 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졌다. 2015년 1월 공동양육수당

```
st
```

ation partagée d'éducation de l'enfant, PreParE)이 도입되며, 기존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선택 보조금(CLCA)을 대체하였다. 첫째 자녀의 경우 부모 각각 6개월씩 사용하도록 하였다. 둘째 자녀 이상의 경우 자녀가 3세가 될 때까지 부모 한 명이 사용할 수 있는 최대 급여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되, 부모 2명이 나눠 사용하면 최대 3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부모에 대한 패널티를 자녀당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육아휴직 기간에 적용한 것이다. 급여는 정액제로 지급되며, 전일제와 시간제 휴직에 따라 급여액과 급여 기간은 달랐다. 2024년 현재 기준으로 전일제는 월 448.42유로의 급여를 받으며 이는 최저임금의 3분의 1 수준이다.

2015년 건축 재정 맥락에서 가족정책은 사회보장 제도 내 가족 부문 적자 감소, 유아 보육시설 증가, 부모 간 균등한 돌봄 책임 분담을 목표로 하였다. 2015년 7월부터 가족수당에 대한 소득별 차등화가 적용되었다. 월 소득이 6,000유로 이상인 두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가족수당을 절반으로 삭감하였고, 월 소득이 8,000유로 이상인 경우 가족수당은 1/4 수준으로 삭감되었다.

프랑스의 출산율은 베이비붐 시절의 수준은 아니지만 90년대 말부터 다시 증가하여 2000년대 초반부터 유럽에서 출산율이 안정적이며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국가가 되었다. 실제, 2008년 경제 위기로 출산율이 떨어진 다른 유럽 국가와 달리 프랑스의 합계출산율은 1.9명으로 안정적이었다. 2013년 프랑스의 여성 1인당 합계출산율은 인구대체수준인 2명에 근접했지만, 독일과 이탈리아는 1.3명이었다. 즉, 프랑스는 유럽에서 가장 높은 여성 노동시장 참여율과 출산율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이 시기 노동력의 여성화가 빠르게 이루어졌다. 2010년 15~64세 여성의 66%가 경제활동에 참여했으며, 이는 유럽 평균보다 높은 수치였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증가하면서 가정 내 여성의 역할이 전통적 모형인 가정주부에서 워킹맘으로 대체되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는 교육 수준 향상 및 피임 확산과 함께 출산 연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Nibhrolchain et Beaujouan, 2012). 저학력자의 경우 평균 첫 출산 연령은 25세로 평균 2.5명의 자녀를 가진 반면, 고학력자의 경우 평균 30세에 첫 출산을 하고 평균적으로 1.8명의 자녀를 가진 것으로 나타난다(Davie et Mazuy, 2010). 첫 자녀 출산 이후 프랑스 여성의 경력 단절 가능성은 남성보다 크다. 출산 이후 여성은 일을 그만두거나, 이직, 시간제 근로로의 변경 또는 육아휴직 등 다양한 일의 변화에 노출되어 있다.

여성의 유급 노동이 증가함에 따라 가족정책의 목표는 가정과 일 두 가

지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었다(Pailhe et Solaz, 2009). 근로조건에서 지속되는 성별 격차로 일·가정 양립의 수준은 모두에게 같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이 증가했다. 1985년에 육아휴직수당(APE)이 도입되었다.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부모가 어린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근로 시간을 단축하거나 일을 그만두었을 때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는 1994년 가장 어린 자녀가 3세 미만인 2자녀 가구까지로 확대되었다. 부모 모두에게 자격이 주어졌지만 주로 어머니가 대상이 되었다. 육아휴직수당(APE)의 확대는 어머니의 경제 활동 행태에 많은 영향을 미친 제도로 평가된다(Algava, Bressé, 2005). 실업률이 높았던 시기에는 다자녀 가구의 어머니가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일하는 어머니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아동 보육 서비스를 개인과 공공부문에서 확대하는 정책과 일하는 어머니의 전일제 고용을 촉진하는 정책이 동시에 시행되었다. 영유아 보육사(assistante maternelle)를 도입하고, 공동 아동보육시설을 확대하며 일하는 어머니를 지원하였다(Fagnani, 1996). 즉, 3세 이하의 어린 자녀가 있는 일하는 어머니가 고용을 지속할 것인지 직접 아이를 돌볼 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두 가지 방향의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다. 실제로 일하는 어머니의 고용 지속 또는 직접 돌봄 선택에 있어 중립적 태도를 보임으로써 어머니에게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프랑스 가족정책의 특성이다(Milewski et al., 2005). 프랑스의 가족정책은 이러한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함으로써 여성이 일과 가정 중 어떠한 선택을 하든 사회적 불이익 없이 희망하는 자녀 수를 출산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해왔다(Séraphin, 2013).

베이비붐 이후 프랑스의 가족 형태는 다양해졌다. 가족정책은 가족에게 제공되는 혜택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뒷받침해

왔다. 프랑스의 안정적인 출산율은 일·가정 양립 지원을 통해 출산과 양육이 여성의 고용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했기 때문으로 평가된다(Salles & Letablier, 2013). 1981년 가족계수(quotient familial) 개혁을 통해 과세소득에서 절반으로만 계산되던 셋째 자녀를 전부 반영하여 다자녀 가구의 세금 감면을 확대했다. 이 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이기는 하였지만 그 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Landais, 2003).

한편, 프랑스에서 노인 돌봄 서비스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1970년대에 시설보호에서 재가서비스 중심의 지역사회 보호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노인 돌봄 서비스는 노인들이 가족과 함께 자신들에게 편하고 익숙한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 수 있도록(vivre ensemble)’ 돕기 위한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렇게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또는 가족과 가깝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사회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노년학적 네트워크(reseau gerontologique)’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가능해졌다. 노년학적 네트워크는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기관이 아닌 지역사회 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서비스의 연계와 조정(coordination)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프랑스의 노인들을 위한 사회서비스의 중요한 현안과 정책은 바로 지역사회 내 노인에 대한 돌봄 사회서비스 네트워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조정하는가 하는 것이다.

프랑스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사회의료(medico-sociales)와 공공보건 등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갖고 있다. 이러한 권한은 가장 작은 행정단위인 코뮌, 데파르트망 그리고 광역인 레지옹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구분해 나눠서 갖고 있다. 2004년부터 전개된 신경향의 지방 분권화, 즉 지방분권의 2단계(acte II de la decentralisation) 실행은 사회복지 및 사회적 의료 사업의 책임이 데파르트망으로 전격 이양되며 사회복지 정책 전

반을 주도하게 한다. 또한 Borloo 계획(2004)의 영향으로 대인 서비스 개발에 관한 법이 제정되며 대인 서비스의 활성화 및 유연성 확대를 위한 지원책들을 마련하였다. 가족 돌봄자들에 대한 권의 보호가 점차 강조되며 연대휴가제(Conge de solidarite familiale), 가족 지원 휴가제(Conge de soutien familial) 등을 도입하고 가족구성원 돌봄에 대한 공식 지원 가능성도 확대하였다. 이처럼 프랑스에서 사회적 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대상에게 맞는 환경을 제공하고, 그 이전에 예방을 위한 사회적 단절을 막기 위한 노력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이뤄져 오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프랑스 정부는 프랑스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이 지역 내에서 특히 재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발전시켜오고 있다.

노인 관련 사회서비스는 1993년 노령연대기금(Fonds de solidarite vieillesse, FSV)의 창설과 함께 노령연금보험이 완성되고, 2000년 보편 의료보장제도(Couverture maladie universelle)의 시행으로 전 국민 대상의 건강보험이 성립되는 등 현실화되어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1945년에 Laroque의 생각이 2000년에 이르러서야 현실화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2002년 1월 2일 제정 의료사회 및 사회복지 활동의 개정에 관한 법률(Loi n° 2002-2 du 2 janvier 2002 renovant l'action sociale et medico-sociale)에 따라 사회의료서비스는 서비스 제공 체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용자 중심으로 서비스 지원이 이뤄지는 방향으로 정책이 발전했다.

또한 2004년 6월 30일에는 ‘노인과 장애인의 자립성을 위한 연대에 관한 법(Loi n° 2004-626 du 30 juin 2004 relative a la solidarite pour l'autonomie des personnes agees et des personnes handicapees)’이 제정이 되었고, 이 법에 의해서 돌봄이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원 제공, 지역별 균등 배분, 전문적 사정의 기능 등의 수행과 관련

된 체계가 만들어지고 운영되기 시작했다. 더 나아가 2015년 제정된 ‘고령사회 적응에 관한 법(Loi n°2015-1776 du 28 decembre 2015 relative a l'adaptation de la societe au vieillissement)’에서는 지방정부와 지역이 주축이 되어서 사회의료서비스의 기능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프랑스에서 노인이나 장애인을 위한 사회의료서비스 관리운영의 책임 주체는 지방자치단체로, 1983년 제정된 지방자치단체법에 의해서 그 권한을 부여받았다. 특히 노인 관련 시설의 인허가권과 복지시설 관련 이용료에 대한 결정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권한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에 필요한 자금은 노인의 경우 2004년 노인장애인연대전국공단(Caisse nationale de solidarite pour l'autonomie, CNSA)으로 창구가 일원화되었다. 그러나 창구가 단일화되면서 지방세로 재원을 충당하던 각 도의 부담이 떨어지면서 재원이 낭비되고 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 4. 2015년 이후의 인구정책

2015년 가구소득에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지급되던 가족수당이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었다. 사회적으로 지원이 더 필요한 가구에 더 많은 지원을 해주는 선별주의적 방향으로 전환된 것이다. 소득이 낮은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가족보조금은 증액되었다. 또한 2018년까지 아동 보육시설을 확충하여 아동 수용률을 높여 총 27만 5천 명을 추가로 수용하도록 하였다. 특히, 추가되는 아동 보육시설의 수용 인원 중 10%를 빈곤선 기준 이하의 가구 자녀에게 할당하였다(Masson, 2015). 이는 가족정책이 사회불평등 완화를 위한 사회정책적 성격이 강화되며 변화된 것을 의미한다.

2019년 사회보장재정법은 출산 후 자녀가 입원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30일 연장하였다. 2021년 7월부터 배우자 출산휴가와 자녀 돌봄휴가(*congé de paternité et d'accueil de l'enfant*)가 28일로 연장되었으며, 이 중 7일은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입양휴가 또한 자녀가 없거나 부양 자녀가 한 명인 경우 10주에서 16주로 연장되었다. 출산장려금 지급일도 임신 6개월째가 되는 달의 말일 전에 지급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2024년 1월 엠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더 강한 프랑스를 위한 '인구재정비 계획'을 발표했다. 2023년 출생아 수가 67만 8천 명으로 2022년 72만 6천 명 대비 6.6%p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6년 이후 처음으로 출생아 수가 70만 명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지난 80년 동안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다(Virginie Ballet, 2024). 특히, 프랑스의 합계출산율은 2000년대 이후 인구대체수준에 근접한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연간 80만 명의 출생아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70만 이하라는 수치는 사회적으로 충격적인 수치이다. 실제 프랑스의 2023년 합계출산율은 1.68명으로 인구대체수준에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기대수명은 여성 85.7세, 남성 80세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2070년 인구 시나리오에 따르면, 2035년부터 사망 인구가 출생아 수를 추월한다. 프랑스의 인구는 2044년까지 증가하여 6,930만 명에 도달한 뒤 감소하여, 2070년 6,800만 명으로 2023년 수준의 인구 규모를 가지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2070년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21%에서 29%로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인구 고령화는 사회적으로 적극 대응해야 하는 주요 쟁점이 되었다(La Rédaction, 2024a).

마크롱의 인구재정비 계획은 2가지로 구성된다. 첫째, 출생휴가

(Conge de naissance) 도입이다. 이는 현재의 공동양육수당(PreParE)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급여 기간을 짧게 하되, 급여액은 더 높게 책정하여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까지 알려진 수정안에 따르면, 자녀가 1세가 되기 전까지 부모가 각각 3개월씩 사용하도록 하여 기간은 기존 6개월에서 줄어들었다. 하지만, 급여 수당액은 기존에는 정액제로 최저임금의 3분의 1 수준이었지만, 출생휴가제에서는 월급 비례제를 도입하여 본인 월급의 최대 50%를 지급(월 1,900유로 한도)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즉, 2025년에 도입하고자 하는 출생휴가 제도의 특징은 급여 기간과 급여 산정 방식에 있다. 현재의 공동양육수당은 부모 각각 6개월씩 사용하게 하지만, 출생 휴가는 출생 자녀가 1세가 될 때까지 부모 각각이 3개월 쓰도록 단축한다. 또한, 기존 수당이 정액제였던 반면, 월급 비례 보상제를 도입하여 월급의 최대 50%를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출생휴가가 도입된 배경은 현재 공동양육수당의 한계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공동양육수당의 목표는 아버지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여 전체 아버지의 25%가 사용하게 하는 것과 어머니의 노동시장 복귀를 앞당겨 출산 관련 노동시장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이었다. 최근 분석 결과를 보면 (Périvier and Verdugo, 2021), 첫 번째 목표와 관련하여 아버지의 육아휴직 사용은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 전일제 육아휴직의 경우 자녀 수에 상관없이 아버지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0.5%에서 0.8%로 소폭 증가하였을 뿐이다. 시간제 육아휴직의 경우 한 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0.7%에서 0.9%로 증가하였으며, 두 자녀 이상을 둔 아버지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1%에서 1.8%로 증가하였다. 두 번째 목표와 관련하여, 출산 2년 전 근로소득이 있었던 어머니는 공동양육수당을 사용한 이후 근로소득이 크게 증가하지만, 아버지의 소득은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머니의 근로소득 증가로 자녀 출생 3년 후 부모 간 임

금격차는 14%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두 번째 목표는 일부분 긍정적 효과를 보인 반면, 아버지 육아휴직 사용률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인구재정비 계획은 난임 근절이다. 이는 2021년 공포된 생명 윤리법에 따라 예정된 국가 차원의 난임 근절 대응이다. ‘2022년 난임 퇴치를 위한 국가전략: 난임 원인 보고서(Hamamah and Berlioux, 2022)’에 따르면, 프랑스 성인 중 330만 명의 남녀가 난임으로 의료 지원이 필요하며, 아이를 가지려고 시도한 성인의 24%가 난임 문제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30명의 아이 중 1명이 의료 보조 출산을 통해 출생하였다. 동 보고서는 난임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6가지 국가적 대응을 제안하였다. 첫째, 난임과 불임의 원인에 대한 대중적 교육이다. 대중에게 난임과 난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둘째, 난임 관련 인구집단에 난임 관련 개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중학생 이상의 청소년부터 장기적인 생식 건강 상담을 하고, 국민건강보험에서 만 29세 성인에게 생식세포 자가 보존 가능성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셋째, 의료 전문가를 위한 교육 강화이다. 넷째, 난임의 원인 파악과 진단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다. 다섯째, 인간 생식 및 난임에 대한 종합적인 국가 연구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여섯째, 국립 난임연구소 설립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보고서의 제안점 중 3가지를 인구재정비 계획에 포함하였다. 첫째, 예방 차원에서 20세 전후 남녀에게 건강보험으로 100% 환급되는 난임 검사를 제공하는 것이다. 둘째, 의료보존 출산 접근성 개선을 위해 민간 남자 보존 센터를 개방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공공병원에만 허가되었던 남자 보존을 민간센터로 확대하여 평균 16~24개월의 대기 기간을 줄이기 위함이다. 셋째, 보조생식술 연구 강화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최근 인터뷰에서 프랑스의 희망 자

녀 수가 실제 출산율보다 높아 실현되지 못한 출산율을 줄이는 데 난임 근절이 중요한 부분임을 강조하였다(Sarah Meyssonier, 2024).

유럽연합(EU)에서 출산율 감소는 프랑스만이 겪는 문제는 아니다. 2023년 1월 유럽연합의 인구는 4억 4,839만 명으로 2년 이내에 4억 5천만 명을 돌파한 뒤,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2021년 유럽연합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여성 1인당 1.53명에 불과하여 유럽연합 인구의 지속 가능한 증가를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유럽연합 차원의 출산 대응 정책은 존재하지 않으며, 출산정책은 EU 개별 회원국의 권한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2023년 급격한 출산율 감소가 관측되기 이전 프랑스 내부에서 출산장려정책의 필요성이 다시 강조되기 시작했다. Bayrou(2021)의 ‘프랑스 인구의 미래를 위한 보고서’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국가의 미래 노동 수요, 연금 시스템 재정 균형, 국가 결속 문제를 위해 이민정책보다 출산정책이 효과적임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사회·정치적 배경을 바탕으로 마크롱은 최근의 급락한 출산율 하락에 대한 대응으로 외부적 해결 방안을 강조하기보다 인구 증가를 위한 직접적인 해결책으로 출산정책에 집중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제3장

### 프랑스 인구정책의 현황

제1절 소득·주거 지원 정책

제2절 양육·보육 지원 정책

제3절 건강 지원 정책

제4절 고령화 대응 정책

제5절 지역 인구 변화 대응 정책



## 제3장 프랑스 인구정책의 현황

### 제1절 소득·주거 지원 정책

프랑스는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족에게 다양한 수당을 지급하고, 자녀 양육으로 인해 직업이 없는 전업주부에게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를 지원하며, 소득세의 가족계수를 통해 세금을 경감시키도록 지원하는 등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포괄적인 가족지원 정책을 통해 출산율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자녀 양육가구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수당 정책, 가족계수를 통한 세금 감면 정책, 연금 지원 정책, 다자녀 가구에 대한 추가 지원 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수당 정책

프랑스에서는 약 20가지의 현금 수당이 가족의 여건과 소득에 따라 지급된다. 이러한 수당의 목적은 아동 양육과 관련된 직접적 비용의 경감, 아동의 보육 지원 등 아동 양육과 관련된 간접적 비용 경감, 주거 지원을 통한 가족의 삶의 질 개선, 취약 계층의 장애·불안정성·사회적 소외의 완화 및 제거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수당의 대부분은 프랑스 가족수당금고(caisse d'Allocations familiales, CAF)를 통해 지급된다. 자녀가 있는 가구에 지급되는 다양한 수당(allowance)은 자녀의 출생 순위에 따라 지급되는 종류와 지급되는 양에서 차이가 있다.

프랑스는 실제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개인과 가족 수준의 일이 아

나라는 기본적인 철학을 토대로 출생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임신하게 되면 ‘임신 신고(Déclaration de grossesse)’를 ‘가족수당금고’와 ‘기초의료보험금고(Caisse Primaire d'Assurance Maladie)’에 제출하게 되는데, 2015년부터는 산부인과 의사(Gynécologue)가 임신 확인서를 시스템에 입력하면 자동으로 전산처리가 되어 바로 임신이 등록된다. 프랑스 정부 기관인 가족수당금고(CAF)는 개인소득 또는 가구소득에 따라 프랑스인과 프랑스에 합법적으로 머물고 있는 모든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소득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2004년부터 출산 지원의 성격을 가진 일부 수당은 출산과 입양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유아환영정책(Politique d'accueil du jeune enfant, PAJE)이라는 정책 묶음(package)으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Caf.fr, 2024a). PAJE는 신생아를 출산하는 가족에 대해 기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소득별·계층별·선택적(complément de libre-choix)인 추가 지원을 제공하며 양육체계를 개선하고 다자녀 출산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유아환영정책에 포함된 정책은 출생 보너스(Prime de naissance) 및 입양 보너스(Prime à l'adoption), 기초수당(Allocation de base), 공동양육수당(Prestation partagée d'éducation de l'enfant, PreParE) 등의 수당과 보육 비용 지원을 위한 보육 보조금(CMG)이 포함된다.

#### 가. 출생 보너스(Prime de naissance) 및 입양 보너스(Prime à l'adoption)

출생 보너스는 출생과 입양에 대한 수당을 일정 소득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일회성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한국의 출산지원금과 유사한 제도

이다. 2024년 기준 출생 보너스는 다음과 같다. 출생 보너스는 2021년 4월 1일부터 재정적으로 자녀 출생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임신 7개월 차에 지급된다. 출생 보너스는 유아환영제도(PAJE aid system)에 포함되어 있다(Aide-sociale, 2024a). 수당 금액은 2024년 4월 1일부터 이전의 1,019.43유로에서 인상되어 자녀당 1,066.31유로이고, CAF에 등록된 은행 계좌로 입금된다. 지원 대상은 일정 자산 이하의 자녀 출산 및 입양 예정 부부(couple) 또는 한부모(single mother)이고 수당을 받는 n년도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n-2년도의 소득이다. 예를 들어서 2024년 3월 임신이 확인된 경우에 2022년 소득이 고려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의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인 경우 소득이 34,791유로 이하, 둘째 자녀인 경우 소득이 41,749유로 이하, 셋째 자녀인 경우 소득이 50,099유로 이하인 경우에 지원 대상이 된다. 넷째 자녀부터는 50,099유로에 추가 자녀 1명당 8,350유로씩 소득 한도에 추가된다(Aide-sociale, 2024a).

한부모 또는 외벌이 가구인 경우는 소득 상한선이 맞벌이 가구보다 높다. 첫째 자녀인 경우 소득이 45,979유로 이하, 둘째 자녀인 경우 소득이 52,937유로 이하, 셋째 자녀인 경우 소득이 61,287유로 이하인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다. 넷째 자녀부터는 61,287유로에 추가 자녀 1명당 8,350유로씩 소득 한도에 추가된다. 또한 입양아인 경우 2024년 4월 1일부터 2,132.63유로의 수당을 입양한 달의 다음 달에 받을 수 있다(Aide-sociale, 2024a).

출생 보너스는 임신(또는 입양)을 신고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신청된다. 출생수당을 받기 위해서 임신 6개월 이내에 임신 확인서를 보내야 하고 출산 시 기타 행정 절차에 따라 적절한 신고를 해야 한다. CAF의 수급자가 아닌 경우는 별도로 자원 및 상황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한편 프랑스 정부는 2009년부터 소득이 전혀 없거나 매우 낮은 개인 혹은 가구에 저소득층을 위한 적극적 연대급여(Revenu de Solidarite Active, RSA)를 통해 최소 생활비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임신할 경우 RSA의 혜택이 일반 기준 635.70유로에서 816.32유로로 증가한다. 임신부가 혼자 살고 있는 경우 임신 시작부터 RSA가 증가한다. 부부인 경우 부부의 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진다. 또한 임신 순위에 따라 RSA 지급액이 증가한다(Aide-sociale, 2024b).

〈표 3-1〉 임신부와 부부 RSA 지급액(2024)

(단위: 유로)

임신 순위	임부 가구	부부 가구
첫아이 임신	953.53	953.56
1명	1,088.43	1,144.27
2명	1,360.54	1,334.98
3명	1,632.64	1,589.26

\*수급액은 주택에 대한 보조금이 포함된 금액임.

출처: "Montant du RSA pour une femme enceinte et célibataire," Aide-sociale, 2024c.  
<https://www.aide-sociale.fr/rsa-enceinte/#montants>에서 2024.6.5.인출함.

## 나. 기초수당(allocation de base)

자녀 출생 시 지급되는 기초수당은 PAJE(유아환영제도)의 세부 제도이다. 3세 미만의 자녀 또는 20세 미만 입양한 자녀가 있는 가족이 대상이며 소득 수준에 따라 2024년 현재 €96.65(부분) 또는 €193.31(전액)를 받는다. 대상의 기준이 되는 소득 상한액은 자녀 수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다. 출산지원금과 마찬가지로 N-2년 차의 소득이 고려된다(Aide-sociale, 2024d).

〈표 3-2〉 기초수당의 전액(€ 193.31)을 지급받는 대상의 소득상한선(2024)

(단위: 유로)

자녀 수	외벌이 가구	맞벌이 부부 또는 한부모
1명	29,120	38,483
2명	34,944	44,307
3명	41,933	51,296
추가 자녀당	6,989	6,989

출처: “Conditions d’attribution de l’allocation de base,” Aide-sociale, 2024e.  
<https://www.aide-sociale.fr/allocation-base-caf/#conditions>에서 2024.6.5. 인출함.

소득이 전액 기초수당 상한선보다 높은 경우 일부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때의 소득 상한선은 다음과 같다.

〈표 3-3〉 기초수당의 일부(€ 96.65)를 지급받는 대상의 소득상한선(2024)

(단위: 유로)

자녀 수	외벌이 가구	맞벌이 부부 또는 한부모
1명	34,791	45,979
2명	41,749	52,937
3명	50,099	61,287
추가 자녀당	8,350	8,350

출처: “Conditions d’attribution de l’allocation de base,” Aide-sociale, 2024e.  
<https://www.aide-sociale.fr/allocation-base-caf/#conditions>에서 2024.6.5. 인출함.

기초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족수당금고(CAF) 또는 농업사회보장금고(MSA)에 등록하고 가족기록부(du livret de famille) 사본과 출생증명서(d’acte de naissance)를 제출해야 한다.

기초수당은 최대 36개월 동안 매월 지급된다. 출생아의 경우 출생 다음 달부터 3세 생일 전월까지 지급되고, 입양아의 경우는 입양된 다음 달부터 최대 36개월, 수당 지급 종료 전 아동이 20세가 되는 경우 최소 12개월 동안 지급된다. 기초수당의 대상은 출생일 또는 입양일 다음 달부터 적용되며 그다음 달에 첫 번째 지원금을 받게 된다.

#### 다. 가족수당(Allocations familiales)

가족수당(family allowances)은 20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가구에 월 단위로 지급되는 수당이다.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1년 중 6개월 이상 프랑스에 거주해야 한다. 2025년 1월 1일부터는 6개월 대신 9개월이 적용되어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1년 중 9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 (Service-public, 2024a). 또한 자녀가 프랑스에 거주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3개월 이상 다른 국가에 있었다면 수당 지급이 정지된다. 다만 학업 또는 직업 훈련이나 치료를 목적으로 인근 국가에 갔다가 정기적으로 돌아오거나 동일한 이유로 외국에 나가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족수당은 둘째 자녀를 출산한 다음 달부터 매월 지급된다.

수당 금액은 가구의 경제적 수준, 자녀 수와 자녀의 연령에 따라 달라진다. 수당 수급 연도인 N년도의 고려 소득은 N-2년도 소득이다. 자녀가 2명인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월 €37.13~€148.52를 지급한다. 자녀가 14세가 되면 기본 지원 금액에 소득 수준에 따라 €18.57~ €74.26가 추가된다. 15세와 16세의 자녀가 2명이 있는 경우에는 15세인 자녀에 대해서만 추가로 수당이 지급된다(Service-public, 2024a).

〈표 3-4〉 자녀가 2명일 경우 가족수당(2024)

소득 수준	지원 금액	14세 이상 추가 지원 금액
€74,966 이하	€148.52	€74.26
€74,966~€99,922 포함	€74.26	€37.13
€99,922 이상	€37.13	€18.57

출처: “Le complément familial (Cf),” Service-public, 2024b.

자녀가 3명인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월 €84.71~€338,81를 지급한다. 자녀가 14세가 되면 기본 지원 금액에 소득 수준에 따라 €18.57~

€74.26가 추가된다. 부양 자녀가 3명일 경우는 14세부터 각 자녀에 대해 추가로 수당이 지급된다.

〈표 3-5〉 자녀가 3명일 경우 가족수당(2024)

소득 수준	지원 금액	14세 이상 추가 지원 금액
€81,212 이하	€338,81	€74.26
€81,212 초과 €106,168 이하	€169.40	€37.13
€106,168 초과	€84.71	€18.57

출처: “Le complément familial (Cf),” Service-public, 2024b.

자녀가 4명인 가구는 소득 수준에 따라 월 €132.27~€529.10를 지급받는다. 또한 자녀가 14세가 되면 기본 지원 금액에 소득 수준에 따라 €18.57~€74.26가 추가된다. 부양 자녀가 4명일 경우는 14세부터 각 자녀에 대해 추가로 수당이 지급된다.

〈표 3-6〉 자녀가 4명일 경우 가족수당(2024)

소득 수준	지원 금액	14세 이상 추가 지원 금액
€87,458 이하	€529.10	€74.26
€87,458 초과 €112,414 이하	€264.55	€37.13
€112,414 초과	€132.27	€18.57

출처: “Le complément familial (Cf),” Service-public, 2024b.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13213/personnalisation/resultat?lang=en&quest2=0&quest=>에서 2024.6.5.인출함.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의 경우 가구의 소득 수준이 최대 지원 금액(3명인 경우 €338,81, 4명인 경우 €529.10)을 받기에 약간 초과하는 경우 지급액에 대해 조정이 가능하다. 다만, 최대 지원 금액을 받는 기준이 되는 소득 한도(3명인 경우 €81,212, 4명인 경우 €87,458)와 가구소득의 차이는 가족수당 지원 금액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가

족수당 금액의 산출식은 [(가족수당 소득 한도 + 12 x(최대 가족수당 금액)-가구소득]/12이다.

예를 들어, 3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의 연간 소득이 €82,000인 경우는 최대 지원 금액(€338.81)을 받는 기준이 되는 소득 한도(€81,212)를 €788를 초과한다. 이러한 차이(€788)가 12 x €338.81 미만이므로 지급액이 조정될 수 있다. 해당 가구에 매월 지급되는 가족수당 금액은 산식  $[(€81,212 + (12 \times €338.81) - €82,000) / 12]$ 를 통해 산출된 금액인 €273.14이다.

한편, 자녀가 20세가 되면 부양 자녀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어 가족수당을 수급할 수 없게 된다. 이때 3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일 경우 경제적 손실이 클 수 있으므로 일정 조건이 성립되는 가구에게는 임시정액수당(allocation forfaitaire provisoire)을 지급한다. 지급 조건은 다음과 같다. 20세의 자녀가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해당 자녀가 €1,082.87를 초과한 소득이 없어야 하며 20세 생일 이전 달에 해당 가구에 3명 이상의 자녀가 가족수당을 받고 있어야 한다. 임시정액수당은 21세 생일 전 달까지 매달 자동으로 지급된다(Service-public, 2024a).

〈표 3-7〉 임시정액수당 지급 기준(2024)

소득 수준		지원 금액
3자녀인 경우	4자녀인 경우	
€81,212 이하	€87,458 이하	€93.91
€81,212 초과	€87,458 초과	€46.96
€106,168 이하	€112,414 이하	
€106,168 초과	€112,414 초과	€23.48

출처: “Le complément familial (Cf),” Service-public, 2024b.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13213/personnalisation/resultat?lang=en&quest2=0&quest=>에서 2024.6.5. 인출함.

## 라. 가족보충수당(Complément familial: Cf)

가족보충수당은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한 일반 조건(프랑스에 거주해야 하며 외국 국적인 경우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경우)을 충족하며, 일정 소득 이하 가구에서 3세 이상 21세 미만의 자녀를 최소 3명 이상 양육하는 경우에 막내 자녀의 세 번째 생일부터 매달 지급된다(Caf, 2024b). 가족보조금에서도 N-2년 차의 소득이 고려되는데, 2024년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소득 수준에 따라 월 €193.30 또는 €289.98가 지급된다(Caf, 2024b).

〈표 3-8〉 가족보충수당 지급 기준(2024)

자녀 수	소득 수준		수당 금액
	외벌이 부부	€5,594 이하 소득이 있는 한부모 또는 맞벌이 부부	
3명	€20,971 초과 €41,933 미만	€25,653 초과 €51,296 미만	€193.30
	€20,971 이하	€25,653 이하	€289.98
4명	€24,466 초과 €48,922 미만	€29,148 초과 €58,285 미만	€193.30
	€24,466 이하	€29,148 이하	€289.98
추가 자녀당	€3,495 초과 €6,989 미만		€193.30
	€3,495 이하		€289.98

출처: “Le complément familial (Cf),” Caf, 2024b. <https://www.caf.fr/allocataires/aides-et-demarches/droits-et-prestations/vie-personnelle/le-complement-familial-cf>에서 2024.6.5.인출함.

#### 마. 가족지원수당(L'allocation de soutien familial, Asf)

ASF는 부모 중 한 명 이상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한 일반 조건(프랑스에 거주해야 하며 외국 국적인 경우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경우)을 충족하며, 부양 아동(출생 또는 입양 자녀) 중 최소한 한 명과 함께 혼자 살고 있는 경우로 다른 쪽 부모가 사망했거나 자녀를 모르거나, 위자료나 양육비를 지불할 능력이 없거나, €195.86 미만의 위자료를 지불하는 경우이다.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부모의 사망이 선언되면 ASF가 자동으로 지급된다(Caf, 2024c).

2024년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의 지원 금액은 자녀를 혼자 키우는 경우 부양 자녀당 월 €195.86, 부모 모두의 도움을 받지 못한 자녀를 양육한 경우 부양 자녀당 월 €261.06이다.

ASF는 부양 자녀의 스무 번째 생일 전 달까지 지급된다. 단, 부모가 아닌 성인이 동거(동거, 결혼 또는 재혼)를 하게 되면 가족지원수당이 중단된다. 또한 더 이상 해당 자녀에 대한 정서적, 교육적, 재정적 책임을 맡지 않는 경우, 위자료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족지원수당을 수급할 수 없다(Caf, 2024c).

#### 바. 공동양육수당(Prestation partagée d'éducation de l'enfant, PreParE)

공동양육수당은 자녀(출생 또는 입양) 양육을 위해 직업 활동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이다.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한 일반 조건(프랑스에 거주해야 하며 외국 국적인 경우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경우)을 충족하며, 일정 소득 이하 가구에서 3세 미만의 자녀가 있거나 20

세 미만의 자녀를 입양한 후 직업 활동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경우에 지급된다. 첫째아의 경우 지난 2년 동안 총 근무 기간이 최소 2년(8분기)이거나, 둘째아의 경우 지난 4년 동안 최소 2년(8분기)을 근무했거나, 셋째아의 경우 지난 2년 동안 최소 5년(8분기)을 근무한 경우에 해당된다. 유급 병가, 출산휴가, 유급 전문 교육 기간은 근무 기간으로 산정된다. 둘째 자녀 이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나 PreParE 수급 기간까지 근무 기간으로 산정된다(Caf, 2024d).

2024년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의 지원 금액은 직업 활동이 완전히 중단된 경우 월 €448.42, 50% 이하의 근무 감소에 대해 월 €289.89, 50% 이상 최대 80%의 직업 활동 감소에 대해 월 €167.22가 지급되는데, 부부가 동시에 지원하게 되면 월 최대 €448.42가 지급된다(Caf, 2024d).

지원 기간은 가구 구성과 자녀 수에 따라 다르다. 첫째아의 경우 부부 가구의 경우 자녀의 첫 번째 생일 이전 달까지 최대 6개월 동안 지급되고, 한부모의 경우는 직업 활동이 중단된 달로부터 자녀의 첫 번째 생일 이전 달까지, 입양한 첫째아인 경우 입양한 후 처음 12개월 동안 지급된다. 둘째아의 경우 부부 가구의 경우 자녀의 세 번째 생일 이전 달까지 최대 24개월 동안 지급되고, 한부모 가구의 경우는 활동이 중단된 달로부터 자녀의 세 번째 생일 이전 달까지, 입양한 둘째 자녀의 경우 입양한 후 세 번째 생일 이전 달까지 최대 12개월까지 지급된다. 셋째아 이상인 경우 부부 가구에는 자녀의 여섯 번째 생일 이전 달까지 최대 48개월 동안 지급되고, 한부모 가구의 경우는 직업 활동이 중단된 달로부터 자녀의 여섯 번째 생일 이전 달까지, 최소 3명의 자녀를 입양한 경우 최대 36개월 동안 지급된다(Caf, 2024d).

추가로, 부양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는 한시적으로 증가된 금액을 받

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의 자녀는 자녀의 첫 번째 생일 이전 달까지 최대 8개월 동안 수급 가능하며, 한부모의 경우 자녀의 첫 번째 생일이 되기 한 달 전까지 수급이 가능하다. 부모는 일반적인 PreParE와 추가 PreParE 중에서 선택해서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2024년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가구당 월 €732.97이다(Caf, 2024d).

또한, PreParE는 연장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자녀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l'école maternelle), 유아보육시설(établissement d'accueil du jeune enfant)에 다니지 않을 경우에는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최대 8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연장이 가능한 조건은 2명 이상의 자녀가 있어야 하며 자녀가 만 3세가 되기 한 달 전에 PreParE를 수급받고 있어야 하고, 가구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한다(Caf, 2024d).

〈표 3-9〉 PreParE 연장을 위한 소득 상한선(2024)

자녀 수	외벌이 가구	맞벌이 부부 또는 한부모
2명	€34,944	€44,307
3명	€34,944	€51,296
4명	€41,933	€58,285
추가 자녀당	€6,989	

출처: “Prestation partagée d'éducation de l'enfant, (PreParE),” Caf, 2024d. <https://www.caf.fr/allocataires/aides-et-demarches/droits-et-prestations/vie-personnelle/la-prestation-partagee-d-education-de-l-enfant-prepare>에서 2024.6.5.인출함.

## 사. 신학기수당(Allocation de rentrée scolaire, Ars)

신학기수당(Ars)은 학년이 시작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 또는 유치원(maternelle) 및 어린이집(école maternelle)을 다니거나, 직업훈련을 하고 있는 견습생이거나 전문 보호 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6~18세 자녀가 있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가구에 지급되는 수당이

다(Caf, 2024e). 신학기수당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한 일반 조건(프랑스에 거주해야 하며 외국 국적인 경우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경우)을 충족해야 한다. 신학기수당의 대상이 되기 위한 소득 수준은 다음과 같다.

〈표 3-10〉 자녀 수별 신학기수당(Ars) 소득 한도(2024)

자녀 수	소득 한도
1명	€27,141
2명	€33,404
3명	€39,667
4명	€45,930

출처: “Allocation de rentrée scolaire(Ars),” Caf, 2024e. <https://www.caf.fr/allocataires/aides-et-demarches/droits-et-prestations/vie-personnelle/la-prestation-partagee-d-education-de-l-enfant-prepare>에서 2024.6.5.인출함.

2024년도 기준 Ars 금액은 자녀의 연령에 따라 €416.40부터 €454.60까지 차이가 있다(Caf, 2024e).

〈표 3-11〉 자녀 연령별 신학기수당(Ars) 지원 금액(2024)

자녀 연령	세부 내용	지원 금액
6~10세	- 학년 시작 후 1월 1일 이전에 6세가 되어야 하며, 학년이 시작되는 해 12월 31일까지 11세가 되어서는 안 된다. - 6세 미만의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이 되기 전 CP(le cours préparatoire)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Ars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16.40
11~14세	- 자녀가 학년이 시작되는 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11세가 되어야 하며, 학년이 시작되는 해의 12월 31일을 기준으로 15세가 되지 않아야 한다.	€439.38
15~18세	- 자녀가 학년이 시작되는 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15세가 되어야 하며, 학년이 시작되는 해의 9월 15일을 기준으로 18세가 되지 않아야 한다.	€454.60

출처: “Allocation de rentrée scolaire(Ars),” Caf, 2024e. <https://www.caf.fr/allocataires/aides-et-demarches/droits-et-prestations/vie-personnelle/la-prestation-partagee-d-education-de-l-enfant-prepare>에서 2024.6.5.인출함.

신학기수당(Ars)은 당해 학년이 시작하기 전인 8월 말에 일괄 지급된다. 매년 가구의 상황(부양 자녀 수, 자녀의 나이, N-2년도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별한다. 대상자가 되기 위해 학년이 시작된 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6~15세가 되면 추가로 제출할 서류는 없으나, 가족수당금고(Caf)의 계정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학년이 시작할 때 자녀가 재학 중이거나 견습 과정에 있다는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6세 미만의 자녀는 CP(le cours préparatoire)에 등록할 경우 재학증명서를 Caf에 제출해야 한다. 단, 자녀가 판사에 의해 아동복지시설(Ase)에 위탁된 경우, 신학기수당은 가구로 지급되지 않는다. 해당 수당은 자금예치 및 위탁기관(Caisse des Dépôts et Consignations)의 차단된 계좌에 보관되었다가 자녀가 성년이 되면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Caf, 2024e).

#### 아. 장애아동양육수당(Allocation d'éducation de l'enfant handicapé)

장애아동양육수당은 20세 미만의 자녀가 장애인 권리 및 자율성 위원회(Commission départementale des droits et de l'autonomie des personnes handicapées, Cdaph)에서 인정한 장애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이다(Caf, 2024f). 수당 대상이 되는 경우는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한 일반 조건(프랑스에 거주해야 하며 외국 국적인 경우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경우)을 충족하며, 20세 미만의 자녀가 장애인의 권리 및 자율성 위원회(Cdaph)에서 인정한 장애가 80% 이상인 경우와 자녀의 장애가 50%에서 79%이며 특정 조건에 부합한 경우이다.

장애아동양육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은 자녀의 장애 정도에 따라 다르다. 장애의 비율은 복지부 장애인 담당 부서(Maison départementale des personnes handicapées, Mdph)의 위원회 중 하나인 장애인의 권

리 및 자율성 위원회(Cdaph)에 의해 결정된다. 장애아동양육수당에서 가구의 소득은 고려되지 않는다. 자녀의 장애가 80% 이상이면 대상자가 된다. 자녀가 50%에서 79% 사이의 장애 비율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자녀가 전문적인 기관에 다니거나 자녀의 상태로 인해 장애인의 권리 및 자율성 위원회(Cdaph)에서 권장하는 적합한 장치나 돌봄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장애아동양육수당의 대상이 된다(Caf, 2024f).

장애아동양육수당의 기본 지원금은 월 €149.26이나 상황에 따라 보충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보충급여는 해당 자녀를 돌봐줄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 부모가 직업 활동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경우, 자녀의 장애와 관련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 자녀의 장애 수준에 따라 지급된다. 보충급여는 €111.95에서 €1,266.60까지이다(Caf, 2024f).

장애아동양육수당의 지급 기간도 장애인의 권리 및 자율성 위원회(Cdaph)에 의해서 결정된다. 장애 비율이 80% 이상이고 자녀의 건강 상태가 안정적이거나 악화되는 경우 자녀의 20세 생일까지 기간 제한이 없이 지원된다. 자녀의 장애 비율이 80% 이상이고 건강이 호전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지급 기간은 3년에서 5년이다. 지속적으로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수당의 자격 종료일 6개월 전에 진단서 작성을 담당하는 의사를 만나고 복지부 장애인과(Mdph)에서 갱신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Caf, 2024f).

#### 자. 일일 부모동반수당(*l'allocation journalière de présence parentale, AJPP*)

일일 부모동반수당(AJPP)은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활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때 받을 수 있는 수당이다(Service-public, 2024c). 구체적으로 심각하게 아프거나 부상을 입거나 장애가 있는 자녀를 돌보기 위해

자녀와 함께 보낸 하루 또는 반나절에 대해 월 최대 22일까지 최대 3년간 일일 부모동반수당(AJPP)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질병이나 장애 또는 특히 심각한 사고로 인해 지속적인 거주가 필요하고 보살핌이 필요한 20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고, 이러한 자녀를 돌보기 위해 직업 활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부모이다. 직업 활동이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 부모는 육아휴직 중인 공공 또는 민간부문 일자리에 고용되었거나, 현장 영업자(Voyageur représentant placier), 민간(개인) 고용주가 고용한 재택근무자, 자영업자, 유급 전문 교육을 받는 사람, 프랑스 고용센터(France Travail)에서 수당을 받고 있는 구직자이어야 한다. 이를 입증하는 공식적인 증명서가 필요하다(Service-public, 2024c).

또한 질병, 장애 또는 사고로 아동을 담당하고 있는 의사가 작성한 자녀의 의학적 사항을 입증하는 진단서(증명서)가 필요하다. 진단서를 통해 아동의 질병, 장애 또는 사고의 심각성을 입증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제한적 치료의 성격, 부모가 자녀와 함께 있어야 하는 상황, 예상되는 치료 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일일 부모동반수당(AJPP)의 하루 최대 지원 금액은 €64.54이고, 반나절의 경우는 €32.27이다(단, 마요트의 경우는 각각 €55.51, €27.75이다). 추가로 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클 경우 AJPP에 더해 월별 보충금(complément mensuel)이 지급된다(Service-public, 2024c). 월별 보충금 대상은 자녀의 건강 상태에 따라 사회보험(Sécurité sociale)이나 상호의료보험(mutuelle)에서 보상받지 않는 월 비용이 €126.20를 초과하고, 2024년 현재 2022년 소득이 외벌이 가구의 경우는 €34,944, 맞벌이 가구는 €44,307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는데, 월 €126.20가 지급된다(Service-public, 2024c).

### 차. 자녀사망수당(L'allocation versée en cas de décès d'enfant)

자녀의 사망 시 지원하는 자녀사망수당은 만 24세 이하의 자녀가 사망한 경우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Caf, 2024g). 임신 20주부터 만 25세가 되기 전날까지의 자녀가 사망할 때 가족수당금고(Caf)가 사망 사실을 통보받은 직후 일회성으로 지급한다. 지원 금액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조건에 따라 €2,251.16 또는 €1,125.61이다(Caf, 2024g).

〈표 3-12〉 소득 수준 및 자녀 수에 따른 수당 금액(2024)

자녀 수	소득 수준	수당 금액
1명	€93,676 이하	€2,251.16
	€93,676 초과	€1,125.61
2명	€99,922 이하	€2,251.16
	€99,922 초과	€1,125.61
3명	€106,168 이하	€2,251.16
	€106,168 초과	€1,125.61
4명	€112,414 이하	€2,251.16
	€112,414 초과	€1,125.61
추가 자녀당	€6,246 추가	€2,251.16
	€6,246 추가	€1,125.61

출처: "L'allocation versée en cas de décès d'enfant," Caf, 2024g. <https://www.caf.fr/allocationaires/aides-et-demarches/droits-et-prestations/accident-de-vie/l-allocation-versee-en-cas-de-deces-d-enfant>에서 2024.7.10. 인출함.

한편, 자녀가 사망한 후 3개월 동안 기초수당, 공동육아수당, 가족보충수당, 가족지원수당, 가족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은 그대로 수급할 수 있다. 또한 신학기수당은 6월 1일에서 7월 31일 사이에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다음 학년도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으나 학년이 시작되기 전 5월 1

일에서 5월 31일 사이에 사망한 경우는 수당이 중단된다. 출생 보너스는 임신 5개월인 달의 그 다음 달 1일 또는 그 이후에 사망한 경우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입양 보너스는 입양 달에 사망이 발생한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다(Caf, 2024g).

## 2. 세금 감면 및 연금 지원

### 가. 가족계수(quotient familial)

프랑스는 1945년 저출산 대책으로 가족계수제(systeme du quotient familial)를 도입하였다(Service-public, 2024d). 가족계수제의 목적은 출산 장려이므로, 자녀 등 가족 구성원의 수에 따라 자녀가 많을수록 세금이 경감되도록 가족계수를 설정하여 세제를 계산한다. 가족계수는 다음과 같다.

〈표 3-13〉 자녀 수별 가족계수(2024)

자녀 수	가족계수
0명	2
1명	2.5
2명	3
3명	4
4명	5
5명 이상	자녀 한 명당 1을 추가

출처: "Quotient familial," Service-public, 2024d.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2705>에서 2024.7.10. 인출함.

자녀가 없는 경우 가족계수는 2이며, 두 자녀까지는 자녀당 각 0.5로 계산되어 한 자녀 가구는 2.5, 두 자녀 가구는 3이다. 세 번째 자녀부터는

1로 계산되어 세 자녀 가구의 가족계수는 4이고, 네 자녀 가구의 가족계수는 5, 다섯 자녀 가구의 가족계수는 6이다(Service-public, 2024d). 즉, 자녀 수가 많을수록 소득공제 인수가 커지게 되어 세금감면 혜택이 커진다(Service-public, 2024d).

자녀가 없는 부부가 공동으로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세금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결정된다. 예를 들어 부부가 순과세 소득을 €63,000로 신고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산식을 통해 세금이 계산된다. 우선 1인당 과세 소득은 €31,500(€63,000/2)이다. 과세율은 소득에 따라 €11,294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고, €11,295에서 €28,797는 11%의 세율이 적용되고, €28,798에서 €31,500까지는 30%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1인당 세금은  $€2,736.23(€28,797-€11,294) \times 11\% + (€31,500-€28,797) \times 30\%$ 이다. 따라서 이 부부 가구의 총세액은 약 €5,472이다(Service-public, 2024d).

한 자녀 가구의 부부가 순과세 소득을 €63,000로 신고하는 경우 가구원 1인당 과세 소득은 €25,200(€63,000/2.5)이다. 1인당 세금은  $(€25,200-€11,294) \times 11\% = €1,529.66$ 이고 이 가구의 총세액은 €3,824.15(€1,529.66×2.5)이다. 따라서 동일한 과세 소득을 가지고 있는 부부라도 자녀가 없는 부부와 비교해서 약 €1,648만큼 세금을 더 적게 부담하게 된다. 즉, 프랑스의 조세 제도에 있어서 결정세액은 과세 표준액을 소득공제 인수로 나누기 때문에 자녀가 많을수록 세금감면 혜택이 증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또한, 다자녀(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는 소득세뿐만 아니라 주거세 등에 있어서 세금 경감을 지원하고 있다(Service-public, 2024d). 한편, 세금 경감의 목적을 가지고 활용되는 가족계수는 소득신고 시 결정세액의 산출세 계산뿐만 아니라, 가족수당 금고(CAF)에서 지급하는 각종 수당제도의 지원금, 학교 급식의 부담금 등을 산출할 때 활용되고 있다.

#### 나. 전업주부(재택부모) 노령보험(L'assurance vieillesse du parent au foyer, AVPF)

전업주부(재택부모)의 노령보험(L'assurance vieillesse du parent au foyer, AVPF)은 전업주부(parent au foyer)가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1972년에 도입된 제도이다(Caf, 2024h). 도입 당시에는 어머니를 위한 노령보험(assurance vieillesse des mères de famille: AVMF)이라는 이름으로 저소득층의 노동시장에서 근로를 하지 않는 여성에게 혜택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시작되었고, 점차 그 대상이 확대되었다. 1975년에는 아동 또는 장애를 가진 성인을 돌보는 여성으로 확대되었고, 1977년에는 가족보조금(complément familial)을 받는 어머니, 1979년에는 남성까지로 확대되면서 현재의 이름(AVPF)으로 제도가 확립되었다(Caf, 2024h).

2024년 현재 기초수당(allocation de base), 공동양육수당(PreParE), 가족보조금(complément familial)을 받고 있으며 일정 소득 이하인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직업 활동이 감소하였거나 활동을 할 수 없을 때 연금 수급권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자격이 되는 전업주부에게 연금 기금의 기여금이 지급된다(Caf, 2024h).

〈표 3-14〉 부양 자녀 수별 가족보조금(2024)

부양 자녀 수	한부모이거나 기초수당을 받는 경우	부부 가구이면서 공동양육수당(PreParE), 가족보조금(complément familial)을 받는 경우
1명	€27,141	€29,120
2명	€33,417	€34,944
3명	€39,667	€41,933
추가 자녀 수	€6,263	€6,989

주: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

출처: "L'assurance vieillesse du parent au foyer(AVPF)," Caf, 2024h. <https://www.caf.fr/allocataires/aides-et-demarches/droits-et-prestations/handicap/assurance-vieillesse-du-parent-au-foyer-avpf>에서 2024.7.10. 인출함.

기초수당(allocation de base)이나 가족보조금(complément familial)을 받는 경우에는 2022년 소득이 €5,067를 초과하지 않는 부부 가구이거나, 공동양육수당(PreParE)의 부분적인 요율에 적용되는 경우 2022년 소득이 €29,212를 초과하지 않는 부부 가구의 전업주부가 대상이다(Caf, 2024h). 해당 제도는 자녀 양육을 위해 직업 활동을 완전하게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자녀 양육을 '직업 활동'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3. 다자녀 가구 지원

#### 가. 이사지원금(La prime de déménagement)

프랑스에서 가족을 지원하는 정책의 하나로 주거 지원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주택보조금은 가구의 소득과 자녀의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자녀 수가 수당의 금액을 결정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으로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이사지원금은 부양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게

만 지원하는 제도이다(Service-public, 2024e). 이사지원금(이사 보너스)은 이사하는 가구가 부양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조건에 따라 일정 한도 내에서 실제로 이사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한다. 이사지원금은 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하여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지원 대상은 이사 후 6개월 이내에 부양 자녀가 3명 이상이어야 하고, 가구의 자산, 부양가족 수, 임대료 등이 고려되어 지원받을 수 있는 맞춤형 주택 지원(Aide personnalisée au logement)이나 장애 아동 가구, 무자녀 가구, 65세 이상인 노인연대수당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 주택수당(Allocation de logement familiale)을 받을 자격이 있는 가구이며, 이사는 임신 3개월이 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마지막 자녀가 태어나기 전 달의 마지막 날 사이에 이루어져야 한다(Service-public, 2024e).

지원 금액으로 인정이 되는 항목은 이사에 발생된 비용으로 이사업체에 지불한 요금, 차량 대여 비용, 주유 비용 등을 포함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는 견적서를 제출하고 견적 금액의 50~75%까지 미리 받을 수 있다(Service-public, 2024e). 따라서 지원 금액은 실제로 이사에 발생한 비용에 따라 달라지며, 부양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진다.

〈표 3-15〉 이사지원금 최대 지원금액(2024)

자녀 수	최대 지원 금액
3명	€1,119.46
4명	€1,212.75
추가 자녀당	€93.29

출처: “La prime de déménagement,” Service-public, 2024e.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2008>에서 2024.7.10. 인출함.

## 나. 다자녀 가구 카드(Carte familles nombreuses)

다자녀 가구 카드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프랑스 국적이거나 유럽연합 국가를 가지고 있으면서 프랑스에 정기적으로 거주하거나 프랑스에서 정기적으로 일을 해야 한다. 1명 이상의 미성년자를 포함하여 최소 3명의 자녀가 있거나 5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다자녀 가구 카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Service-public, 2024f). 온라인으로 카드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으며 다자녀 가구 카드로 프랑스 국영 철도(SNCF) 등 교통비나 전기료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상점, 식당, 여가 및 문화 활동 관련 기관, 보험사 등 제휴업체를 이용할 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Service-public, 2024f).

할인 혜택은 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지는데,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3명 중 최대 2명이 미성년자인 경우, 5명 이상의 성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 따라 다르다.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는 기차 요금의 30~75%의 할인 혜택이 있다. 할인은 1등석과 2등석 모두에 적용되지만, 할인 금액은 표준 운임 또는 2등석 운임에 대해 계산된다(Service-public, 2024f).

〈표 3-16〉 자녀 수별 다자녀 가구 카드 기차 요금 할인율(2024)

미성년 자녀 수	할인율
3명	30%
4명	40%
5명	50%
6명 이상	75%

출처: “Carte familles nombreuses,” Service-public, 2024f.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15292>에서 2024.7.10. 인출함.

자녀 중 최대 2명이 미성년자인 경우 가족 구성원 모두 기차 이용 요금의 3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성인 자녀가 5명 이상인 경우는 부모의 기차 이용 요금에서 3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자녀 가구 카드는 3년간 유효하고, 이 후 가족에게 최소 한 명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또한 자녀 중 한 명이 3년이 끝나기 전에 18세가 되는 경우 할인율이 변경되고 가족 전체에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갱신해야 한다(Service-public, 2024f).

#### 4. 주거 지원 정책

청년 주거 지원은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법(Code de la sécurité social)을 토대로 청년에게 주택 임대료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1950년부터 HLM(Habitation à Loyer Modéré)이라는 공공주택 공급을 통해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HLM은 저소득층 주택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있기 때문에 점차 개인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주거 지원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주택에 대한 지원은 개인 맞춤형 주거 지원(Aide personnalisée au logement, APL), 가족주거수당(Allocation de logement familiale, ALF), 사회주택수당(Allocation de logement sociale, ALS) 등 세 가지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개인 맞춤형 주거 지원(APL)에서 세입자 또는 하위 세입자의 경우 가족수당기금(CAF) 일반체제를 통해 임대료 보조금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APL에 대한 지원 자격은 가구 혹은 개인의 12개월 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APL을 받기 위한 연령에 제한은 없다. 미성년자도 APL을 받을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 임대차 계약에서 반드시 부모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독립한 미성년자인 경우 임대계약을 본

인의 이름으로 할 수 있다. APL은 프랑스인, 외국인, 유럽연합 회원국 국민이 아니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Service-public, 2024h). APL 금액은 임대하는 지역과 가구원의 수에 따라 다르게 지급된다. 그리고 임대료가 높아질수록 APL은 줄어들고, 고가의 임대료에는 APL이 지급되지 않는다(aide-sociale, 2024d).

〈표 3-17〉 APL을 받기 위한 최대 임대료(2024)

(단위: 유로)

가구 구성	지역 1	지역 2	지역 3
개인	1,234.00	833.50	781.20
커플	1,488.28	1,020.21	946.99
부양 자녀 1명이 있는 독신자 또는 커플	1,682.08	1,148	1,061.81
추가 인원	244.04	167.09	152.18

출처: “Quel est le plafond de revenu pour toucher l’APL? Comment se calcule le montant de l’aide au logement?,” aide-sociale, 2024d. <https://www.aide-sociale.fr/montant-apl/>에서 2024.8.20. 인출함.

가족주거수당(Allocation de logement familiale, 이하 ALF)은 APL 혜택을 받을 수 없고, 결혼한 지 5년 미만이거나 자녀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장애아동교육수당(Allocation d’éducation de l’enfant handicapé)이나 가족수당(Prestations familiales)을 받는 경우 받을 수 있다. 임신 4개월부터 아이가 태어난 달까지 부양가족 없이 혼자 아이를 출산할 예정인 경우에도 해당된다. 또한 80% 정도의 장애를 갖고 있거나 직업을 갖기 어려운 경우에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진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유효한 거주 자격을 갖추면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Service-public, 2024i). 부모의 가구에 속해 있으며 부모가 부유연대세(Impôt annuel de solidarité sur la fortune, ISF) 또는 부동산 부유세(Impôt sur la fortune immobilière)를 낼 경우에는 신청할 자

격이 없다. ALF는 임대인이 신청할 수 있다. ALF를 받기 위한 개인 혹은 가구의 소득 기준은 <표 3-18>과 같다.

<표 3-18> ALF 소득 기준(2024)

(단위: 유로)

가구 구성	지역1	지역2	지역3
개인	15,400	14,500	14,000
커플	18,600	17,700	17,100
부양가족 1명이 있는 커플	23,600	22,500	21,700
부양가족 2명이 있는 커플	28,000	26,600	25,800
부양가족 3명이 있는 커플	34,200	32,500	31,500

출처: "Allocation de logement familial," Caf, 2024i, <https://www.caf.fr/node/45407> 에서 2024.8.20. 인출함.

사회주택수당(ALS)은 APL이나 ALF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주로 학생, 젊은 세대, 자녀가 없는 가구(합산 연령이 55세를 초과하는 부부) 그리고 노인이나 장애인이 대상이다. 사회주택수당으로 숙소 또는 노인요양시설 등의 임대료 또는 월 모기지 상환금(Remboursement de prêt immobilier)을 지불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재정 지원 제도이다. ALS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거주지에서 연간 최소 8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Caf, 2024j). ALS를 받기 위한 소득 기준은 ALF와 같다. ALS도 ALF와 같이 임대인이 신청할 수 있고 지원 받을 수 있는 최대 임대료 기준은 APL과 동일하다.

APL, ALF, ALS의 차이는 APL은 주택자금 조달 기준에 따라 지급되고, ALF는 가족 상황에 따라 지급되며, ALS는 그 외의 경우에 지급된다는 것이다. 학생의 경우 다음 4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이러한 주택지원을 받을 수 있다(Service-public, 2024j). 즉, 유효한 거주 허가를 가지고 있는 프랑스인 또는 외국인인면서 면적,<sup>6)</sup> 안전 등 5가지 기준에 따른 적

정한 숙소(Logement à louer décent)에 거주하고, 임대하는 숙소의 소유자와 관계가 없으며, 특정 한도 이하의 자금(소득, 장학금 등)이 있을 경우이다. 또한 학생이 숙소를 공유하는 경우에도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임대료는 룸메이트의 수에 따라 나뉘지고, 주택보조금 신청은 개인이 요청해야 한다. 부모가 가족수당을 받고, 학생 혹은 청년이 주거 지원을 받을 경우 학생 혹은 청년은 독립 세대로 간주된다.

청년 개인이 임대를 할 경우 가족수당기금(Caisse d'Allocations Familiales, CAF)에 신청하면 된다. 이는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주택임대료 보조는 일정 소득 이하의 청년, 대학생 이상의 학생, 낮은 급여를 받는 청년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청년 본인의 이름으로 임대 계약을 하는 경우 자녀 여부와 거주지에 따라 2024년 기준 월 166유로에서 최대 월 231유로까지 지급된다. 거주하는 지역 중에서는 일드프랑스의 지원금이 가장 많다(La Rédaction, 2024b).

---

6) 1인 기준 9m<sup>2</sup>, 2인 기준 16m<sup>2</sup>(추가 1인당 9m<sup>2</sup>), 8인 이상은 70m<sup>2</sup>

## 제2절 양육·보육 지원 정책

### 1. 출산·입양 휴가 및 육아휴직

#### 가. 출산휴가(Congé de maternité)

출산휴가는 출산 전(산전휴가: congé prénatal)과 출산 후(산후휴가: congé postnatal)를 포함하는 휴가이다. 출산 전(산전휴가)과 출산 후(산후휴가)에는 자동으로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출산휴가는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므로 출산휴가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산전후 휴가 기간 중 고용 금지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고용주는 최대 1,500유로의 벌금과 손해배상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출산휴가 기간은 자녀의 출생순위, 다태아 여부에 따라 다르다 (Service-public, 2024k). 공무원(주 공무원, 영토 공무원, 병원 민원 담당 공무원)의 경우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포함하는 출산휴가를 받기 위해서는 근무 중이거나 임신 파견 중이거나 육아휴직 중이어야 한다. 육아휴직 중에 임신이 발생한 경우, 출산휴가 혜택을 받은 날에 육아휴직이 자동으로 종료된다. 출산휴가는 부서장에게 신청하면 자동으로 부여되는데, 대상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산전·산후 취업금지 기간(출산 전 최소 2주, 산후 6주) 동안에는 자동으로 출산휴가를 받게 된다. 직접 출산휴가 신청을 할 경우에는 의사나 조산사가 발행한 임신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민간부문이나 공공부문 근로자의 출산휴가 기간은 자녀의 출생순위에 따라 다르다.

〈표 3-19〉 자녀의 출생순위에 따른 휴가 기간(2024)

자녀의 출생 순위	산전휴가 기간	산후휴가 기간	총 휴가 기간
첫째 자녀	6 주	10 주	16 주
둘째 자녀	6 주	10 주	16 주
셋째 이상 자녀	8 주	18 주	26 주

출처: “Congé de maternité dans la fonction publique,” Service-public, 2024l,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519>에서 2024.8.20. 인출함.

〈표 3-20〉 다태아의 경우 휴가 기간(2024)

태어날 자녀 수	산전휴가 기간	산후휴가 기간	총 휴가 기간
쌍태아	12 주	22 주	34 주
삼태아 이상	24 주	22주	46 주

출처: “Congé de maternité dans la fonction publique,” Service-public, 2024l,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519>에서 2024.8.20. 인출함.

출산휴가의 일부를 포기할 수 있지만 출산 후 6주를 포함하여 최소 8주 동안은 일을 중단해야 한다. 단, 공공부문 종사자 중 기간제 계약직의 경우에는 남은 계약기간을 초과하여 출산휴가가 부여될 수 없고, 법적인 출산휴가 기간이 종료되면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산전후 휴가 시작 시기는 조정 가능하다. 우선, 산전휴가(congé pré-natal)는 의학적 상황에 따라 연기가 가능하다. 셋째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최대 2주까지, 다태아 출산인 경우 최대 4주까지 먼저 시작할 수 있다. 다만, 산전휴가를 앞당기면 산후휴가도 같은 기간만큼 줄어들게 된다. 산전휴가의 일부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산전 진료를 받는 의료 전문가의 소견서가 필요하다(Service-public, 2024k). 이와 유사하게 산전휴가의 일부를 산후휴가로 전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산전휴가는 최대 3주까지 줄일 수 있는데, 이 경우 산후휴가는 3주만큼 늘어난다. 산전휴가의 일부를 산후로 연기하기 위해서는 의료 전문가의 소견서가 필요하다. 산후휴가(congé postnatal)는 의학적 상황에 따라 최대 3주까지 출산 후 의

사나 조산사가 발행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연장할 수 있다.

민간부문 종사자의 경우, 출산휴가 기간 동안 고용 계약이 정지되므로 급여를 받지 못한다. 그러나 개인 상황에 따라 일일 출산수당(indemnités journalières pour maternité)을 받을 수 있다. 2023년 8월 20일부터 민간 회사 직원으로 6개월 이상 사회 보장보험(la Sécurité sociale)에 가입하고 일을 중단하기 전 3개월(또는 90일) 동안 최소 150시간 이상 근무했거나 업무 중단 전 12개월 동안 최소 600시간 이상 근무했거나, 업무 중단 전 6개월 동안 최소 €11,439.05에 해당하는 급여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했거나, 업무 중단 전 12개월 동안 최소 €23,649.50의 급여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 후 6주를 포함하여 출산휴가 기간 동안 최소 8주 동안 일을 중단해야 해야 일일 출산수당을 받을 수 있다(Service-public, 2024k).

민간부문 종사자의 경우 건강보험기본기금(Caisse primaire d'assurance maladie, CPAM)에서 일일 출산수당을 지급한다. 지급액은 업무 중단일 이전에 받은 마지막 3개월 치 급여의 합계를 91.25의 계수로 나눈 금액이다. 단, 일일 출산수당은 하루 10.79유로 이상 100.36유로 이하이다. 출산휴가가 끝나면 이전 직장 또는 이와 동등한 급여를 받는 유사한 직장에 복귀하게 되는데, 휴직 기간 동안 같은 직급의 직원들이 받은 개별 인상률 또는 회사 내 개별 인상률의 평균과 동일한 수준의 급여 인상을 받게 된다. 추가로, 3일 출산 및 입양 휴가(Congé de 3 jours pour naissance ou adoption)는 출산을 했거나 입양을 했을 때 근무일 기준 3일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3일간의 휴가이다(Service-public, 2024m). 휴가의 시작 시점은 3일 출산 및 입양 휴가는 자녀가 태어난 날 또는 자녀 출생 후 첫 번째 근무일이다. 출산휴가는 유급 휴가로 출산휴가 기간은 근무 기간으로 인정된다.

공공부문 종사자의 경우 출산휴가 동안에는 기본 급여와 보너스가 전액

지급된다. 또한 출산휴가는 승진, 퇴직 등을 위한 활동 기간으로 간주되고 연차휴가, 병가, 육아휴직 등 다양한 휴가에 대한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출산휴가가 끝나면 이전 직장으로 재배치된다. 불가능할 경우 마지막 근무지와 가장 가까운 동등한 직무에 배치되고 전근 우선순위가 허용하는 경우 집에서 더 가까운 곳으로 배정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이전 직장으로 다시 취업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 동등한 급여를 받는 유사한 직업에 재취업하는 것에 대한 우선권을 갖는다.

#### 나. 배우자 출산휴가 및 자녀돌봄휴가(Congé de paternité et d'accueil de l'enfant)

민간부문 종사자인 자녀의 아버지는 출산휴가 및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자녀의 어머니와 결혼, 이혼 또는 동거(자유 결합) 중인 부부인 경우에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Service-public, 2024n). 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휴가 시작일 기준 최소 6개월 동안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휴가 시작 전 3개월 동안 최소 150시간 이상 근무했거나 휴가 시작 전 6개월 동안 최소 €11,439.05에 해당하는 급여로 보험료를 납부했어야 한다. 고용 계약 형태(정규직, 무기계약직, 기간제 계약직, 임시 계약직)에 관계없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공무원으로 수습(stagiaire) 중이거나 정규직인 경우 또는 파견 중인 자녀의 아버지는 출산휴가 및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자녀의 어머니와 결혼, 이혼 또는 동거(자유 결합) 중인 부부인 경우에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와 자녀돌봄휴가 기간은 25일인데, 다태아 출산의 경우 32일이다. 이 중 출산휴가는 의무적으로 4일을 연속해서 사용해야 한다. 남은 21일(다태아의 경우 28일)의 자녀돌봄휴가는 두 번까지 나누어

쓸 수 있고, 각 기간은 최소 5일 이상이어야 한다. 휴가는 자녀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시작되어야 한다. 자녀가 출생 직후 신생아 집중 치료실과 같은 전문 치료실에 입원하는 경우, 입원기간 동안 연속 4일의 휴가 기간을 최대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민간부문 종사자의 경우 건강보험기본기금(CPAM: Caisse primaire d'assurance maladie)에서 일일 급여를 지급한다(Service-public, 2024o). 지급액은 업무 중단일 이전에 받은 마지막 3개월 치 급여의 합계를 91.25의 계수로 나눈 금액이다. 일일 최대 급여는 업무 전월 말일에 시행 중인 월별 사회보장 한도(2024년의 경우 월 3,864유로)를 초과할 수 없다. 일일 급여는 하루 10.79유로 이상 100.36유로 이하이다. 배우자 출산휴가 및 자녀돌봄휴가는 고용 계약이 정지되는 것을 의미하고 휴가 기간 중에 사직이 가능하다. 휴직이 끝나면 이전 직장(또는 최소한 동등한 급여를 받는 유사한 직장)으로 복귀하게 된다.

공공부문 종사자의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와 자녀돌봄휴가 기간 동안 기본 급여와 보너스가 전액 지급된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와 자녀돌봄휴가는 승진, 퇴직 등을 위한 활동 기간으로 간주되고 연차휴가, 병가, 육아휴직 등 다양한 휴가에 대한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경우 육아휴직 이후에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복직된다. 휴가가 끝나면 이전 직책으로 재배치된다. 불가능할 경우 마지막 직책과 가장 유사한 직책에 배치되고 전근 우선순위가 허용하는 경우 집에서 더 가까운 곳으로 배정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이전 직장으로 다시 취업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 동등한 급여를 받는 유사한 직업에 재취업하는 것에 대한 우선권을 갖는다. 수습 공무원인 경우 육아휴직은 정규 공무원이 되는 날짜에 영향을 주지 않고 특정 조건하에서 수습 기간을 연장하게 된다.

## 다. 입양휴가(Congé d'adoption)

민간부문에서 고용되었거나, 공무원으로 수습(stagiaire) 중이거나 정규직인 경우 또는 파견 중인 경우 모두 입양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입양휴가는 아동 복지 서비스(Service d'aide sociale à l'enfance, Ase), 공식 입양 기관(Agence française de l'adoption, Afa), 입양 허가를 받은 프랑스의 일반 기관에서 입양을 하거나 관할 외국 당국의 결정에 따라 프랑스 입국이 허가된 아동을 입양할 경우에 입양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Service-public, 2024p). 입양휴가 기간은 입양되는 자녀 수, 기존 부양 자녀 수(입양 전), 부모가 휴가를 공유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산정된다.

〈표 3-21〉 입양휴가의 기간 (2024)

입양 자녀 수	출생 자녀 수	휴가 기간 (부모 중 한 사람만 사용 시)	휴가 기간 (부모 2명이 공유)
1명	0~1명	16주	16주+25일
	2명 이상	18주	18주+25일
2명 이상	-	22주	22주+32일

출처: "Congé d'adoption dans le secteur privé," Service-public, 2024p,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2268>에서 2024.8.20. 인출함.

입양휴가는 최대 2개의 기간으로 분할이 가능하고 한 기간은 최소 25일(2명 이상의 아동을 입양할 경우 32일) 이상이어야 한다. 분할된 두 기간은 서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동시에 부모 2명이 사용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입양휴가는 자녀가 집에 온 날부터 시작되나 경우에 따라 자녀가 집에 도착하기 7일 전부터 시작할 수 있다(Service-public, 2024p).

입양휴가는 휴가 기간 동안 고용 계약이 정지되는 무급 휴가이다. 하지

만 조건에 따라 사회보장일일수당(Indemnités journalières de sécurité sociale, IJSS)을 받을 수 있다. 2023년 8월 20일 이후에 입양휴가를 사용한 경우 입양휴가 기간 동안 입양 부모는 자녀를 입양한 날을 기준으로 최소 6개월 동안 사회보험에 피보험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입양 날짜 이전 3개월 동안 최소 150시간 이상 일했어야 하고 이전 6개월 동안 누적된 급여가 €11,824.75 이상인 경우에 사회보장일일수당을 수급할 수 있다. 수급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기본 일급이 필요한데, 기본 일급은 업무 중단일 이전에 받은 마지막 3회 급여의 총액을 계수 91.25로 나누어야 한다. 기본 일급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급여는 업무 중단 전월 말일에 시행 중인 월별 사회보장 상한액(예: 2024년의 경우 월 3,864유로)으로 제한된다. 사회보장국(La sécurité sociale)은 이 기본 일급에서 21%의 고정 비율을 공제한다. 입양 혜택의 일별 최소 금액은 €10.79이고 최대 금액은 €100.36이다(Service-public, 2024p).

## 라. 육아휴직(Congé parental d'éducation)

육아휴직은 자녀가 3세가 될 때까지 육아를 위해 근로 활동을 중단하거나 축소하고자 할 때 활용하는 제도로 민간부문의 직장인, 자영업자와 공무원이 활용할 수 있다(aide-sociale, 2024e). 육아휴직 기간에 급여를 받을 수 없더라도 휴직 후에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고, 휴직 기간 동안 다양한 유아 관련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자녀를 돌보기 위해 일을 중단할 수 있는 공동양육수당(PreParE)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육아휴직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입양휴가와 함께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전후로 기간을 추가하여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민간부문에서 육아휴직은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개인 고용

주 및 재택근무에 대한 국가 단체 협약의 적용을 받는 하나 이상의 직업(emploi)에서 최소 1년의 경력을 갖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최초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이며 자녀의 질병, 심각한 사고 또는 심각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Service-public, 2024q).

공무원 등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육아휴직은 자녀 양육을 위해 일을 완전히 중단하는 기간으로 무급 휴직이다. 육아휴직은 16세 미만의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후 부여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은 자녀를 돌보는 부모 또는 공무원 중 한 명 또는 둘 중 한 명에게 부여하거나 동시에 두 명이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은 정규직 또는 수습직 공무원에 관계없이 사용 가능하다. 육아휴직 신청서는 휴직 시작일 최소 2개월 전에 제출해야 하고 갱신 신청은 현재 육아휴직 기간이 끝나기 최소 1개월 전에 제출해야 한다(Service-public, 2024r).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의 만 3세 생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2명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는 어린이집에 들어갈 때까지 사용할 수 있고, 3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는 자녀의 여섯 번째 생일까지 최대 5회 연장이 가능하다. 입양한 경우에는 입양 자녀가 2명 이하일 때는 3세 미만의 입양 자녀는 입양된 날로부터 3년, 3세 이상의 입양 자녀는 입양된 날로부터 1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3명 이상의 자녀를 입양할 경우는 막내 자녀의 여섯 번째 생일까지 최대 5회 연장이 가능하다. 육아휴직은 2~6개월의 기간으로 갱신할 수 있다. 육아휴직은 자녀의 만 3세 생일 전 또는 만 3세 미만 자녀 입양 후 3년 등 자격이 되는 기간 중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다. 다만 육아휴직은 분할이 불가하고 연속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자녀를 출산한 경우와 입양한 경우에 대한 육아휴직은 다음의 표와 같이 요약된다.

〈표 3-22〉 출생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2024)

출생 자녀 수	최대 최초 기간	휴가 갱신 가능 횟수	휴가 종료
1명	1년	2회	자녀의 세 번째 생일 전까지
2명	1년	2회	어린이집 입학일 전까지
3명 이상	1년	5회	자녀의 여섯 번째 생일 전까지

출처: “Congé parental d’éducation à temps plein pour un salarié du secteur privé,” Service-public, 2024q,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2280>에서 2024.8.20. 인출함.

〈표 3-23〉 입양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2024)

3세 미만 입양 자녀 수	최대 최초 기간	휴가 갱신 가능 횟수	휴가 종료
1명	1년	2회	자녀가 집에 도착한 후 3년 이내
2명	1년	2회	자녀가 집에 도착한 후 3년 이내
3명 이상	1년	5회	자녀의 여섯 번째 생일 전까지

출처: “Congé parental d’éducation à temps plein pour un salarié du secteur privé,” Service-public, 2024q,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2280>에서 2024.8.20. 인출함.

입양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에서 3세 이상 16세 미만의 자녀를 입양한 경우에는 휴가의 갱신이 불가능하며 자녀가 집에 도착한 후 1년 이내에 육아휴직은 종료된다. 출산휴가 또는 입양휴가 직후에 육아휴직이 시작되는 경우, 해당 휴가(출산 또는 입양)가 끝나기 최소 1개월 전에 고용주에게 이를 알려야 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육아휴직 시작 최소 2개월 전에 고용주에게 통보해야 한다. 육아휴직을 연장하거나 시간제로 근무 형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최초 육아휴직이 끝나기 최소 1개월 전에 고용주에게 통보해야 한다. 육아휴직 중에는 고용 계약이 중단되고 이에 따라 급여는 지급되지 않는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보육교사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없다.

공공부문 종사자의 경우, 육아휴직은 무급 휴직으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지만 육아휴직 기간은 실제 근무한 것으로 간주된다. 2019년 8월 8일

이후 육아휴직 기간은 전체 경력에 걸쳐 최대 5년까지 직급 및 직급 승진에 고려되었는데, 2019년 8월 8일부터 경력 기간 중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 또는 휴직을 사용한 경우, 전체 경력에 걸쳐 최대 5년을 한도로 상위 단계 및 등급으로 승진할 때 고려된다. 단, 육아휴직 기간은 내부 승진에 고려되지 않는다. 휴직 시작 전에 취득한 권리 중 휴직으로 인해 행사할 수 없었던 권리(연례 평가 및 면담에 대한 권리, 연차 휴가 및 교육에 대한 권리 등)는 그대로 유지된다. 수습 공무원인 경우 정규 공무원이 되었을 때 등급 및 승진 목적의 근속을 계산할 때 육아휴직 기간의 절반이 고려된다. 육아휴직 중에는 직장에서의 예측 가능한 변화에 적응하고 자격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기술을 유지 또는 향상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 경력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자신의 기술, 적성 및 동기를 분석할 수 있는 기술 평가와 같은 교육 과정을 신청할 수 있다. 교육 기간 동안 육아휴직은 유지되지만, 교육에 소요된 시간은 실제 근무 시간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급여나 수당을 받을 자격이 없다. 200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인당 최대 3년까지 퇴직시 반영된다. 육아휴직이 끝나면 원래의 직책으로 복귀하게 된다. 파견 근무 중인 경우 최소한 남은 파견 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 파견 관리 부서로 다시 배치된다. 이전 직책으로 재배치가 불가능할 경우, 마지막 직책과 최대한 동일한 직책으로 배정된다. 전근 우선순위가 허용하는 경우 집에서 더 가까운 곳으로 배정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육아휴직 단축을 요청한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복직하게 되는데, 복직 최소 4주 전에 인사 담당자와 면담을 통해 복직 조건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 2. 보육 지원

### 가. 보육 유형

프랑스는 아동의 연령에 따라 3세 미만 아동을 위한 보육 서비스와 3세 이상 아동을 위한 교육 서비스<sup>7)</sup>를 구분한 보육·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3세 미만의 영아는 크레쉬(Crèche) 중심의 집단 보육 서비스와 아이돌보미, 재가보육사 등의 개별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만 3~5세는 대부분 교육 중심의 유아학교(École Maternelle)에서 공교육 서비스를 받는다. 이렇게 이분화된 보육·교육체계는 담당하는 부처도 서로 다르다. 보육서비스는 출산을 제고 및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 아동의 발달에 주된 목적을 두고 사회복지 및 건강부(Ministère des Affaires sociales et de la Santé)에서 담당하고, 유아 교육은 공교육 정책의 일환으로 교육부(Ministère de l'Éducation Nationale)에서 관리한다.

집단 보육(L'accueil collectif)은 어린이집에 들어갈 때까지 또는 방과 후 6세까지 어린이를 집단으로 시설에서 수용하는 보육 유형이다. 이러한 집단 보육시설은 운영 방법과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다양한 시설을 포함한다.

〈표 3-24〉 집단 보육시설의 유형

보육시설	내용
집단 어린이집(Crèche collective)	생후 2개월 반부터 유치원 입학 또는 5세까지의 아이들을 일 년 내내 정기적으로 맞이하는 시설
직장어린이집 또는 가족 보육(Crèche d'entreprise ou service d'accueil familial)	생후 2개월 반부터 유치원 입학 연령 또는 최대 6세까지의 어린이를 위한 시설로, 전체 또는 일부 공간을 회사에서 지원하고, 직원을 위한 보육시설

7) 프랑스는 2019년부터 의무교육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3세로 낮추었다.

보육시설	내용
부모 협동 어린이집(Crèche parentale)	생후 2개월 반부터 유치원생 또는 6세까지의 어린이를 맞이하는 시설로, 자녀 양육에 참여하는 부모 협회에서 관리함
소규모 어린이집(Micro-crèche):	생후 2개월 반부터 유치원에 입학하는 시점 또는 최대 6세까지 최대 10명의 어린이가 있는 시설
다함께 돌봄센터(Établissement multi-accueil)	생후 2개월 반부터 만 6세까지의 어린이가 다양한 유형의 보육, 정기적 및 비정기 보육 또는 집단 및 가족 등 다양한 유형의 돌봄을 결합한 센터
가족 보육 서비스 또는 가족 돌봄 서비스(Crèche familiale ou service d'accueil familial)	낮에는 집에서 자녀를 돌보고 정기적으로 가족 돌봄 서비스 시설을 방문하여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면허가 있는 보육사를 고용하는 가족 돌봄 서비스
시간제 보육(Halte-garderie)	생후 2개월 반에서 6세 사이의 어린이를 정기 또는 비정기적(일회성)으로 맞이하는 시설
자르맹 당팡Jardin d'enfant):	학교에 다니지 않거나 파트타임으로 학교에 다니는 2세에서 6세 사이의 어린이만을 위한 시설로, 일 년 내내 정기적으로 운영
아동-부모 접수 센터(LAEP: Lieux d'accueil enfants - parents)	6세 미만의 어린이가 부모 또는 친숙한 성인과 함께 즐거운 놀이 및 교류 시간에 참여할 수 있음
가교 수업(Classe passerelle)	2~3세 아동이 유아학교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보육원에 입소하는 시설. 아이들은 학교 교사와 유아 교육자의 돌봄을 받음
조기 의료 및 사회 활동 센터(CAMPS):	취학 전 어린 장애 아동을 선별, 진단, 치료 및 재활하는 의료 및 사회 시설

출처: "L'accueil collectif," Solidarites, 2022a, <https://solidarites.gouv.fr/laccueil-collectif>에서 24.4.29. 인출함.

집단 어린이집(Crèche collective)은 가장 대표적인 어린이집의 형태로 생후 만 2개월~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종일제 정규보육을 제공하는 보육시설이다. 주로 영유아의 거주지에서 가까운 위치에 있으며, 최대 60명까지 입소가 가능하고, 한 개의 교실에서 최대 15명까지 수용하고 있다. 집단 어린이집의 직원 배치 수준은 아동 6명당 1명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직장어린이집은 1개 이상의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회사, 관공서, 병원 등)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자녀를 돌보는 보육시설이지만, 일부 어린이집은 지역 어린이들에게 개방되어 있다. 이용 가능 연령은 만 5개

월~만 2세까지며 시설에 따라 만 5세까지 입소할 수 있으며, 60명까지 입소가 가능하다. 부모협동 어린이집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들의 부모들이 협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시설로 전문 보육사들과 함께 부모들도 각자 가용한 시간에 따라 보육에 참여하는데, 부모 참여 방식은 시설에 따라 다르다. 돌봄센터(structures multi-accueil)는 정규 보육(crèches)과 일시 보육(haltes-garderies) 시설을 통합하여 집단 보육, 부모협동보육(부모들이 참여함) 또는 가정보육(개인 보육사 참여)을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설이다. 이는 종일제 보육, 시간제 보육, 일시 보육 또는 위급 보육 등 융통성 있는 운영으로 부모의 다양한 요구조건에 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제공하는 보육 서비스에 따라 다르지만 대상 영유아의 나이는 만 2개월(10주)~6세까지이다(Quelle creche, 2022). 소규모 어린이집(micro-crèches)은 최대 12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로 대상 연령은 만 2개월~5세이다. 집단 어린이집에 적용되는 동일한 규칙을 준수하지만 원장의 역할이나 영유아들을 돌보는 방법 등에 있어 자유롭게 운영이 가능하다. 시간제 어린이집(haltes garderies)은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주당 몇 시간 또는 주당 며칠간의 만나질 등 단기간 일시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주로 생후 만 2개월~만 2세 영아를 대상으로 하고 만 6세 유아들도 입소할 수 있다. 자르맹 당팡(jardins d'enfants)은 학교에 다니지 않거나 파트타임으로 시설에 다니는 2세에서 6세 사이의 아동에게 제공한다. 어린이집과 유아학교의 중간 형태로 종일반으로 운영하면서 집단 어린이집과 동일한 보육시간이 동일하며 정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별 보육(Accueil individuel)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에 따라 국가에서 승인한 아이돌보미(assistante maternelle)에 의한 보육과 별도의 승인 없이 보육을 제공하는 재가보육사(garde à domicile)로 이루어

지는 보육으로 구분된다. 정부 모자보호보건소(PMI)의 자격증을 가진 아이돌보미는 보통 3세 미만 유아를 다양한 환경(가정, 보육보조센터(MAM),<sup>8)</sup> 가정 어린이집)에서 돌보며 다양한 유형의 고용주(부모, 지자체, 협회)와 일할 수 있다(Solidarites, 2022b). 아이돌보미는 일반적으로 2~4명의 아동으로 구성된 소규모 그룹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이돌보미의 시간당 임금은 €3.64 (민간 고용주 및 재택 고용을 위한 전국 단체 협약에 의해 규정된 최저 시간당 임금 4% 인상) 이상일 수 없다(Service-public, 2024s). 2010년부터 공인 아이돌보미들은 자택이 아닌 ‘보조보육센터(Mam)’에서 자신에게 위탁된 영유아들을 보육할 수 있다. 동 시설은 주로 아이돌보미들이 만든 시설로 아이돌보미 한 명당 최대 4명의 영유아를 돌볼 수 있다.

재가보육사(garde à domicile) 제도는 아동의 집에서 해당 아동을 돌보는 제도이다(Solidarites, 2024). 아동이 아주 어릴 경우, 재가보육사는 베이비시터와 같은 일을 하고, 아동이 학교에 다니는 경우, 등·하원 지도, 간식 제공, 학교 과제 감독, 필요시 목욕 및 저녁 식사 조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부모가 직접 보육사를 찾아서 계약의 형태로 직접 고용하거나, 혹은 부모와 보육사를 연결해주는 국가 인증 조직(협회 또는 회사)의 소개로 부모가 재가보육사를 고용할 수 있다. 재가보육사는 아이돌보미와 달리 별도의 자격증이나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8) 보육보조센터(maison d'assistantes maternelles)는 MAM으로 일반적으로 11세 미만(11세 미만 아동은 최대 6명)의 아동을 돌볼 수 있는 4명 이상의 아이돌보미가 모여서 운영하는 시설이다.

## 나. 보육 현황

2021년 현재 3세 미만 아동의 주된 보육 형태는 (부)모가 돌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돌보는 경우는 전체 중 56%이고, 부모 이외의 보육 형태로는 개별 보육(20%), 집단 보육(18%), 조부모 또는 다른 가족(3%), 기타(3%) 순이었다(CNAF, 2023, p.8).

연도별 보육 유형의 변화를 살펴보면, 2002년 이후 여성의 취업률 증가로 인해 주로 부모가 보육을 제공하는 비율은 급격히 감소(-14%p)하였고, 동시에 보육시설과 개별 보육에서 돌보는 비율이 각각 9%p, 7%p로 약 두 배 정도 증가하였다(CNAF, 2023, p.8).

〈표 3-25〉 만 3세 미만 아동의 평일 주된 보육 유형(2002~2021)

(단위: %)

구분	부모	조부모 또는 기타가족	개별 보육	보육시설 (EAJE)	기타
2021	56	3	20	18	3
2013	61	3	19	13	5
2007	63	4	18	10	5
2002	70	4	13	9	4

주: 개별 보육\_보육보조센터 maison d'assistantes maternelles,

보육시설은 établissement d'accueil du jeune enfant(crèche, halte-garderie).

'평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출처: "L'accueil du jeune enfant en2023," CNAF, 2023, p.8.

이용하고 있는 주된 보육과 보조 보육의 유형을 살펴보면, 부모가 전적으로 아동을 돌보는 비율이 34%이며, 부모가 주된 보육을 제공하고 다른 유형의 보조보육을 이용하는 비율은 22%이다. 부모가 보조보육 형태인 경우는 35%로 나타났다.

〈표 3-26〉 만 3세 미만 아동의 평일 주된 보육 및 보조 보육 유형(2021)

(단위: %)

주요 보육	보조 보육	3세 미만 아동(%)	주된 보육 시간	보조 보육 시간
부모	없음	34	55h 00	
	개별 보육	8	34h 03	19h 44
	보육시설(EAJE)	6	36h 27	17h 31
	조부모 또는 기타 가족	5	45h 30	08h 44
	학교	3	36h 45	16h 36
개별 보육	부모	19	37h 03	16 h 50
시설 보육	부모	16	38h 35	15 h 30
	기타	9		
	전체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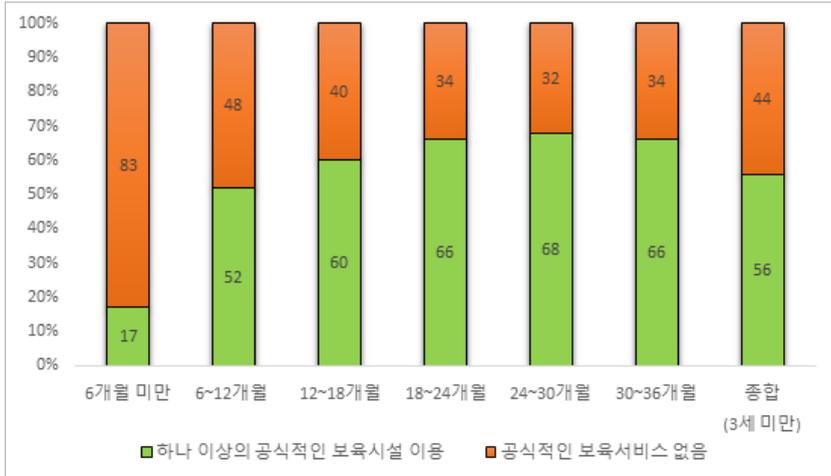
주: 개별 보육\_보육보조센터 maison d'assistantes maternelles, 보육시설은 établissement d'accueil du jeune enfant(crèche, halte-garderie). '평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출처: "L'accueil du jeune enfant en2023", CNAF, 2023. p.8.

연령별에 따른 보육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아동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보육서비스 이용이 증가한다. 6개월 미만의 아동에서는 17%가 공식적인 보육서비스를 이용하였으나, 6개월 이후 이용률은 52%로 크게 상승하며, 12개월 이후에는 60%를 넘는다. 만 3세 미만의 공식 보육서비스 이용률은 56%로, 절반 이상이 공식적인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1] 혜택을 받는 가정의 만 3세 미만 아동의 연령별 공식 보육 이용 비율(2021)

(단위: %)



주: 개별 보육\_보육보조센터 maison d'assistantes maternelles.  
 범위: 프랑스 전체. 특정 연령대의 경우, 12월에 1시간 이상 보육에 참석한 3세 미만 아동 수를 수급자 가정의 3세 미만 아동 수(즉, 12월 한 달간 수급자 표(FRG)에 나타난 아동 수)로 나눈 값  
 출처: "L'accueil du jeune enfant en2023," CNAF, 2023, p.10.

2022년 9월 기준, 3~5세 어린이 2,250,000명이 공립 및 사립 부문의 34,000개 유아학교에 등록하였다. 유아학교의 84%는 공립학교이다. 전체 유아학교의 만 3세 등록률은 97.4%, 만 4세의 경우 99.4%, 만 5세의 경우 100%로 대부분 유아학교를 등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학교는 28,000명의 장애 학생을 수용하고 있다.

<표 3-27> 연령별 유아학교 등록률(2022)

(단위: %)

연령	등록률
3세	97.4
4세	99.4
5세	100.0

출처: "L'accueil du jeune enfant en2023," CNAF, 2023, p.8.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가정에 적용되는 요금은 자녀를 돌보는 시간, 가정의 소득 수준, 자녀 수에 따라 결정된다. 보육료 규모는 소득에 비례하기 때문에 가정의 비용 비율은 소득의 4.7%에서 6.8% 사이로 비교적 일정하다. 개별 보육의 경우, 그 편차가 더 크고 소득이 증가할수록 비용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최저임금을 일 년에 한 번 받는 부부는 소득의 12.9%를 보육비용으로 지출하는 반면, 최저임금을 여섯 번 받는 부부는 5.2%를 지출한다.

#### **다. 보육비 지원 정책: 단일서비스수당(PSU) 및 보육유형 자유선택 보조금(CMS)**

프랑스의 보육비용은 지자체 지원, 수당, 본인 부담금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비용의 약 4분의 1을 지방정부가 부담한다. 나머지 비용은 소득에 따라 부모와 단일서비스수당(Prestation de service unique, PSU)에서 일부 분담하고, 가족수당금고(CAF)가 보육유형 자유선택 보조금(Complément de libre choix du mode de garde, CMG)을 통해 부담금과 보육교사 임금의 일부를 충당한다. 가족수당금고는 보육시설의 자금 조달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데, 양육가구는 소득과 가족 구성에 따라 전국이 동일한 비율로 가족수당금고에 비용을 지불한다. 또한 특정 조건에 따라 집단 시설의 6세 미만 아동 보육비용에 대해 세액 공제가 적용될 수 있다(Monenfant, 2019).

우선, 단일서비스수당(PSU)은 영유아 보육시설의 운영을 지원하는 중요한 재정 지원 제도이다. 보육시설은 가족수당금고로부터 직접 단일서비스수당을 지원받는다. 이 제도는 주로 “Établissements d'Accueil du Jeune Enfant(EAJE)”라고 불리는 보육시설에 적용되며, 여기에는 다

양한 형태의 어린이집, 종합 돌봄 시설 등이 있다. 보육료의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의 소득이 낮을수록 가족수당금고에서 지급하는 금액이 높아진다. 이는 모든 아동의 보육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서이다. 둘째, 단일수당서비스는 전국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며, 보육료는 가구소득과 부양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진다. 셋째, 보육 시간에 따라 보육료가 계산된다. 통상 시간은 30분 단위로 계산되며, 출석 시간에 따라 보육비용이 달라진다. 시간당 요금은 가족 구성(부양 자녀) 및 보육시설 유형에 따라 가족의 월 소득의 백분율로 계산한다.

보육시설의 시간당 보육료는 가구의 아동 수에 따라 다르다. 아동 수는 1명, 2명, 3명까지는 명수별로 차등을 두지만 4~7명, 8~10명은 구간별로 차등을 둔다. 아동의 수가 많을수록 보육료율은 낮아진다. 아동 1명인 경우 0.0619%, 아동 2명인 경우 0.0516%, 아동 3명인 경우 0.0413%, 아동 4~7명은 0.0310%, 아동 8~10명은 0.0206%이다.

〈표 3-28〉 보육시설에 청구되는 시간당 보육료

(단위: %)

아동 수	2020	2021	2022
아동 1명	0.0610%	0.0615%	0.0619%
아동 2명	0.0508%	0.0512%	0.0516%
아동 3명	0.0406%	0.0410%	0.0413%
아동 4명	0.0305%	0.0307%	0.0310%
아동 5명			
아동 6명			
아동 7명			
아동 8명	0.0203%	0.0205%	0.0206%
아동 9명			
아동 10명			

주: 2023년은 2022년과 동일함.

출처: "La PSU Prestation de service unique Guide pratique," CAF, 2023, p.8.

가족 또는 부모에게 청구되는 보육료는 아동의 수가 많을수록 보육료율이 낮아지는데, 아동 1명, 2명까지는 명수별로 차등을 두지만 3~5명, 6~10명까지는 구간별로 차등을 둔다. 아동 1명인 경우 보육료율은 0.0516%, 아동 2명인 경우 0.0413%, 아동 3~5명은 0.0310%, 아동 6~10명은 0.0206%이다.

〈표 3-29〉 가족/부모에게 청구되는 시간당 보육료

(단위: %)

아동 수	2020	2021	2022
아동 1명	0.0508%	0.0512%	0.0516%
아동 2명	0.0406%	0.0410%	0.0413%
아동 3명	0.0305%	0.0307%	0.0310%
아동 4명			
아동 5명			
아동 6명	0.0203%	0.0205%	0.0206%
아동 7명			
아동 8명			
아동 9명			
아동 10명			

출처: “La PSU Prestation de service unique Guide pratique,” CAF, 2023, p.7.

2023년 최대 시간당 보육료를 적용하였을 때, 최소 하한금액은 754.16유로이고, 상한 금액은 6,000유로이다.

〈표 3-30〉 보육료의 상한과 하한

년도	하한금액	상한금액
2020	705.27€	5,600€
2021	711.62€	5,800€
2022	712.33€	6,000€
2023	754.16€	6,000€

출처: “La PSU Prestation de service unique Guide pratique,” CAF, 2023, p.8.

보육유형 자유선택 보조금(CMG)은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시설 보육 자리를 대신하여 개별 보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가정을 위해 보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보조금이다. 만 6세 미만의 자녀 양육을 위해 공인된 보육사인 아이돌보미(assistante maternelle) 또는 재가보육사(garde à domicile)를 고용하거나, 국가 인증을 받은 조직 또는 소규모 어린이집(micro-crèche)<sup>9)</sup>등을 이용하는 경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보육유형 자유선택 보조금(CMG)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가 직업이 있어야 한다. 부모의 집에서 직접 보육 도우미를 고용하거나(공동 양육권 여부) 또는 협회 또는 승인된 회사를 통해 고용(자녀는 한 달에 최소 16시간 동안 보살핌을 받아야 함)해야 한다. 보조금은 가족수당금고 또는 농업사회기금(Mutualité sociale agricole, MSA)에 신청해야 한다. 보육유형 자유선택 보조금(CMG)은 부모의 소득, 연령, 보육시설에 등록된 자녀의 수 및 월 보육시설 이용 시간을 고려하여 계산되며, 보육유형 자유선택 보조금(CMG)은 가장 혜택을 많이 받는 경우라 할지라도 보육비의 최소 15%는 부모가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조건에 따라 부모는 자신이 지불한 보육비의 최대 85%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Service-public, 2024x). 가구소득 구간별 최대 지원 금액은 3세 미만인 경우 최대 529.28유로에서 최소 200.22유로이며, 3~6세인 경우 최대 264.64유로에서 최소 100.11유로이다.

9) 이 경우 최대 10명 이하의 어린이를 수용해야 함.

〈표 3-31〉 보육유형 자유선택 보조금(Cmg) 보조금 척도(직접고용) (2024)

(단위: €)

부양 자녀 수	부모의 가구소득 구간		
	하위	중위	상위
1명	22,809	22,809~50,686	50,686
2명	26,046	26,046~57,881	57,881
3명	29,283	29,283~65,076	65,076
4명	32,520	32,520~71,909	71,909
추가 자녀 수	+ 3,237	+ 3,237~ +6,833	+6,833
자녀의 연령	CMG의 최대 월간 금액		
	하위 (26,046 이하)	중위 (26,046 ~ 57,881)	상위 (57,881 이상)
3세 미만	529.28	333.75	200.22
3~6세	264.64	166.90	100.11

출처: “Free choice of mode of care (CMG) supplement - Home care,” Service-public, 2024x,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31101?lang=en>에서 24.4.9. 인출함.

〈표 3-32〉 보육유형 자유선택 보조금(Cmg) 보조금 척도(보육기관 등을 통해 이용) (2024)

(단위: €)

부양 자녀 수	부모의 가구소득 구간		
	하위	중위	상위
1명	22,809	22,809~50,686	50,686
2명	26,046	26,046~57,881	57,881
3명	29,283	29,283~65,076	65,076
4명	32,520	32,520~71,909	71,909
추가 자녀 수	+ 3,237	+ 3,237~ +6,833	+6,833
자녀의 연령	아이돌보미에 대한 CMG의 월별 금액		
	하위	중위	상위
3세 미만	800.92	667.44	533.96
3~6세	400.46	333.73	266.98

부양 자녀 수	부모의 가구소득 구간		
	하위	중위	상위
자녀의 연령	시설(소규모 어린이집 등)에 대한 CMG의 월별 금액		
	하위	중위	상위
3세 미만	967.81	834.28	700.80
3~6세	483.91	417.15	350.40

출처: "Free choice of mode of care (CMG) supplement - Home care," Service-public, 2024x,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31101?lang=en>에서 24.4.9. 인출함.

## 라. 보육비 지원 정책: 세액 공제(Impôt sur le revenu-Crédit d'impôt)

자녀 양육 및 보육비 지원 정책으로 소득세의 세액 공제(tax credit)는 보육시설이나 등록된 보육사에게 맡기는 경우와 가정에서 보육사를 고용할 경우로 구분되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세액 공제는 양육비 부담을 감소시키고, 양육자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소득에 대한 기준 없이 모든 자녀 또는 손자녀 양육 가구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구체적 조건은 다음과 같다. 우선 아동은 과세 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만 6세 이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2023년에 대한 2024년 세금 신고의 경우 2017년 이후에 출생한 아동이어야 한다. 또한 자녀나 손자녀를 부양하고 있어야 한다. 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보육비는 식비를 제외하고 보육을 위해 지출한 보육 서비스 비용 및 관련 사회보험료이다. 공제 금액은 보육비 중 보육유형 자유선택 보조금(CMG)을 제외하고 본인이 직접 지출한(본인 부담) 보육비의 50%이다.

우선, 집 밖에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한 것에 대한 소득세(Impôt sur le revenu - Frais de garde d'enfant hors du domicile) 세액 공제

(crédit d'impôt)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나 손자녀를 보육시설이나 등록된 보육사에게 맡길 경우 받을 수 있는 세액 공제로, 해당 아동은 승인된 아이돌보미(assistante maternelle agréée) 또는 공인된 보육시설(crèche, halte-garderie, garderie scolaire, centre de loisirs 등)을 이용해야 한다. 세액 공제 금액의 한도를 살펴보면, (손)자녀 한 명당 연간 최대 3,500유로(약 5,251,000원)의 보육비가 공제 대상 금액으로 인정되어 최대 1,750유로(약 2,625,000원)의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보육비로 연간 4,500유로를 지출하고 보육유형 자유선택 보조금(CMG)으로 연간 3,500유로를 받은 경우 연간 1,000유로의 보육비를 신고하고 500유로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Service-public, 2024t).

가정에서 지불한 보육비에 대한 소득세(Impôt sur le revenu - Crédit d'Impôt pour Emploi d'un Salarié à Domicile)에 대한 세액 공제(crédit d'impôt)는 가정에서 만 6세 이하의 자녀나 손자녀를 돌보는 재가보육사를 고용하여 서비스를 받거나, 보육사를 제공하는 국가 인증 조직(협회 또는 회사) 또는 단체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적용된다. 공제 금액은 보육비 지출액의 50%이다. 연간 최대 12,000유로(약 18,000,000원)의 보육비의 지출이 인정되고, 이에 따라 최대 6,000유로(약 9,000,000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자녀 가구는 보다 높은 한도가 적용되는데, 자녀가 2명인 경우 최대 15,000유로까지 인정되어 7,500유로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하고, 자녀가 3명인 경우 최대 18,000유로까지 인정되어 최대 9,000유로의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Service-public, 2024t).

## 제3절 건강 지원 정책

본 절에서는 프랑스에서 추진 중인 임신·출산 및 노인 돌봄과 관련된 건강 지원 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정책을 이해하기 위해 프랑스의 보건의료 체계를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 1. 프랑스 보건의료 체계

프랑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이고, 인구 1,000명당 약사 수는 OECD 회원국 평균 수준보다 높다. 인구 1,000명당 CT와 MRI 수는 OECD 회원국 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이며 PET는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이다.

〈표 3-33〉 인구 1,000명 의료인력 현황(2020)

(단위: 명/인구 1,000명당)

구분	의사 수	활동 약사 수	활동 간호사 수
프랑스	3.2	1.0	-
한국	2.5	0.8	8.4
OECD 평균	3.6	0.9	9.6

주: 프랑스의 활동 간호사 수에 대한 자료는 없음.  
출처: "Health Data," OECD, 2021.

〈표 3-34〉 인구 1,000명 의료장비(2020)

(단위: 명/인구 1,000명당)

구분	CT	MRI	PET
프랑스	18.9	16.3	2.7
한국	40.6	34.2	3.6
OECD 평균	29.4	18.7	2.5

출처: "Health Data," OECD, 2021.

〈표 3-35〉 인구 100만 명당 병원 수(2020)

(단위: 개소/인구 100만 명당)

구분	병원	공공병원	비영리병원	영리민간병원	일반병원
프랑스	44.2	19.9	9.9	14.4	27.6
한국	79.2	4.3	74.9	-	36.1
OECD 평균	33.5	14.0	7.2	14.8	16.8

출처: "Health Data," OECD, 2021.

〈표 3-36〉 병원 수(2020)

(단위: 개소)

구분	연도별 기관 수	
	2013년	2020년
<b>공공부문</b>	<b>1,420</b>	<b>1,347</b>
지역병원센터/대학병원	183	180
병원센터, 전 지역 병원	720	726
병원센터, 오래된 지역 병원 포함	261	210
병원센터, 정신과 전문	98	92
기타 공공시설	158	139
<b>민간 비영리 부문</b>	<b>683</b>	<b>670</b>
암센터	21	20
급성기진료(단기) 또는 다분야 시설	156	133
재활치료 시설	368	361
기타 비영리시설	138	156
<b>민간 영리 부문</b>	<b>1,019</b>	<b>927</b>
단기치료 또는 다분야 시설	534	468
재활치료 시설	335	342
정신질환 시설	144	152
기타	6	10
<b>합계</b>	<b>3,122</b>	<b>2,989</b>

출처: "Les établissements de santé," 2022b, DREES.

〈표 3-37〉 병원 특성에 따른 기관 현황(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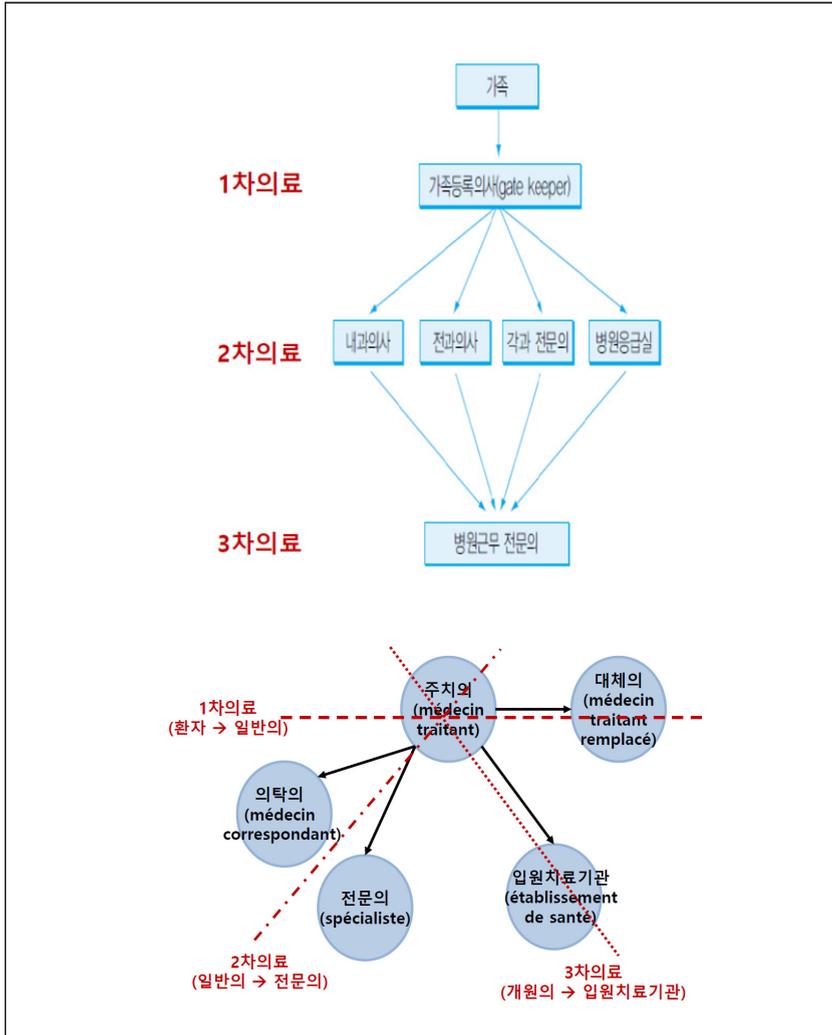
(단위: 개)

구분	연도별 기관 수	
	2013년	2020년
<b>공공부문</b>	<b>256,934</b>	<b>237,941</b>
지역병원센터/대학병원	73,636	67,660
병원센터, 전 지역 병원	134,735	129,060
병원센터, 오래된 지역 병원 포함	10,661	9,207
병원센터, 정신과 전문	25,873	21,362
기타 공공시설	12,030	8,652
<b>민간 비영리 부문</b>	<b>58,103</b>	<b>55,605</b>
압센터	2,887	2,702
급성기진료(단기) 또는 다분야 시설	19,401	18,300
재활치료 시설	25,377	25,098
기타 비영리시설	10,438	9,508
<b>민간 영리 부문</b>	<b>97,890</b>	<b>97,357</b>
단기치료 또는 다분야 시설	57,766	49,472
재활치료 시설	27,043	29,402
정신질환 시설	12,579	13,975
기타	502	508
<b>합계</b>	<b>412,927</b>	<b>386,903</b>

출처: “Les établissements de santé,” 2022, DREES.

프랑스에서 환자는 먼저 주치의를 방문하고 향후 의료절차를 주치의와 상의해 결정한다. 다만, 질환이 명확한 경우 주치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병원을 방문할 수 있다(예를 들어, 부인과, 치과, 정신과, 신경정신과, 안과, 구강 등). 주치의가 부재할 때는 대체의를 방문한다. 대체의는 사전에 지정해 둔다. 주치의는 특별한 검사나 진단을 위해 다른 개원의를 추천해 줄수 있다. 상황에 맞게 다른 전문의를 연결시킬 수도 있다. 주치의는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입원치료기관을 이어준다. 의사의 소견서 없이 입원치료기관을 방문하면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그림 3-2] 프랑스의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출처: 저자 작성

프랑스의 주치의제도(Le médecin traitant)는 진찰 횟수 및 불필요한 의료비용의 발생을 억제하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일차 의료서비스의 종합화와 일반화를 통해 전체 의료전달체계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환자의 건강 상태를 잘 아는 주치의를 선정함으로써 치료 효과성을 높이고 환자의 건강상태의 특이사항에 따라 후속 치료과정으로 연계하는 역할을 하도록 한다. 서비스 이용의 조정을 통해 전문의와 일반의 간의 역할 구분을 강화했다.

건강보험은 강제가입 형태의 기초건강보험과 임의가입 형태의 보충건강보험의 2중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2018년 기준 일반 레짐(Régime Général)에 전체 인구의 95.1%(6,240만 명)가 가입하고 있다. 가입자의 직업이나 직종은 제조업, 민간기업의 임금근로자와 고용주, 공무원, 기존의 자영업제도 피보험자(자영업자, 예술가 등 자유직업군과 변호사 등 개인사업자) 등이 속한다. 2017년 기준 280만 명의 가입자를 가진 자영업제도(Régime sautonomies)는 2018년 1월 1일부터 2년간 일반 레짐과 통합하는 작업을 시행하여 2020년 완전 통합되었다. 일반 레짐의 관리와 운영은 전국건강보험기금(CNAM; Caisse nationale de l'assurance maladie)에서 담당하고 있다.

보편건강보호제도(PUMa. Protection Universelle Maladie)는 프랑스에서 합법적으로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국적 불문)에게 평생 지속적이고, 개인적으로 의료비 환급을 보장(의료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로, 사회보장재정법(Social Security Financing Act) 제59조에 의해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PUMa가 도입됨에 따라 1999년부터 시행 중이던 보편적 의료보장제도(CMU) 중 공적 건강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던 기본제도(CMU-base)가 폐

지되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충적 보편의료보장제도(CMU-C)는 유지되었다. 기존의 보편적 의료보장 기초보편질병보장제도(CMU-base)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으며, 12개월만 지원(1년 단위 갱신)하는 등 대상 자격의 제한 및 신청 자격을 가입자가 입증해야 하는 문제점 등으로 의료보장 혜택이 누락되는 대상이 발생한다. 보편건강보호제도(PUMa)는 직업 활동 유무와 관계없이, 거주요건만 충족되면 지원 기간 제한 없이 의료보장 혜택을 부여하며, 소득 등 가입자가 입증해야 하는 제반 조건들을 관리기관에서 파악하도록 하여 보험료 부과 및 자격 상실 처리 등의 조건과 행정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문제점을 해소했다.

〈표 3-38〉 국민의료비 현황

(단위: 억 US\$PPP, US\$PPP, %, %)

구분	전체 국민의료비	1인당 국민의료비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중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의료비 비중
프랑스	3,695.1	5,468	12.2	84.7
우리나라	1,856.9	3,582	8.4	62.6
OECD 회원국 평균	2,081.3	4,272	9.7	76.3

주: 전체 국민의료비 및 1인당 국민의료비는 PPP(purchasing Power Parity) 기준 금액임.  
출처: "Health Data," OECD, 2021.

## 2. 임신과 출산 지원

### 가. 출산 지원

임신과 출산 관련 비용은 건강보험(Assurance maladie)에서 100% 보장된다. 임신 시작부터 출산 후 12일까지의 검사가 모두 건강보험에서 지원된다.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 임신 3개월 전에 신고해야 한다. 임신 5개월 전에 실시한 2회의 초음파 검사는 70% 보장되고, 3차 초음파 검사는 100% 지원된다. 3차 초음파를 통해 태아의 기형과 유전적 병력을

검사한다. 산전 진료는 의무이며 임신 3개월 이전에 1회, 4개월부터 월 1회를 해야 한다. 출산과 관련된 비용은 선불로 지불할 필요가 없다 (Service-public, 2024u).

한편 개인의 선택으로 인한 편익 비용(TV, 동반자 식사) 그리고 개인실의 경우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이 비용은 대략 하루 80유로 정도 된다. 그리고 개인병원이나 개인의 선택으로 인한 상급병원에서의 출산은 개인에게 추가 비용이 요구된다. 물론 개인 추가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가정에서 조산사의 도움을 받아 출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의료보험이 적용된다. 조산사의 비용은 최대 349.70유로까지 보장된다. 프랑스 공공병원의 분만 비용은 제왕절개나 합병증이 없는 경우 평균 2,600유로이다.

## 나. 난임 지원

2022년 2월 약 20명의 산부인과 의사, 심리학자, 생물학자가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에서 20~49세 성인 1,500만 명 중 330만 명의 여성과 남성이 불임 문제를 경험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불임의 위험은 증가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첫 임신 연령은 1967년 평균 22세에서 2016년 30.4세로 점점 늦어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불임의 위험성은 커지고 있다(Salomé Robles, 2024). 프랑스 여성의 21.3%가 출산 시 35세 이상이고, 4.1%가 40세 이상이다.

엠마뉴엘 마크롱 대통령은 불임은 인구학적 측면에서 재앙이고 이를 퇴치하기 위해 정부의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2024년 1월 16일 기자회견에서 발표했다. 불임 퇴치를 위해 20세 전후 ‘불임 검사’를 모든 사람에게 제공하고, 건강보험에서 100% 비용을 지원한다. 의료 보조(Procréat

ion médicalement assistée, 이하 PMA)를 통한 출산은 현재 16~24개월을 병원에서만 지원하고 있다. 향후 민간센터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방할 계획이 발표되었다(J.D., 2024). 비의학적 이유로 29~37세 모든 여성은 난자를 냉동할 수 있다. 인공수정(inséminations)은 최대 6회, 시험관 시술(Fécondation in vitro)은 최대 4회까지 가능하다(Service-public, 2024v).

PMA의 사회보장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기본기금(CPAM)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PMA의 지원 대상은 이성 커플, 두 명의 여성으로 구성된 커플, 미혼 여성이다. PMA는 이성 커플만을 대상으로 하다가 2021년 8월 2일부터 생명윤리법에 따라 대상이 확대되었다. PMA의 지원을 받는 것에 대해 개인의 성정체성이나 혼인 여부에 따른 차별은 없지만 연령에는 제한이 있다. 즉, 여성의 경우 43세까지, 남성의 경우 60세까지 난자와 정자를 수집할 수 있다. 그리고 배아 이식은 여성이 45세 이전까지 가능하다(Ameli, 2023).

임신을 위해 12~18개월간 시도하였으나 실패한 경우 담당 산부인과 의사는 임신을 원하는 커플을 ‘출산에 대한 의료보조 센터(centres d’AMP<sup>10)</sup>)’로 의뢰한다. AMP센터는 지역보건소(agence régionale de santé)의 장이 승인하고, AMP의 임상-생물학적 의료팀의 평가와 면담을 마친 후 이용할 수 있다. 면담은 지원자의 동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면담을 통해 난임 시술에 대한 기술적 내용, 부작용 등에 대해 알려준다. 면담 후 신청자(커플 또는 미혼 여성)에게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가이드 파일이 제공된다(Ameli, 2024).

10) AMP(assistance médicale à la procréation)는 출산에 대한 의료 보조를 의미하고, 이는 PMA와 비슷하게 쓰임.

- 의료 지원 출산 및 입양과 관련된 규제 조항
- 기술에 대한 설명
- 비식별 데이터에 대한 접근 정보(기증으로 인해 발생한 제3자 기증자의 신원)

한편, 18~37세 여성은 출산 여부와 관계없이 자신의 난자를 기증할 수 있으며, 18~44세 남성은 정자를 기증할 수 있다. 기증은 병원에서 무료로 이뤄지며 익명으로 진행된다. 난자 채취 전에 건강 검진을 실시하고, 1회 이상 의료진과 면담을 한다. 의사는 면담을 통해 신원, 나이, 기증 당시의 일반적 상태, 신체적 특성, 가족 및 직업 상황, 출생 국가, 기부 이유와 같은 정보를 서면으로 수집한다. 2022년 9월 1일부터 기부자는 각 기부에 대해 비식별 데이터 및 신원을 전송하는 데 동의해야 한다. 이 데이터는 기증으로 인해 태어난 사람이 요청하는 경우 성년이 되었을 때 전달된다. 난자 기부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기부에 따른 의료비는 전액 건강보험에서 지원된다(Service-public, 2024w).

### 3. 노인 개인별 자립수당(L'allocation personnalisée d'autonomie, APA)

프랑스는 이미 1997년 말부터 6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공적 장기요양 체계를 기반으로 의존특별수당(Prestation Spécifique Dépendance)을 도입했다. 2002년 1월부터 노인 개인별 자립수당(L'allocation personnalisée d'autonomie, APA)은 60세 이상 노인 중 노인성 질환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에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사회통합 지향을 목표로 운영되는 APA는 소외되기 쉬운 독립된 삶을 영위하기 힘

든 노인들을 위해 사회보장 개념을 기반으로 별도의 보험료 없이 조세로 운영된다. 2003년 헌법 개정으로 APA의 관리 운영 주체의 책임에서 지방 분권화가 이루어졌다.

노인 개인별 자립수당(L'allocation personnalisée d'autonomie, APA)의 재원은 2004년 이전까지 일반사회보장부담금(CSG)에서 각출된 노령연대기금(Fonds de solidarité vieillesse, FSV)와 노령보험(Assurance vieillesse)이었지만, 2004년 노인장애인연대전국공단(Caisse nationale de solidarité pour l'autonomie, CNSA)이 만들어짐에 따라 일원화되었다.

개인별 자립수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당 신청서를 도의회(Conseil général)에 제출해야 하고, 2개월 이내에 도의회 의료사회팀이 등급판정을 한 후에 간병수당비와 본인부담금 등을 포함한 결과가 통보된다. 개인별 자립수당 신청자의 거주지에 따라 평가 방법이 다르다. 자가에 거주하는 경우 도의회에서 정한 의료진과 사회복지사로 꾸려진 사회의료팀(medico-sociale)이 방문해서 신체기능, 생활환경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 방문의사의 경우는 사전에 주치의를 통해서 신청자의 상태를 알아볼 수 있다. 의사는 신청자의 자립성 상실 정도를 '노년층의 자립성 상실 정도 측정에 관한 표준화 지표'(Autonomie, Gerontologie Groupe Iso-Ressources, AGGIR)에 따라 10가지 항목을 평가한 후에 1등급부터 6등급으로 평가한다. 자립등급 1등급부터 4등급까지는 개인별 자립수당(APA) 혜택을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자립등급 5등급과 6등급의 경우는 노령연금(regime de retraite)이나 다른 사회보장제도를 통해서 도움을 받게 된다.

〈표 3-39〉 APA 평가 항목과 내용

평가 항목	내용
일관성(Cohérence)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수준의 대화 또는 활동 가능 수준
인식능력(Orientation)	시간이나 장소에 대한 인식능력
씻기(Toilette)	위생활동 수행 수준
입기(Habillage)	착의 및 탈의 가능 수준
영양섭취(Alimentation)	홀로 식사 가능 여부
배설(Élimination)	소변 및 배변 가능 수준
행동/이동(Transfert)	앉고, 서고, 누울 수 있는 능력
실내이동 (Déplacement à l'intérieur)	지팡이, 휠체어 사용 여부 등 실내 이동 가능 수준
실외이동 (Déplacement à l'extérieur)	실외 이동 가능 수준
통신 (Communication à distance)	전화기, 인터넷 등 통신수단 이용 가능 수준 (필요시 위험신호 알람장치 사용)

출처: “APA,” Personnes-ages, 2022.

〈표 3-40〉 APA 등급별 서비스

GIR 등급	자립성 상실 정도
1등급	·침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 정신건강도 크게 손상되어 지속적인 간호 필요
2등급	·침대나 휠체어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 정신적으로는 손상 정도가 중하지 않으나, 대부분의 일상생활에서 돌봄이 필요 ·정신적으로 손상 정도가 중하나 움직이는 것은 가능
3등급	·정신적으로 온전하고, 신체적으로 부분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수준이나, 하루에도 몇 번씩 신체활동을 위해 도움이 필요, 소변 및 배변 활동을 홀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
4등급	·도움을 받아 일어서면, 실내에서 홀로 이동이 가능, 화장실 사용을 위해 때때로 도움이 필요. 식사는 홀로 가능
5등급	·실내에서 홀로 먹고, 입고, 이동 가능, 청소나 식사 준비를 위해서는 도움 필요
6등급	·일상생활에서 자립 상실이 없는 상태

출처: “APA,” Personnes-ages, 2022.

APA 수급자는 스스로 고용주가 되어 요양서비스 공급자를 고용하고 보수를 지급하거나, 또는 복지서비스업체를 통해서 요양서비스 공급을 받고 비용을 업체에 지불하는 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APA 수급자가 고용주가 된 경우는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족수당, 노령보험이 면제된다. 2011년 4월 이후 정해진 1시간당 요금 기준은 <표 3-41>과 같다. 재가급여는 매달 실소요 금액에서 본인부담금(ticket modérateur)을 뺀 금액을 일컫는다. 본인부담금은 수급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해서 나뉘는데 0~90%까지 크게 차등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월 소득 2,830.63유로 이상인 수급자의 경우 실소요 금액의 90%를 본인이 부담하고 10%만 혜택을 받게 되고, 월 소득이 710.31유로 이하인 경우는 본인부담금 납부 부담이 없다.

<표 3-41> APA 서비스 유형별 금액

서비스 시간	금액
서비스 수혜자가 고용자인 경우(Service Mandataire)	
주중 요금	14.06유로
주말이나 공휴일 요금	21.14유로
조용한 야간(Nuit calme)	73.50유로
불안정한 야간(Nuit agitée)	103.73유로
서비스 업체를 통한 경우(Service Prestataire)	
주중 요금	18.80유로
주말이나 공휴일 요금	21.50유로

출처: “APA,” Personnes-ages, 2022.

한편,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시설급여를 받기 위한 제출서류, 절차 그리고 등급판정의 기준은 재가급여와 같다. 단 시설급여의 등급판정은 사회회의료팀(médico-sociale)이 아닌 수혜자가 들어가려고 하는 해당 시설 의료 책임자의 지휘 아래 판정이 이뤄진다. 요양시설의 이용료는 이용

자가 직접 부담하거나 부족할 경우 도의 지원을 받아 지불하는 숙박료 (tarif d'hébergement), 의료보험에서 지불하는 치료비(tarif soins) 그리고 요양비(tarif dépendance)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중 요양비가 노인 개인별 자립수당(APA)에서 지불된다. 요양시설에 들어간 이후 간병인을 고용할 경우 수급자의 소득과 요양시설 비용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가장 많은 노인들이 이용하는 노인요양복지시설(EHPAD)의 경우 2016년 평균 비용은 방 하나에 머무는 경우 월 1,949유로로 나타났다. 도심과 지방 간 가격 차이가 매우 크다. 운영 주체 간 차이도 큰데, 공공은 월평균 1,801유로, 비영리 민간은 1,964유로, 영리 민간은 2,620유로로 나타났다(Personnes-ages, 2024).

〈표 3-42〉 APA 시설별 특징

요양시설 종류	특징
노인요양복지시설(EHPAD)	60세 이상 자립생활이 힘든 노인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75% 이상이 이용
노인의 집 (Maison de retraite non-EHPAD)	재택과 노인요양시설의 중간 형태로 노인들은 독립된 주택에서 생활하고, 식사, 여가, 세탁 등은 집단서비스 제공
고령자주택 (Logement-foyer non-EHPAD)	
장기요양시설 (USLD non-EHPAD)	의료설비가 잘 갖춰진 시설로 중증 환자들이 주로 이용

출처: 저자 작성

〈표 3-43〉 2005년 12월 31일 거주자 수와 2011년 이후 변화

	2015년 12월 31일 기준 시설 거주자	2011년 12월 31일 기준 시설 거주자	2011~2015년 사이 거주자 변화	2011~2015년 시설 수 변화
EHPAD	585,560	547,020	7.00%	6.20%
영리민간 EHPAD	125,640	110,180	14.00%	12.40%
비영리 민간 EHPAD	169,030	155,570	8.70%	7.60%
공공 EHPAD	290,890	281,270	3.40%	2.80%
의료 공공 EHPAD	127,070	125,320	1.40%	0.80%
비의료 공공 EHPAD	163,820	155,950	5.00%	4.40%
Logements-Foyers	101,880	102,770	-0.90%	0.50%
영리 민간 Logements-Foyers	3,790	3,350	13.10%	11.60%
비영리 민간 Logements-Foyers	27,390	28,060	-2.40%	-0.70%
공공 Logements-Foyers	70,700	71,360	-0.90%	0.50%
EHPA (EHPAD가 아닌 곳)	7,700	8,630	-10.80%	-11.20%
영리 민간 노인시설	1,120	2,370	-52.70%	-38.00%
비영리 민간 노인시설	4,790	4,660	2.80%	-3.50%
공공 노인시설	1,790	1,600	11.90%	8.40%
장기돌봄시설	32,790	33,490	-2.10%	-2.50%
기타 시설	-	1,070	-	-
합계	727,930	692,980	5.00%	4.50%

출처: “728 000 résidents en établissements d’hébergement pour personnes âgées en 2015,” Marianne Muller, 2017.

## 제4절 고령화 대응 정책

### 1. 노후소득보장 정책과 연금개혁

#### 가. 연금 제도와 개혁

프랑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65세 이상 노인(시설, 요양원, 요양병원 거주자 제외)의 생활 수준(Niveau de vie)<sup>11)</sup>은 연평균 25,530 유로, 월 2,128유로이다. 전체 인구의 경우 24,650유로로 65세 인구보다 낮은 수준이다.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8.6%로 전체 인구 14.8%와 비교해 매우 낮다. 이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최저 노령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 은퇴자의 세후 평균 연금은 프랑스 평균 임금 대비 2020년 기준 62.9%다. 남성은 74.1%이고 여성은 53.4%로,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다. 프랑스에서 은퇴한 이들의 월평균 생활비를 전체 인구와 비교했을 때 도 더 높게 나타날 정도로 프랑스인들은 연금을 통해 은퇴 이후에 비교적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고 있다.

11) 프랑스에서 활용하는 생활 수준 지표는 균등화된 가처분소득(equivalent disposable income)에 해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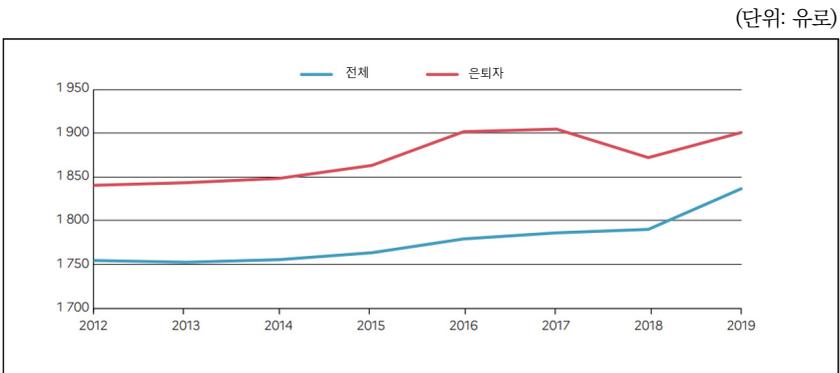
〈표 3-44〉 프랑스 노인의 생활 수준과 빈곤율(2018)

(단위: 유로, %)

나이	생활 수준	인구 비율	빈곤율
65~69세	26,660	6.0	9.5
70~74세	26,130	4.9	7.3
75~79세	25,600	3.3	7.0
80세 이상	23,730	5.5	9.7
노인 평균	25,530	19.7	8.6
전체 인구	24,650	100	14.8

출처: “D’ici 2070, un tiers des régions perdraient des habitants,” Cazaubiel, Amel El Guendouz, 2022. <https://www.insee.fr/fr/statistiques/6658362>에서 2024.4.6. 인출함.

〔그림 3-3〕 프랑스 전체 인구의 평균 소득과 은퇴자의 평균 연금 비교(2012~2019)



출처: “Les retraités et les retraites,” DREES, 2022a, p.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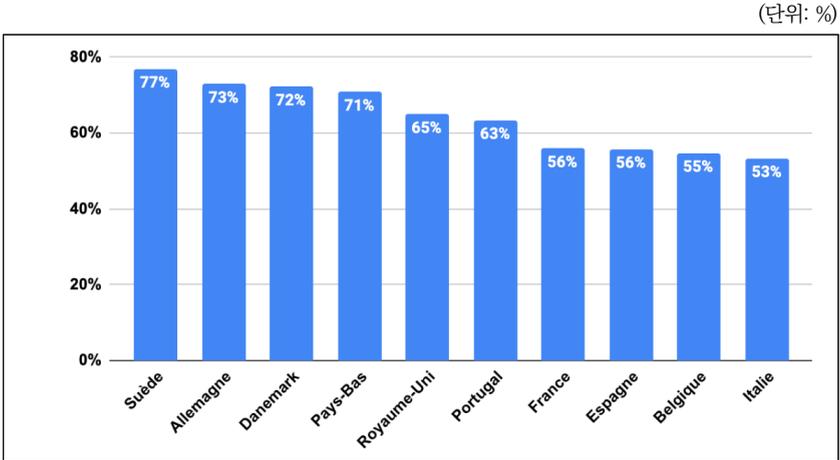
프랑스에서 노인의 주요한 기준이 될 수 있는 은퇴연령은 2023년 연금 개혁으로 인해 62세에서 64세로 늘어났다. 마크롱 정부의 연금개혁은 2023년 9월 1일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되어 64세에 이르게 된다. 또한 연금 보험료 납부 기간이 42년에서 43년으로 늘어난 것을 포함하고 있다. 완전연금(retraite de base a taux plein)을 수령을 할 수 있는 연령은 출생연령에 따라 65~67세이다. 노인연대수당(Allocation

de solidarite aux personnes agees)은 65세부터 수령이 가능하다.

프랑스 노동정책이나 사회정책에서도 노인의 기준연령이 60~65세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프랑스 노인장기요양제도인 개인별 자립수당(allocation personnalisee d'autonomie, APA)와 프랑스 요양시설(etablissement d'hebergement pour personnes agees dependantes, Ehpad)에서 노인의 기준이 60세이다. 하지만 노인최저수당(minimum vieillesse)에서는 65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장애가 있는 경우 62세). 그리고 60세 이후 연금을 수령할 경우 실업수당을 수급하기 어렵지만 특별한 경우 60세 이후까지 실업수당을 수령할 수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2017년 당선 이후 노동시장의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개혁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2022년 재선에 성공한 후 노동개혁을 다시 추진하며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추진했다. 마크롱 정부 이후 프랑스는 인구 고령화로 인한 국가재정 또는 사회적 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연금개혁을 강력히 추진하는 한편 노동개혁을 통해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특히 노동시장의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고용유연성을 확대하고, 기업 차원에서 노사협력을 통해 유연한 노동환경을 만들 수 있는 노동법 개정을 단행했다. 마크롱 대통령의 정책 기조에 따라 프랑스의 평균적인 실업률은 하락하고, 고용률은 증가하고 있다. 2010년과 2023년 연금개혁 등으로 인해 프랑스 노동시장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특히 법정 은퇴연령이 되기 전에 '조기 은퇴(retraite anticipée)'하는 사례가 줄고, 55세 이상 노동자들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증가하게 되었다.

[그림 3-4] 55~64세 고용률 유럽 국가 비교(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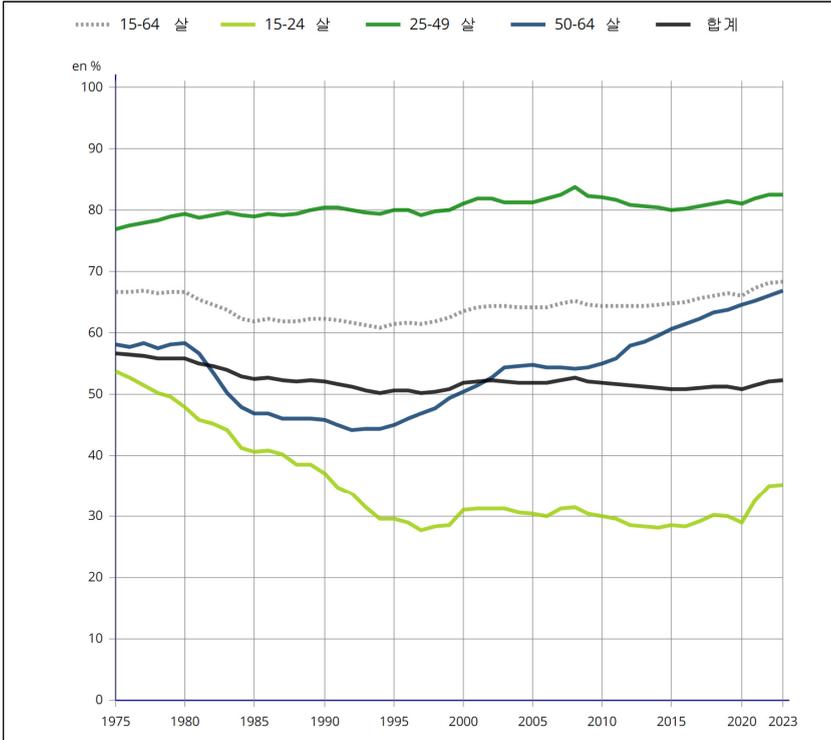


출처: “L’emploi des Seniors en Europe Tour d’horizon,” silvex, 2024. <https://www.silvex.io/blog/lemploi-des-seniors-en-europe>에서 2024.8.20. 인출함.

프랑스의 55~64세 고용률은 유럽 평균(2022년 56%로 유럽 27개국 중 16위)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특히 60~64세의 36.2%만 고용되어 있어 매우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노동력 부족에 직면한 기업에서는 점점 더 경험이 풍부한 노동자를 구하고, 연금제도의 개혁을 통해 더 오래 노동시장에 머물도록 유도하고 있다. 실제로 2010년 연금개혁 이후 50~64세 고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림 3-5] 연령별 고용률(Taux d'emploi) 변화(1975~2023)

(단위: %)



출처: “Emploi selon le sexe et l’âge Données annuelles de 1975 à 2023.” Insee. 2024c, [https://www.insee.fr/fr/statistiques/2490449#figure1\\_radio4](https://www.insee.fr/fr/statistiques/2490449#figure1_radio4)에서 2024.8.20. 인출함.

프랑스 정부는 노동인구 감소와 사회복지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해소하고자 연금제도 개혁을 통해 노동자가 노동시장에 더 오래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 때문에 프랑스의 평균 은퇴연령은 조금씩 늦춰지고 있다. 이 때문에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 저항이 매우 크다. 프랑스의 연금은 2016년 75세 이상 인구의 평균 생활 수준의 87.6%를 보장하고 있다. 프랑스 통계청(INSEE)의 2023년 3월 75세 이상 노인의 생활 수준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75세 이상의 평균 월 소득은 1,680

유로로 연간 20,160유로에 이른다. 프랑스 75세 인구의 생활 수준은 프랑스 일반 인구 소득인 20,490유로보다 2% 낮고, 65~74세 소득인 22,400유로보다 10%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65~74세는 프랑스 평균 가구보다 소득이 높다(La Rédaction, 2023). 프랑스 전체 빈곤율(Taux de pauvreté)은 2018년 기준 14.8%와 비교해서 65~69세 9.5%, 70~74세 7.3%, 75~79세 7.0%, 80세 이상 9.7%로, 노후의 빈곤율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Insee, 2021).

프랑스의 연금제도는 노후의 경제적 안전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프랑스 사회에 대한 경제적 부담 증가라는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실제로 프랑스에서 고령화와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에 따른 연금 수급자 증가로 공적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 엠마뉴엘 마크롱 대통령의 2017년 대선 공약에 따라 프랑스 정부는 2019년 7월에 정년 및 연금 수급 연령 연장과 공적연금 제도 일원화 등을 골자로 하는 ‘공적연금 개혁 보고서’를 발표했다. 하지만 프랑스 정부의 개혁안은 2020년 3월 하원을 통과했으나 코로나19 확산과 더욱 거세진 시민들의 반대로 성공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하지만 2022년 4월 마크롱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게 되면서 연금개혁이 다시 추진되었다. 마크롱 대통령은 하원 표결 없이 정부가 패스트 트랙(fast-track)으로 강행 입법할 수 있도록 한 헌법 49조 3항<sup>12)</sup>을 통해 개혁을 단행하게 된다. 좌파 신민중생태사회연합(NUPES·뤼프), 중도 자유·무소속·해외영토(LIOT) 그룹 그리고 극우 성향의 국민연합(RN)은 내각불신임안을 제출하는 등 강력한 사회적 저항에 직면하게 되었으나, 불신임안이 부결

12) 헌법 49조 3항) ‘총리는 정부제출 재정법안 또는 사회보장기금법안의 표결과 관련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하원에서 정부의 책임을 약속할 수 있다. 정부 제출 법안 제출 후 24시간 이내에 이전 항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이에 대한 불신임 동의안이 가결되지 않으면 그 법안은 채택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총리는 회기당 1회에 한하여 그 밖의 정부제출법안 또는 의원발의 법안에 대해 동일한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되면서 마크롱 정부의 연금개혁안이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고 헌법위원회에서 연금개혁안이 헌법에 부합한다는 판단을 내면서 2023년 9월 1일 개혁 법안이 시행되었다. 2023년 연금개혁으로 인해서 프랑스의 법정 퇴직연령은 64세로 늘어난다. 2023년 9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늘어나 2030년에 64세가 적용된다. 또한 연금보험료 납부 기간이 42년에서 43년으로 늘어난다. 한편 최소 연금 수령액은 최저임금의 75%에서 85%로 확대되었다.

#### 나. 노인연대수당(ASPА)과 최소기여(Minimum contributif)제도

프랑스 사회보장 일반 레짐(Régime general de Securite sociale)은 ‘모든 상황에서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적절한 조건에서 보장하는 데 필요한 수단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는 보장’이라는 취지로 1945년에 시작되었다. 일반 레짐(Régime général)은 프랑스 국민 88%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자영업자를 위한 특별 레짐(Régime spécial des indépendants, 이하 RSI)이 일반 레짐에 포함되며, 대상이 확대되었다.<sup>13)</sup> 프랑스에서 사회보장을 위해 특별 레짐에 가입이 되지 않는 모든 임금노동자를 대상으로 공적연금 가입을 의무로 하고 있다. 프랑스 공적연금은 3층 구조로, 기본 레짐(Régimes de base), 의

13) 프랑스 사회보장 일반 레짐(Régime général)은 서비스 공급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사회보장 및 가족수당 부담금 징수 조합(Unions de recouvrement des cotisations de sécurité sociale et d'allocations familiales)금고(l'URSSAF Caisse Nationale)
- 가족수당금고(la Caisse nationale d'allocations familiales, CNAF)
- 건강보험금고(la Caisse nationale d'Assurance Maladie, CNAM)
- 노령보험금고(la Caisse nationale d'assurance vieillesse, CNAV)
- 독립을 위한 연대금고(la Caisse nationale de solidarité pour l'autonomie, CNSA)

무보충 레짐(Régimes complémentaires obligatoires) 그리고 개인의 선택에 따른 민간연금보험(Asurance vieillesse surcomplémentaire)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촘촘한 연금제도를 갖고 있는 프랑스이지만 어떤 연금의 보호도 없이 은퇴연령에 이르는 노인들도 존재한다.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가 프랑스 노인연대수당(Allocation de solidarité aux personnes âgées, 이하 Aspa)이다. 이전에는 ‘최소노령수당(allocation du minimum vieillesse)’이라 불렀다.

1956년 사회보장법 제815-2조(Article L815-2 du Code de la sécurité sociale)에 의해 ‘최소노령수당(allocation du minimum vieillesse)’이 신설되었다. 이후 2007년부터 프랑스 노인연대수당(Aspa)으로 수정되었다. 2006년 이전에 최소 노령수당 권리를 취득한 사람들은 ASPA로 전환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계속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날짜 이후에 최저 연금을 신청한 사람들은 노인연대수당(Aspa)을 받는다.

노인연대수당은 공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연금액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재원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프랑스 내 자산 및 거주 조건에 따라 최소 65세 이상의 누구나 수여의 대상이 된다. 다만, 노동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62세부터 수급할 수 있다. 특정 조건에서는 60세까지 낮아질 수 있다. 프랑스 노인연대수당(Aspa)을 받기 위해서는 프랑스 국적을 갖고 안정적인 방식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영구적으로 또는 연간 최소 180일을 거주해야 한다. 또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국민이어야 한다. 그리고 최소 10년 동안 일할 수 있는 체류 허가를 소지한 조건으로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도 대상이 된다. 그리고 소득 요청 전 3개월의 설정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한편 지난 분기에 한도를 초과한 경우 지난 12개월의 소득을 조사하게 된다. 노인연대수당(Aspa) 산정에는 퇴직연금, 장애연금, 지난 3개월간 근로소득, 동산 및 부동산으

로부터의 소득, ASPA 신청 전 10년 동안 기부 대상이었던 신청자의 재산, AAH (성인 장애인 수당) 등이 고려된다. 프랑스에 거주하는 소득 및 자산이 부족한 65세 이상 은퇴자(무능력으로 조기 은퇴한 경우 62세)에게 매월 지급되는데, 지급액은 2024년 1월 1일에 5.3% 인상되어 1인당 월 1.012.02유로(2023년 1월 대비 50.94유로 증가)이고 커플 기준 월 1,571.16유로(2023년 1월 대비 79.08유로 증가)이다(Aide-sociale, 2024i). 연간 지원 한도는 혼자인 경우(미혼, 별거, 이혼, 미망인) 12,144.27 유로, 커플인 경우 18,854.02 유로이다. 프랑스 노인연대수당(Aspa)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노인이 속한 연금기금에 요청해야 한다. 이후 연금기금에서 지난 3개월 동안 개인 자산을 평가받게 된다. 노인연대수당(사회보장법 L815-1조-L815-23조)이 최저 연령액을 대체한다(Aide-sociale, 2024h). 2022년 말 기준 대상자는 약 767,000명에 이른다(ASP에 따른 546,000명, L. 815-2조에 따른 추가 수당 133,000명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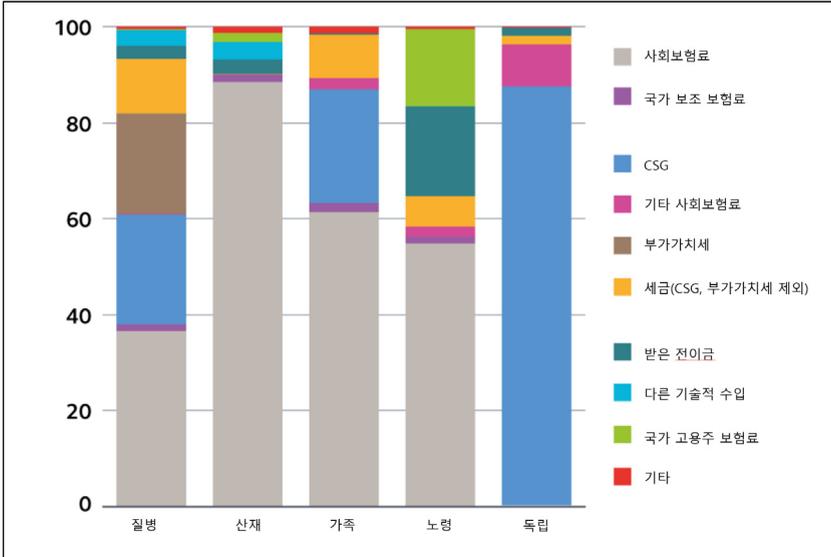
최소기여(Minimum contributif)제도는 노인연대수당(Aspa)과 함께 저소득 퇴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정적인 지원 제도이다. 이 두 제도는 모두 보완적 퇴직연금 메커니즘 측면에서 작동하지만, 접근 조건과 지원 조건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최소기여(Minimum contributif)는 법정 은퇴연령에 이르고, 필요한 분기를 채운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기본 퇴직연금, 보충 퇴직연금 및 기여 최저 금액의 누적 금액은 월 1,309.75유로를 초과할 수 없다. 즉, 최소기여(Minimum contributif)는 은퇴를 한 사람으로 최소 기여금을 지불해야 하고 이를 통해서 연금은 월 1,309.75유로를 초과할 수 없다. 최소기여에 대한 지급은 자동으로 이뤄진다. 최소기여는 기여한 분기에 따라 최대 지급은 월 684.14유로-747.57유로이다. 노인연대수당(Aspa)와 최소기여는 결합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Aide-sociale, 2024f).

## 2. 사회보장 재정 현황과 개선 노력

프랑스의 공공부채는 2022년 GDP 대비 112%에 달한다. 공공부채를 증가시킨 주요한 요인 중 하나로 사회보장지출을 꼽을 수 있다. 전체 공공지출에서 사회보장을 위한 지출이 1979년 GDP 대비 19%에서 2021년 27%로 증가했다. 프랑스 사회보장을 위한 재원(Financement de la protection sociale)은 직업별 노동자들이 납입하는 보험료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보험시스템(Systeme d'assurances sociales)을 근간으로 한다. 프랑스 사회보장 재원에서 직능별로 납부하는 한국의 보험료에 해당하는 '부담금(Cotisation)'은 사회보험에 대한 피보험자의 부담금을 나타내는 것이다. 프랑스 사회보장의 보장 범위와 내용은 사회직능별 또는 사회위험별 주체들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사회보장을 담당하는 사회직능별 또는 사회위험별 주체들은 재정적 자율성(Autonomie financiere)과 운영의 자율성(Autonomie de gestion)을 보장받고 있다.

[그림 3-6] 프랑스 2021년 사회보장 기본 레짐 분야별 재정구조

(단위: %)



출처: “Rapport sur l’application des lois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Cour des comptes, 2022.

프랑스 사회보장을 위한 재원은 크게 사회부담금(Cotisations soiales), 일반사회기여금(Contribution sociale généralisée, 이하 CSG), 세금 및 관세 그리고 기타 사회부담금(Impots et taxes et aures contributions sociales), 순이전(Transfert nets), 국가부담금(Contributions de l’Etat, 공공부담금으로 불리기도 함), 기타 6가지로 되어 있다. 노동자 개인의 연금과 관련해서 사회부담금(Cotisations sociales)이 가장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사회부담금(Cotisations sociales)은 자영업자, 고용주 및 고용인이 사회적 혜택을 받을 권리를 얻기 위해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사회부담금(contribution sociale)은 근로소득(급여, 상여금 및 기타 수당 등), 대체소득(퇴직연금, 실업수당, 일당 등),

자산소득(재산소득, 종신 연금 등), 투자소득(동산소득, 부동산 양도 소득 등), 게임(les jeux)에 의해 분배되는 금액 등의 소득에 부과된다.

2022년 기준 사회보장 일반 레짐의 약 80%는 임금과 관련된 부담금이다. 임금과 관련된 부담금은 노동자 개인이 지불하는 부담금, 고용주 부담금 그리고 노동자가 지불하는 일반사회기여금(Contribution sociale généralisée, 이하 CSG)으로 구성되어 있다. 노동자와 고용주가 지불하는 부담금은 2022년 총재원의 58%에 달한다. 고용주와 노동자의 기여는 줄어드는 반면 CSG의 비중과 조세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사회보장 재정(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의 개혁에서 1991년 일반사회기여금(CSG) 제도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CSG는 근로소득을 기반으로 하는 부담금뿐만 아니라 모든 가용 소득에 대해 부담금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비롯했다. CSG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강조된 것은 가족수당과 건강보험이 근로소득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모든 프랑스 시민에게 서비스가 제공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sup>1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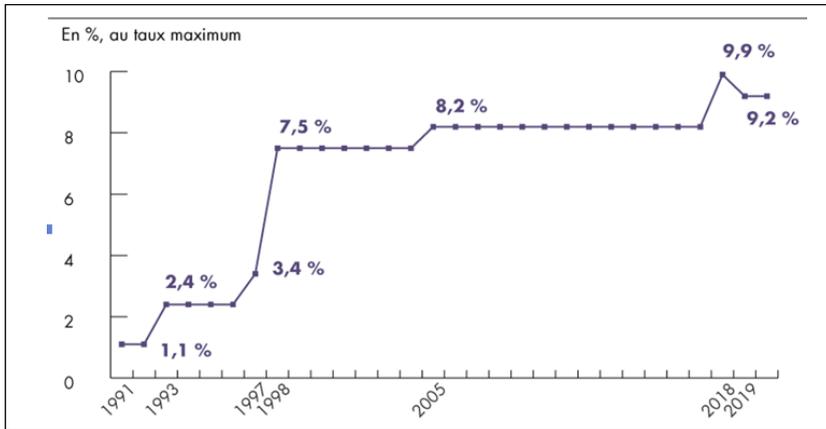
CSG는 1991년 1.1%에서 1993년 2.4%, 1996년 3.4%, 1998년 7.5%, 2018년 9.2%로 점진적으로 증가해 오면서 프랑스 복지재정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2018년 9.9%에서 2019년 9.2%로 낮추면서, 자산 및 투자상품 소득에 대한 7.5%의 연대징수(Prélèvement de solidarité)가 새롭게 도입되었다. 연대징수는 금융 또는 재산을 통한 소

14) 미셸 로카르드 정부(Gouvernement Michel Rocard)는 1990년 11월 헌법 제49조 3항을 통해 정부 주도의 CSG 입법을 추진했다. 이에 대해서 프랑스 의회는 11월 19일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Motion de censure)을 발의했지만 284표를 얻어 5표 차이로 실패했다. Michel Rocard 총리는 사회보장 재원 조달의 기반을 넓히고자 했다. Michel Rocard 총리는 CSG가 세금이라고 강조했다. CSG의 긍정적인 점은 고용주에게 사회부담금에 대한 부담을 주지 않고, 이로 인해서 인건비 상승이 없다는 점이다. 이는 무역의 세계화로 인한 노동경쟁력 측면에서 긍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편 CSG는 저축 소득뿐만 아니라 연금에 대해서도 부과하면서 사회보장 재원 조달 범위를 확장했다. CSG는 개인이 사회보장 재정에 공헌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어떤 혜택을 받을 권리를 의무적으로 부여하지는 않는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Le Monde, 2024).

특에 대해서 비거주자(CSG 면제 대상)에게도 적용된다. 일반사회기여금(CSG)은 건강보험, 가족수당, 그리고 노령연대기금(Fonds de solidarité vieillesse, FSV)의 재원으로 쓰이고 있다. FSV는 1993년에 만들어졌고, 비기여형으로 노인을 위한 최저 노령수당을 보장해주고 있다. 하지만 프랑스는 소득에 높은 누진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CSG의 경우 부자들에 대한 부담은 크지 않고,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부담이 더 크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그림 3-7] 프랑스 일반사회기여금(CSG)의 요율 변화(1991~2020)

(단위: %)



출처: “Contribution sociale généralisée (CSG),” la finance pour tous, 2024.  
<https://www.lafinancepourtous.com/decryptages/finance-perso/revenus-et-fiscalite/csg/>에서 2023.4.2. 인출함.

〈표 3-45〉 일반사회기여금의 요율 변화(1991~2022)

구분	근로소득	연금소득	실업수당	자산소득	게임소득
1991	1.1	1.1	1.1	1.1	-
1993	2.4	2.4	2.4	2.4	-
1997	3.4 (1.0)	3.4 (1.0)	3.4 (1.0)	3.4 (1.0)	3.4 (1.0)
1998	7.5 (5.25)	6.2 (3.95)	6.2 (3.8)	7.5 (5.25)	7.5 (5.25)
2005	7.5 (5.29)	6.2 (3.95)	6.2 (3.95)	8.2 (5.95)	9.5 (7.25)
2015	7.5 (5.20)	6.6 (4.3)	6.2 (3.9)	8.2 (5.9)	7.1 (4.8)
2016	7.5 (6.05)	6.6 (5.15)	6.2 (4.75)	8.2 (0.00)	6.9 (5.75)
2018	9.3 (7.75)	8.4 (6.85)	6.3 (4.75)	9.9 (0.00)	8.6 (7.35)
2019	9.2 (5.95)	8.3 (4.77)	6.2 (4.65)	9.2 (0.00)	8.6 (7.35)
2020	9.2 (5.84)	8.3 (4.54)	6.2 (4.54)	9.2 (0.00)	6.2 (4.95)
2021	9.3 (7.75)	8.4 (6.85)	6.3 (4.75)	9.9 (0.00)	8.6 (7.35)
2022	9.2 (5.95)	8.3 (4.77)	6.2 (4.65)	9.2 (0.00)	8.6 (7.35)

주: 괄호 안은 사회보장 분담금 전체 요율 중에서 건강보험에 할당되는 요율(1997년부터 건강보험에 사회보장 분담금 투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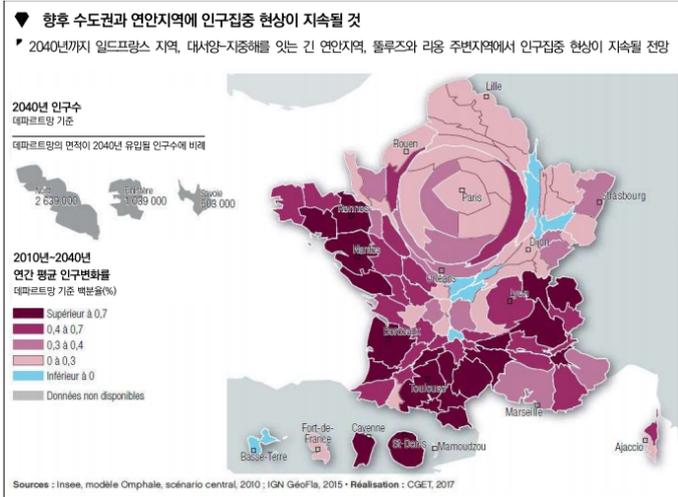
프랑스의 사회보장을 위한 재원은 인구 고령화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인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CSG와 조세의 기여가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사회보장을 위한 과도한 지출로 인해 구조적·만성적 적자가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프랑스의 사회보험은 직능별 차이와 개인별 차이가 있고, 이러한 차이를 줄이기 위해 국가의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존재한다. 국가는 강제적으로 사회보장을 담당하고, 기관을 강제적으로 통제할 뚜렷한 수단이 없다. 결국 프랑스는 사회보장 재정을 위해서 다양한 사회보장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해야만 하는 어려움을 갖고 있다.

## 제5절 지역 인구 변화 대응 정책

프랑스의 지역 인구 변화에 관한 한 연구에 따르면, 1851년부터 2014년까지 150년간 프랑스 인구의 국토 공간상 분포 변화를 크게 3개의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1단계(1851~1900년)는 초집중화 시기로 파리 및 대도시 지역으로의 인구 집중과 농촌지역 인구 감소 시기이다. 2단계(1901~1968년)는 수정화된 초집중화 시기로 전 국토의 10% 정도를 차지하는 파리 및 대도시 지역, 차상위 지역에 전체 인구의 40%가 거주하는 현상이 지속되는 시기이다. 3단계(1968~2014년)는 다중심 구조로 전환하는 시기로 인구가 많은 지역과 적은 지역에서 모두 인구 감소를 보이나 몇몇 차상위 도시가 속한 데파르트망<sup>15)</sup>에서는 인구 증가가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또한 1990년 이후 탈산업화 및 탈공업화로 프랑스 북동부에서 남서부로 이동하는 사회적 이동이 시작되어, 북부와 중앙의 7개 데파르트망에서 꾸준히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지역별 인구 감소 과정이나 인구구조 변화는 지역별 사회경제적 변화 양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2018년 기준으로, 프랑스 대도시 22개에 전체 인구의 29%가 거주하고 있으며, 파리가 속해 있는 일드프랑스에는 프랑스 전체 인구의 18%, 전체 일자리의 21%가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프랑스 전체 인구는 2040년까지 연간 0.4%의 인구 증가를 보이며 7,3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수도권과 연안 지역에 인구 집중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김수진, 2021).

15) 프랑스의 행정구역은 레지옹(Région), 데파르트망(Département), 코뮌(Commune)으로 구분됨.

[그림 3-8] 2040년 프랑스 지역별 인구분포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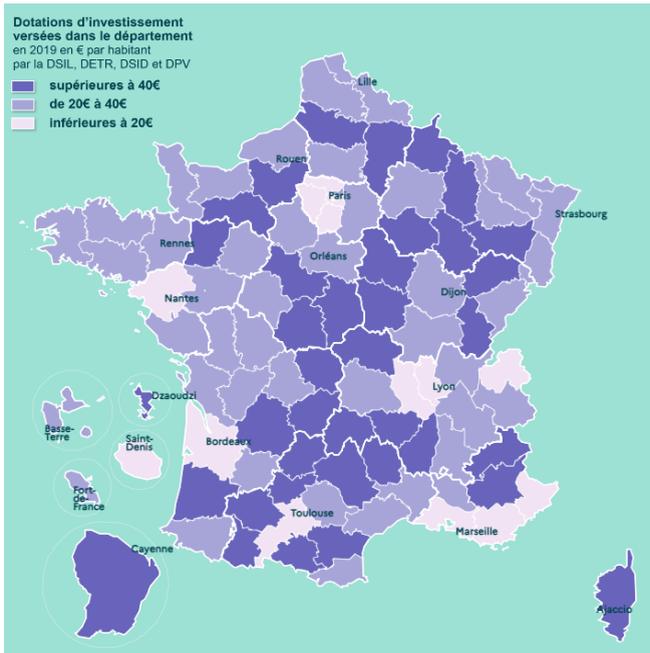


출처: “프랑스 지역인구감소 대응정책과 시사점,” 김수진, 2021, 국토연구원, p.11. 그림 4. 재인용

프랑스는 지역정책에 있어, (1) 취약한 지역 및 인구에 대한 지원 (2) 인프라 및 삶의 질 개선 (3) 지역 간 협력체계 구축 (4) 지역의 사회적 자본 구축 지원 (5) 지역 역량 강화 (6) 기후변화 대응 및 생태적 전환 등 6 가지 우선순위를 두고 접근하고 있다. 정책 실행을 위해 2020년 국토통합청(Agence Nationale de la Cohésion des Territoires, ANCT)을 설치하여 지역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있으며, 인구가 희박하고 취약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농촌지역보조금(DETR), 취약지구보조금(DPV), 지역투자지원보조금(DSIL) 정책 등을 시행하고 있다. 2019년 기준 농촌지역보조금, 취약지구보조금, 지역투자지원보조금 등에 19억 2,100만 유로를 집행했으며, 26,718개의 프로젝트에 보조금을 지원했다. 이 외에도 사회적 위험(질병, 노령, 실업, 빈곤 등)에 대응하기 위해 7,000억 유로 이상을 각 지역에 배분하고 있다. 사회적 권리(건강, 주거, 교육, 노동, 이

동 등)에 대한 접근성 및 디지털 기반을 제공 등을 통해 사회 통합과 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CGET, 2018; ANCT, 2021).

[그림 3-9] 지역보조금 배분 현황(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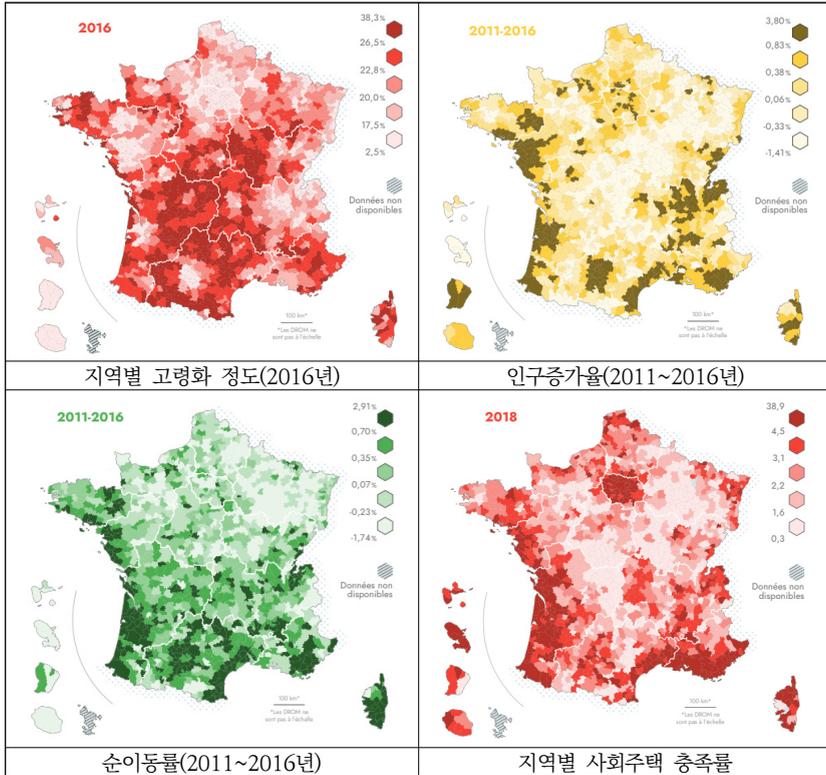
출처: “Répartition des dotations d'investissement de l'État en 2019,” ANCT., 2024.

지역 인구 변화 대응 정책의 적극적 추진을 위해 정부는 6가지 우선순위에 대한 주요 지표를 산출하여 점검하고 있다. (1) 취약한 지역 및 인구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역별 65세 이상 인구 비중, 사회주택에 대한 접근성, 지역별 실업률 등을 점검하고, (2) 인프라 및 삶의 질 개선과 관련해서는 지역별 소득 수준, 빈곤 및 사망률, 청년 고용, 주거의 질 등을 측정한다. (3) 지역 간 협력체계 구축과 관련해서는 지역 재정 통합계수나 지역별 경제 의존도 등을, (4) 지역의 사회적 자본 구축 지원과 관련

해서는 지역별 협회 고용률 및 선거 참여율, (5) 지역 역량 강화와 관련해서는 지역별 구매력, 창업률, 교육수준 (6) 기후변화 대응 및 생태적 전환과 관련해서는 거주지 매력도, 환경보존, 순이동에 따른 인구증가율 등을 모니터링하여 보고하고 있다(ANCT, 2021).

프랑스는 지역별 인구 고령화 영향 및 속도 변화를 점검하고 지역 인구 변화 예측을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있다. 고령자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남부 지역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평균 21% 이상이고 은퇴자의 이주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고령화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부르고뉴 지역에서도 30~44세 인구 등 젊은 층의 인구가 매년 1%씩 감소하면서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북부지역도 상대적으로 고령층 비중이 낮은 편이지만 고령화 문제에 직면해 있고, 프랑스의 해외영토에서도 인구증가율은 정체하고 고령화 속도는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사회주택 공급을 늘리고 있으나,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황으로 2018년 기준 신청 경쟁률이 평균 4.4:1이며, 파리 및 지중해 연안 대도시의 경쟁률은 7:1 이상이다.

[그림 3-10] 프랑스 지역별 고령화 정도 및 사회주택 충족률



출처: “le baromètre de la cohésion des territoires,” ANCT, 2021.



## 제4장

### 프랑스 인구정책의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

제1절 가족정책의 주요 성과

제2절 가족정책의 실증적 효과

제3절 고령화 대응 정책의 성과



## 제4장 프랑스 인구정책의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

### 제1절 가족정책의 주요 성과<sup>16)</sup>

#### 1. 가족정책의 예산 집행 및 수급 현황

프랑스는 2021년 기준 GDP의 약 2.2%를 아동과 출산 관련 정책에 집행했으며, 2023년 기준 가족수당 집행액은 330억 유로 규모로 약 3,250만 명(5백만 가구 이상)에게 혜택이 돌아갔다.<sup>17)</sup> 가족수당은 2015년부터 연평균 1.7%씩 감소해왔는데, 이는 재정 안정화 등을 위한 가족정책 개혁<sup>18)</sup>과 최근 출산율 하락에 기인한다. 또한, 보육시설 및 서비스 개선 등에 2023년 기준 63억 유로가 지원됐으며, 보육서비스 관련 지출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2% 증가했다. 그 외에도 양육 자녀 수에 따른 퇴직연금 인상, 가족 지수 등의 세금 혜택,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지원 등이 시행되고 있다.

16) 본 절은 “2023년 사회보장정책평가보고서(Rapports d'évaluation des politiques de sécurité sociale; REPSS),” 프랑스 사회보장국(Direction de la sécurité sociale)(2024b)의 정책 평가 결과 주요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함.

17) 이 중 현금 수당이 60% 이상이며, 80%가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됨. 2022년 6월 기준, 25세 미만 자녀가 1명 이상인 670만 가구에 최소 하나 이상의 가족수당을 지급함.

18) 소득조사 기반의 PAJE로의 개편 및 PAJE-공동육아혜택(PreParE) 신청 감소

〈표 4-1〉 가족부서(la branche famille)의 사업 집행 현황(2010-2023)

(단위: 10억 유로)

구분	2010	2015	2020	2021	2022	2023
가족정책 집행액	36.7	36.7	33.9	33.2	32.7	33.0
(보편급여 비중)	(73.3%)	(73.7%)	(71.8%)	(72.1%)	(71.7%)	(72.9%)
1) 가족부양급여 <sup>19)</sup>	20.8	21.4	21.8	20.8	20.5	21.0
2) 유아환영정책(PAJE)	15.4	14.7	11.8	12.1	11.8	11.6
3) 기타	0.5	0.6	0.3	0.3	0.4	0.4
보육서비스 <sup>20)</sup>	4.8	5.8	6.2	6.3	6.4	6.3
주거 지원액	19.9	21.3	18.6	17.2	16.2	15.6
기초생활보장	19.8	25.8	40.1	38.6	39.5	38.9
전체 집행액	82.0	90.6	100.2	95.2	94.8	93.7

출처: “2023년 사회보장정책평가보고서-가족정책,” 프랑스 사회보장국, 2024b, p.42, 표 1.

가족정책 수급자 규모는 제도 개혁 및 출산율 등의 영향으로 달라져왔으며, 특히 2015년 유아환영정책(PAJE)의 소득조사 기반 개혁 및 공동육아수당의 지급 조건 변경과 최근 출산율 하락 등으로 일부 정책의 수급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4-2〉 가족정책 수급자 현황(2010-2022)

(단위: 천 명)

구분	2010	2015	2020	2021	2022	2010-22 평균증가율	2021-22 평균증가율
가족수당(AF)	4,918	5,032	5,091	5,059	5,040	0.1%	-0.4%
가족보충수당(CF)	863	881	906	903	890	0.3%	-1.5%
신학기수당(ARS)	3,022	3,128	3,132	3,119	3,068	0.0%	-1.6%
가족지원수당(ASF)	745	760	813	817	826	0.6%	1.0%
부모동반수당(AJPP)	5	6	10	11	13	7.0%	19.5%
PAJE(중복 포함)	2,367	2,205	2,008	1,974	1,946	-2.1%	-1.4%
1) 기초수당(AB)	1,944	1,805	1,555	1,501	1,470	-2.5%	-2.1%
2) 출생/입양 보너스	54	49	45	44	44	-2.1%	1.3%
3) 공동육아수당(PREPARE/CLCA)	558	455	255	228	221	-8.3%	-3.3%

19) Prestations d'entretien en faveur de la famille

20) 보육시설 및 서비스 확충

구분	2010	2015	2020	2021	2022	2010-22 평균증가율	2021-22 평균증가율
4) 보육유형 자유선택 보조금(CMG)	834	861	845	874	881	-0.5%	0.8%
· 아이돌보미	744	750	715	718	710	-1.3%	-1.1%
· 재가보육사	67	60	55	60	61	-1.4%	0.5%
· 소규모 시설	22	58	81	102	117	13.9%	14.3%
모성 육아휴직	614	579	542	558	551	-0.9%	-1.2%
부성 육아휴직	405	358	323	349	415	0.4%	1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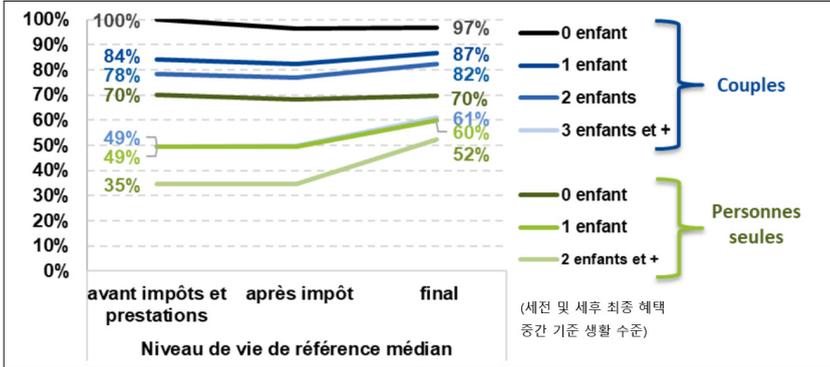
출처: “2023년 사회보장정책평가보고서-가족,” 프랑스 사회보장국, 2024b, p.38, 표 1.

## 2. 가족정책의 목표와 성과

프랑스의 가족정책이 처음 도입되었을 당시 정책 목표는, 자녀 수가 많은 가구의 재정부담을 줄여주고 전반적인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었다. 여기에 더하여 1970년대 이후에는 저소득층 가구 지원을, 그리고 지난 30년간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장려하고 일가정 양립 지원을 정책 방향으로 두고 있다. 매년 프랑스 정부는 가족정책의 효과성을 모니터링 및 평가하기 위해 4가지 가족정책의 목표별 성과 달성도를 분석하여 보고하고 있으며, 2023년 가족정책 평가 결과는 (1) 가족의 양육부담 경감 (2) 취약 가정 지원 (3) 일가정 균형 촉진 (4) 가족정책 재정의 지속 가능성의 목표별로 제시되어 있다.

먼저, 목표 (1) - 가족의 양육부담 경감 효과와 관련해서는, 가족정책 혜택 적용 전후의 가구 유형별(자녀 유무, 자녀 수, 한부모 등) 소득 수준을 비교 분석하여 정책이 가구소득(niveau de vie)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하고 있다. 2022년 분석 결과, 중위소득 구간에 속하는 무자녀 부부 가구의 소득을 100으로 했을 때 가족정책 적용 후 세금의 영향으로 가구소득은 97로 소폭 하락했으나, 유자녀 가구는 가족정책 적용 후에 한 자녀 가구는 84에서 87로, 두 자녀 가구는 78에서 82로 가구소득이 상향되는 효과가 있었다. 특히, 한부모 가구의 가족정책 적용 후 가구소득 수준이 10%p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 가족수당 및 세금 혜택이 가구 유형별 가구소득에 미치는 영향(2022)



주: 중위소득(세전 연소득 32,740유로), 자녀가 없는 부부 가구=100으로 계산. 가구소득은 (Niveau de vie)은 가구원 수를 고려한 가구의 가처분소득을 의미함.  
출처: “2023년 사회보장정책평가보고서-가족,” 프랑스 사회보장국, 2024b, p.9. 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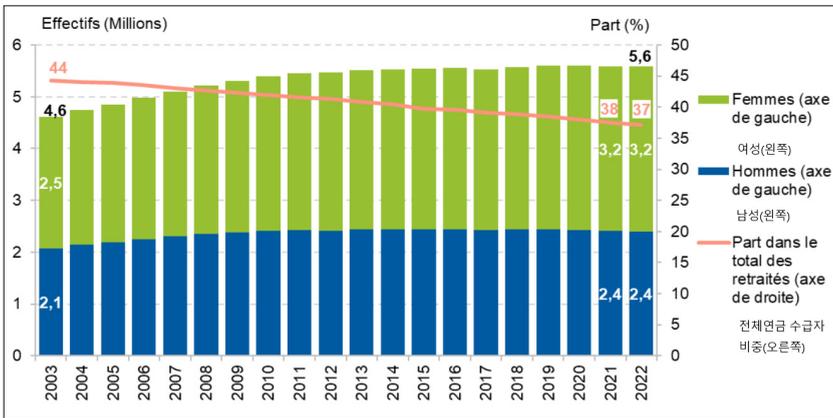
추가로 노후소득보장과 관련해서, 가족 돌봄 및 자녀 출산 등으로 인해 연금 기여가 단절되는 경우 추가 기여 혹은 연금 금액 산정에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기간 인정(périodes assimilés, PA), AVPF(재택부모 노령 연금; Assurance Vieillesse des Parents aux Foyers)<sup>21)</sup> 및 가족 돌봄 등의 사유에 대한 연금 기간 인정<sup>22)</sup>(Majoration de Durée d'Assurance, MDA) 등이 지원된다. MDA 성과를 분석한 결과 여성의 가입 기간은 2022년 기준 14분기 동안 증가했으나, 최근 평균 자녀 수의 감소 등으로 추가 보험 인정 기간이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VPF는 직접 자녀 양육을 하는 부모가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제도로, 사회보장

21) 1972년 도입, 육아휴직 등으로 연금가입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을 경우, 부양 자녀 수 등을 고려하여 가입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기간만큼 연금보험료를 지원함.  
22) 기간 인정 사유는 질병, 장애, 육아휴직, 출산휴가, 실업 등이며, 2014년 1월 1일 이후 전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을 인정함. 출산 및 입양의 경우, 2010년 1월 1일 이후 산모에게 총 12분기의 연금 혜택이 주어지며 이 중 4분기는 부모가 나눠서 인정받을 수 있음. 장애 아동을 돌보는 경우에도 노령보험 기간을 최대 8분기까지 인정받을 수 있음.

부가족과에서 월 169시간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최저임금 기준)에 준하여 노령연금 보험료를 지급해 주는 제도이다. 2022년 기준, AVPF 가입자의 50% 정도는 아동수당 기본수당 수급자이고, 39%는 가족수당(자녀 수 셋 이상) 수급자였다.

연금제도에서 자녀가 셋 이상인 부모에게 10%의 연금액 인상 혜택이 주어진다. 2022년 기준, 560만 명의 연금 수급자(일반 제도 - 근로자 및 자영업자), 즉 일반 제도 수급자의 37%가 세 자녀 이상인 가정이 혜택을 받았으며, 연금 수급자 중 57%(320만 명)가 여성이다. 전체 연금 수급자 중 자녀 양육으로 인해 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받은 수혜자 규모는 가구당 가구원 수 감소(자녀 수 감소)로 2003년 전체의 44%에서 2022년 37%로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림 4-2] 자녀돌봄으로 인한 연금기간 인정 제도의 수혜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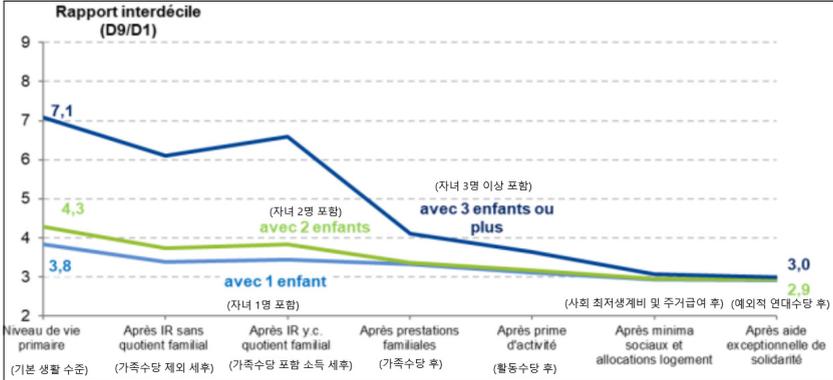
- 주: 1) 2003년부터 2019년까지는 은퇴한 전직 급여 근로자가 포함됨. 2020년부터는 이전에 직 원 또는 자영업자였던 퇴직자가 포함됨.
- 2) 레이블 범위: N년도 12월 31일에 자녀가 3명 이상인 부모에 대해 10% 인상된 금액을 받는 사람의 수.

출처: “2023년 사회보장정책평가보고서-연금,” 프랑스 사회보장국, 2024c, p.68. 그림 5.

목표 (2) - 취약 가정 지원 효과에 대해서는, 한부모 가구<sup>23)</sup>나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정책 지원이 아동 가구의 소득격차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다. 2014년부터 빈곤위험이 높은 한부모 가구 및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다자녀 가구에게는 가족보조금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점진적으로 50% 인상하였고, 한부모 대상 가족지원수당(ASF)도 동 기간 50% 정도 높아졌다. 2025년에는 보육(시설) 서비스와 개인 양육서비스 간의 혜택을 비슷하게 맞추기 위한 보육 자유선택 보조금(CMG) 규모 개편이 예정되어 있어, 소득 수준이 높은 가구에서 활용도가 높은 아이돌보미 등의 서비스에 취약 가구들의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취약 가정에 대한 지원을 목표로 정책을 시행한 결과, 2022년 기준 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 중 소득 상위 10%와 소득 하위 10% 가구 간의 소득격차가 가족정책 적용 전 7.1배에서 가족정책 적용 후 3배로 감소, 자녀가 두 명인 가구는 정책 전후 소득격차가 4.3배에서 2.9배로 감소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23) 자녀가 있는 가구 중 한부모 가구의 비중은 1990년 13.3%에서, 2020년 26.1%(250만 가구)로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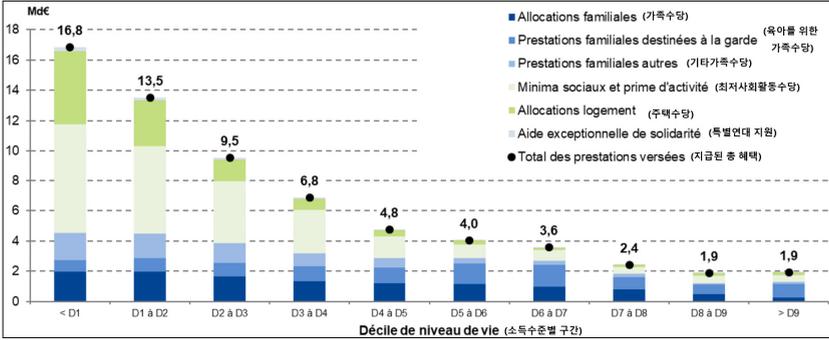
[그림 4-3] 가족정책 적용 단계별 소득격차 비율의 변화(2022)



주: 상위 10%와 하위 10%의 소득 격차  
 출처: “2023년 사회보장정책평가보고서-가족,” 프랑스 사회보장국, 2024b, p.9. 그림 3.

소득 수준별 가족정책 수급액 분석 결과, 2022년 기준 소득 수준 하위 30%에 해당하는 가구에 가족정책 전체 지원액의 61%가 집행되었다. 이는 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에는 주거 지원과 기초생활보장 지원이 크기 때문이며, 아동수당 등 양육보육 지원만으로는 재분배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15년의 가족수당 조정으로 상위 2개 소득분위에 해당하는 가구들에 대해서는 가족수당 지급액이 크게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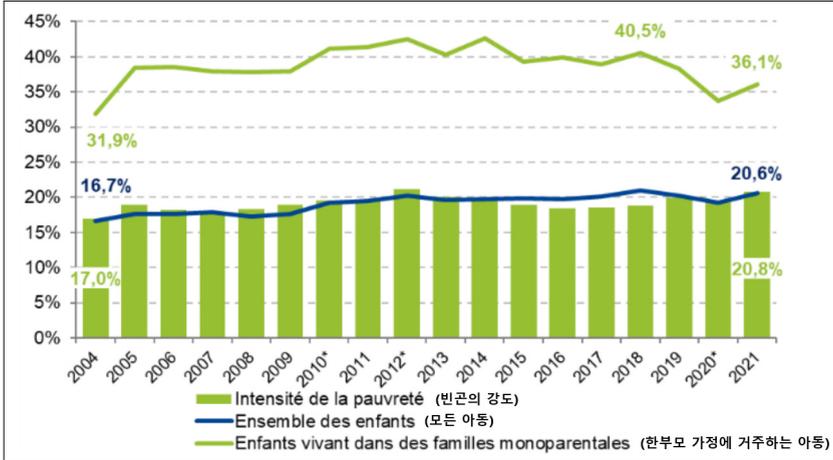
[그림 4-4] 소득 수준별 가족정책 수급액(2022)



출처: “2023년 사회보장정책평가보고서-가족,” 프랑스 사회보장국, 2024b, p.44. 그림 1.

추가로, 아동 빈곤과 관련해서는 가족수당이 아동빈곤율을 14%p 낮추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관련 통계 지표들은 2021년 이후 악화되고 있으며, 2021년 기준 15세 미만 아동의 20.6%가 빈곤선 이하 가정에 속해 있고 한부모 가구에 속해 있는 아동 중 36.1%가 빈곤위험에 처해 있다. 2012년부터 개선되던 빈곤강도(빈곤 가정의 평균 소득과 빈곤선 사이의 격차)도 최근 높아져, 2021년 기준 빈곤 가정에 속해 있는 아동의 평균 생활 수준은 빈곤선보다도 20.8%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5] 빈곤가구에 속해 있는 아동 비율(2004~2021)



출처: “2023년 사회복지정책평가보고서-가족,” 프랑스 사회복지장국, 2024b, p.10. 그림 4.

산모 및 아동 건강과 관련해서는, 임신 초기부터 아동의 생후 2년까지가 아이의 건강에 가장 중요한 시기로 보고, 2020년부터 첫 1,000일 (1000 premier jours)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산전후 검사 외에도 조기 산전 면담(EPP),<sup>24)</sup> 출산 및 부모 교육(PNP),<sup>25)</sup> 구강 검진, 출산 지원, 의료 보조 임신(MAP),<sup>26)</sup> 산후면담(EPNP), 모성 및 아동보호(PMI) 서비스 등으로 산모 및 영아 사망률을 낮추는 노력을 하고 있다. 1945년에 도입된 모성 및 아동보호(PMI) 서비스에서는 아동 상담 및 가정 방문이 주된 활동이며(전체 활동의 58%), 가족 계획 및 상담, 면담 등(29%)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 영아 사망률 및 산모 사망률 등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4) 임신부 중 EPP 수혜자는 2022년 기준 62%

25) 초산 여성 4/5, 다산 여성 1/3이 참여

26) 2019년 출생아의 3.7%가 MAP로 태어남.

[그림 4-6] 1901년 이후 프랑스 본토의 출생아 1,000명당 영아 사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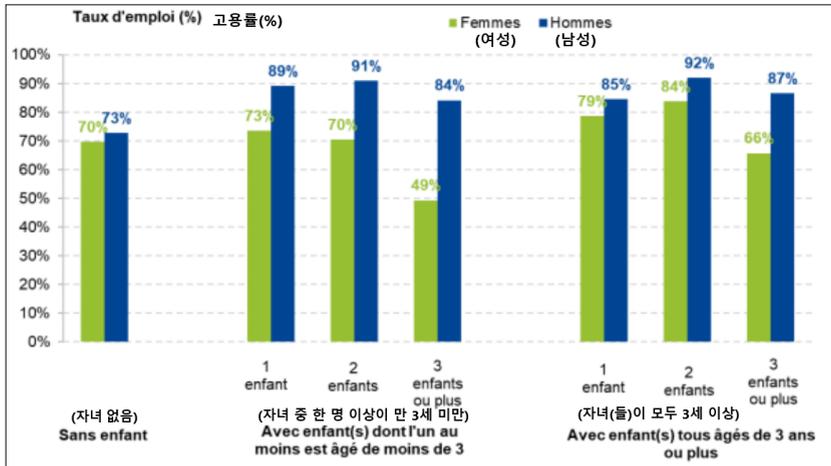


출처: “2023년 사회보장정책평가보고서-가족,” 프랑스 사회보장국, 2024b, p.27. 그림 1.

다음으로 목표 (3) - 일가정 양립과 관련해서는, 자녀 출산 후 여성이 일자리를 유지하고 복귀에 어려움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부모가 자유롭게 자녀 양육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프랑스의 합계출산율은 2015년 이후 하락하고 있다. 2023년에는, 유럽 국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출산율이나, 1994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1.68명을 기록했다.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으로 2021년 배우자의 육아 부담을 지원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25일(7일 의무 사용)로 늘리고, 육아급여 지원을 위한 정부 지출을 2020년 2억 3,400만 유로에서 2023년에는 5억 9,700만 유로로 확대했다. 또한, 시설 보육 지원에 2022년 기준 약 150억 유로를 지출했으며, 2021년 기준 프랑스의 3세 미만 아동 100명당 59.4개의 공식(formal) 보육서비스(시설 및 아이돌보미 등)가 제공됐다. 2018~2022년 보육시설 3만 개 설치 목표(2022년 말, 약 50% 달성)에 이어 2023~2027년에도 보육시설(ECEC) 3만 5,000개를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보육유형 자유선택 보조금(CMG) 개혁을 통해, 시설 및 아이돌보미 등 보육 유형에 관계없이 자녀가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 보육서비스 지원의 정책 효과로,

2022년 20~74세 여성고용률은 71.2%(남성 77%)로 2010년보다 6.3%p 상승했으며 유럽의 여성 고용률인 69.3%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3세 미만 자녀가 1명인 여성의 고용률은 2022년 기준 73%이나, 자녀가 3명 이상(3세 미만 자녀 포함)인 여성의 고용률은 49%에 불과하여, 남성과 여성의 고용률 격차 완화 및 여성의 일자리 유지 지원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으로 육아휴직수당제도를 2015년 기존의 CLCA<sup>27)</sup>에서 공동양육수당(PreParE)으로 대체했는데, 이를 통해 전체 부모 육아휴직 기간을 줄이는 대신 부모 간의 양육 부담이 균등하게 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2022년 6월 말 현재, 이 제도하에서 약 22만 가구가 혜택을 받고 있다.

[그림 4-7] 자녀 유무/자녀 수에 따른 20~64세 남녀 고용률(2022)



출처: “2023년 사회보장정책평가보고서-가족,” 프랑스 사회보장국, 2024b, p.11. 그림 5.

27) Le complément du libre choix d'activité; 자유로운 돌봄 방식 선택 제도

마지막으로 목표 (4) - 중장기 가족정책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와 관련해서는, 2014~2015년의 가족수당에 대한 소득조사 강화 및 저소득층 중심의 수당 개편 등으로 적자 폭을 줄이고자 노력하여 2018년에는 흑자로 전환됐다. 이후에도 수치 개선 및 2027년 16억 유로의 흑자를 전망하고 있다.

2024년 가족정책 평가보고서 결론에서는, 2015년 이후 출생아 수가 감소하고 있으나 프랑스가 여전히 유럽 국가 중 가장 높은 출산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가족수당의 재분배를 통해 빈곤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과 자녀 돌봄을 위한 보육서비스 및 수당·세제 지원으로 자녀 양육 비용을 낮추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했다는 측면에서의 성과라고 밝히고 있다. 다만, 아동 발달 및 균등 기회 제공 측면의 공식 돌봄/보육 서비스의 개선 및 부모 간의 공동 육아 장려를 위한 육아휴직 제도 개선 등을 추후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 3. 시기별 주요 정책 및 성과

프랑스는 20세기 초부터 자녀 양육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한 가구에 대한 소득 지원과 출산율 유지(장려)라는 장기 목표를 가지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특히 셋 이상)를 중심으로 정책 지원을 해왔다. 1970년대에는 가족정책의 복지화(welfarization)란 측면에서 한부모 가구 지원을 확대했고, 1980년대에는 일가정 양립 지원과 이를 위한 보육 시설 확충 및 아이돌보미 고용을 위한 재정 지원 등이 시행됐다. 이러한 여러 지원 정책의 영향으로 프랑스의 출산율은 안정적이고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Pailhé & Solaz, 2006).

1990년대에는 대량 실업 발생, 정부의 예산 제약, 젊은 세대의 교육기

간 연장, 첫째아 출산 연기 등으로 프랑스의 출산율은 여성당 1.7명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에 가족정책은 돌봄서비스 지원 등을 통해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한편, 직접 양육을 위해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가정에 대해서도 지원을 강화하여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시행됐다. 예를 들면, 1985년에 3세 미만의 셋째아를 돌보기 위해 일을 중단하는 부모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APE(부모 육아휴직수당)는, 1994년에는 3세 미만 둘째아가 있는 가구로 확대됐다. 그럼에도, 돌봄시설이 부족하고 돌봄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데에는 제한이 있었다(Pison, 2017).

2000년대에는, 여성들의 출산 연령은 늦어졌음에도 자녀 수는 크게 줄어들지 않는 따라잡기 효과(catch-up effect)가 발생하면서 합계출산율이 여성당 2명대로 회복했다. Pison(2009; 2012)에서는 다른 유럽 국가들의 출산율 추세와 비교해볼 때, 프랑스의 가족정책(현금 수당이나, 보육시설 접근성 개선) 및 일가정 양립 정책 등이 이를 설명한다고 분석했다. Thévenon(2008)은 2005년 기준 프랑스의 가족정책 지출액이 GDP의 3.8%로 OECD 국가 평균(2.4%)을 상회했는데, 특히 3세 미만 아동의 보육시설 등록률, 가족수당 등 현금 및 세금 지원 수준이 높았다고 제시했다. 3세 미만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해 일을 잠시 중단해야 하는 부모 대상의 지원을 포함해서, 자녀가 성장하는 기간 동안 어머니가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2004년 첫째아 출산 후 6개월간 육아휴직 급여 지원 및 돌봄서비스 이용 지원을 포함한 유아환영정책(PAJE) 도입 등의 영향으로, 프랑스 여성들은 첫째아 출산 후에도 전일제 일자리를 유지하고 둘째아 출산 이후에서야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이탈하는 경향이 높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가족정책이 아동 및 가구 빈곤을 완화했으며, 특히 자녀 유무에 따른 가구 간 생활 수준의 차이를 개선

하여 자녀가 있는 가구의 상대적인 빈곤율도 개선되었다. 결론적으로, 2000년대 가족정책은 수평적·수직적 재분배를 통해 빈곤을 완화하고, 일 가정 양립 지원으로 여성고용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Fesseau & Ricroch, 2005; Thévenon, 2008; Thévenon et al., 2014).

2008년 경제 위기와 높은 실업률 등으로 프랑스의 합계출산율은 2008년과 2015년 사이에 3.5% 정도 하락했다. 그럼에도, 2015년 기준 프랑스는 EU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출산율을 보였다. 이는, 경제 위기로 인해 출산 시기는 지연됐으나 출생아 수는 크게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Pison, 2017).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프랑스의 가족정책은 크게 저소득 가구 지원 및 아동돌봄서비스(시설 등) 확충의 두 가지로 진행됐다. 먼저, 저소득 가구에 대한 세금 구간을 조정하고 취약 아동 대상 150유로의 현금 지원을 통해 위기를 완화하고자 했다. 2013년 이후에는 사회보장 기금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족계수를 조정하고, 영유아수당을 삭감했다. 다만, 저소득 가구 대상 보조금은 확대하고, 보육시설 중 10%는 빈곤선 미만의 가구에게 보장하는 등 빈곤을 완화하고 사회적 통합(social inclusion)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Thévenon et al., 2014).

Covid-19의 영향 등으로 최근 많은 유럽 국가들의 출산율이 하락했음에도, 2022년 프랑스의 출산율은 EU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2021년의 프랑스 국립통계경제연구소(INSEE<sup>28)</sup>)에서 발표한 프랑스의 인구 추계에서도 중위 가정하에, 프랑스 인구는 2044년 6,930만 명을 달성하고 이후 2070년에는 6,810만 명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2023년에는 출산율이 여성 1명당 1.68명을 기록했는데,

28) Institut National de la Statistique et des Etudes Economiqu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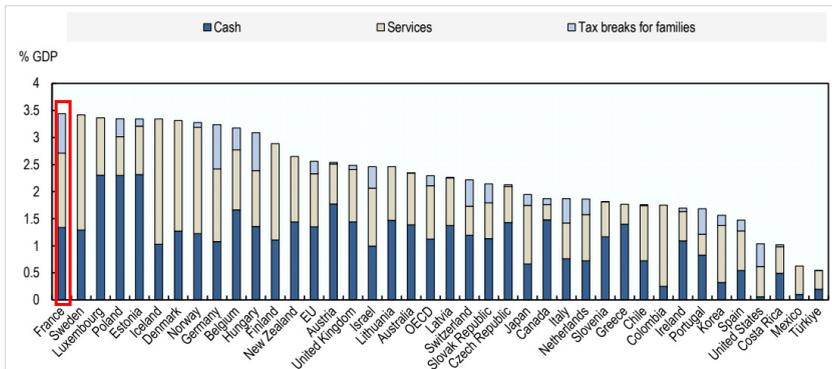
이는 1980년대 출산율 하락이 시작된 이후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였던 1993년과 같은 수치이다. 이에 2023년 출산율을 반영하여 수정 인구 추계를 수행한 한 연구에서는, 출산율이 낮아졌으나 순이민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되고 기대수명이 증가한다면 프랑스의 인구는 2070년까지는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Solaz et al., 2024). 이를 볼 때, 최근 프랑스에서도 출산율 하락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으로 이후 프랑스의 정책적 개입 및 결과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 제2절 가족정책 효과에 관한 실증 분석 결과

프랑스의 가족정책은 자녀가 있는 가구의 기본적인 생활 수준 보장, 아동돌봄서비스 강화 등을 통해 아동의 발달 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 등에 방향성을 두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포괄적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최근 수행된 OECD 국가들의 가족정책 및 성과를 비교한 한 연구에 따르면, OECD 국가들의 가족정책은 하나의 모델로 수렴하지 않고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왔으나 최근에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하고, 남녀 간 평등한 가사분담을 장려하며, 보육서비스(ECEC)에 대한 공적 지원을 강화하고, 부성 휴가 및 유연 근무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프랑스의 가족정책도 이러한 흐름으로 발전해왔는데, 특히 가족정책에 있어 프랑스의 두드러진 차이(an outlier)는 프랑스가 GDP의 3% 이상을 가족정책에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지출 규모가 크고 현금 및 세제 혜택, 보육서비스 등 가족정책의 분야별 지출이 비교적 균등하게 높다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Nieuwenhuis & Van Lancker, 2020). 또한, 여러 연구들에서 20세기 초부터 시행되어 온 프랑스의 가족정책이 비교적 높은 출산율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그리

고 아동 및 유아녀 가구의 낮은 빈곤율 등에 기여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여기에 정책의 일관성, 정책 간의 조화, 자녀가 성장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 정책이 유지될 것이라는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등도 프랑스 가족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언급되고 있다(Fesseau & Ricroch, 2005; Thévenon, 2013).

[그림 4-8] OECD 국가들의 가족정책 GDP 대비 지출 현황 비교(2019)



출처: “OECD Family Database,” OECD, 2023, p.2. Chart PF1.1A. 재인용.

그런데 실증적으로 전반적인 프랑스 가족정책의 효과성을 연구한 초기의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 논쟁이 존재한다. 1990년대의 몇몇 연구들에 따르면 가족정책이 없었다면 출생아 수가 10% 정도 낮아졌을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으며, 1970~1990년대 프랑스의 가족정책이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여성 1명당 0.17~0.20명 정도 출산율을 높였음을 제시했다(Ekert-Jaffé, 1986; Gauthier & Hatzius, 1997). 그러나 이는 국제 간 상이한 정책들을 가족정책지수(family policy index)로 구성하여 비교 연구한 결과로, 다양한 정책의 효과를 단순화하여 분석했다는 비판이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거시 정책이 개인의 출산 결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동수당 등 현금 지

원 및 세제 혜택, 육아휴직, 그리고 영유아 돌봄서비스 등의 여러 가족정책은 상호보완적으로 출산 및 양육에 우호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때문에 특정 가족정책의 효과나 인과성을 분리하여 측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가족정책이 출산율 등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단기간의 효과(windfall effect)만을 정책 효과로 과소평가 하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정책의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제시한 연구들은 거의 없다. 최근의 연구들은 미시 출처를 기반으로 특정 시점에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을 때 출산, 가구소득, 노동공급 등의 변화 및 정책의 효과 등을 분석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Fesseau & Ricroch, 2005; Thévenon, 2009; 2014; Pison & Dauphin, 2020). 이러한 이유로, 본 절에서는 프랑스에서 시행되어 온 정책 및 주요 결과를 간략히 소개하고, 몇 가지 주요 정책 변화의 효과성에 관한 실증 연구 결과 등을 살펴보고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 1. 유아환경정책(PAJE) 정책의 효과

2004년 1월 1일, 취업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목적으로 기존 영아수당, 입양수당, 부모교육수당(APE), 가정에 있는 자녀 양육을 위한 수당, 인증받은 아이돌보미 고용 시 가족 지원 다섯 가지의 수당을 대체하여 유아환경정책(Prestation d'Accueil du Jeune Enfant, PAJE)을 도입하였다. PAJE 개혁으로 보육서비스 보조금의 증가 및 영유아 부모에 대한 기초수당 자격요건 완화 등으로 최상위 소득계층을 제외한 가구들은 여러 가족수당 및 보조금을 연간 3,500유로까지 받게 되었고 영유아 가구의 보육비용은 크게 감소했다.

2004년 PAJE 도입의 효과성과 관련하여 Givord and Marbot(2014)

에서는, PAJE의 도입으로 막내 자녀가 3세 미만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1.1%p 늘어났고 둘 이상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6%p 높아졌는데, 이는 주로 시간제 및 단기 고용의 증가로 인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PAJE의 도입으로 자녀가 3세 미만인 가구 중 유급 보육 서비스를 활용하는 비중은 1.8%p 증가했다. 자녀 수에 따라서는, 자녀 수가 2명인 경우의 유급 보육서비스 이용률은 2.2%p 증가했으나 자녀 수가 3명 이상인 가구에서는 1.2%p만 증가했는데 이는 자녀가 많아질수록 유급 보육서비스보다는 비공식 돌봄으로 전환하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표 4-3〉 PAJE 도입이 여성고용률에 미친 영향

(단위: %p)

구분	전체	자녀 1명	자녀 2명	자녀 3명+
고용률	1.1	n.a.	1.6	1.6
유급 보육시설 이용률	1.8	1.7	2.2	1.2
고용률(최저임금의 1/2 미만)	0.3	-0.3	0.6	0.8
고용률(최저임금의 1/2~1배)	n.a.	-0.3	0.3	0.4
고용률(최저임금 초과)	0.7	0.8	0.7	n.a.

주: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20~55세 여성 가구 대상  
출처: Givord and Marbot, 2014, p.3. 〈표 4〉 재인용.

2015년 7월 사회보장재정법 개정으로, PAJE가 보편수당에서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변화되었다. 2년 전(N-2) 소득이 일정 수준보다 높은 가구의 경우에는 수당을 받지 못하거나(zero benefit) 반액 수당(half benefit)으로 삭감되었다. 제도 개혁의 효과성과 관련한 Elmallakh(2021; 2023)의 분석에 따르면, 반액 수당을 받은 가구의 경우에는 출산율에 큰 영향이 없었으나 수당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된 고소득층에서는 출산율의 하락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동공급에 미친 영향과

관련해서는, 제도 변화로 수당이 감액된 가구들에서 전액 수당 수급자 대비 주당 근로시간이 2~4시간 정도 늘어났다. 기초수당을 받지 못하거나 50% 감액된 경우, 초과근로 가능성이 남성은 11%, 여성은 13% 정도 높아진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표 4-4〉 PAJE의 효과 분석 관련 문헌

구분	분석 내용	이용 자료 및 분석 방법	정책 효과 (주요 분석 결과)
Givord & Marbot (2015)	2004년 PAJE 개혁이 공적 돌봄 이용 및 여성 노동공급에 미친 효과 분석	2005~2009년 기간에 소득세 관련 행정데이터 활용, DID 방법론 적용, 제도 변화로 경제활동참가율 및 유급 아동보육시설 이용 변화 분석	제도 변화로 인해, 영아 어머니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1%p 증가했으며, 유급 아동보육시설 이용은 1.8%p 증가함. 1세 아동의 어머니들의 경제활동참가율(2006년)은 전년 대비 0.5%p, 2세 아동의 어머니들의 노동시장참가율은 동기간 1.6%p 증가함.
Elmallakh (2021, 2023)	2015년 발표된 소득조사 기반의 PAJE가 출산율 및 가구소득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14~2015년도 SRCV <sup>29)</sup> 자료를 활용, RDD(회귀단절 모형)를 적용하여 2014년 가족정책 개혁이 출산율과 노동공급에 미친 영향 분석	기초수당이 50% 삭감된 가구의 출산율에는 큰 영향은 없었으나, 전액 삭감된 경우에는 출산율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제도 도입으로 소득분위가 높은 그룹의 출산율이 2%p 감소함(양육급여 탄력성은 0.61~0.71). 또한, 기초수당이 50% 삭감된 부모의 주당 근로시간이, 전액 수급자보다 2~4시간 늘어남. 또한, 수당 비수급자의 주당 근로 시간도 증가함.

29) Statistiques sur les Ressources et les Conditions de Vie(SRCV): 2004년부터 프랑스 통계청(INSEE)에서 매년 약 12,000가구 대상으로 수행하는 소득과 생활 수준에 대한 조사(the French part of the European Union-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EU-SILC))

## 2. 육아급여수당 정책의 효과

일가정 양립 지원 측면에서 프랑스의 3세 미만 자녀를 돌보기 위해 노동공급을 중단하는 부모들을 지원하기 위한 육아수당정책은 여러 차례 수급 범위 및 자격 조건 등을 완화하며 발전해왔다. 1985년 자녀 출산 전 근로 경험<sup>30)</sup>이 있는 여성에게 셋째아 출산 후 실업 및 비경제활동, 근로 시간 축소, 육아휴직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자녀가 36개월이 될 때까지 정액 육아수당(월 1,000프랑에서 매년 증가)을 지원하고 2년간의 육아휴직을 보장하는 내용의 부모교육수당(Allocation Parentale d'Education, APE)으로 도입되었으며, 1994년 둘째아로 그 혜택(월 3,000프랑)이 확대됐다. 이후 2004년 유아환영정책(PAJE)으로 개편 시 자유로운 돌봄 방식 선택 제도(Complément Libre Choix d'Activité, CLCA)로 변경되면서, 첫째아에게 혜택을 확대했으나 수당 지급은 6개월로 한정했다. 2015년에는 자녀보육 공유 혜택(PreParE)으로 대체되었다. 이러한 여러 차례의 육아급여수당의 변화가 발생했을 때 정책 변화가 출산율과 여성 노동공급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많은 실증 연구 결과가 축적되어 있다.

### 가. 부모교육수당(APE) 제도의 효과

1980년대 이후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인 1993년 이후 1994년부터 출산율의 반등이 일어났는데, 이러한 출산율의 변화가 1994년의 APE 제도를 둘째아에서 셋째아로 확대했던 개혁과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실증 연구가 다수 수행되었다. Piketty(2002; 2005)에서는 1994년의 둘째아에

30) 출산 전 30개월 내 2년 이상 일한 경우

대한 육아수당 확대로 1994~2001년 기간 총 출생아 수 증가(약 6만 명)의 20~30% 정도인 1만 2천 명 정도가 증가했다고 분석하며, 동 기간 출산율 증가에는 1994년 이후 거시 경제지표 개선이 큰 영향을 미쳤으나 육아수당정책의 효과는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했다. Laroque and Salanié(2003; 2005; 2008)에서는 2005년 기준 자녀에 대한 비용 대비 수요 탄력성이 0.2로, 자녀 양육비용을 25% 줄여주면 출산율은 5%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수요 탄력성은 자녀의 출생순위별로 상이하며, 출생순위가 높아질수록 재정 지원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PE 제도 개혁으로 셋째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주어졌던 혜택이 둘째 자녀가 있는 가구로 확대됨에 따라, 둘째 자녀 출산율이 10.9% 증가했으나 셋째 출산율은 2.4% 감소했으며, 둘째 자녀 출산을 위해 노동시장을 이탈한 여성이 3.7% 증가했다고 분석했다.<sup>31)</sup> 그리고 앞의 연구와 유사하게 1994~2000년 사이에 프랑스의 출생아 수가 71.1만 명에서 77.4만 명으로 6만 3천 명 증가(8.9%)했는데, 이러한 수적 증가는 제도 효과로 보기에 큰 변화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결론 내린다.

APE의 둘째 자녀에게로 확대된 변화가 여성 노동공급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Piketty(2002; 2005)에서는 제도 변화로 3세 미만 둘째 자녀가 있는 여성의 10~15만 명, 특히 육아수당(월 3,000프랑) 수급의 편익이 큰 저숙련·저임금 근로자가 노동시장을 이탈한 것으로 추정했다. 그리고, 자녀 수가 셋 이상인 여성 5만 명도 노동공급을 중단하여, APE 개혁으로 총 15~20만 명의 여성 노동시장 참여가 줄어든 것으로 보고했다. 1982~2001년 자료를 기반으로 노동공급 방정식 추정 결과 자녀가 2명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94년 69%에서 1997년

31) 해당 결과 해석에 있어서는 모형 구축 및 자료에의 제약 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이 제기되었다(Thévenon, 2009).

53.5%로 3년간 15.5%p 하락했으며, 1994년 7월 이후 둘째아를 출산한 여성의 일할 확률이 11.3%p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APE 개혁이 없었다면 2001년 기준 최소 11만 명이 실업이나 비경활이 아닌, 취업 상태를 유지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여성의 출산 후 노동시장 복귀와 관련해서는, 제도 개혁으로 둘째아 출산 후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률이 증가했으나 당시 노동시장 여건이 양호하여 자녀가 만 3세가 된 이후에 노동시장 복귀는 크게 어렵지 않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1994년의 부모육아휴직수당(APE)을 기존 셋째아에서 둘째아 출생으로 확대한 후, 새롭게 수급 대상이 된 여성들의 자녀가 3세가 될 때까지 노동시장 복귀 시기를 늦추는 경향이 커졌으나 제도 개혁의 직접 영향은 없었던 첫째아와 셋째아 출산 여성들의 노동시장 복귀율은 높아지고 그 시기도 빨라졌다고 보고했다(Moschion, 2007; Thévenon, 2009; Pailé & Solaz, 2006).

1994년 제도 확대가 출산율 및 여성 노동공급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실증 연구들의 결과를 요약하면, APE 정책 확대가 출산율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으나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행태에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1995년 이후 프랑스의 합계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졌는데 이러한 현상이 특정 정책 효과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연구 결과도 참고할 만하다. Toulemon et al.(2008)에서는 1995년 이후 25세 미만 출산율이 안정적으로 나타났고 25세 이상 출산율도 일정 속도로 증가해왔음을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변해온 다양한 가족정책들의 조합이 프랑스의 높은 출산율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정책 효과를 측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언급하고 있다.

〈표 4-5〉 APE 제도 도입의 효과 분석 관련 문헌

구분	분석 내용	이용 자료 및 분석 방법	정책 효과 (주요 분석 결과)
Breton & Prioux (2005)	1970년 이후 셋째 자녀 지원 정책의 출산율에 대한 효과 분석 (1985년 APE 도입)	1999년 가족역사조사(EH F32) 활용, 1970~1995년 (5년 단위)에 둘째 자녀를 출산한 코호트를 이후 11년간 추적조사한 결과를 기반으로 로지스틱 회귀 모형 적용, 셋째 아이 출산 결정 요인 분석	1985년 APE 도입이 셋째 자녀를 가질 확률을 유지 또는 증가시키는 데 기여, 셋째아 대상 정책이 둘째아 출산 결정에도 영향을 미침.
Piketty (1998)	1994년 7월 APE의 확대 <sup>33)</sup> 로 인한 여성의 노동공급 변화 분석	1982~1997년 INSEE 고용조사 활용, 프로빗 모형 등을 활용하여 APE 확대에 따른 금전적인 유인으로 인한 여성의 고용상태 변화 분석	APE의 확대로 1990년대 후반 자녀가 둘 이상인 여성 10~15만 명이 노동공급 중단(여성고용률 감소),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1994년 69.0%→1997년 53.5%로 감소한 것의 1/3을 APE 확대가 설명함.
Piketty (2005)	1994년의 APE 확대가 여성 노동공급 및 출산에 미치는 영향 분석	1982~2002년 노동력조사와 1999년 가족조사 자료 활용, 프로빗 모형을 적용 3세 미만 자녀가 있는 여성의 노동공급의 변화를 추정	APE 개혁이 1994년부터 2001년 사이에 관찰된 전체 출생 증가의 20~30% 이상을 설명함.(둘째아 육아수당 수급이 끝나는 시점에 셋째아 출생 증가) 그러나 약 15~20만 명의 여성 노동시장 참여 중단을 가져옴(1980년대 수준으로 감소).
Laroque & Salanié (2003; 2005; 2008)	1994년 7월 APE의 확대가 둘째아 출산 (1995년 이후 나타난 출산율의 반등) 및 여성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 추정	1990년대 노동력조사 <sup>34)</sup> 활용 자녀가 2명 이상(3세 미만 아동 포함)인 가구의 20~38세 여성 대상, 가족수당 확대(노동공급에 대한 기회비용)가 출산에 미친 영향을 구조모형 등으로 분석	1994년 가족수당 확대가 출산율 증가의 1/2~3/4를 설명함. 출산 순위가 낮은 자녀의 출산율 상승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그 효과가 1990년대 말까지 지속됨. APE의 확대로 둘째아 출산율이 높아지고(약 3.7% 증가) 여성의 노동공급은 줄어들.
Thévenon (1999; 2006; 2007; 2009)	APE 제도 확대에 따른 여성 노동공급 변화 분석	1992~2005년까지의 노동력조사(Labor Force Survey) 등을 활용, 로그 선형 모형 등 적용하여 자녀 출산과 여성 노동공급에 관한 분석	APE의 확대로, 1996~2005년간 무자녀 여성과 자녀가 1명인 여성의 전일제 근로자 비중이 비슷한 정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전일제 고용률은 자녀수에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남. 여성의 시간제 일자리도

구분	분석 내용	이용 자료 및 분석 방법	정책 효과 (주요 분석 결과)
			증가했으나, 전일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Pailé & Solaz (2006)	APE 제도 변화에 따른 여성 노동공급 변화 분석	Familles et employeurs 조사 자료 기반, 자녀 출산 후 부모의 노동시장 행태 추적조사 결과 분석	APE 제도 변화 이후 첫째아와 셋째아 출산모의 복귀 시점은 빨라졌으나, 둘째아 출산모는 복귀 시점이 늦어졌으며 근로 시간 단축 가능성도 높아짐.
Moschion(2007; 2010)	1994년 APE 개정으로 둘째 자녀를 둔 부모에 대한 가정양육수당 확대가 여성 노동공급에 미친 영향 분석	1990~2002년까지의 노동력조사(경제활동인구 조사)를 활용하여, 21~35세까지의 자녀가 둘 이상인 여성을 대상으로, 1994년 APE 제도 개혁 이후에 여성 노동공급에서 변화가 있었는지 OLS와 2SLS로 분석	1994년 개혁 이전에는 여성들이 셋째아 출산 후에 노동시장을 떠나는 비중이 높았으나, 1994년 이후에는 둘째아 출산 후에 노동공급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남. 지역 기관보육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어머니의 노동참여율이 높아짐.(일가정양립)
Lequien(2012)	1994년 APE 정책이 출산 및 여성 노동공급에 미친 영향 분석	1994년 APE(둘째아 출산 후 3년간 무급 육아휴직, 직장 복귀 보장) 정책으로, 둘째아를 출산한 여성들의 노동공급 감소, 둘째 출산 후 6년간의 소득 감소	둘째아를 출산한 여성들의 노동공급 감소, 둘째 출산 후 6년간의 소득 감소

32) Etude de l'Histoire Familiale(Family History Study)

33) 1994년 12월 31일 기준, APE 수급자는 16만 명(전일제 아동 어머니 15만 명 포함), 1995년 말 기준 12.4만 명, 1996년 말 24.2만 명, 1997년 말 30.3만 명임. 자녀가 두 명인 전체 여성은 70만 명(1997년 기준)으로, APE 수급 비율은 40.9%(3세 미만 아동이 1명 이상인 자녀가 둘인 가구) - 수급 조건은 지난 5년간 24개월 이상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소득이 있는 일자리를 가졌던 자임.

34) the Labor Force Survey

## 나. CLCA의 효과

2004년 기존 APE는 CLCA(Complément Libre Choix d'Activité) 제도로 변화되었는데, 기존 둘째아 출생 시의 육아급여수당을 첫째아에게 확대 적용하되 수급 기간은 6개월로 제한(둘째아 및 셋째아 혜택은 유지)했다. 새로운 제도하에서 첫째아를 직접 양육하기 위해 근로를 완전히 중지할 때는 전액 CLCA 급여를 지급받고 시간제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감액 CLCA 급여를 지급받게 되었다.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첫째아 출산 후 여성이 노동공급을 중단하는 비율이 높지 않은 편으로, 2005년 기준 영유아 자녀가 1명인 여성 중 85%, 자녀가 둘인 경우에는 76.2%, 셋 이상인 경우에는 54.1%가 일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Joseph et al.(2013)에서는 CLCA 도입으로 자녀 수가 1명인 여성의 고용률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저학력 여성의 경우에는 감액 CLCA 급여 수급률이 적용되면서 출산 후 18~24개월간 고용률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Givord and Marbot(2015)에서도 PAJE-CLCA 도입으로 자녀가 영아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1%p 증가했으며, 유급 아동보육시설 이용은 1.5%p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생각보다 정책 효과가 크지 않았던 것은 유급 보육시설의 접근성과 활용 가능성에 제약이 있었기 때문으로 평가하고 있다.

〈표 4-6〉 PAJE-CLCA 제도 도입의 효과 분석 관련 문헌

구분	분석 내용	이용 자료 및 분석 방법	정책 효과 (주요 분석 결과)
Joseph et al.(2013)	2004년 도입된 PAJE 중 하나인 CLCA <sup>35)</sup> 가 출산 여성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	Generation 98 survey 자료(4th round, 2000~2008년 자료 포함)를 이용하여 DID 방법으로 첫째아 육아지원 급여 도입이 여성 노동시	정책 도입 후에도 자녀 수가 1명인 여성의 고용률에는 큰 변화가 없었음(출산 후 6개월, 12개월, 24개월). 전액 CLCA는 출산 후 임금에 미치는 영향 없었음. 감액

구분	분석 내용	이용 자료 및 분석 방법	정책 효과 (주요 분석 결과)
	친 영향 분석	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CLCA 경우에는, 저학력 여성의 출산 후 18~24개월간의 고용률을 높임.
Givord & Marbot (2015)	2004년 PAJE 개혁의 공적 돌봄 이용 및 여성 노동공급에 미친 효과 분석	2005~2009년 기간 소득세 관련 행정데이터 활용, DID 방법론 적용, 제도 변화로 경제활동참가율 및 유급 아동보육시설 이용 변화 분석	제도 변화로 인해, 영아 어머니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1%p 증가했으며, 유급 아동보육시설 이용은 1.8%p 증가함. 1세 아동의 어머니들의 경제활동참가율(2006년)은 전년 대비 0.5%p, 2세 아동의 어머니들의 노동시장참가율은 동 기간 1.6%p 증가함.

#### 다. PreParE의 효과

2015년 1월 1일, 기존 CLCA를 대체하여 공동양육수당(Prestation Partagée d'Education de l'Enfant, PreParE)이 시행되었다. 기존 CLCA에서는 첫째아 출생 시 육아급여수당이 지급되는 기간이 부모 합산 6개월이었으나, PreParE 체제하에서는 첫째 자녀가 만 1세가 될 때까지 부부 각각 6개월간 수급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다. 둘째아는 기존 부모 합산 36개월이었는데, 개정 이후에는 부모 합산 최대 36개월에서 부모가 각각 24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되었으나, 육아급여수당액(월 최대 397 유로)은 변동이 없었다. 해당 제도 개편은 자녀의 생후 첫 6개월간 부모의 자녀돌봄 지원, 아버지의 육아 참여 장려, 어머니의 고용 유지, 일가정 양립 및 재정 안정화 등의 목적으로 이뤄졌다. 제도 도입 이후 기존 CLCA의 2014년 말 수혜자 대비 2018년 말 PreParE 수혜자 수는 43% 감소하는 등 제도 이용도가 낮아졌다. 프랑스 정부의 2018년 정책 평가 결과에

35) Complément Libre Choix d'Activité(자녀보육 방식의 자유로운 선택에 대한 보조금)는 첫째아 출산 후 6개월간 근로 완전 중지 시 전액 급여(full CLCA) 혹은 시간제 근로 시 감액 급여(reduced CLCA) 지급, 둘째아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3년간 지급함.

따르면, 제도 변경으로 부모돌봄(PreParE 수급) 대신 대체 보육 방법을 활용하는 비중이 증가했고 일자리 복귀가 어려운 저소득 가정의 순소득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도가 수급 대상이 되기 어려운 한부모 가정이나 육아휴직 활용이 자유롭지 않은 시간제 근로자 및 자영업자의 증가 등 사회 및 노동시장의 변화를 정책적으로 충분한 고려하지 못했고 복잡한 수급 조건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Auzel et al. 2019).

Périvier and Verdugo(2021; 2023)에 따르면,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를 장려하는 방향의 PreParE 제도 도입 이후에도 첫째아 출산 이후 여성 육아휴직(6개월) 이용에는 큰 영향이 없었다고 분석했다. 이는 연장된 육아휴직 기간 대비 육아급여수당의 급여 수준이 낮은 편이어서 제도 변화의 효과가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여성 육아휴직이 상대적으로 길어지면서 가구 내 여성의 노동공급 및 근로소득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제 근로자인 남성의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할 경우 공동양육수당 수급으로 월 소득이 200 유로 증가함에도 육아휴직 신청률이 높지 않았으나, 자영업자나 고소득 남성의 육아휴직 신청은 높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표 4-7〉 PreParE 도입의 효과 분석 관련 문헌

구분	분석 내용	이용 자료 및 분석 방법	정책 효과 (주요 분석 결과)
Périvier & Verdugo (2021)	2015년 PreParE(육아휴직-36개월에서 24개월로 축소) 도입이 부모 노동공급에 미친 영향 분석	PreParE(2014) <sup>36)</sup> 도입의 효과 분석, CNAF의 사회보장자료(행정데이터)와 INSEE 고용조사 자료 활용, DID 방법론 적용	제도 도입 이후에도, 첫째아 출산 이후 여성 육아휴직(6개월) 사용에는 큰 영향이 없었음. 여성 육아휴직이 길어지면, 어머니의 노동공급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단기적으로).

구분	분석 내용	이용 자료 및 분석 방법	정책 효과 (주요 분석 결과)
Périvier & Verdugo (2023)	2015년 1월 PreParE 개혁 <sup>37)</sup> 의 효과 분석	프랑스 가족 급여 행정자료와 EDP <sup>38)</sup> 활용. 2014년 12월과 2015년 1월에 태어난 아이가 있는 가구 자료로 DID 적용	여성의 육아휴직 25%p 감소 및 근로소득 증가, 남성의 육아휴직은 0.8%p 증가(효과 미미)

### 3. 세제 혜택의 효과

세제 감면을 통한 가족정책인 가족계수(quotient familia)는 1945년 도입되어 가족 지위 등에 따라 계수를 부여하여 소득세 산정에 활용되고 있다. 1981년의 세제 개혁으로 계수 산식에서 셋째 자녀를 기존의 0.5명에서 1명으로 환산하는 내용으로 제도 변화가 있었다. Landais(2003)에서는 가족계수가 셋째아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제도 변화가 출산 결정에 긍정적이나 효과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수가 두 명인 가구에서 세제 감면이 1% 증가했을 때, 셋째 아이를 낳을 확률은 0.05% 미만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Laroque and Salanié(2014)에서는 현재 세제 혜택 제도하에서 월 150유로(GDP의 0.3%에 해당)를 아동수당으로 추가 제공할 경우의 변화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는데, 그 결과 출산율은 3.3%p(15.5%→18.8%) 증가하고, 여성 노동시장참여율은 3.6%p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36) PreParE의 정책 목표는 1) 부성 육아휴직 장려 2) 여성의 노동시장으로의 복귀 장려임.

37) 개혁 이전에는 첫째아의 경우 부모 합산 6개월, 개혁 이후 부모 각각 6개월 신청 가능. 둘째아는 부모 합산 36개월에서, 개혁 이후 부모 합산 최대 36개월 한도 내에서 부모 각각 24개월까지 신청 가능. 기타 육아휴직 급여 등의 조건은 개혁 전후 동일

38) Échantillon démographique permanent (EDP)

〈표 4-8〉 세계 혜택 효과 분석 관련 문헌

구분	분석 내용	이용 자료 및 분석 방법	정책 효과 (주요 분석 결과)
Landais (2003)	1981년 가족계수 개정이 셋째아 출산 에 미친 효과 분석	1915~1998년 프랑스 소득 세 자료를 활용하여, 1981년 가족계수(quotient familia l) 조정(소득 상위 10% 가구 에 대해 자녀 세금 혜택 삭 감)이 셋째아 출산에 미친 영 향을 DID 방법으로 분석	제도 개정의 효과는 긍정적 이나 크지 않음. 셋째 자녀 에 대한 세금 감면 1% 증가 가 셋째아 출산 확률을 0.0 5% 높임. 고소득층에서는 가족계수 조정에도 출산율 감소는 크게 나타나지 않 았음.
Laroque & Salanié (2014)	세계 혜택 및 현금 수당이 여성의 출산 및 노동공급에 미친 영향 분석 및 시뮬레이션, 현재 세 금-현금수당 지원체 계에 월 150유로의 아동보조금을 추가 했을 때, 출산 및 여 성 노동공급에 미치 는 영향 추정	1997~1999년 경제활동인구 조사 활용, 여성 노동공급과 출산 여부의 조합에 따라 기 대효용을 계산, 세계 혜택 및 현금지원(tax-benefit syste m)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2 단계 선택모형 활용하여 분석	현재 세계 혜택제도하에서, 월 150유로(GDP의 0.3%에 해당)를 아동수당으로 추가 제공할 경우 출산율은 3.3% p(15.5%→18.8%) 증가하 고, 여성 노동시장 참여율은 3.6%p 감소함.(보육서비스 및 육아휴직 등을 고려하면 그 효과는 더 커질 가능성이 있음)

#### 4. 보육서비스 지원정책의 효과

2000년 6월, 공식 보육시설의 접근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국가보육정책(Plan Crèche)이 시작됐다. 지방정부의 주도로 EAJE(Établissements d'Accueil du Jeune Enfant, 영유아보육시설) 설립이 주로 이뤄졌으며, 2000년과 2016년 사이에 약 10만 개의 시설이 신설되었고 15만 개의 보육시설이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2016년 기준 프랑스는 OECD 국가 중 보육시설서비스 접근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이며, 2세 이하 아동의 56% 이상이 보육시설을 활용하고 있고 3세 아동의 경우에는 등록률이 99%에 달한다(Villaume & Legendre, 2014; Pora, 2020).

프랑스의 공적 돌봄서비스(보육시설서비스) 활용과 여성 노동공급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 중, Moschion(2007)에서는 영아가 보육시설에 조기 등록하는 것이 여성의 일과 가정 양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2세 보육시설 등록률이 높은 지역(départements)에서는 자녀의 수와 관계없이 어머니의 노동시장참가율이 높았고, 보육시설 등록률이 낮은 지역에서는 자녀가 둘 이상인 여성의 노동공급도 적고 근로 시간도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부모 가정의 경우에 영아의 조기 보육시설 등록이 여성의 노동공급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났으며, 조기 시설 등록이 아동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관찰되지 않았음을 제시하였다(Goux & Maurin, 2010).

Pora(2020)에서는 보육시설 확충과 여성 노동공급의 관계를 분석하고 있는데, 연구분석 기간인 2007~2015년의 보육시설 확충이 2016년 기준 8천 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여성이 임금근로자 일자리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됐고 2000~2016년 기간에 시행된 보육시설 확충 정책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0.4%p 높였다고 추정했다. 따라서, 해당 정책이 여성 노동공급에 미친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은데, 이는 보육시설 확충과 육아휴직이나 육아급여수당의 대체효과 때문으로 보고 있다. 또한, 보육시설 확대가 아이돌보미 등 개인 양육서비스 수요를 13%p 줄이는 등 고비용 돌봄 방식을 구축하는 효과가 컸으나, 개인 양육서비스의 활용도가 높은 고소득층에게 그 혜택이 돌아갔을 가능성도 제기하였다. 정부지출 측면에서는, 집단 보육시설 15만 개 설립 및 운영에 따른 정부 지출이 연간 7억 3,800만 유로이나, 여기에서 시설 돌봄서비스의 개인 양육서비스 대체효과를 상쇄하면 장기적으로 정부 지출을 연간 3억 6,900만 유로 정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Givord et al.(2015)에서는 2004년 PAJE 제도 개혁 중 개인 양육서비스(아이돌보미 등) 부담 경감을 위한 보육유형 자유선택 보조금(CMG)

제도 변화에 따른 여성 노동공급 변화를 분석했다. CMG는 2005년 소득 분위가 7~8분위(중위소득)인 가구를 기준으로 개정 전 연간 1,600유로에서 개정 후 연간 5,000유로로, 전체적으로 평균 50%의 보육서비스 보조금이 증가했다. 제도 개정으로 2006년 기준 영유아 자녀가 있는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율이 1~2%p 정도 높아졌는데, 스웨덴, 노르웨이, 스페인의 유사한 분석 결과와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효과가 작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프랑스에서는 보육서비스 보조금 제도 변화 이전에도 부모가 직접 양육을 원하는 경우 육아휴직이나 양육급여수당 등 다른 지원 제도의 활용 가능성이 높은 편이었으며,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온 친출산정책 및 일가정 양립 지원(가족수당 및 보육서비스의 접근성과 질 제고 노력)의 영향으로 자녀가 1명인 여성이나 3세 이상의 자녀가 있는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율이 이미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보육보조금 정책 효과가 크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표 4-9〉 아동돌봄서비스와 여성 노동공급 관련 문헌

구분	분석 내용	이용 자료 및 분석 방법	정책 효과 (주요 분석 결과)
Choné et al.(2004)	여성 노동공급과 보육서비스 비용과의 관계 분석	1997~1998년 소득세 조사 자료와 고용력 조사 자료를 매칭하여 활용. 보육서비스 수요함수 및 여성 노동공급 함수 추정	정책 시뮬레이션 결과, 육아휴직급여가 없다면 3세 미만 자녀가 있는 여성의 노동공급이 4%p 증가하고 유급 보육서비스의 활용이 2.4%p 증가함. 여성 노동공급이 보육서비스 가격에 크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음.
Maurin & Roy (2008)	그르노블 지역의 보육시설이 여성 노동시장 성과 및 아동 발달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07년 그르노블 지역 대상 “가족과 보육서비스” 설문조사 활용. 시설 설치 지역과 비설치 지역의 여성 노동공급 변화 및 노동시장 성과 등 비교	보육시설이 100개 신설되면, childminder가 돌보던 아동 중 70%, 부모양육 아동 30%의 감소가 나타남. 기관 운영 순비용은 62만 유로, 단기 편익(여성 노동공급 등)은 약 60만 유로로 추산되어 BC가 1에 가까움. 여성의 경력 지속 등

구분	분석 내용	이용 자료 및 분석 방법	정책 효과 (주요 분석 결과)
			을 고려하면 1개 시설의 순익은 1만 유로로 추산되며, 아동 발달 관점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발견됨.
Goux & Maurin (2010)	공적 돌봄시설 활용이 여성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인구주택총조사 1999년 자료의 1995~1997년에 태어난 아동 대상, 회귀단절 모형 적용	조기 보육기관 등록으로 한부모 가구의 여성 노동공급 증가(탄력성 0.25). 조기 보육기관 등록이 아동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관찰되지 않음. 2세 아동에 대한 다른 정책보다 조기보육/교육시설 정책이 비용 효과적임.
Moschion(2007; 2010)	1994년 APE 개정으로 둘째 자녀를 둔 부모에 대한 가정양육수당 확대가 여성 노동공급에 미친 영향 분석	1990~2002년까지의 노동력 조사(경제활동인구조사)를 활용하여, 21~35세까지의 자녀가 둘 이상인 여성을 대상으로, 1994년 APE 제도 개혁 이후에 여성 노동공급에 변화가 있었는지 OLS와 2SLS로 분석	1994년 개혁 이전에는 여성들이 셋째아 출산 후에 노동시장을 떠나는 비중이 높았으나, 1994년 이후에는 둘째아 출산 후에 노동공급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남. 지역 기관보육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어머니의 노동참여율이 높아짐.(일가정 양립)
Allègre et al. (2015)	3세 미만 자녀가 있는 여성의 노동공급과 돌봄 방법 결정에 있어서 보육비용이 미치는 영향 분석	2002년 7세 미만 영유아에 대한 돌봄행태 조사 등을 활용, 여성 노동공급, 유급 보육시설 활용, 전일제 결정요인 분석	자녀 보육 비용이나 급전적인 유인은 어머니의 노동공급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무상보육은 자녀가 있는 여성의 노동공급을 높임.
Givord & Marbot(2015)	2004년 PAJE 도입의 효과 분석 (보육서비스 보조금 CMG 지원)	2005~2009년 소득세 환급 자료를 활용, DID 적용하여 제도 개혁 전후 비교	제도 개정으로 2006년 기준 영유아 자녀가 있는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율이 1~2%p 정도 높아짐.
Pora (2020)	보육시설 확충이 부모 노동공급에 미친 영향 분석	2007~2015년 CNAF와 프랑스 사회보장청의 EAJE 시설 자료, DADS 노동시장 자료, EDP 및 행정 출산 자료를 중단 자료로 활용, DID 방법론 등을 적용하여 지역별 보육서비스 확충 시기의 노동공급 및 보육방식 간의 대체효과에 대해 분석	보육시설 이용과 부모육아휴직 간의 대체효과, 개인 양육 방식을 구축한 효과 등을 고려하면, 보육시설 확충이 부모 노동공급에 미친 효과나 비용 대비 편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제3절 고령화 대응 정책의 성과

### 1. 노후소득보장정책(연금)의 성과<sup>39)</sup>

프랑스의 공적 연금제도(일반 레짐; régime général)는 1층의 확정급 여형 형태로 운영되는 기초 연금(Régime de base)과 2층의 보충적 기업 연금(Agirc-Arrco)로 구성되어 있으며, 별도로 노인에 대한 최장 보장을 위한 자산조사 기반의 노령연대수당(Allocation de Solidarité aux Personnes Âgées, ASPA)제도가 있다. 일반 레짐은 25년 가입 시 소득 대체율 50%로 설계되어 있으며, 2014년 1월 20일 소득이 평균 임금의 1/3인 경우 연금의 최소 소득대체율이 70%가 하한선이 되도록 조정했다. 그리고 2023년 연금개혁으로, 연금 개시 연령을 기존 62세에서 64세로 점진적으로 상향하고, 완전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납부 기간이 2027년부터는 42년에서 43년으로 늘어났다.

프랑스 정부는 사회보장 정책 평가 보고서에서 연금제도의 주요 목표로 (1) 연금 수급자에게 적절한 생활 수준 보장 및 소득재분배(연대) (2) 연금제도의 형평성 (3) 근로 기간 연장 및 고령자 고용 확대 (4) 연금제도에 대한 인식 및 접근성 제고 (5) 연금 재정 안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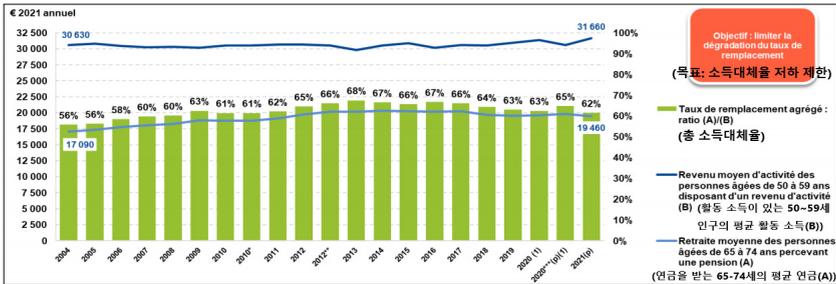
성과 목표 (1)의 연금 수급자의 적절한 생활 수준 보장과 관련하여 연금제도의 대표적인 성과 지표인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살펴보면, 2021년 기준, 65~74세 연금 수급자의 50~59세 임금근로자(연평균 소득 31,660유로)의 소득 대비 연금소득대체율<sup>40)</sup>은 62% 수준이며, 연평균 연금급여액은 19,460유로이다. 2004~2013년간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39) 본 절은 프랑스 사회보장국(2024c)의 “2023년 사회보장정책평가보고서-연금”의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함.

40) 60~64세 연령대는 고용-은퇴 전환 시기로 산식에서 제외함.

56%에서 68%로 크게 높아졌는데, 이는 연금 가입자의 가입 기간 증가로 인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연금 수급자들의 연금수급액 분포는 상위 10%가 2021년 기준 연간 32,570유로, 하위 10%가 6,650유로로, 상위 10%와 하위 10% 수급액의 차이는 4.9배이며 이 비율이 유지되고 있다. OECD 국가들의 연금 소득대체율을 비교했을 때, 프랑스는 보충 연금 등을 포함한 경우 2022년 기준 연금 소득대체율이 72%로 EU 평균보다 4%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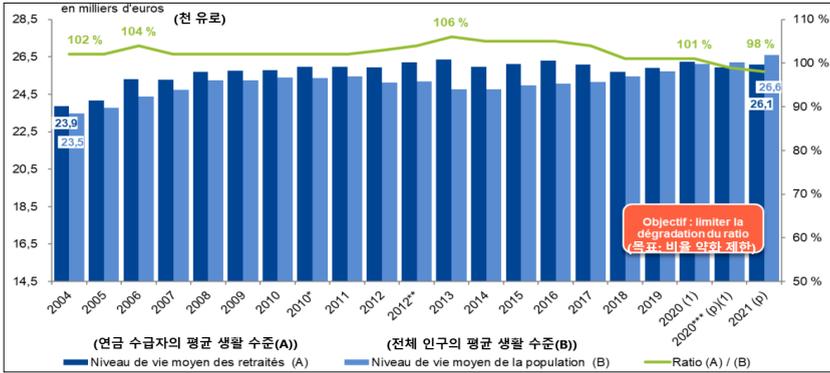
[그림 4-9] 연금의 소득대체율(65~74세 연금수급액과 50~59세 근로소득 비교)



출처: “2023년 사회보장정책평가보고서-연금,” 프랑스 사회보장국, 2024c, p.93. 그림 1.

연금 소득대체율에는 자산소득이나 기타 사회복지 혜택은 제외되어 있어, 이를 은퇴자의 소득에 포함할 경우 은퇴자의 평균 소득 수준은 소득이 있는 전체 인구 평균 소득 수준의 98%(2021년 기준), 근로자 평균 소득의 90%에 달한다. 2020년 기준 OECD 국가들과 65세 이상 가구의 가처분소득 수준을 비교했을 때도 프랑스는 65세 이상 가구의 가처분소득이 평균 소득의 99.8%로 나타나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로 평가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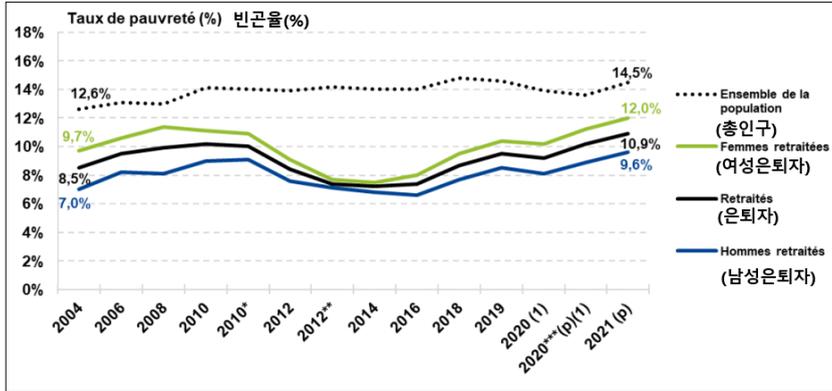
[그림 4-10] 전체 인구 대비 은퇴자의 소득 수준 비교



출처: “2023년 사회보장정책평가보고서-연금,” 프랑스 사회보장국, 2024c, p.96. 그림 1.

다음으로 연금의 소득재분배(사회적 연대 강화)와 관련하여 노후소득 보장제도를 통한 빈곤 완화 효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0~2017년 기간에 빈곤선 이하 은퇴자 비율은 낮아져 왔다. 2021년 말 기준 약 66.4만 명(2020년 대비 4.6% 증가)이 최저 노령수당 또는 노인연대수당(ASPА)을 수급했으며, 2021년 기준 빈곤선 이하인 은퇴자의 비율은 10.9%로 전체 인구의 빈곤율인 14.5%보다 3.6%p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성별로는, 여성의 빈곤율이 12.0%로 남성(9.6%)보다 높는데 이는 출산 및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이나 시간제 근로 등 남녀 간 근로 경력 차이 및 임금격차로 인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전체 65세 이상 인구의 빈곤율(중위소득의 50%)은 4.4%로 OECD 평균인 13.9%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낮은 수치이다. 보조지표인 빈곤선 이하 인구 규모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빈곤선(중위소득의 60%)인 월 1,158유로 이하에 속하는 빈곤층의 규모는 910만 명(이 중 연금 수급자는 160만 명)이며 이들의 평균 소득은 월 924유로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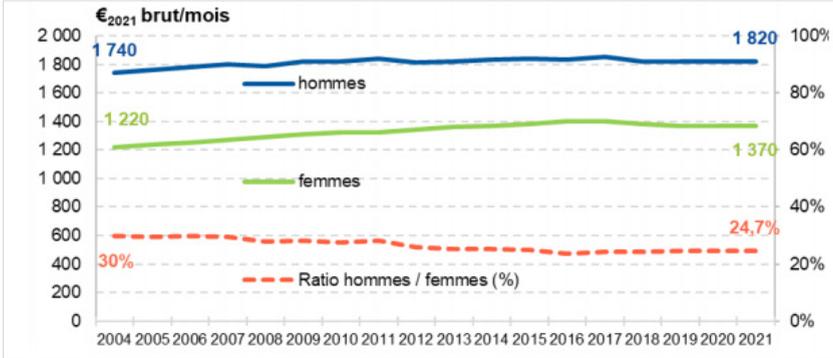
[그림 4-11] 성별 빈곤율 - 은퇴자



출처: “2023년 사회보장정책평가보고서-연금,” 프랑스 사회보장국, 2024c, p.101. 그림 1.

성과 목표 (2) 연금 제도의 형평성 제고와 관련하여서는 세대 내 및 세대 간 연금격차, 특히 성별 노후소득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여성의 근로 여건 개선 및 여성의 경력 단절 기간 등에 대한 연금 기간 산입 등으로 남녀 간의 연금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21년 기준, 여성 평균 연금 수급액은 1,400유로, 남성은 1,850유로로, 여성과 남성의 연금 격차는 월 450유로이며 여성의 평균 연금액이 남성 평균 연금액의 63% 수준이다. 이러한 연금격차는 2006년 45%, 2013년 40%, 2018년 38%, 2021년에는 37%로 완화되어 가고 있다. 여기에 유족 연금까지 고려하면 여성의 평균수명 연장 등으로 연금격차가 2006년 30%에서 2021년에는 25%로, 2037년에는 15%, 2070년에는 7.5%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림 4-12] 성별 연금수령액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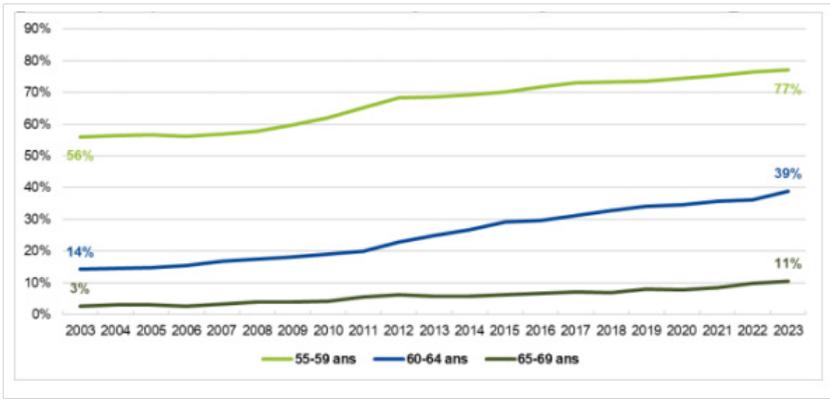


출처: “2023년 사회보장정책평가보고서-연금,” 프랑스 사회보장국, 2024c, p.9. 그림 2.

성과 목표 (3)의 근로 기간 연장 및 고령자 고용 확대와 관련해서는, 2021년 5월 일자리와 성장을 위한 ‘유럽 2030’ 전략과 연계하여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늘리고 20~64세 여성 및 남성의 고용률을 78%로 높여겠다는 정책 방향을 갖고 있다. 프랑스의 고령자 고용률을 살펴보면, 프랑스의 55~64세 고용률은 2023년 평균 58.4%로 EU 27개국의 평균인 63.9%보다 낮은 수준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55~59세 평균 고용률은 77%(유럽 평균 76%), 60~64세 38.9%(유럽 평균 50.9%), 65~60세는 10.6%(유럽 평균 15.2%)로 60세 이후 급격히 낮아짐을 알 수 있다. 다만, 연령대별 고용률은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2003~2023년 기간에 55~64세 고용률은 20.2%p 상승했다. 고령층의 고용률의 변화는 인구구조적 영향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2001년부터 2차 세계대전 이후 베이비붐 세대가 55~64세 연령대에 진입하면서 고용률이 높아졌고, 2005~2011년 사이에는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와 고령층의 은퇴 증가로 고용률 증가폭이 둔화된 부분이 있다. 분석에 따르면 2003~2012년 기간에 고령층의 고용률은 11%p 상승하였는데, 만약 인구통계학적 효과가 없었다면 고용률은 7%p 상승했을 것으로 보고있다.

2012~2023년 기간에 프랑스의 고령층 고용률은 8.7%p 상승했으며 최근 코로나19 위기에도 고령층의 고용률은 높아졌다.

[그림 4-13] 고령자 연령대별 고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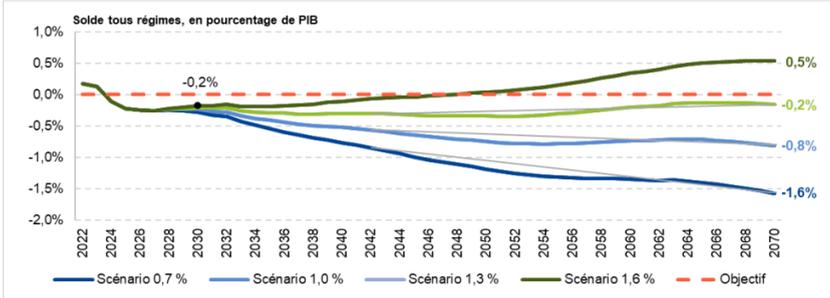
출처: “2023년 사회보장정책평가보고서-연금,” 프랑스 사회보장국, 2024c, p.10. 그림 3.

최근 몇 년간의 고령자 고용률 변화의 주요 결정요인은 여러 차례의 연금개혁과 조기 퇴직 비중의 변화라고 분석하고 있다. 2010년 수급 개시 연령을 60세에서 62세로 조정하고 2014년 필요 가입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연금개혁으로 2012년 이후 조기 퇴직 후 감액연금을 수급한 사람의 비율은 13%에서 2%로 급감하고, 2017년 말에는 0.5% 수준까지 낮아졌다. 또한, 법정 정년이 60에서 62세로 연장되면서 2011년 60~61세 고용률이 크게 높아졌고 60~64세 고용률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다만, 62세에 연금의 수급요건을 갖춘 조기퇴직자들의 증가로 상쇄되어 60~64세 고용률 증가폭은 크지 않았다. 2011~2017년 기간에 조기 퇴직 비율은 남성의 경우 9.6%p 증가, 여성의 경우 4.7%p 증가했다. 완전 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하기 직전 해의 연금 수급 대상자 경제활동상태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64%가 고용상태이나 35%는 실

업이나 비경제활동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 목표 (4)의 연금제도에 대한 인식 및 접근성 제고와 관련해서는, 연금 가입자에게 수급 자격, 과거 가입 이력, 누적된 연금 권리 및 연금 추정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1,380만 명에게 개인별 연금정보 접근성을 제고했다. 또한, 연금 미수령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성과 목표 (5)의 인구구조 변화와 연금 재정 안정화와 관련해서는, 프랑스는 인구 고령화 및 연금 수급자 수의 증가로 인해 연금재정이 악화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차례의 연금개혁을 단행했으며, 2023년부터 연금 수급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연장하고 의무 가입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프랑스의 연금 재정 상태는 2023년 GDP 대비 0.1%p 흑자에서 2023~2032년 기간에는 GDP 대비 0.2~0.3%p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향후 25년간 경제변수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 가정에 따른 모든 결과에서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으로, 장기적으로 노동생산성이 연평균 1.6% 상승하는 시나리오에서만 수지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평가 결과 보고서의 결론에서는, 현행 제도가 연금 수급자에게 적절한 생활 수준을 보장하고 소득 재분배 측면에서도 그 목표를 충분히 달성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제도의 종류 및 복잡성으로 인한 투명성 저해 부분을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중장기 관점에서의 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림 4-14] 연금재정전망 - 노동생산성 시나리오별 비교



출처: “2023년 사회보장정책평가보고서-연금,” 프랑스 사회보장국, 2024c, p.133. 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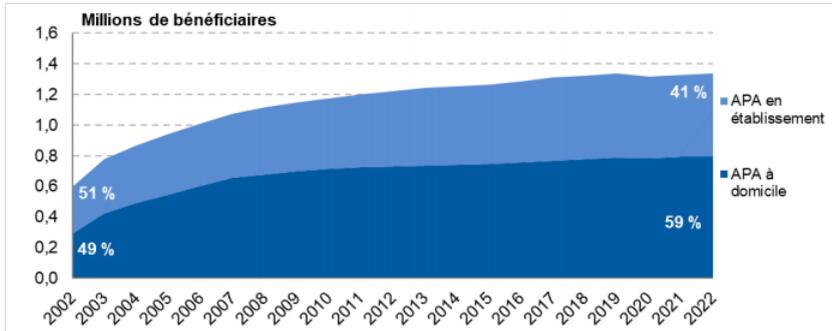
## 2. 노인돌봄서비스(APA)의 성과<sup>41)</sup>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 중 자율성 제고 정책은 고령자 및 장애인 등의 자립 지원과 돌봄서비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정책 목표는 (1) 정책 대상자들의 적절한 생활 수준 보장 (2) 자립 욕구 충족 (3) 지역 별 서비스 격차 완화 (4) 재정 지속 가능성 제고 등이다. 2022년 기준 자립 및 자율성 제고 정책 예산은 총 851억 유로이며 이 중 약 1/3인 약 277억 유로가 노인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배정되어 있으며, 별도로 노쇠 예방 등을 위한 예산 14.9억 유로가 있다. 2021년 기준 프랑스 15세 이상 인구의 14%인 760만 명이 일상생활에 심각한 제한이나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 중 60세 이상은 450만 명으로 60세 이상 인구 중 25%에 해당한다. 제약 조건의 비중은 신체적 제약(65%), 감각적 제약(41%), 인지적 제약(29%) 순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20%는 두 가지, 6%는 세 가지 영역의 제약을 모두 갖고 있다.

41) 본 절은 프랑스 사회보장국(2024a)의 “2023년 사회보장정책평가보고서-자율성”의 주요 내용(고령자)을 바탕으로 작성함.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제도에 해당하는 개인별 자립수당(Allocation Personnalisée d'Autonomie, APA)은 자립 능력이 상실된 고령자에게 재가 혹은 시설 서비스의 비용을 충당하는 제도로, 60세 이상 인구 중 도움 필요 정도를 구분하는 6개 등급(AGGIR) 중 1~4등급 해당자를 수혜 대상으로 한다. 2022년 말 기준 APA 수혜자는 130만 명(60세 이상 인구의 7.2%)이며, 등급별로는 1등급(전적인 도움 필요) 7%, 2등급 28%, 3등급 21%, 4등급 44%이다. 서비스별로는 재가서비스 수혜자는 79만 3천 명(전체 수급자의 59%)이고 시설서비스 수혜자는 54.2만 명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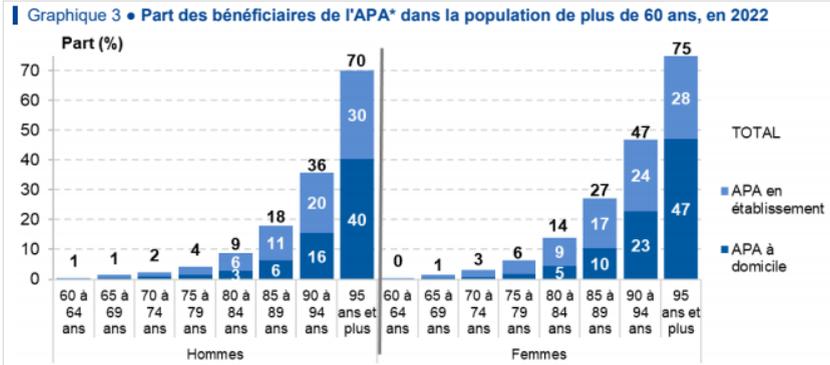
[그림 4-15] APA 수급자 추이



출처: “2023년 사회보장정책평가보고서-자율성,” 프랑스 사회보장국, 2024a, p.35. 그림 1.

연령대별로는 80세 미만 인구 중 APA 수혜자 비중은 2.2%, 80~89세 인구의 17%(해당 연령대 여성 인구 중 21%, 남성 12%), 90세 이상 인구의 50%(여성 54%, 남성 42%)이다. 수혜자는 2002년 제도 도입 후 2004년까지 빠르게 증가하다 2005~2009년 기간은 증가세가 둔화,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해오고 있으나 잠재 서비스 대상 인구의 증가 속도보다는 느리게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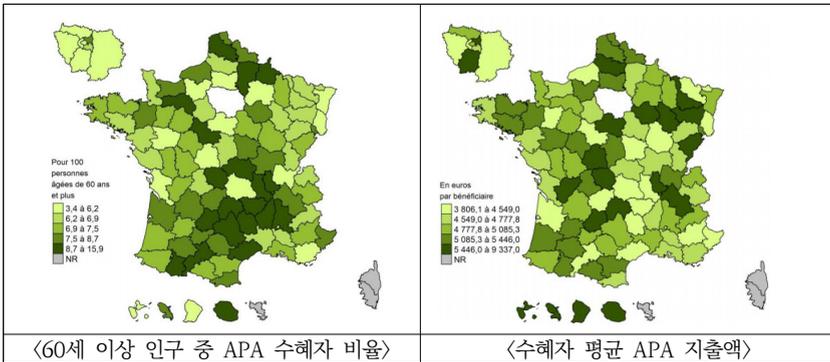
[그림 4-16] 60세 이상 인구 중 APA 수급자 비중(2022)



출처: “2023년 사회보장정책평가보고서-자율성,” 프랑스 사회보장국, 2024a, p.41. 그림 3.

APA 지출액은 2009년 50억 유로에서 2022년 63.5억 유로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2년 수혜자 1인당 APA 지출액은 연간 5,100유로이다. 지역별 고령자 분포 및 건강 격차 등으로 인해 지역별로 APA 지출액은 3,800유로에서 8,700유로로 2배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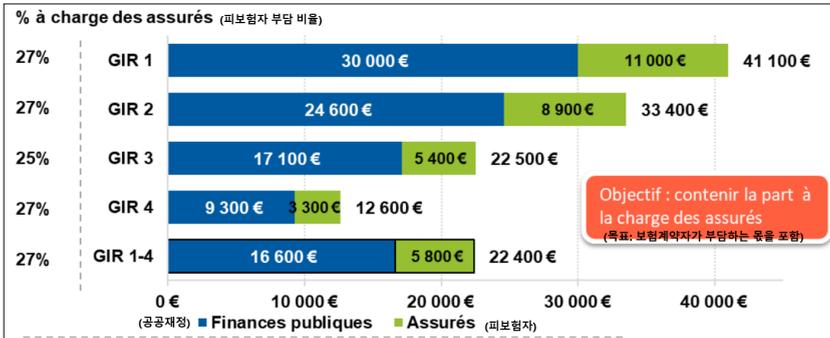
[그림 4-17] 2022년 지역별 APA 수혜자 비율 및 평균 지출액



출처: “2023년 사회보장정책평가보고서-자율성,” 프랑스 사회보장국, 2024a, p.36. 그림 1과 2.

정책 성과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정책 대상자의 적절한 생활 수준과 관련해서는, 고령자의 돌봄서비스 및 시설부담금을 경감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돌봄이 필요한 고령자의 적절한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현물 지원, 자립수당(APA) 및 주택 지원, 재가 간병인 고용 시 사회보장 부담금 면제 또는 세금 공제 등은 GIR 등급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지나, APA의 보장률을 73~76%(총비용 대비 지원액)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GIR 1~4 등급 연평균 1인당 간병 비용은 22,400유로이며 이 중 정부 부담이 16,600유로, 본인 부담은 5,800유로이다. GIR 1 등급의 경우에는 연평균 간병 비용이 41,100유로이며, 이 중 정부 부담금 30,000유로, 본인 부담금 11,000유로로 본인 부담 비율이 27%이다.

[그림 4-18] GIR 등급별 1인당 연간 자립생활 지원 비용(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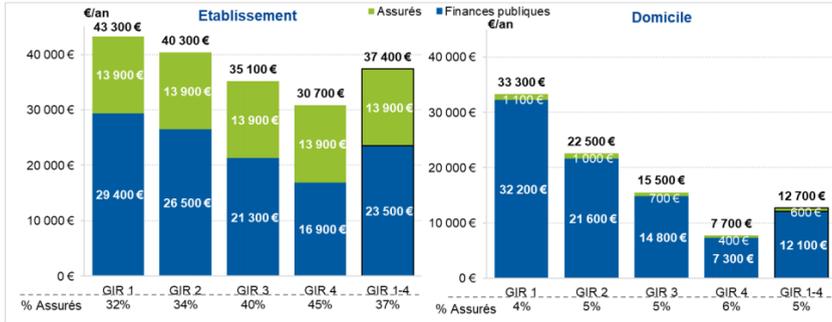


출처: “2023년 사회보장정책평가보고서-자율성,” 프랑스 사회보장국, 2024a, p.68. 그림 1.

시설서비스는 등급과 관계없이 시설 이용자 부담금이 연평균 13,900유로로 고정되어 있으며, 등급에 따라 달라지는 간병 비용은 재정에서 부담한다. 재가서비스의 경우에는 개인 부담 비율이 4~6% 정도이다.

212 프랑스의 인구정책 사례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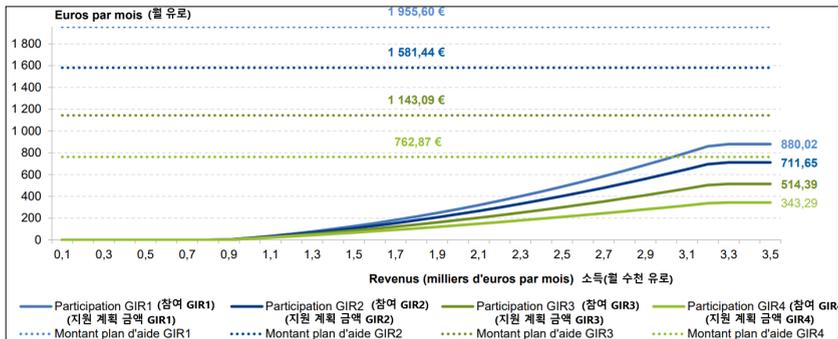
[그림 4-19] 시설요양서비스 및 재가서비스의 1인당 연평균 비용(2020)



출처: “2023년 사회보장정책평가보고서-자율성,” 프랑스 사회보장국, 2024a, p.69. 그림 2.

2016년 법 개편을 통해 APA 본인부담금을 줄이고, 돌봄 의존도가 높은 사람의 혜택을 늘렸다. GIR 등급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서로 달라지는데, 월 소득 3,500유로인 경우 본인부담금이 90% 발생했을 때 세금 공제 후 GIR 1 등급은 월평균 880유로(최대 지원금은 1,956유로), GIR 4 등급은 343유로(최대 지원금은 762.87유로)의 개인 부담금이 발생한다.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본인부담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구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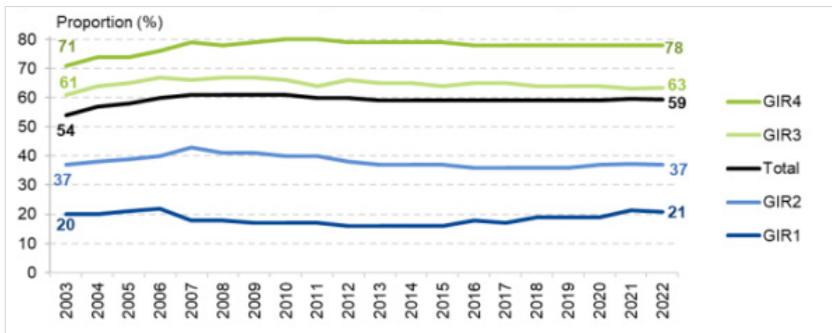
[그림 4-20] 2024년 등급별 지원금 상한선 및 소득 수준별 수혜자 부담금



출처: “2023년 사회보장정책평가보고서-자율성,” 프랑스 사회보장국, 2024a, p.73. 그림 1.

성과 목표 (2) 자립 욕구 충족과 관련해서는, 고령자의 재가서비스 활용도 제고를 위해 고령화 사회적응에 관한 법률(ASV)을 제정하고 APA-재가서비스 및 가족 간병인 지원 등을 확대하고 있다. 2003~2006년 기간 APA-재가서비스 수혜자 비율은 54%에서 60%로 6%p 증가했으며, 2006년 이후에는 60% 수준으로 안정되고 있다. 2022년 말 기준 등급별 재가서비스 수혜자 비율은 GIR 4 등급자의 78%, GIR 3 등급자의 63%, GIR 2 등급자의 37%, GIR 1 등급자의 21%이다.

[그림 4-21] APA-재가서비스 수혜자 비중(등급별)



출처: “2023년 사회보장정책평가보고서-자율성,” 프랑스 사회보장국, 2024a, p.11. 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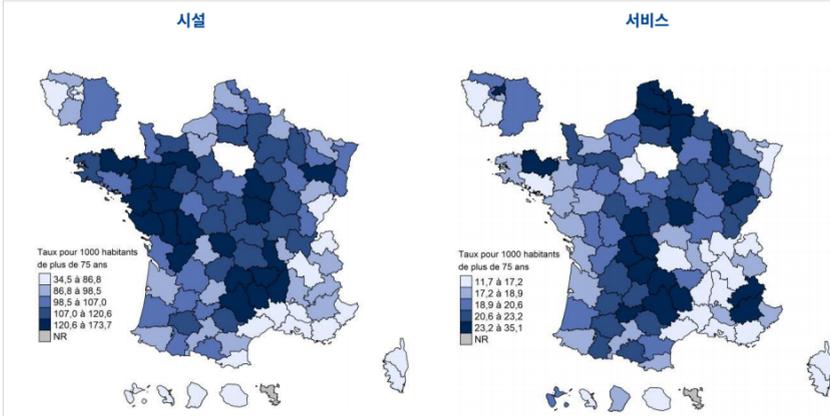
고령화 사회적응에 관한 법률하에서 가족 간병인은 “나이, 질병 또는 장애로 인해 독립성(자율성)을 잃어가는 사람이 일상생활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있도록 비전문적, 정기적으로 자주 도움을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2021년 기준 가족 간병인은 930명(성인 880만 명, 미성년자 50만 명)이며, 연령별로는 60세 전후가 가장 많고 특히 55~64세 인구 중 25%가 가족 간병인이다. 가족 간병인은 휴식, 일과 돌봄의 병행, 자신의 건강 상태 유지 등의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금전적 보상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었다. 3개월간의 간병인 휴가(le congé de proche-aidant, CPA) 지원, 간병을 위해 근로를 중단한 경우 간병인 일일수당(l'allocation journalière du proche aidant, AJPA)을 하루 64.5유로(2024년 기준), 월 최대 22일(총 66일까지 가능)간 지원한다. 간병인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기존의 전업주부(재택부모) 노령보험(L'assurance vieillesse du parent au foyer, AVPF) 제도 외에 2023년 9월에는 간병인을 위한 노령보험(L'assurance vieillesse des aidants, AVA)도 신설했다. 그 외에도, 간병인의 휴식 및 교육 지원을 위한 시설 및 플랫폼(platformes d'accompagnement et de répit, PFR) 설치, 임시 위탁 보호, 간호 전문가 및 자원봉사자 교육 등도 지원하고 있다. 2020~2022년 기간에 118개의 PER 신규 설립을 포함하여 2023년 말까지 266개를 설치할 예정이며 2022년 말까지 72,000명이 혜택을 받았다. 노인 가족 간병인 관련 사업은 2020~2022년 기간에 32.4만 명에게 약 1,290만 유로의 재정이 지원됐다.

고령자의 주거 개선을 통해서 자율성 상실을 예방하는 조치도 수행 중이다. 프랑스 국립주거환경청에 따르면, 자율성(고령 및 장애) 지원을 위한 주거 개선 목표 가구 수는 2013~2018년에는 1만 5,000가구, 2019년 3만 가구, 2021년 2만 가구이다. 지원금은 주택 개조 비용의 최대 50%, 1만 유로 한도이며, 2021년 기준 지원금 지출액은 8,670만 유로(2020년 대비 32% 증가)이고, 26,802가구를 지원했다.

성과 목표 (3) 지역별 서비스 격차 완화와 관련해서는, 지역별 의료-돌봄 시설 및 서비스 격차를 파악하고 열악한 지역에 시설 및 서비스를 확충하고 있다.

[그림 4-22] 프랑스 의료-사회 시설 및 서비스 수(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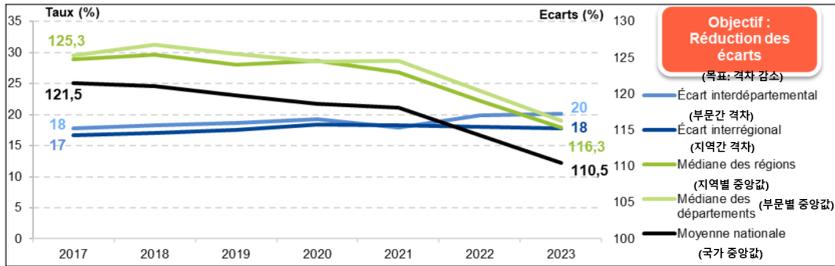
출처: “2023년 사회보장정책평가보고서-자율성,” 프랑스 사회보장국, 2024a, p.55. 그림 1.

2021년 기준 75세 이상 노인을 위한 시설은 910,240곳이며 이 중 87%가 의료 시설 및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다. 시설 및 서비스로는 의료화 시설(établissement d’hébergement pour personnes âgées dépendantes, EHPAD(61.1만 개), 재가 간호서비스(service de soins infirmiers à domicile, SSIAD), 돌봄서비스 지원시설(services polyvalents d’aide et de soins à domicile, SPASAD)) 등이 있다. 돌봄서비스 제공 시설을 확충하면서 지역 격차를 줄이고, 시설 접근성 및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노인의 재택 거주(aging in place)를 장려하기 위해 지역 내 돌봄시설에 재가 간호서비스, 주간 보호, 임시 거주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데, 전체 돌봄 제공 시설 중 해당 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설의 비중은 2020년 20%로 2006년 대비 5%p 증가했다. 또한, 전국의 7,500여 개의 요양원에 대한 거주자 안전 및 요양 서비스 질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75세 이상 인구 1천 명당 시설 수는 2017년 121.5개에서

2023년 110.5개로 크게 감소했으며, 지역 간 격차는 약 17~18%가 유지되는 등 시설당 수용 역량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재가 간호 서비스(les actes infirmiers de soins, AIS 등)는 2022년 전년 대비 13.1%나 감소했고, 민간 간호 서비스 인력 및 의료-사회서비스 시설의 분포에 따라서 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가 큰 편이다.

[그림 4-23] 고령자 1,000명당 시설 수



출처: “2023년 사회보장정책평가보고서-자율성,” 프랑스 사회보장국, 2024a, p.92. 그림 1.

성과 목표 (4)의 자율성 정책의 재정 지속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2023년 0.6억 유로의 적자가 발생했는데 향후 추가 지원 확보 등으로 흑자 상태를 유지하다가 2027년에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평가 결과 보고서의 결론에서는, 고령자 수가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재가 및 시설 서비스 제도 개선과 시설의 양적 증대뿐만 아니라 수요 증가에 대한 대비 및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 제5장

## 프랑스인의 인식과 가치관

제1절 조사 개요

제2절 결혼 및 출산에 관한 인식

제3절 성역할 및 가사·육아 분담에 관한 인식

제4절 사회에 관한 인식

제5절 인구 변화 및 인구 정책에 관한 인식

제6절 소결



## 제 5 장 프랑스인의 인식과 가치관

### 제1절 조사 개요

본 조사의 대상자는 2024년 7월 현재 프랑스에 거주하는 20~49세 이하 성인 남녀 2,500명이다. 또한 프랑스 조사와 비교하기 위해 한국에 거주하는 20~49세 이하 성인 남녀 2,500명을 대상으로 동일한 문항을 가지고 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설계는 프랑스 인구 현황 통계 (<https://www.insee.fr>)에 기반하여 지역, 성, 연령별 비례배분을 설정한 뒤, 해외 조사기관에 등록된 패널 가입자 중 무작위로 추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한국에서 실시된 조사도 이와 동일하게 조사 기관의 온라인 패널을 활용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조사 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또는 전화조사를 통한 현지 조사(외부 전문 조사업체 수행)이다. 조사 기간은 2024년 7월 16일부터 29일로 약 14일간 진행하였다. 인식 조사의 주요 내용은 조사 대상자 선별, 결혼 및 출산, 성역할에 대한 인식, 가사 및 자녀 육아 분담, 인구 문제 및 사회에 대한 인식, 인구정책에 대한 인식이다.

조사 대상자의 일반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성 50.4%, 남성 49.6%로 성별이 고루 분포하였다. 연령별로는 35~39세가 18.4%로 가장 많았으나 연령분포는 비교적 비슷하였다. 45~49세가 18.1%로 가장 많고, 20~24세 17.8%, 40~44세 16.9%, 30~34세 15.4%, 25~29세 13.4% 순으로 분포하였다. 지역별로는 대도시 31.8%, 중소도시 29.0%, 농어촌 21.2%, 대도시의 외곽 17.9%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는 8~13단계가 28.8%로 가장 많았고, 18~25단계 28.3%, 2~7단계

22.7%, 14~17단계 20.2% 순이었다. 혼인상태별로 살펴보면, 동거/사실혼 32.9%, 미혼 30.8%, 법률혼 29.2%, 이혼/별거/사별 7.1%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 여부를 살펴보면, 자녀가 있는 경우는 52.2%, 자녀가 없는 경우는 47.8%이다. 취업 상태는 취업 중이 81.4%, 비취업인 경우는 18.6%로 대부분 취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 수준의 분포를 살펴보면, 3,500유로 이상 30.0%, 1,500~2,500유로 미만 27.6%, 2,500~3,500유로 미만 22.8%, 1,500유로 미만 19.7%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 유형은 유자녀 기혼(2자녀 이상) 27.8%, 무자녀 미혼 27.0%, 무자녀 기혼 20.8%, 유자녀 기혼(1자녀) 20.6%, 유자녀 미혼 3.8% 순이다.

〈표 5-1〉 조사 대상자 일반 특성

구분	비율	사례 수
전체	100.0	2,500
성별		
남자	49.6	1,240
여자	50.4	1,260
연령		
20~24세	17.8	445
25~29세	13.4	334
30~34세	15.4	385
35~39세	18.4	461
40~44세	16.9	423
45~49세	18.1	452
지역		
대도시	31.8	796
대도시의 외곽	17.9	448
중소도시	29.0	725
농어촌	21.2	531
교육		
(2~7)	22.7	567
(8~13)	28.8	720
(14~17)	20.2	505
(18~25)	28.3	708

구분	비율	사례 수
혼인상태		
미혼	30.8	771
동거/사실혼	32.9	823
법률혼	29.2	729
이혼/별거/사별	7.1	177
자녀 여부		
자녀 있음	52.2	1,305
자녀 없음	47.8	1,195
취업 여부		
취업	81.4	2,035
비취업	18.6	465
가구소득		
1500유로 미만	19.7	493
1500~2500유로 미만	27.6	689
2500~3500유로 미만	22.8	569
3500유로 이상	30.0	749
가구 유형		
무자녀 미혼	27.0	676
유자녀 미혼	3.8	95
무자녀 기혼 <sup>1)</sup>	20.8	519
유자녀 기혼(1자녀)	20.6	515
유자녀 기혼(2자녀 이상)	27.8	695

주: 1) 미혼 이외의 모든 변수(법률혼/사실혼(동거)/사별/이혼/별거)를 포함함.

출처: “결혼, 출산, 육아에 관한 인식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원자료 분석.

## 제2절 결혼 및 출산에 관한 인식

### 1. 결혼 및 출산 의향

혼인상태가 법률혼 상태가 아닌 프랑스 조사 응답자의 향후 결혼 의향을 살펴보면, ‘결혼할 생각이 있다’가 38.2%로 가장 높았고, ‘결혼할 생각이 없다’가 35.5%,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가 16.8%, ‘생각해 본 적 없다’가 9.5%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미혼 및 비혼 조사 응답자의 절반 이

상인 52.9%가 결혼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여 프랑스의 경우보다 결혼 의향이 14.7%p 높았다. 이는 프랑스에서는 PACs 등이 혼인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때문에 결혼 이외의 선택을 고려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5-2〉 결혼 의향

(단위: %, 명)

구 분	결혼할 생각이 있다	결혼할 생각이 없다	생각해본 적 없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합계	
프랑스	38.2	35.5	9.5	16.8	(1,771)	100.0
한국	52.9	24.2	5.4	17.6	(1,383)	100.0
성별 ( $\chi^2=9.923^*$ )						
남성	41.3	32.6	10.2	16.0	(884)	100.0
여성	35.2	38.3	8.9	17.6	(887)	100.0
연령 ( $\chi^2=281.616^{***}$ )						
20~24세	60.0	16.4	10.7	12.9	(402)	100.0
25~29세	54.6	22.3	7.8	15.2	(282)	100.0
30~34세	40.7	28.8	10.9	19.6	(285)	100.0
35~39세	27.1	43.2	11.1	18.6	(280)	100.0
40~44세	18.3	55.2	9.9	16.7	(252)	100.0
45~49세	16.3	58.1	6.3	19.3	(270)	100.0
지역 ( $\chi^2=46.306^{***}$ )						
대도시	46.3	30.1	10.0	13.6	(572)	100.0
대도시의 외곽	41.9	30.6	9.5	18.0	(327)	100.0
중소도시	34.6	39.2	9.5	16.7	(515)	100.0
농어촌	27.2	43.1	9.0	20.7	(357)	100.0
교육 ( $\chi^2=16.983^*$ )						
(2~7)	37.0	36.5	12.7	13.8	(441)	100.0
(8~13)	37.1	37.5	8.4	17.1	(491)	100.0
(14~17)	36.7	37.5	9.3	16.4	(365)	100.0
(18~25)	41.8	30.8	8.0	19.4	(474)	100.0
혼인상태 ( $\chi^2=75.723^{***}$ )						
미혼	33.9	38.1	11.3	16.7	(771)	100.0
동거/사실혼	46.7	28.9	7.3	17.1	(823)	100.0
이혼/별거/사별	18.1	54.2	12.4	15.3	(177)	100.0
자녀 여부 ( $\chi^2=7.756$ )						
자녀 있음	35.4	39.4	8.8	16.5	(673)	100.0
자녀 없음	40.0	33.1	10.0	16.9	(1,098)	100.0
취업 여부 ( $\chi^2=1.601$ )						
취업	38.9	34.8	9.6	16.7	(1,392)	100.0
비취업	35.6	37.7	9.5	17.2	(379)	100.0

구 분	결혼할 생각이 있다	결혼할 생각이 없다	생각해본 적 없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합계	
가구소득 ( $\chi^2=36.213^{***}$ )						
1500유로 미만	29.4	40.0	10.6	20.0	(435)	100.0
1500~2500유로 미만	37.4	38.5	9.6	14.5	(572)	100.0
2500~3500유로 미만	43.1	34.1	9.3	13.5	(364)	100.0
3500유로 이상	44.5	27.5	8.5	19.5	(400)	100.0
가구 유형 ( $\chi^2=45.301^{***}$ )						
무자녀 미혼	35.4	35.8	11.7	17.2	(676)	100.0
유자녀 미혼	23.2	54.7	8.4	13.7	(95)	100.0
무자녀 기혼 <sup>1)</sup>	47.4	28.7	7.3	16.6	(422)	100.0
유자녀 기혼(1자녀)	41.1	32.7	10.5	15.6	(275)	100.0
유자녀 기혼(2자녀 이상)	34.0	40.6	7.3	18.2	(303)	100.0

주: \* p<0.05, \*\* p<0.01, \*\*\* p<0.001

1) 미혼 이외의 모든 변수(법률혼/사실혼(동거)/사별/이혼/별거)를 포함함.

2)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chi^2$ 값을 제시하지 않음.

3) 각 항목의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출처: “결혼, 출산, 육아에 관한 인식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원자료 분석.

결혼 의향에 있어서 여성(35.2%)보다 남성(41.3%)이 결혼에 좀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이 낮을수록 결혼 의향에 긍정적이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결혼 의향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결혼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도시(34.6%), 농어촌(27.2%) 거주자 일수록 결혼 의향이 낮았다.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결혼 의향이 가장 높게(41.85%) 나타났다. 혼인상태별로 살펴보면, 현재 동거/사실혼인 경우 향후 결혼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미혼인 경우 결혼할 의향보다 결혼 생각이 없는 의향이 더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결혼 의향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가구소득과 결혼 의향은 정(+)의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가구 유형별로 살펴보면, 무자녀 기혼이 47.4%로 가장 높았고, 유자녀 기혼(1자녀) 41.1%, 무자녀 미혼이 35.4%, 유자녀 기혼(2자녀 이상)이 34.0%, 유자녀 미혼 23.2%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세부 집단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 향후 자녀 출산 의향

(단위: %, 명)

구 분	날을 생각이다	날지 않을 생각이다	생각해본 적 없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합계	
프랑스	38.8	46.7	5.0	9.5	(2,500)	100.0
한국	31.2	47.3	5.9	15.6	(2,500)	100.0
성별 ( $\chi^2=32.224^{***}$ )						
남성	42.9	41.3	6.0	9.8	(1,240)	100.0
여성	34.8	52.1	3.9	9.3	(1,260)	100.0
연령 ( $\chi^2=676.051^{***}$ )						
20~24세	64.5	17.3	7.2	11.0	(445)	100.0
25~29세	65.3	19.8	5.4	9.6	(334)	100.0
30~34세	52.2	30.9	7.5	9.4	(385)	100.0
35~39세	31.0	52.3	4.6	12.1	(461)	100.0
40~44세	21.0	66.7	3.5	8.7	(423)	100.0
45~49세	7.1	84.7	2.0	6.2	(452)	100.0
지역 ( $\chi^2=84.431^{***}$ )						
대도시	48.0	36.3	5.2	10.6	(796)	100.0
대도시의 외곽	41.7	44.9	4.7	8.7	(448)	100.0
중소도시	35.9	49.4	4.7	10.1	(725)	100.0
농어촌	26.6	60.3	5.3	7.9	(531)	100.0
교육 ( $\chi^2=23.916^{**}$ )						
(2~7)	38.6	45.5	7.4	8.5	(567)	100.0
(8~13)	36.7	48.1	5.7	9.6	(720)	100.0
(14~17)	37.8	50.9	2.8	8.5	(505)	100.0
(18~25)	41.8	43.4	3.8	11.0	(708)	100.0
혼인상태 ( $\chi^2=126.425^{***}$ )						
미혼	41.9	38.7	6.6	12.8	(771)	100.0
동거/사실혼	46.4	40.5	4.0	9.1	(823)	100.0
법률혼	32.4	57.8	3.3	6.6	(729)	100.0
이혼/별거/사별	16.4	65.5	9.0	9.0	(177)	100.0
자녀 여부 ( $\chi^2=152.499^{***}$ )						
자녀 있음	30.9	58.5	3.8	6.9	(1,305)	100.0
자녀 없음	47.4	33.9	6.3	12.4	(1,195)	100.0
취업 여부 ( $\chi^2=3.810$ )						
취업	39.3	46.8	5.0	9.0	(2,035)	100.0
비취업	36.8	46.5	4.9	11.8	(465)	100.0
가구소득 ( $\chi^2=13.767$ )						
1500유로 미만	37.9	44.2	6.1	11.8	(493)	100.0
1500~2500유로 미만	39.6	44.4	5.8	10.2	(689)	100.0
2500~3500유로 미만	39.4	47.6	3.7	9.3	(569)	100.0
3500유로 이상	38.2	49.8	4.4	7.6	(749)	100.0

구 분	날을 생각이다	날지 않을 생각이다	생각해본 적 없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합계
가구 유형 ( $\chi^2=272.871^{***}$ )					
무자녀 미혼	44.2	35.5	7.0	13.3	(676) 100.0
유자녀 미혼	25.3	61.1	4.2	9.5	(95) 100.0
무자녀 기혼 <sup>1)</sup>	51.6	31.8	5.4	11.2	(519) 100.0
유자녀 기혼(1자녀)	46.2	41.2	4.9	7.8	(515) 100.0
유자녀 기혼(2자녀 이상)	20.3	70.9	2.9	5.9	(695) 100.0

주: \*  $p<0.05$ , \*\*  $p<0.01$ , \*\*\*  $p<0.001$

1) 미혼 이외의 모든 변수(법률혼/사실혼(동거)/사별/이혼/별거)를 포함함.

2)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chi^2$ 값을 제시하지 않음.

3) 각 항목의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출처: “결혼, 출산, 육아에 관한 인식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원자료 분석.

향후 자녀 출산 의향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6.7%가 ‘자녀 출산 계획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출산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8.8%이고, 아직 출산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는 9.5%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프랑스 응답자가 한국에 비해 좀 더 자녀 출산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7.6%p). 반면, 출산 보류(아직 결정하지 못함)의 경우는 한국에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6.1%p).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성보다는 남성이 그리고 연령이 낮을수록 출산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연령과 출산 의향과의 부(-)의 관계가 강하게 나타났다. 특히 20대는 약 65%가 출산에 긍정적인 반면, 45세 이상에서 급격하게 출산 의향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도시, 대도시의 외곽, 중소도시, 농어촌 순으로 출산 의향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출산 의향이 가장 높게(41.85%) 나타났고, 혼인상태를 살펴보면, 동거/사실혼의 경우가 출산 의향이 46.4%로 가장 높았고, 미혼이 41.9% 법률혼이 32.4%로 나타났고, 이혼/별거/사별이 16.4%로 가장 낮았다. 자녀 여부별로 살펴보면 자녀가 없는 경우(47.4%)가 자녀가 있는 경우보다 출산 의향이 높은 것(16.5%p)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 수준은 출산

의향에 통계적인 유의미한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유형별로는 무자녀 기혼인 경우 출산 의향이 제일 높았고(51.6%), 유자녀(1자녀) 기혼(46.2%), 무자녀 미혼(44.2%)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 2. 출산 결정의 중요 요소

자녀 출산을 결정하는 데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① 가정의 경제적 여건, ② 본인의 건강, ③ 배우자의 건강, ④ 본인의 취업 상태, ⑤ 배우자의 취업 상태, ⑥ 주거, ⑦ 일·생활 균형, ⑧ 경력 단절의 가능성, ⑨ 보육/양육 서비스 이용 가능성, ⑩ 정부의 충분한 지원, ⑪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 불확실성에 대해 전혀 중요하지 않다(1점)~매우 중요하다(5점)의 척도로 중요도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응답자의 81.7%가 자녀 출산을 결정할 때 가정의 경제적 여건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는 94.3%가 자녀 출산 계획 시 가정의 경제적 여건이 중요하다고 응답해 프랑스보다 12.6%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 가족(자녀 출산) 계획 시 중요도\_1 가정의 경제적 여건

(단위: %, 명)

구 분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합계
프랑스	4.7	3.3	10.3	37.2	44.5	(2,500) 100.0
한국	0.1	0.6	5.0	31.8	62.5	(2,500) 100.0
성별 ( $\chi^2=31.804^{***}$ )						
남성	5.1	4.0	12.8	38.1	40.0	(1,240) 100.0
여성	4.3	2.5	7.9	36.3	49.0	(1,260) 100.0
연령 ( $\chi^2=76.393^{***}$ )						
20~24세	10.1	4.7	14.6	32.6	38.0	(445) 100.0
25~29세	5.4	2.1	9.6	31.4	51.5	(334) 100.0
30~34세	3.4	3.6	10.1	36.1	46.8	(385) 100.0

구 분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합계	
35~39세	3.0	2.8	10.6	43.2	40.3	(461)	100.0
40~44세	2.4	3.1	8.7	39.7	46.1	(423)	100.0
45~49세	3.8	3.1	8.0	38.5	46.7	(452)	100.0
지역 ( $\chi^2=38.022^{***}$ )							
대도시	7.4	3.1	10.3	34.3	44.8	(796)	100.0
대도시의 외곽	3.1	5.6	9.8	37.5	44.0	(448)	100.0
중소도시	4.4	2.9	11.6	38.3	42.8	(725)	100.0
농어촌	2.3	2.1	9.0	39.7	46.9	(531)	100.0
교육 ( $\chi^2=131.664^{***}$ )							
(2~7)	8.6	6.3	18.2	27.0	39.9	(567)	100.0
(8~13)	3.2	3.1	10.3	39.9	43.6	(720)	100.0
(14~17)	5.0	2.0	7.5	43.0	42.6	(505)	100.0
(18~25)	2.8	2.0	6.1	38.6	50.6	(708)	100.0
혼인상태 ( $\chi^2=55.182^{***}$ )							
미혼	4.5	2.7	13.7	36.2	42.8	(771)	100.0
동거/사실혼	5.5	4.1	9.7	34.3	46.4	(823)	100.0
법률혼	2.6	2.2	7.4	42.8	45.0	(729)	100.0
이혼/별거/사별	10.2	6.2	10.2	32.2	41.2	(177)	100.0
자녀 여부 ( $\chi^2=36.888^{***}$ )							
자녀 있음	3.0	3.2	8.0	39.9	45.8	(1,305)	100.0
자녀 없음	6.5	3.3	12.8	34.2	43.1	(1,195)	100.0
취업 여부 ( $\chi^2=13.256^*$ )							
취업	4.1	3.1	9.8	38.0	44.9	(2,035)	100.0
비취업	7.1	4.1	12.5	33.5	42.8	(465)	100.0
가구소득 ( $\chi^2=46.825^{***}$ )							
1500유로 미만	8.5	3.9	15.2	32.5	40.0	(493)	100.0
1500~2500유로 미만	3.0	2.8	10.7	37.7	45.7	(689)	100.0
2500~3500유로 미만	4.0	3.9	9.0	38.8	44.3	(569)	100.0
3500유로 이상	4.1	2.9	7.7	38.6	46.6	(749)	100.0
가구 유형 ( $\chi^2=63.517^{***}$ )							
무자녀 미혼	5.0	2.8	13.8	35.5	42.9	(676)	100.0
유자녀 미혼	1.1	2.1	13.7	41.1	42.1	(95)	100.0
무자녀 기혼 <sup>1)</sup>	8.5	4.0	11.6	32.6	43.4	(519)	100.0
유자녀 기혼(1자녀)	4.9	3.7	9.5	37.7	44.3	(515)	100.0
유자녀 기혼(2자녀 이상)	1.9	3.0	6.2	41.4	47.5	(695)	100.0

주: \* p<0.05, \*\* p<0.01, \*\*\* p<0.001

- 1) 미혼 이외의 모든 변수(법률혼 /사실혼(동거)/사별/이혼/별거)를 포함함.
- 2)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chi^2$ 값을 제시하지 않음.
- 3) 각 항목의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출처: "결혼, 출산, 육아에 관한 인식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원자료 분석.

통계적으로 유의한 세부 집단별 차이는 다음과 같다. 우선, 자녀 출산 결정 시 여성(85.3%)이 남성(78.1%)보다 경제적 여건을 더 중요(중요하다+매우 중요하다)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경제적 여건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거주지가 농어촌인 경우(86.6%) 대도시(79.1%)보다 가정의 경제적 여건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혼인상태별로 살펴보면, 법률혼인 경우(87.8%) 경제적 여건을 가장 중요하게 보았고, 동거/사실혼(80.7%), 미혼(79.0%), 이혼/별거/사별(73.4%) 순으로 중요하다고 보았다. 자녀 여부별로는 자녀가 있는 경우(85.7%)가 자녀가 없는 경우(77.3%)보다 경제적 여건을 더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취업 여부별로는 취업한 경우(82.9%)가 취업하지 않은 경우(76.3%)보다 가구의 경제적 여건을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또한 가구의 소득이 높을수록 출산 계획 시 가구의 경제적 여건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유형별로는 '유자녀 기혼(2자녀 이상)' 88.9%, 유자녀 미혼(83.2%), 유자녀 기혼(1자녀)(82.0%), 무자녀 미혼(78.4%), 무자녀 기혼(76.0%) 순으로 가구의 경제적 여건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표 5-5〉 가족(자녀 출산) 계획 시 중요도\_2 본인의 건강

(단위: %, 명)

구 분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합계	
프랑스	1.5	2.6	8.5	34.0	53.4	(2,500)	100.0
한국	0.0	0.2	4.5	35.8	59.5	(2,500)	100.0
성별 ( $\chi^2=19.626^{**}$ )							
남성	1.9	2.4	10.5	34.8	50.3	(1,240)	100.0
여성	1.1	2.8	6.5	33.2	56.4	(1,260)	100.0
연령 ( $\chi^2=74.811^{***}$ )							
20~24세	2.2	6.5	9.9	31.9	49.4	(445)	100.0

구 분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합계	
25~29세	2.1	4.5	6.9	25.7	60.8	(334)	100.0
30~34세	1.6	1.8	11.2	34.0	51.4	(385)	100.0
35~39세	1.3	1.1	8.0	36.2	53.4	(461)	100.0
40~44세	0.2	1.2	8.0	38.8	51.8	(423)	100.0
45~49세	1.8	0.9	6.9	35.4	55.1	(452)	100.0
지역 ( $\chi^2=12.291$ )							
대도시	1.6	3.5	8.0	31.8	55.0	(796)	100.0
대도시의 외곽	1.3	2.7	9.8	32.1	54.0	(448)	100.0
중소도시	1.7	2.5	8.7	35.2	52.0	(725)	100.0
농어촌	1.3	1.3	7.7	37.3	52.4	(531)	100.0
교육 ( $\chi^2=89.899^{***}$ )							
(2~7)	2.5	4.8	15.7	29.6	47.4	(567)	100.0
(8~13)	1.1	2.2	8.3	36.1	52.2	(720)	100.0
(14~17)	1.6	2.4	5.7	38.8	51.5	(505)	100.0
(18~25)	1.1	1.4	4.8	31.9	60.7	(708)	100.0
혼인상태 ( $\chi^2=38.271^{***}$ )							
미혼	1.4	2.2	10.0	35.0	51.4	(771)	100.0
동거/사실혼	1.7	3.0	8.5	33.7	53.1	(823)	100.0
법률혼	1.0	1.5	5.9	34.8	56.8	(729)	100.0
이혼/별거/사별	3.4	6.8	12.4	27.7	49.7	(177)	100.0
자녀 여부 ( $\chi^2=18.553^*$ )							
자녀 있음	1.2	2.0	6.7	35.5	54.6	(1,305)	100.0
자녀 없음	1.8	3.3	10.5	32.4	52.1	(1,195)	100.0
취업 여부 ( $\chi^2=2.985$ )							
취업	1.3	2.6	8.5	34.0	53.7	(2,035)	100.0
비취업	2.4	2.8	8.6	34.2	52.0	(465)	100.0
가구소득 ( $\chi^2=52.834^{***}$ )							
1500유로 미만	3.4	2.8	14.4	30.4	48.9	(493)	100.0
1500~2500유로 미만	1.0	2.3	8.1	33.5	55.0	(689)	100.0
2500~3500유로 미만	1.4	3.3	6.2	37.6	51.5	(569)	100.0
3500유로 이상	0.8	2.1	6.7	34.0	56.3	(749)	100.0
가구 유형 ( $\chi^2=47.634^{***}$ )							
무자녀 미혼	1.6	2.5	9.9	35.1	50.9	(676)	100.0
유자녀 미혼	0.0	0.0	10.5	34.7	54.7	(95)	100.0
무자녀 기혼 <sup>1)</sup>	2.1	4.2	11.2	28.9	53.6	(519)	100.0
유자녀 기혼(1자녀)	2.3	3.7	7.4	34.6	52.0	(515)	100.0
유자녀 기혼(2자녀 이상)	0.6	1.0	5.6	36.3	56.5	(695)	100.0

주: \*  $p<0.05$ , \*\*  $p<0.01$ , \*\*\*  $p<0.001$

1) 미혼 이외의 모든 변수(법률혼/사실혼(동거)/사별/이혼/별거)를 포함함.

2)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chi^2$ 값을 제시하지 않음.

3) 각 항목의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출처: "결혼, 출산, 육아에 관한 인식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원자료 분석.

자녀 출산 계획 시, 전체의 87.4%가 본인의 건강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한국은 95.3%가 자녀 출산 계획 시 본인의 건강이 중요(중요하다+매우 중요하다)하다고 응답해 프랑스와 7.9%p의 차이를 보였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세부집단별 차이는 다음과 같다. 여성(89.6%)이 남성(85.1%)보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본인의 건강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혼인상태별로 살펴보면, 법률혼인 경우(91.6%)가 가장 본인의 건강을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동거/사실혼(86.8%), 미혼(86.4%), 이혼/별거/사별(77.4%) 순으로 중요하다고 보았다. 자녀 여부별로는 자녀가 있는 경우(90.1%)가 자녀가 없는 경우(84.5%)보다 본인의 건강을 더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또한 가구의 소득이 높을수록 출산 계획 시 본인의 건강을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가구 유형별로는 '유자녀 기혼(2자녀 이상)' 92.8%, 유자녀 미혼(89.4%), 유자녀 기혼(1자녀)(86.6%), 무자녀 미혼(86.0%), 무자녀 기혼(82.5%) 순으로 본인의 건강을 중요하게 고려한다고 응답하였다.

자녀 출산 계획 시, 전체의 87.3%가 배우자의 건강이 중요(중요하다+매우 중요하다)하다고 응답하였다. 한국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한국은 95.4%가 자녀 출산 계획 시 본인의 건강이 중요하다고 응답해 프랑스보다 8.1%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 출산 계획 시 본인 건강의 중요도에 대한 응답과 비슷한 경향을 보인 것이다.

〈표 5-6〉 가족(자녀 출산) 계획 시 중요도\_3) 배우자의 건강

(단위: %, 명)

구 분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합계	
프랑스	1.8	1.8	9.1	32.5	54.8	(2,500)	100.0
한국	0.0	0.2	4.4	35.0	60.4	(2,500)	100.0
성별 ( $\chi^2=6.551$ )							
남성	1.9	2.2	10.2	31.1	54.7	(1,240)	100.0
여성	1.7	1.4	8.0	33.8	55.0	(1,260)	100.0
연령 ( $\chi^2=53.510^{***}$ )							
20~24세	2.5	3.4	12.8	25.8	55.5	(445)	100.0
25~29세	3.3	1.2	6.9	26.0	62.6	(334)	100.0
30~34세	1.3	2.9	8.8	33.8	53.2	(385)	100.0
35~39세	1.3	1.1	10.0	34.9	52.7	(461)	100.0
40~44세	0.9	1.4	6.6	37.6	53.4	(423)	100.0
45~49세	1.8	0.9	8.6	35.4	53.3	(452)	100.0
지역 ( $\chi^2=13.362$ )							
대도시	2.4	2.5	9.8	29.5	55.8	(796)	100.0
대도시의 외곽	1.3	2.0	9.6	33.0	54.0	(448)	100.0
중소도시	1.9	1.5	8.7	33.4	54.5	(725)	100.0
농어촌	1.1	0.9	8.1	35.2	54.6	(531)	100.0
교육 ( $\chi^2=92.409^{***}$ )							
(2~7)	3.2	3.5	16.8	26.8	49.7	(567)	100.0
(8~13)	1.4	1.7	8.9	33.5	54.6	(720)	100.0
(14~17)	1.8	1.6	7.1	36.0	53.5	(505)	100.0
(18~25)	1.1	0.7	4.5	33.5	60.2	(708)	100.0
혼인상태 ( $\chi^2=51.906^{***}$ )							
미혼	2.1	1.0	12.3	33.1	51.5	(771)	100.0
동거/사실혼	1.9	2.3	7.7	31.2	56.9	(823)	100.0
법률혼	0.8	1.6	5.8	32.8	59.0	(729)	100.0
이혼/별거/사별	4.0	3.4	15.3	34.5	42.9	(177)	100.0
자녀 여부 ( $\chi^2=19.067^{**}$ )							
자녀 있음	1.2	1.8	7.2	34.5	55.2	(1,305)	100.0
자녀 없음	2.4	1.8	11.1	30.3	54.4	(1,195)	100.0
취업 여부 ( $\chi^2=12.262$ )							
취업	1.4	1.8	8.6	32.9	55.3	(2,035)	100.0
비취업	3.4	1.7	11.2	30.8	52.9	(465)	100.0
가구소득 ( $\chi^2=54.370^{***}$ )							
1500유로 미만	4.5	2.8	13.8	30.2	48.7	(493)	100.0
1500~2500유로 미만	0.9	1.3	9.6	33.1	55.2	(689)	100.0
2500~3500유로 미만	1.1	1.9	7.4	34.4	55.2	(569)	100.0
3500유로 이상	1.5	1.5	6.8	31.9	58.3	(749)	100.0
가구 유형 ( $\chi^2=60.858^{***}$ )							

구 분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합계
무자녀 미혼	2.2	1.2	11.7	31.8	53.1	(676) 100.0
유자녀 미혼	1.1	0.0	16.8	42.1	40.0	(95) 100.0
무자녀 기혼 <sup>1)</sup>	2.7	2.5	10.4	28.3	56.1	(519) 100.0
유자녀 기혼(1자녀)	1.7	3.1	9.3	31.8	54.0	(515) 100.0
유자녀 기혼(2자녀 이상)	0.9	1.2	4.3	35.4	58.3	(695) 100.0

주: \* p<0.05, \*\* p<0.01, \*\*\* p<0.001

1) 미혼 이외의 모든 변수(법률혼/사실혼(동거)/사별/이혼/별거)를 포함함.

2)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chi^2$ 값을 제시하지 않음.

3) 각 항목의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출처: “결혼, 출산, 육아에 관한 인식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원자료 분석.

통계적으로 유의한 세부 집단별 차이는 다음과 같다. 우선, 여성(88.8%)이 남성(85.8%)보다 출산 계획 시 배우자의 건강이 중요(중요하다+매우 중요하다)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40~44세(91.0%), 45~49세(88.7%), 25~29세(88.6%), 35~39세(87.6%), 30~34세(87.0%), 20~24세(81.3%) 순으로 배우자의 건강이 출산 시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혼인상태별로 살펴보면, 법률혼인 경우(91.8%) 배우자의 건강을 가장 중요하게 보았고, 동거/사실혼(88.1%), 미혼(84.6%), 이혼/별거/사별(77.4%) 순으로 중요하다고 보았다. 자녀 여부별로는 자녀가 있는 경우(89.7%)가 자녀가 없는 경우(84.7%)보다 본인의 건강을 더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취업 여부별로는 취업한 경우(88.2%)가 취업하지 않은 경우(83.7%)보다 배우자의 건강을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가구의 소득이 높을수록 출산 계획 시 배우자의 건강을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가구 유형별로는 ‘유자녀 기혼(2자녀 이상)’ 93.7%, 유자녀 기혼(1자녀)(85.8%), 무자녀 미혼(84.9%), 무자녀 기혼(84.4%), 유자녀 미혼(82.1%) 순으로 배우자의 건강을 중요하게 고려한다고 응답하였다.

자녀 출산 계획 시, 응답자의 82.1%가 본인의 취업을 중요(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87.5%가 중요하다고 응답해 한국과 비교해 5.4%p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5-7〉 가족(자녀 출산) 계획 시 중요도\_4 본인의 취업 상태

(단위: %, 명)

구 분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합계
프랑스	1.7	2.4	13.8	43.3	38.8	(2,500) 100.0
한국	0.2	1.4	11.0	35.9	51.6	(2,500) 100.0
성별 ( $\chi^2=8.616$ )						
남성	1.9	2.7	15.1	43.8	36.5	(1,240) 100.0
여성	1.4	2.1	12.5	42.9	41.1	(1,260) 100.0
연령 ( $\chi^2=39.868^{**}$ )						
20~24세	1.8	3.8	15.7	43.6	35.1	(445) 100.0
25~29세	3.6	2.4	12.0	40.4	41.6	(334) 100.0
30~34세	1.8	2.9	12.2	42.9	40.3	(385) 100.0
35~39세	0.7	2.4	15.6	46.2	35.1	(461) 100.0
40~44세	0.0	1.2	12.1	45.9	40.9	(423) 100.0
45~49세	2.7	2.0	14.2	40.3	40.9	(452) 100.0
지역 ( $\chi^2=12.455$ )						
대도시	2.4	2.0	13.2	42.1	40.3	(796) 100.0
대도시의 외각	1.1	3.8	12.3	43.5	39.3	(448) 100.0
중소도시	1.5	2.5	15.4	43.3	37.2	(725) 100.0
농어촌	1.3	1.9	13.6	45.0	38.2	(531) 100.0
교육 ( $\chi^2=72.197^{***}$ )						
(2~7)	2.6	4.8	20.5	34.7	37.4	(567) 100.0
(8~13)	2.1	1.9	13.6	41.8	40.6	(720) 100.0
(14~17)	0.8	2.2	11.3	50.3	35.4	(505) 100.0
(18~25)	1.1	1.3	10.3	46.8	40.5	(708) 100.0
혼인상태 ( $\chi^2=23.353^*$ )						
미혼	2.2	1.9	16.1	41.5	38.3	(771) 100.0
동거/사실혼	1.3	2.4	13.9	41.8	40.6	(823) 100.0
법률혼	1.0	2.6	11.2	47.3	37.9	(729) 100.0
이혼/별거/사별	4.0	4.0	13.6	41.8	36.7	(177) 100.0
자녀 여부 ( $\chi^2=12.287^*$ )						
자녀 있음	1.1	1.9	12.6	45.1	39.2	(1,305) 100.0
자녀 없음	2.3	3.0	15.0	41.3	38.4	(1,195) 100.0
취업 여부 ( $\chi^2=54.414^{***}$ )						
취업	1.1	2.0	12.3	45.3	39.2	(2,035) 100.0
비취업	4.1	4.3	20.0	34.6	37.0	(465) 100.0

구 분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합계
가구소득 ( $\chi^2=68.836^{***}$ )						
1500유로 미만	3.7	4.3	20.9	39.1	32.0	(493) 100.0
1500~2500유로 미만	0.6	2.5	13.6	39.9	43.4	(689) 100.0
2500~3500유로 미만	1.2	1.6	12.1	45.9	39.2	(569) 100.0
3500유로 이상	1.7	1.9	10.4	47.3	38.7	(749) 100.0
가구 유형 ( $\chi^2=26.119$ )						
무자녀 미혼	2.2	2.1	15.8	41.3	38.6	(676) 100.0
유자녀 미혼	2.1	1.1	17.9	43.2	35.8	(95) 100.0
무자녀 기혼 <sup>1)</sup>	2.3	4.2	13.9	41.4	38.2	(519) 100.0
유자녀 기혼(1자녀)	1.4	2.1	14.0	45.6	36.9	(515) 100.0
유자녀 기혼(2자녀 이상)	0.9	1.9	10.9	45.0	41.3	(695) 100.0

주: \* p<0.05, \*\* p<0.01, \*\*\* p<0.001

1) 미혼 이외의 모든 변수(법률혼/사실혼(동거)/사별/이혼/별거)를 포함함.

2)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chi^2$ 값을 제시하지 않음.

3) 각 항목의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출처: “결혼, 출산, 육아에 관한 인식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원자료 분석.

통계적으로 유의한 세부 집단별 차이는 다음과 같다. 우선, 여성(84.0%)이 남성(80.3%)보다 출산 계획 시 본인의 취업상태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40~44세(86.8%), 30~34세(83.2%), 25~29세(82.0%), 35~39세(81.3%), 45~49세(81.2%), 20~24세(78.7%) 순으로 본인의 취업 상태가 출산 의사를 결정할 때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혼인상태별로 살펴보면, 법률혼인 경우(85.2%) 본인의 취업을 가장 중요하게 보았고, 동거/사실혼(82.4%), 미혼(79.8%), 이혼/별거/사별(78.5%) 순으로 중요하다고 보았다. 자녀 여부별로는 유자녀 가구(84.3%)가 무자녀 가구(79.7%)보다 본인의 취업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취업 여부별로는 취업한 경우(84.5%)가 취업하지 않은 경우(71.6%)보다 본인의 취업을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가구의 소득이 높을수록 출산 계획 시 본인의 취업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가구 유형별로는 ‘유자녀 기혼(2자녀 이상)’ 86.3%, 유자녀 기혼(1자

녀)(82.5%), 무자녀 미혼(79.9%), 무자녀 기혼(79.6%), 유자녀 미혼(79.0%) 순으로 자녀 출산 의사 결정 시 본인의 취업을 중요하게 고려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5-8〉 가족(자녀 출산) 계획 시 중요도\_5 배우자의 취업 상태

(단위: %, 명)

구 분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합계	
프랑스	2.1	3.2	15.8	42.8	36.2	(2,500)	100.0
한국	0.7	2.7	16.1	32.6	47.8	(2,500)	100.0
성별 ( $\chi^2=61.847^{***}$ )							
남성	2.6	4.1	19.8	43.5	30.0	(1,240)	100.0
여성	1.6	2.2	11.8	42.1	42.3	(1,260)	100.0
연령 ( $\chi^2=58.379^{***}$ )							
20~24세	3.4	5.6	20.4	35.7	34.8	(445)	100.0
25~29세	3.0	3.3	13.8	43.4	36.5	(334)	100.0
30~34세	0.8	3.4	13.2	45.2	37.4	(385)	100.0
35~39세	1.1	2.6	18.7	45.8	31.9	(461)	100.0
40~44세	0.9	2.1	12.5	48.0	36.4	(423)	100.0
45~49세	3.3	2.0	15.0	39.2	40.5	(452)	100.0
지역 ( $\chi^2=22.050$ )							
대도시	3.3	2.9	16.1	40.8	36.9	(796)	100.0
대도시의 외곽	1.1	4.7	16.1	41.5	36.6	(448)	100.0
중소도시	2.3	3.0	17.0	43.3	34.3	(725)	100.0
농어촌	0.8	2.4	13.6	46.0	37.3	(531)	100.0
교육 ( $\chi^2=60.494^{***}$ )							
(2~7)	4.1	4.8	20.8	33.5	36.9	(567)	100.0
(8~13)	1.8	4.0	15.4	42.5	36.3	(720)	100.0
(14~17)	1.6	1.6	15.2	48.5	33.1	(505)	100.0
(18~25)	1.1	2.1	12.6	46.3	37.9	(708)	100.0
혼인상태 ( $\chi^2=50.670^{***}$ )							
미혼	3.4	2.9	20.9	41.2	31.6	(771)	100.0
동거/사실혼	1.2	2.9	13.1	42.5	40.2	(823)	100.0
법률혼	1.4	2.9	13.3	45.8	36.6	(729)	100.0
이혼/별거/사별	3.4	6.8	16.4	37.9	35.6	(177)	100.0
자녀 여부 ( $\chi^2=21.204^{***}$ )							
자녀 있음	1.4	2.6	13.6	44.7	37.7	(1,305)	100.0
자녀 없음	2.8	3.8	18.2	40.7	34.6	(1,195)	100.0
취업 여부 ( $\chi^2=18.152^{***}$ )							
취업	1.8	2.8	15.4	44.4	35.6	(2,035)	100.0

구 분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합계	
비취업	3.4	4.7	17.4	35.7	38.7	(465)	100.0
가구소득 ( $\chi^2=49.074^{***}$ )							
1500유로 미만	4.5	5.3	19.9	38.1	32.3	(493)	100.0
1500~2500유로 미만	1.5	2.0	18.0	41.2	37.3	(689)	100.0
2500~3500유로 미만	1.2	3.5	13.5	44.5	37.3	(569)	100.0
3500유로 이상	1.7	2.5	12.8	45.9	37.0	(749)	100.0
가구 유형 ( $\chi^2=47.056^{***}$ )							
무자녀 미혼	3.3	3.3	20.7	41.1	31.7	(676)	100.0
유자녀 미혼	4.2	0.0	22.1	42.1	31.6	(95)	100.0
무자녀 기혼 <sup>1)</sup>	2.3	4.4	14.8	40.1	38.3	(519)	100.0
유자녀 기혼(1자녀)	1.0	3.1	14.0	44.7	37.3	(515)	100.0
유자녀 기혼(2자녀 이상)	1.3	2.6	12.2	45.0	38.8	(695)	100.0

주: \* p<0.05, \*\* p<0.01, \*\*\* p<0.001

1) 미혼 이외의 모든 변수(법률혼/사실혼(동거)/사별/이혼/별거)를 포함함.

2)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chi^2$ 값을 제시하지 않음.

3) 각 항목의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출처: “결혼, 출산, 육아에 관한 인식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원자료 분석.

자녀 출산 계획 시, 배우자의 취업 상태를 중요(중요하다+매우 중요하다)하게 고려하는 경우는 79.0%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한국은 80.4%가 배우자의 취업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여, 프랑스와 한국 간의 차이는 비교적 작게(1.4%p)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세부 집단별 차이는 다음과 같다. 여성(84.4%)이 남성(73.5%)보다 출산 계획 시 배우자의 취업상태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40~44세(84.4%), 30~34세(82.6%), 25~29세(79.9%), 45~49세(79.7%), 35~39세(77.7%), 20~24세(70.5%) 순으로 배우자의 취업상태가 출산 결정 시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농어촌(83.3%)과 그 외 지역(대도시의 외곽(78.1%), 대도시(77.7%), 중소도시(77.6%))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혼인상태별로 살펴보면, 동거/사실혼과 법률혼이 약 82%인

데 반하여 미혼과 이혼/별거/사별이 약 72~73%대로 나타나 혼인상태별로 배우자의 취업 중요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자녀 여부별로는 유자녀 가구(82.4%)가 무자녀 가구(75.3%)보다 배우자의 취업을 더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취업 여부별로는 취업한 경우(80.0%)가 취업하지 않은 경우(74.4%)보다 배우자의 취업을 더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가구의 소득이 높을수록 출산 계획 시 배우자의 취업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가구 유형별로는 '유자녀 기혼(2자녀 이상)' 83.8%, 유자녀 기혼(1자녀)(82.0%), 무자녀 기혼(78.4%), 유자녀 미혼(73.7%), 무자녀 미혼(72.8%) 순으로 배우자의 취업 상태를 중요하게 고려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5-9) 가족(자녀 출산) 계획 시 중요도\_6) 주거 여건

(단위: %, 명)

구 분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합계	
프랑스	1.7	1.9	9.4	42.4	44.7	(2,500)	100.0
한국	0.1	0.3	9.2	43.8	46.6	(2,500)	100.0
성별 ( $\chi^2=8.903$ )							
남성	1.7	1.9	10.7	43.5	42.3	(1,240)	100.0
여성	1.7	2.0	8.0	41.3	47.1	(1,260)	100.0
연령 ( $\chi^2=60.900^{***}$ )							
20~24세	2.0	3.6	13.5	34.2	46.7	(445)	100.0
25~29세	3.3	2.1	7.2	41.0	46.4	(334)	100.0
30~34세	1.3	2.1	11.2	36.4	49.1	(385)	100.0
35~39세	0.7	1.1	9.1	49.0	40.1	(461)	100.0
40~44세	0.7	1.7	7.1	45.6	44.9	(423)	100.0
45~49세	2.4	1.1	7.7	46.7	42.0	(452)	100.0
지역 ( $\chi^2=18.666$ )							
대도시	2.3	2.3	8.9	39.1	47.5	(796)	100.0
대도시의 외곽	1.1	2.5	10.9	41.3	44.2	(448)	100.0
중소도시	1.8	2.2	9.7	44.1	42.2	(725)	100.0
농어촌	1.1	0.6	8.3	45.8	44.3	(531)	100.0
교육 ( $\chi^2=88.181^{***}$ )							
(2~7)	3.5	3.5	15.7	34.2	43.0	(567)	100.0
(8~13)	1.3	1.9	9.3	41.8	45.7	(720)	100.0
(14~17)	1.2	1.6	8.1	49.9	39.2	(505)	100.0

구 분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합계
(18~25)	1.0	0.8	5.2	44.1	48.9	(708) 100.0
혼인상태 ( $\chi^2=38.985^{***}$ )						
미혼	1.9	1.7	11.9	38.7	45.8	(771) 100.0
동거/사실혼	1.3	1.7	9.8	43.4	43.7	(823) 100.0
법률혼	1.1	1.9	5.6	45.1	46.2	(729) 100.0
이혼/별거/사별	4.5	4.0	11.3	42.4	37.9	(177) 100.0
자녀 여부 ( $\chi^2=29.955^{***}$ )						
자녀 있음	0.8	1.7	7.4	45.1	45.1	(1,305) 100.0
자녀 없음	2.7	2.2	11.5	39.4	44.3	(1,195) 100.0
취업 여부 ( $\chi^2=8.327$ )						
취업	1.4	1.8	9.2	42.9	44.8	(2,035) 100.0
비취업	3.0	2.6	10.1	40.2	44.1	(465) 100.0
가구소득 ( $\chi^2=39.790^{***}$ )						
1500유로 미만	4.1	2.4	12.4	37.1	44.0	(493) 100.0
1500~2500유로 미만	0.9	1.2	10.0	43.5	44.4	(689) 100.0
2500~3500유로 미만	1.4	1.9	9.3	44.3	43.1	(569) 100.0
3500유로 이상	1.1	2.3	6.8	43.3	46.6	(749) 100.0
가구 유형 ( $\chi^2=47.749^{***}$ )						
무자녀 미혼	2.2	1.6	12.0	38.8	45.4	(676) 100.0
유자녀 미혼	0.0	2.1	11.6	37.9	48.4	(95) 100.0
무자녀 기혼 <sup>1)</sup>	3.3	2.9	10.8	40.3	42.8	(519) 100.0
유자녀 기혼(1자녀)	1.2	2.5	8.5	42.3	45.4	(515) 100.0
유자녀 기혼(2자녀 이상)	0.6	1.0	6.0	48.1	44.3	(695) 100.0

주: \* p<0.05, \*\* p<0.01, \*\*\* p<0.001

1) 미혼 이외의 모든 변수(법률혼/사실혼(동거)/사별/이혼/별거)를 포함함.

2)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chi^2$ 값을 제시하지 않음.

3) 각 항목의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출처: “결혼, 출산, 육아에 관한 인식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원자료 분석.

자녀 출산 계획 시, 주거 여건을 중요(중요하다+매우 중요하다)하게 고려하는 경우는 87.1%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90.4%가 중요하다고 응답해 한국보다 3.3%p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여성(88.4%)이 남성(85.8%)보다 출산 계획 시 주거 여건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40~44세(90.5%), 35~39세(89.1%), 45~49세(88.7%), 25~29세(87.4%), 30~34세(85.5%), 20~24세(80.9%) 순으로 주거의 여건이 중

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혼인상태별로 살펴보면, 법률혼인 경우(91.3%) 주거 여건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였고, 동거/사실혼(87.1%), 미혼(84.5%), 이혼/별거/사별(80.3%) 순으로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자녀 여부별로는 유자녀 가구(90.2%)가 무자녀 가구(83.7%)보다 주거의 여건을 더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취업 여부별로는 취업한 경우(87.7%)가 취업하지 않은 경우(84.3%)보다 주거의 여건을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가구의 소득이 높을수록 출산 계획 시 배우자의 취업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가구 유형별로는 유자녀 기혼(2자녀 이상) 92.4%, 유자녀 기혼(1자녀)(87.7%), 유자녀 미혼(86.3%), 무자녀 미혼(84.2%), 무자녀 기혼(83.1%) 순으로 주거의 여건을 중요하게 고려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5-10〉 가족(자녀 출산) 계획 시 중요도\_7) 일-생활 균형

(단위: %, 명)

구 분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합계	
프랑스	1.4	2.5	12.7	38.1	45.3	(2,500)	100.0
한국	0.0	0.9	9.4	42.7	46.9	(2,500)	100.0
성별 ( $\chi^2=16.930^*$ )							
남성	1.5	2.8	15.2	37.7	42.8	(1,240)	100.0
여성	1.3	2.1	10.2	38.6	47.7	(1,260)	100.0
연령 ( $\chi^2=66.153^{***}$ )							
20~24세	2.2	3.8	20.9	31.7	41.3	(445)	100.0
25~29세	2.4	3.0	8.7	34.4	51.5	(334)	100.0
30~34세	0.8	2.6	11.4	37.1	48.1	(385)	100.0
35~39세	0.9	1.5	14.5	41.2	41.9	(461)	100.0
40~44세	0.7	2.1	10.2	41.8	45.2	(423)	100.0
45~49세	1.5	2.0	9.3	41.4	45.8	(452)	100.0
지역 ( $\chi^2=16.452$ )							
대도시	2.0	2.5	12.7	36.9	45.9	(796)	100.0
대도시의 외곽	0.2	3.8	13.2	37.9	44.9	(448)	100.0
중소도시	1.8	2.5	13.1	39.3	43.3	(725)	100.0
농어촌	0.9	1.3	11.9	38.4	47.5	(531)	100.0

구 분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합계
교육 ( $\chi^2=66.604^{***}$ )						
(2~7)	3.0	3.9	19.0	33.7	40.4	(567) 100.0
(8~13)	1.0	2.2	12.9	38.8	45.1	(720) 100.0
(14~17)	1.0	2.0	10.3	44.8	42.0	(505) 100.0
(18~25)	0.8	2.0	9.2	36.3	51.7	(708) 100.0
혼인상태 ( $\chi^2=37.318^{***}$ )						
미혼	2.1	2.1	15.2	37.5	43.2	(771) 100.0
동거/사실혼	0.7	2.9	13.9	36.0	46.5	(823) 100.0
법률혼	1.0	2.5	8.0	41.6	47.1	(729) 100.0
이혼/별거/사별	3.4	2.3	16.4	36.7	41.2	(177) 100.0
자녀 여부 ( $\chi^2=36.157^{***}$ )						
자녀 있음	0.7	2.2	9.7	40.9	46.4	(1,305) 100.0
자녀 없음	2.2	2.8	16.0	35.1	44.0	(1,195) 100.0
취업 여부 ( $\chi^2=28.571^{***}$ )						
취업	0.9	2.1	12.3	38.4	46.3	(2,035) 100.0
비취업	3.4	4.3	14.4	37.0	40.9	(465) 100.0
가구소득 ( $\chi^2=42.654^{***}$ )						
1500유로 미만	3.7	3.2	17.0	34.3	41.8	(493) 100.0
1500~2500유로 미만	0.9	1.9	11.6	36.7	48.9	(689) 100.0
2500~3500유로 미만	0.7	2.5	12.7	38.5	45.7	(569) 100.0
3500유로 이상	0.9	2.5	10.9	41.7	43.9	(749) 100.0
가구 유형 ( $\chi^2=49.108^{***}$ )						
무자녀 미혼	2.4	2.2	16.1	36.8	42.5	(676) 100.0
유자녀 미혼	0.0	1.1	8.4	42.1	48.4	(95) 100.0
무자녀 기혼 <sup>1)</sup>	1.9	3.5	15.8	32.8	46.1	(519) 100.0
유자녀 기혼(1자녀)	0.8	3.3	11.8	39.6	44.5	(515) 100.0
유자녀 기혼(2자녀 이상)	0.7	1.6	8.3	41.7	47.6	(695) 100.0

주: \* p<0.05, \*\* p<0.01, \*\*\* p<0.001

1) 미혼 이외의 모든 변수(법률혼/사실혼(동거)/사별/이혼/별거)를 포함함.

2)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chi^2$ 값을 제시하지 않음.

3) 각 항목의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출처: “결혼, 출산, 육아에 관한 인식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원자료 분석.

자녀 출산 계획 시, 일-생활 균형을 중요(중요하다+매우 중요하다)하게 고려하는 경우는 83.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보다 6.2%p 낮은 수준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세부 집단별 차이는 다음과 같다. 여성(86.3%)이 남성(80.5%)보다 출산 계획 시 일-생활 균형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45~49세(87.2%), 40~44세

(87.0%), 25~29세(85.9%), 30~34세(85.2%), 35~39세(83.1%), 20~24세(73.0%) 순으로 일-생활 균형이 출산 계획 시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혼인상태별로 살펴보면, 법률혼인 경우(88.7%) 일-생활 균형을 가장 중요하게 보았고, 동거/사실혼(82.5%), 미혼(80.7%), 이혼/별거/사별(77.9%) 순으로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자녀 여부별로는 유자녀 가구(87.3%)가 무자녀 가구(79.1%)보다 일-생활 균형을 더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취업 여부별로는 취업한 경우(84.7%)가 취업하지 않은 경우(77.9%)보다 일-생활 균형을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가구소득별 일-생활 균형의 중요도는 1,500유로 미만인 경우(76.1%)가 1,500유로 이상인 경우(84.2~85.6%)보다 약 9%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유형별로는 유자녀 미혼(90.5%), 유자녀 기혼(2자녀 이상) 89.3%, 유자녀 기혼(1자녀)(84.1%), 무자녀 미혼(79.3%), 무자녀 기혼(78.9%) 순으로 출산 계획 시 일-생활 균형을 중요하게 고려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5-11〉 가족(자녀 출산) 계획 시 중요도\_8) 경력 단절의 가능성

(단위: %, 명)

구 분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합계	
프랑스	3.8	8.8	29.6	36.0	21.8	(2,500)	100.0
한국	0.7	3.7	23.3	41.8	30.4	(2,500)	100.0
성별 ( $\chi^2=1.016$ )							
남성	4.0	9.1	29.2	35.5	22.3	(1,240)	100.0
여성	3.7	8.4	30.1	36.4	21.4	(1,260)	100.0
연령 ( $\chi^2=41.808^{**}$ )							
20~24세	3.6	11.7	28.8	34.8	21.1	(445)	100.0
25~29세	5.4	9.6	26.0	33.2	25.7	(334)	100.0
30~34세	5.7	7.5	31.2	31.9	23.6	(385)	100.0
35~39세	2.8	9.3	34.7	36.0	17.1	(461)	100.0
40~44세	2.4	9.0	25.8	39.7	23.2	(423)	100.0
45~49세	3.5	5.5	30.3	38.9	21.7	(452)	100.0

구 분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합계
지역 ( $\chi^2=12.190$ )						
대도시	4.3	8.3	28.6	35.4	23.4	(796) 100.0
대도시의 외곽	3.1	10.7	26.8	39.1	20.3	(448) 100.0
중소도시	4.3	9.1	30.8	34.1	21.8	(725) 100.0
농어촌	3.0	7.3	32.0	36.7	20.9	(531) 100.0
교육 ( $\chi^2=53.329^{***}$ )						
(2~7)	4.2	10.1	32.3	25.0	28.4	(567) 100.0
(8~13)	3.8	8.9	29.0	36.7	21.7	(720) 100.0
(14~17)	4.6	8.5	30.5	40.8	15.6	(505) 100.0
(18~25)	3.0	7.8	27.5	40.5	21.2	(708) 100.0
혼인상태 ( $\chi^2=18.166$ )						
미혼	4.4	9.2	32.3	35.0	19.1	(771) 100.0
동거/사실혼	3.6	9.5	29.8	34.3	22.8	(823) 100.0
법률혼	2.9	7.7	26.3	39.1	24.0	(729) 100.0
이혼/별거/사별	5.6	7.9	31.1	35.0	20.3	(177) 100.0
자녀 여부 ( $\chi^2=21.117^{**}$ )						
자녀 있음	2.8	8.9	26.7	38.5	23.1	(1,305) 100.0
자녀 없음	4.9	8.6	32.8	33.2	20.5	(1,195) 100.0
취업 여부 ( $\chi^2=11.501$ )						
취업	3.2	8.9	29.2	36.4	22.3	(2,035) 100.0
비취업	6.2	8.2	31.6	34.2	19.8	(465) 100.0
가구소득 ( $\chi^2=23.950$ )						
1500유로 미만	5.7	9.5	32.3	30.4	22.1	(493) 100.0
1500~2500유로 미만	3.5	7.5	30.0	35.6	23.4	(689) 100.0
2500~3500유로 미만	2.1	9.3	30.6	35.9	22.1	(569) 100.0
3500유로 이상	4.1	8.9	26.8	40.1	20.0	(749) 100.0
가구 유형 ( $\chi^2=28.471$ )						
무자녀 미혼	4.6	9.0	33.0	34.6	18.8	(676) 100.0
유자녀 미혼	3.2	10.5	27.4	37.9	21.1	(95) 100.0
무자녀 기혼 <sup>1)</sup>	5.2	8.1	32.6	31.4	22.7	(519) 100.0
유자녀 기혼(1자녀)	3.3	7.8	28.7	37.3	22.9	(515) 100.0
유자녀 기혼(2자녀 이상)	2.4	9.5	25.2	39.4	23.5	(695) 100.0

주: \* p<0.05, \*\* p<0.01, \*\*\* p<0.001

1) 미혼 이외의 모든 변수(법률혼/사실혼(동거)/사별/이혼/별거)를 포함함.

2)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chi^2$ 값을 제시하지 않음.

3) 각 항목의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출처: “결혼, 출산, 육아에 관한 인식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원자료 분석.

자녀 출산 계획 시, 경력 단절을 중요(중요하다+매우 중요하다)하게 고려하는 경우는 57.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보다 14.4%p 낮은

수준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세부 집단별 차이는 다음과 같다. 연령에 있어서 40~44세(62.9%), 45~49세(60.6%), 25~29세(58.9%), 20~24세(55.9%), 30~34세(55.5%), 35~39세(53.1%) 순으로 출산 계획 시 경력 단절을 중요하게 고려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대체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자녀 여부별로는 유자녀 가구(61.6%)가 무자녀 가구(53.7%)보다 경력 단절을 더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가구소득별 경력 단절의 중요도는 1,500유로 미만인 경우(52.5%)와 1,500유로 이상인 경우(58~60.1%)가 약 6%p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유형별로는 유자녀 기혼(2자녀 이상)은 62.9%, 유자녀 기혼(1자녀)(60.2%), 유자녀 미혼(59.0%), 무자녀 기혼(54.1%), 무자녀 미혼(53.4%) 순으로 출산 계획 시 경력 단절을 중요하게 고려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5-12〉 가족(자녀 출산) 계획 시 중요도\_9) 보육/양육 서비스 이용 가능성

(단위: %, 명)

구 분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합계	
프랑스	4.4	6.0	24.0	39.5	26.2	(2,500)	100.0
한국	0.3	1.8	14.6	45.0	38.3	(2,500)	100.0
성별 ( $\chi^2=21.765^{***}$ )							
남성	5.3	6.3	25.9	40.0	22.5	(1,240)	100.0
여성	3.5	5.6	22.1	39.0	29.8	(1,260)	100.0
연령 ( $\chi^2=36.317$ )							
20~24세	4.5	8.1	26.1	36.6	24.7	(445)	100.0
25~29세	4.8	6.9	17.4	41.0	29.9	(334)	100.0
30~34세	2.9	7.0	22.3	39.2	28.6	(385)	100.0
35~39세	4.1	4.1	26.5	43.2	22.1	(461)	100.0
40~44세	4.5	5.0	21.3	41.8	27.4	(423)	100.0
45~49세	5.5	5.1	28.1	35.6	25.7	(452)	100.0
지역 ( $\chi^2=12.107$ )							
대도시	5.2	5.8	22.5	39.6	27.0	(796)	100.0
대도시의 외곽	2.0	7.1	23.0	40.8	27.0	(448)	100.0
중소도시	5.0	5.5	24.4	39.6	25.5	(725)	100.0

구 분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합계	
농어촌 교육 ( $\chi^2=50.481^{***}$ )	4.5	5.8	26.4	38.2	25.0	(531)	100.0
(2~7)	6.7	7.4	30.0	31.6	24.3	(567)	100.0
(8~13)	4.0	5.7	25.3	37.9	27.1	(720)	100.0
(14~17)	4.4	6.1	21.8	44.4	23.4	(505)	100.0
(18~25)	3.0	4.9	19.4	44.1	28.7	(708)	100.0
혼인상태 ( $\chi^2=46.637^{***}$ )							
미혼	5.2	6.6	29.3	37.4	21.5	(771)	100.0
동거/사실혼	5.0	4.9	22.6	39.7	27.8	(823)	100.0
법률혼	2.7	5.8	18.8	42.8	29.9	(729)	100.0
이혼/별거/사별	5.1	9.0	28.2	34.5	23.2	(177)	100.0
자녀 여부 ( $\chi^2=42.781^{***}$ )							
자녀 있음	2.7	5.3	21.0	42.2	28.8	(1,305)	100.0
자녀 없음	6.3	6.7	27.2	36.6	23.3	(1,195)	100.0
취업 여부 ( $\chi^2=34.028^{***}$ )							
취업	3.9	5.0	23.1	40.9	27.1	(2,035)	100.0
비취업	6.5	10.1	27.7	33.5	22.2	(465)	100.0
가구소득 ( $\chi^2=46.910^{***}$ )							
1500유로 미만	6.3	8.1	31.4	31.8	22.3	(493)	100.0
1500~2500유로 미만	4.6	5.8	23.9	37.9	27.7	(689)	100.0
2500~3500유로 미만	3.5	5.3	23.7	41.3	26.2	(569)	100.0
3500유로 이상	3.6	5.2	19.2	44.7	27.2	(749)	100.0
가구 유형 ( $\chi^2=57.141^{***}$ )							
무자녀 미혼	5.6	6.8	30.3	35.9	21.3	(676)	100.0
유자녀 미혼	2.1	5.3	22.1	47.4	23.2	(95)	100.0
무자녀 기혼 <sup>1)</sup>	7.1	6.6	23.1	37.4	25.8	(519)	100.0
유자녀 기혼(1자녀)	3.1	5.4	22.5	40.4	28.5	(515)	100.0
유자녀 기혼(2자녀 이상)	2.4	5.2	19.7	42.9	29.8	(695)	100.0

주: \* p<0.05, \*\* p<0.01, \*\*\* p<0.001

1) 미혼 이외의 모든 변수(법률혼/사실혼(동거)/사별/이혼/별거)를 포함함.

2)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chi^2$ 값을 제시하지 않음.

3) 각 항목의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출처: “결혼, 출산, 육아에 관한 인식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원자료 분석.

자녀 출산 계획 시, 보육/양육 서비스의 이용 가능성을 중요(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하게 고려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65.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과 비교하여 17.3%p 낮은 수준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세부 집단별 차이는 다음과 같다. 여성(68.8%)이 남성(62.5%)보다 보육/양

육 서비스의 이용 가능성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연령 집단 별로 25~29세(70.9%), 40~44세(69.2%), 30~34세(67.8%), 35~39세(65.3%), 45~49세(61.3%), 20~24세(61.3%) 순으로 보육/양육 서비스 이용 가능성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혼인상태별로 살펴보면, 법률혼은 72.7%가 보육/양육 서비스의 이용 가능성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동거/사실혼은 67.5%, 미혼과 이혼/별거/사별이 약 57~58%대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또한 유자녀 가구(71.0%)가 무자녀 가구(59.9%)보다 보육/양육 서비스의 이용 가능성을 더 중요하게 고려하였고, 취업한 경우(68.0%)가 취업하지 않은 경우(55.7%)보다 더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가구의 소득이 높을수록 출산 계획 시 보육/양육 서비스의 이용 가능성을 더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가구 유형별로는 유자녀 기혼(2자녀 이상)은 72.7%, 유자녀 미혼(70.6%), 유자녀 기혼(1자녀)(68.9%), 무자녀 기혼(63.2%), 무자녀 미혼(57.2%) 순으로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표 5-13〉 가족(자녀 출산) 계획 시 중요도\_10) 정부의 충분한 지원

(단위: %, 명)

구 분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합계	
프랑스	5.7	9.8	31.9	32.2	20.5	(2,500)	100.0
한국	0.4	1.4	13.8	37.9	46.6	(2,500)	100.0
성별 ( $\chi^2=4.344$ )							
남성	6.6	9.9	31.2	32.2	20.1	(1,240)	100.0
여성	4.8	9.7	32.5	32.1	20.9	(1,260)	100.0
연령 ( $\chi^2=35.739$ )							
20~24세	4.9	11.0	36.0	29.9	18.2	(445)	100.0
25~29세	6.3	5.7	28.1	37.4	22.5	(334)	100.0
30~34세	3.6	10.9	31.2	31.7	22.6	(385)	100.0
35~39세	6.5	9.1	34.3	30.6	19.5	(461)	100.0

구 분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합계	
40~44세	5.2	11.6	25.8	35.7	21.7	(423)	100.0
45~49세	7.3	9.7	34.5	29.2	19.2	(452)	100.0
지역 ( $\chi^2=20.539$ )							
대도시	5.5	7.9	31.9	32.2	22.5	(796)	100.0
대도시의 외곽	3.8	10.9	28.8	36.8	19.6	(448)	100.0
중소도시	5.5	11.0	34.1	29.8	19.6	(725)	100.0
농어촌	7.7	10.0	31.5	31.5	19.4	(531)	100.0
교육 ( $\chi^2=24.342$ )							
(2~7)	7.4	10.6	31.4	26.8	23.8	(567)	100.0
(8~13)	5.7	8.2	32.5	33.3	20.3	(720)	100.0
(14~17)	4.8	12.3	33.1	33.3	16.6	(505)	100.0
(18~25)	4.9	9.0	30.8	34.5	20.8	(708)	100.0
혼인상태 ( $\chi^2=32.195$ )							
미혼	6.1	8.6	37.5	32.2	15.7	(771)	100.0
동거/사실혼	5.2	9.2	31.2	32.2	22.1	(823)	100.0
법률혼	5.6	12.1	27.3	32.4	22.6	(729)	100.0
이혼/별거/사별	6.2	8.5	29.4	31.1	24.9	(177)	100.0
자녀 여부 ( $\chi^2=24.464$ )							
자녀 있음	5.2	10.3	28.5	32.4	23.6	(1,305)	100.0
자녀 없음	6.2	9.3	35.6	31.9	17.1	(1,195)	100.0
취업 여부 ( $\chi^2=4.678$ )							
취업	5.7	10.0	31.1	32.1	21.1	(2,035)	100.0
비취업	5.8	9.0	35.3	32.3	17.6	(465)	100.0
가구소득 ( $\chi^2=25.902$ )							
1500유로 미만	6.3	8.1	32.5	32.3	20.9	(493)	100.0
1500~2500유로 미만	4.9	7.3	32.5	31.9	23.4	(689)	100.0
2500~3500유로 미만	4.0	11.1	31.1	32.7	21.1	(569)	100.0
3500유로 이상	7.2	12.3	31.5	31.9	17.1	(749)	100.0
가구 유형 ( $\chi^2=51.599$ )							
무자녀 미혼	6.5	9.5	38.6	30.2	15.2	(676)	100.0
유자녀 미혼	3.2	2.1	29.5	46.3	18.9	(95)	100.0
무자녀 기혼 <sup>1)</sup>	5.8	9.1	31.6	34.1	19.5	(519)	100.0
유자녀 기혼(1자녀)	6.4	10.1	29.7	29.9	23.9	(515)	100.0
유자녀 기혼(2자녀 이상)	4.6	11.5	27.5	32.4	24.0	(695)	100.0

주: \* p<0.05, \*\* p<0.01, \*\*\* p<0.001

- 1) 미혼 이외의 모든 변수(법률혼 /사실혼(동거)/사별/이혼/별거)를 포함함.
- 2)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chi^2$ 값을 제시하지 않음.
- 3) 각 항목의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출처: "결혼, 출산, 육아에 관한 인식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원자료 분석.

자녀 출산 계획 시, 정부의 충분한 지원을 중요(중요하다+매우 중요하다)하게 고려하는 경우는 52.7%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국 보다 31.8%p 낮은 수준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세부 집단별 차이는 다음과 같다. 우선, 연령에 있어서 25~29세(59.9%), 40~44세(57.4%), 30~34세(54.3%), 35~39세(50.1%), 45~49세(48.4%), 20~24세(48.1%) 순으로 정부의 충분한 지원이 출산 결정 시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교육수준의 경우 대체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혼인상태별로 살펴보면, 이혼/별거/사별은 56.0%, 법률혼은 55%, 동거/사실혼은 54.3%이고, 미혼은 47.9%로 응답하여 차이를 보였다. 자녀 여부별로는 유자녀 가구(56.0%)가 무자녀 가구(49.0%)보다 정부의 충분한 지원을 더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가구소득별 정부의 충분한 지원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비율에 있어서, 1,500~2,500유로 가구는 55.3%, 2,500~3,500유로 가구는 53.8%, 1,500유로 미만은 53.2%, 3,500유로 이상은 49.0%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유형별로는 유자녀 미혼 가구의 65.2%, 유자녀 기혼(2자녀 이상) 가구의 56.4%, 유자녀 기혼(1자녀) 가구의 53.8%, 무자녀 기혼 가구의 53.6%, 무자녀 미혼 가구의 45.4%가 출산 결정 시 정부의 충분한 지원을 중요하게 고려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5-14〉 가족(자녀 출산) 계획 시 중요도\_11)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 불확실성

(단위: %, 명)

구 분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합계
프랑스	2.6	4.5	23.1	38.6	31.2	(2,500) 100.0
한국	0.2	0.9	12.2	36.5	50.1	(2,500) 100.0
성별 ( $\chi^2=14.463^{**}$ )						
남성	3.1	5.3	24.4	38.5	28.5	(1,240) 100.0
여성	2.0	3.7	21.7	38.7	33.9	(1,260) 100.0
연령 ( $\chi^2=40.811^{**}$ )						
20~24세	4.3	7.2	27.4	36.0	25.2	(445) 100.0

구 분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합계
25~29세	3.3	4.2	22.8	36.2	33.5	(334) 100.0
30~34세	2.1	4.7	22.3	37.4	33.5	(385) 100.0
35~39세	2.2	4.3	23.9	40.8	28.9	(461) 100.0
40~44세	1.4	4.7	19.1	40.9	33.8	(423) 100.0
45~49세	2.2	2.0	22.6	39.6	33.6	(452) 100.0
지역 ( $\chi^2=16.550$ )						
대도시	2.9	5.9	22.4	37.1	31.8	(796) 100.0
대도시의 외곽	2.7	4.7	21.4	43.1	28.1	(448) 100.0
중소도시	2.9	4.0	23.7	36.7	32.7	(725) 100.0
농어촌	1.5	3.0	24.7	39.7	31.1	(531) 100.0
교육 ( $\chi^2=28.129^{**}$ )						
(2~7)	4.4	4.9	22.0	37.2	31.4	(567) 100.0
(8~13)	2.8	3.8	26.8	35.8	30.8	(720) 100.0
(14~17)	1.6	3.8	23.2	42.2	29.3	(505) 100.0
(18~25)	1.6	5.5	20.1	40.0	32.9	(708) 100.0
혼인상태 ( $\chi^2=18.260$ )						
미혼	3.2	4.9	26.5	34.9	30.5	(771) 100.0
동거/사실혼	2.1	4.5	23.0	40.0	30.5	(823) 100.0
법률혼	2.2	3.8	20.4	41.7	31.8	(729) 100.0
이혼/별거/사별	3.4	5.6	19.8	35.6	35.6	(177) 100.0
자녀 여부 ( $\chi^2=32.974^{***}$ )						
자녀 있음	1.7	3.8	20.0	42.4	32.1	(1,305) 100.0
자녀 없음	3.5	5.3	26.4	34.5	30.3	(1,195) 100.0
취업 여부 ( $\chi^2=6.222$ )						
취업	2.3	4.4	22.8	39.4	31.2	(2,035) 100.0
비취업	3.9	4.9	24.5	35.3	31.4	(465) 100.0
가구소득 ( $\chi^2=43.805^{***}$ )						
1500유로 미만	4.5	5.3	23.5	33.7	33.1	(493) 100.0
1500~2500유로 미만	1.5	4.2	20.0	39.2	35.1	(689) 100.0
2500~3500유로 미만	1.6	3.2	28.8	36.7	29.7	(569) 100.0
3500유로 이상	3.1	5.3	21.2	42.7	27.6	(749) 100.0
가구 유형 ( $\chi^2=39.345^{***}$ )						
무자녀 미혼	3.6	5.0	27.7	33.7	30.0	(676) 100.0
유자녀 미혼	1.1	4.2	17.9	43.2	33.7	(95) 100.0
무자녀 기혼 <sup>1)</sup>	3.5	5.6	24.9	35.5	30.6	(519) 100.0
유자녀 기혼(1자녀)	1.6	3.3	22.3	43.3	29.5	(515) 100.0
유자녀 기혼(2자녀 이상)	1.9	4.2	18.6	41.6	33.8	(695) 100.0

주: \* p<0.05, \*\* p<0.01, \*\*\* p<0.001

1) 미혼 이외의 모든 변수(법률혼/사실혼(동거)/사별/이혼/별거)를 포함함.

2)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chi^2$ 값을 제시하지 않음.

3) 각 항목의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출처: “결혼, 출산, 육아에 관한 인식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원자료 분석.

자녀 출산 의사 결정 시,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 불확실성을 중요(중요하다+매우 중요하다)하게 고려하는 경우는 69.8%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국보다 16.8%p 낮은 수준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세부 집단별 차이는 다음과 같다. 여성(72.6%)이 남성(67.0%)보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출산 의사 결정 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구체적으로 40대는 약 73~74%, 30대 약 70%대, 20대 약 60~69%대로 나타났다. 또한 유자녀 가구(74.5%)가 무자녀 가구(64.8%)보다, 취업한 경우(70.6%)가 취업하지 않은 경우(66.7%)보다 미래의 불확실성을 더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체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가구의 소득별로 살펴보면, 1,500~2,500유로 가구가 74.3%로 가장 높았고, 이어 3,500유로 이상 가구(70.3%), 1,500유로 미만(66.8%), 2,500~3,500유로(66.4%) 순으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유형별로는 유자녀 미혼(76.9%), 유자녀 기혼(2자녀 이상)(75.4%), 유자녀 기혼(1자녀)(72.8%), 무자녀 기혼(66.1%), 무자녀 미혼(63.7%) 순으로 미래의 불확실성을 출산 의사 결정 시 중요하게 고려한다고 응답하였다.

### 3. 자녀 수

향후 계획하고 있는 자녀 수를 먼저 살펴보면, 자녀를 낳을 계획이 있는 조사 응답자의 계획 자녀 수는 평균 2.1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계획자녀 수는 1.74명인 것으로 나타나 프랑스가 출산 의향이 있는 경우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자녀 수를 희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15〉 향후 계획 자녀 수

(단위: %, 명)

구 분	평균	합계	
프랑스	2.11	(970)	100.0
한국	1.74	(780)	100.0
성별 (t=0.053)			
남성	2.11	(532)	100.0
여성	2.11	(438)	100.0
연령 (F=13.794 <sup>***</sup> )			
20~24세	2.41	(287)	100.0
25~29세	2.12	(218)	100.0
30~34세	1.99	(201)	100.0
35~39세	1.89	(143)	100.0
40~44세	1.92	(89)	100.0
45~49세	1.72	(32)	100.0
지역 (F=0.512)			
대도시	2.14	(382)	100.0
대도시의 외곽	2.13	(187)	100.0
중소도시	2.07	(260)	100.0
농어촌	2.09	(141)	100.0
교육 (F=0.704)			
(2~7)	2.05	(219)	100.0
(8~13)	2.14	(264)	100.0
(14~17)	2.09	(191)	100.0
(18~25)	2.15	(296)	100.0
혼인상태 (F=5.619 <sup>**</sup> )			
미혼	2.25	(323)	100.0
동거/사실혼	2.09	(382)	100.0
법률혼	1.97	(236)	100.0
이혼/별거/사별	2.03	(29)	100.0
자녀 여부 (t=-2.581 <sup>*</sup> )			
자녀 있음	2.03	(403)	100.0
자녀 없음	2.17	(567)	100.0
취업 여부 (t=-0.978)			
취업	2.10	(799)	100.0
비취업	2.17	(171)	100.0
가구소득 (F=2.072)			
1500유로 미만	2.21	(187)	100.0
1500~2500유로 미만	2.12	(273)	100.0
2500~3500유로 미만	2.13	(224)	100.0
3500유로 이상	2.02	(286)	100.0
가구 유형 (F=11.239 <sup>***</sup> )			

구 분	평균	합계	
무자녀 미혼	2.28	(299)	100.0
유자녀 미혼	1.92	(24)	100.0
무자녀 기혼 <sup>1)</sup>	2.05	(268)	100.0
유자녀 기혼(1자녀)	1.87	(238)	100.0
유자녀 기혼(2자녀 이상)	2.31	(141)	100.0

주: \* p<0.05, \*\* p<0.01, \*\*\* p<0.001

1) 미혼 이외의 모든 변수(법률혼/사실혼(동거)/사별/이혼/별거)를 포함함.

2) 각 항목의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출처: “결혼, 출산, 육아에 관한 인식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원자료 분석.

계획 자녀 수에 대한 차이는 연령, 혼인상태, 자녀 여부, 가구 유형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연령이 어릴수록 자녀 수가 많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혼인상태가 미혼인 경우 2.25명, 동거/사실혼은 2.09명, 이혼/별거/사별인 경우 2.03명, 법률혼인 경우 1.97명으로 차이를 보였다. 이는 법률혼인 경우, 이미 자녀를 양육하고 있을 가능성이 출산 자녀 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자녀 여부별로 살펴보면, 자녀가 없는 경우 2.17명을 계획하였고, 자녀가 있는 경우 2.03명의 자녀를 계획하였다. 가구 유형별로 살펴보면, 유자녀 기혼(2자녀 이상)이 2.31명으로 가장 높았고, 무자녀 미혼 2.28명, 무자녀 기혼 2.05명, 유자녀 미혼 1.92명, 유자녀 기혼(1자녀) 1.87명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자녀를 둘 때 몇 명이 적정한지에 관해 조사한 결과, 평균 1.95명인 것으로 나타나 한국의 경우(1.58명)보다 0.37명 많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표 5-16〉 이상 자녀 수

(단위: %, 명)

구 분	평균	합계	
프랑스	1.95	(2,500)	100.0
한국	1.58	(2,500)	100.0
성별 (t=-0.041)			
남성	1.94	(1,240)	100.0
여성	1.95	(1,260)	100.0

252 프랑스의 인구정책 사례 연구

구 분	평균	합계	
연령 (F=3.807 <sup>*)</sup>			
20~24세	2.09	(445)	100.0
25~29세	1.98	(334)	100.0
30~34세	1.91	(385)	100.0
35~39세	1.95	(461)	100.0
40~44세	1.94	(423)	100.0
45~49세	1.80	(452)	100.0
지역 (F=1.365)			
대도시	1.97	(796)	100.0
대도시의 외곽	2.00	(448)	100.0
중소도시	1.92	(725)	100.0
농어촌	1.89	(531)	100.0
교육 (F=1.440)			
(2~7)	1.95	(567)	100.0
(8~13)	1.99	(720)	100.0
(14~17)	1.87	(505)	100.0
(18~25)	1.95	(708)	100.0
혼인상태 (F=21.242 <sup>***</sup> )			
미혼	1.74	(771)	100.0
동거/사실혼	1.94	(823)	100.0
법률혼	2.15	(729)	100.0
이혼/별거/사별	2.05	(177)	100.0
자녀 여부 (t=13.655 <sup>***</sup> )			
자녀 있음	2.21	(1,305)	100.0
자녀 없음	1.66	(1,195)	100.0
취업 여부 (t=0.967)			
취업	1.96	(2,035)	100.0
비취업	1.90	(465)	100.0
가구소득 (F=2.154)			
1500유로 미만	1.87	(493)	100.0
1500~2500유로 미만	1.91	(689)	100.0
2500~3500유로 미만	1.98	(569)	100.0
3500유로 이상	2.00	(749)	100.0
가구 유형 (F=71.289 <sup>***</sup> )			
무자녀 미혼	1.67	(676)	100.0
유자녀 미혼	2.18	(95)	100.0
무자녀 기혼 <sup>1)</sup>	1.64	(519)	100.0
유자녀 기혼(1자녀)	1.91	(515)	100.0
유자녀 기혼(2자녀 이상)	2.43	(695)	100.0

주: \* p<0.05, \*\* p<0.01, \*\*\* p<0.001

1) 미혼 이외의 모든 변수(법률혼/사실혼(동거)/사별/이혼/별거)를 포함함.

2) 각 항목의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출처: "결혼, 출산, 육아에 관한 인식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원자료 분석.

이상 자녀 수에 대한 세부 집단별 차이는 연령, 혼인상태, 자녀 여부, 가구 유형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낮을수록 이상 자녀 수가 많았으며, 혼인상태별로는 법률혼은 2.15명, 이혼/별거/사별 2.05명, 동거/사실혼 1.94명, 미혼 1.74명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여부별로 살펴보면, 자녀가 있는 경우 2.21명이고, 자녀가 없는 경우 1.66명으로 나타났다. 가구 유형별로 살펴보면, 유자녀 기혼 2자녀 이상이 2.43명으로 가장 많고, 유자녀 미혼 2.18명, 유자녀 기혼(1자녀) 1.91명, 무자녀 미혼 1.67명, 무자녀 기혼 1.64명 순으로 나타났다.

#### 4. 자녀가 삶에 미치는 영향

자녀 출산 계획 여부에 관계없이 자녀를 갖게 될 경우 본인의 삶의 다음과 같은 측면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 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자유의 제한성)에 관해서 응답자의 66.8%가 동의(동의한다+매우 동의한다)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국보다 18.6%p 낮은 수준이다.

〈표 5-17〉 자녀 출산 시 삶의 영향력<sub>(1)</sub>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진다

(단위: %, 명)

구 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동의한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합계
프랑스	5.0	8.3	20.0	40.9	25.9	(2,500) 100.0
한국	0.5	2.4	11.8	48.0	37.4	(2,500) 100.0
성별 ( $\chi^2=13.883^{**}$ )						
남성	4.8	8.1	19.3	44.4	23.5	(1,240) 100.0
여성	5.2	8.5	20.6	37.5	28.3	(1,260) 100.0
연령 ( $\chi^2=54.443^{***}$ )						
20~24세	8.8	11.5	22.7	37.5	19.6	(445) 100.0

254 프랑스의 인구정책 사례 연구

구 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동의한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합계
25~29세	5.7	10.5	16.8	42.8	24.3	(334) 100.0
30~34세	5.5	8.3	18.2	41.8	26.2	(385) 100.0
35~39세	2.8	6.1	23.2	39.3	28.6	(461) 100.0
40~44세	2.8	7.8	19.6	41.8	27.9	(423) 100.0
45~49세	4.4	6.2	18.1	42.9	28.3	(452) 100.0
지역 ( $\chi^2=10.917$ )						
대도시	6.5	7.5	19.8	40.2	25.9	(796) 100.0
대도시의 외곽	3.8	8.7	18.5	44.4	24.6	(448) 100.0
중소도시	4.4	7.9	20.4	40.8	26.5	(725) 100.0
농어촌	4.3	9.6	20.7	39.2	26.2	(531) 100.0
교육 ( $\chi^2=77.864^{***}$ )						
(2~7)	7.8	10.9	26.5	31.0	23.8	(567) 100.0
(8~13)	5.3	8.9	20.8	39.0	26.0	(720) 100.0
(14~17)	4.2	8.7	17.4	46.1	23.6	(505) 100.0
(18~25)	3.0	5.2	15.7	47.0	29.1	(708) 100.0
혼인상태 ( $\chi^2=15.337$ )						
미혼	4.8	7.1	23.1	39.6	25.4	(771) 100.0
동거/사실혼	5.8	8.5	19.4	40.9	25.3	(823) 100.0
법률혼	3.7	8.8	18.5	42.2	26.7	(729) 100.0
이혼/별거/사별	6.8	10.2	14.7	41.2	27.1	(177) 100.0
자녀 여부 ( $\chi^2=8.022$ )						
자녀 있음	4.4	8.4	19.2	43.3	24.7	(1,305) 100.0
자녀 없음	5.6	8.1	20.8	38.3	27.2	(1,195) 100.0
취업 여부 ( $\chi^2=12.744$ )						
취업	4.6	8.2	19.0	42.2	26.1	(2,035) 100.0
비취업	6.7	8.8	24.1	35.5	24.9	(465) 100.0
가구소득 ( $\chi^2=25.699$ )						
1500유로 미만	7.1	7.9	23.7	35.9	25.4	(493) 100.0
1500~2500유로 미만	4.2	8.0	20.6	38.0	29.2	(689) 100.0
2500~3500유로 미만	4.7	9.5	18.6	42.9	24.3	(569) 100.0
3500유로 이상	4.4	7.9	17.9	45.4	24.4	(749) 100.0
가구 유형 ( $\chi^2=28.932$ )						
무자녀 미혼	5.0	6.5	22.9	39.2	26.3	(676) 100.0
유자녀 미혼	3.2	11.6	24.2	42.1	18.9	(95) 100.0
무자녀 기혼 <sup>1)</sup>	6.4	10.2	17.9	37.2	28.3	(519) 100.0
유자녀 기혼(1자녀)	5.2	9.3	20.2	43.1	22.1	(515) 100.0
유자녀 기혼(2자녀 이상)	3.9	7.3	17.8	43.6	27.3	(695) 100.0

주: \* p<0.05, \*\* p<0.01, \*\*\* p<0.001

1) 미혼 이외의 모든 변수(법률혼/사실혼(동거)/사별/이혼/별거)를 포함함.

2)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chi^2$ 값을 제시하지 않음.

3) 각 항목의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출처: “결혼, 출산, 육아에 관한 인식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원자료 분석.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세부 집단별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남성(67.9%)이 여성(65.8%)보다 자녀를 갖게 된다면 자유가 제한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또한 연령이 높아질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유의 제한성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취업한 경우(68.3%)가 취업하지 않은 경우(60.4%)보다 자녀로 인한 자유의 제한성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았다.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자녀로 인한 자유의 제한성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1,500유로 미만의 61.3%, 1,500~2,500유로 미만과 2,500~3,500유로 미만의 67.2%, 3,500유로 이상의 69.8%가 자녀로 인한 자유의 제한성에 동의하였다. 가구 유형별로는 유자녀 기혼(2자녀 이상)의 70.9%, 무자녀 기혼·무자녀 미혼·유자녀 기혼(1자녀)의 65.2~65.5%, 유자녀 미혼의 61.0%가 자녀로 인한 자유의 제한성에 동의하였다.

〈표 5-18〉 자녀 출산 시 삶의 영향력\_2) 삶에서 얻는 기쁨과 만족이 커진다

(단위: %, 명)

구 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동의한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합계	
프랑스	3.3	6.2	22.6	36.6	31.3	(2,500)	100.0
한국	1.0	3.1	21.6	45.7	28.6	(2,500)	100.0
성별 ( $\chi^2=4.344$ )							
남성	3.2	6.9	22.5	37.7	29.8	(1,240)	100.0
여성	3.3	5.6	22.6	35.6	32.9	(1,260)	100.0
연령 ( $\chi^2=49.286^{***}$ )							
20~24세	2.9	8.5	21.8	31.0	35.7	(445)	100.0
25~29세	3.6	7.2	20.4	33.2	35.6	(334)	100.0
30~34세	4.9	7.8	21.8	31.4	34.0	(385)	100.0
35~39세	3.0	6.1	23.6	39.7	27.5	(461)	100.0
40~44세	1.7	3.5	22.0	44.0	28.8	(423)	100.0
45~49세	3.8	4.4	25.0	39.2	27.7	(452)	100.0
지역 ( $\chi^2=12.340$ )							
대도시	2.9	7.3	21.7	36.4	31.7	(796)	100.0
대도시의 외곽	3.3	6.5	22.1	36.4	31.7	(448)	100.0
중소도시	4.6	5.9	24.0	35.6	29.9	(725)	100.0

구 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동의한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합계	
농어촌 교육 ( $\chi^2=15.529$ )	2.1	4.7	22.2	38.6	32.4	(531)	100.0
(2~7)	4.4	7.8	25.2	33.9	28.7	(567)	100.0
(8~13)	2.4	6.5	22.4	35.7	33.1	(720)	100.0
(14~17)	3.2	5.7	22.0	38.0	31.1	(505)	100.0
(18~25)	3.4	4.9	21.0	38.8	31.8	(708)	100.0
혼인상태 ( $\chi^2=41.082^{***}$ )							
미혼	3.6	6.9	26.8	32.8	29.8	(771)	100.0
동거/사실혼	2.8	7.4	22.5	36.8	30.5	(823)	100.0
법률혼	2.5	3.8	19.2	40.1	34.4	(729)	100.0
이혼/별거/사별	7.3	7.3	18.1	38.4	28.8	(177)	100.0
자녀 여부 ( $\chi^2=63.585^{***}$ )							
자녀 있음	2.2	4.4	18.5	41.1	33.8	(1,305)	100.0
자녀 없음	4.4	8.2	26.9	31.8	28.6	(1,195)	100.0
취업 여부 ( $\chi^2=16.635^{**}$ )							
취업	2.9	5.7	21.8	37.8	31.8	(2,035)	100.0
비취업	4.9	8.4	25.8	31.6	29.2	(465)	100.0
가구소득 ( $\chi^2=46.176^{***}$ )							
1500유로 미만	5.5	8.3	27.4	31.0	27.8	(493)	100.0
1500~2500유로 미만	3.5	4.9	23.1	38.3	30.2	(689)	100.0
2500~3500유로 미만	1.6	7.7	21.8	39.7	29.2	(569)	100.0
3500유로 이상	2.9	4.8	19.5	36.4	36.3	(749)	100.0
가구 유형 ( $\chi^2=72.627^{***}$ )							
무자녀 미혼	3.8	7.5	28.0	31.5	29.1	(676)	100.0
유자녀 미혼	2.1	2.1	18.9	42.1	34.7	(95)	100.0
무자녀 기혼 <sup>1)</sup>	5.2	9.1	25.6	32.2	27.9	(519)	100.0
유자녀 기혼(1자녀)	2.7	5.4	20.0	38.3	33.6	(515)	100.0
유자녀 기혼(2자녀 이상)	1.9	3.9	17.4	43.0	33.8	(695)	100.0

주: \* p<0.05, \*\* p<0.01, \*\*\* p<0.001

1) 미혼 이외의 모든 변수(법률혼/사실혼(동거)/사별/이혼/별거)를 포함함.

2)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chi^2$ 값을 제시하지 않음.

3) 각 항목의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출처: “결혼, 출산, 육아에 관한 인식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원자료 분석.

자녀를 갖게 된다면 삶에서 얻는 기쁨과 만족이 커지는 ‘삶의 만족도 향상’에 대해 동의(동의한다+매우 동의한다)한 정도는 다음과 같다. 자녀로 인한 ‘삶의 만족도 향상’에 대해 동의한 비율은 67.9%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국보다 6.4%p 낮은 수준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세부 집단별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령에 있어서 40~44세(72.8%), 25~29세(68.8%), 35~39세(67.2%), 45~49세(66.9%), 20~24세(66.7%), 30~34세(65.4%) 순으로 자녀로 인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응답하였다. 혼인상태별로 살펴보면, 법률혼은 74.5%, 동거/사실혼과 이혼/별거/사별은 약 67%, 미혼은 62.6%로 응답하여 차이를 보였다. 자녀 여부별로는 유자녀 가구(74.9%)가 무자녀 가구(60.4%)보다 자녀로 인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응답한 비율이 14.5%p 높게 나타났다. 취업자(69.6%)는 비취업자(60.8%)보다 자녀로 인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에 동의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은 높아질수록 자녀로 인한 높은 삶의 만족도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가구 유형별로는 유자녀 기혼(2자녀 이상)과 유자녀 미혼의 76.8%, 유자녀 기혼(1자녀)의 71.9%, 무자녀 기혼과 무자녀 미혼의 60.1~60.6%가 동의하여 가구 유형 간 차이가 약 10%p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9〉 자녀 출산 시 삶의 영향력\_3) 나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

(단위: %, 명)

구 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동의한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합계
프랑스	6.6	15.8	32.8	29.2	15.6	(2,500) 100.0
한국	2.3	10.8	24.9	39.5	22.5	(2,500) 100.0
성별 ( $\chi^2=15.717^{**}$ )						
남성	7.2	17.4	33.0	29.4	13.1	(1,240) 100.0
여성	6.0	14.1	32.6	29.1	18.1	(1,260) 100.0
연령 ( $\chi^2=16.494$ )						
20~24세	5.4	18.0	33.9	29.2	13.5	(445) 100.0
25~29세	6.9	17.4	29.6	30.2	15.9	(334) 100.0
30~34세	8.3	13.8	32.2	28.1	17.7	(385) 100.0
35~39세	5.9	15.8	33.6	28.6	16.1	(461) 100.0
40~44세	6.1	14.2	30.5	32.9	16.3	(423) 100.0
45~49세	7.3	15.5	35.8	26.8	14.6	(452) 100.0
지역 ( $\chi^2=35.910^{***}$ )						
대도시	6.0	14.1	31.3	33.0	15.6	(796) 100.0

구 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동의한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합계	
대도시의 외곽	6.7	15.8	26.1	35.3	16.1	(448)	100.0
중소도시	6.3	17.9	37.0	24.1	14.6	(725)	100.0
농어촌	7.7	15.3	35.0	25.4	16.6	(531)	100.0
교육 ( $\chi^2=26.824^*$ )							
(2~7)	7.2	14.6	36.7	23.5	18.0	(567)	100.0
(8~13)	6.7	15.7	34.9	28.6	14.2	(720)	100.0
(14~17)	7.1	17.2	31.7	29.9	14.1	(505)	100.0
(18~25)	5.6	15.7	28.4	34.0	16.2	(708)	100.0
혼인상태 ( $\chi^2=14.573$ )							
미혼	6.6	16.5	34.8	28.5	13.6	(771)	100.0
동거/사실혼	6.8	14.7	33.8	30.5	14.2	(823)	100.0
법률혼	6.3	15.8	30.5	29.5	18.0	(729)	100.0
이혼/별거/사별	6.8	17.5	29.4	25.4	20.9	(177)	100.0
자녀 여부 ( $\chi^2=11.098$ )							
자녀 있음	7.0	15.3	30.2	31.2	16.2	(1,305)	100.0
자녀 없음	6.1	16.2	35.6	27.1	14.9	(1,195)	100.0
취업 여부 ( $\chi^2=7.076$ )							
취업	6.6	16.5	31.8	29.4	15.6	(2,035)	100.0
비취업	6.5	12.5	37.0	28.6	15.5	(465)	100.0
가구소득 ( $\chi^2=12.693$ )							
1500유로 미만	6.5	14.8	35.9	25.6	17.2	(493)	100.0
1500~2500유로 미만	5.7	14.4	32.7	30.8	16.5	(689)	100.0
2500~3500유로 미만	7.0	15.8	31.3	30.1	15.8	(569)	100.0
3500유로 이상	7.2	17.6	32.0	29.6	13.5	(749)	100.0
가구 유형 ( $\chi^2=29.791$ )							
무자녀 미혼	6.4	16.7	35.2	28.0	13.8	(676)	100.0
유자녀 미혼	8.4	14.7	31.6	32.6	12.6	(95)	100.0
무자녀 기혼 <sup>1)</sup>	5.8	15.6	36.2	26.0	16.4	(519)	100.0
유자녀 기혼(1자녀)	5.2	16.7	34.2	30.5	13.4	(515)	100.0
유자녀 기혼(2자녀 이상)	8.2	14.4	27.1	31.5	18.8	(695)	100.0

주: \* p<0.05, \*\* p<0.01, \*\*\* p<0.001

1) 미혼 이외의 모든 변수(법률혼 /사실혼(동거)/사별/이혼/별거)를 포함함.

2)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chi^2$ 값을 제시하지 않음.

3) 각 항목의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출처: “결혼, 출산, 육아에 관한 인식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원자료 분석.

자녀를 갖게 된다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는 ‘일할 기회 축소’에 대한 동의(동의한다+매우 동의한다) 정도는 다음과 같다. 자녀로 인해 ‘일할 기회가 축소된다’는 의견에 대해 응답자의 44.8%가 동의하였는데,

이는 한국(62.0%)과 비교하여 17.2%p 낮은 수준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세부 집단별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성(47.2%)이 남성(42.5%)보다 자녀로 인해 일할 기회가 제한된다는 것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도시의 외곽인 경우 51.4%, 대도시 48.6%, 농어촌 42.0%, 중소도시 38.7% 순으로 자녀로 인해 일할 기회가 축소된다는 것에 동의했다. 자녀 여부별로는 유자녀 가구(47.4%)가 무자녀 가구(42.0%)보다 일할 기회가 축소된다는 데 동의하였다. 가구 유형별로는 유자녀 기혼(2자녀 이상)의 50.3%, 유자녀 미혼의 45.2%, 유자녀 기혼(1자녀)의 43.9%, 무자녀 기혼과 무자녀 미혼의 41.8~42.4%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0〉 자녀 출산 시 삶의 영향력 4) 배우자(파트너 포함)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

(단위: %, 명)

구 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동의한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합계
프랑스	9.8	18.7	31.0	27.0	13.4	(2,500) 100.0
한국	4.8	15.8	28.0	37.1	14.3	(2,500) 100.0
성별 ( $\chi^2=115.489^{***}$ )						
남성	6.0	14.0	30.8	34.0	15.2	(1,240) 100.0
여성	13.6	23.3	31.3	20.2	11.6	(1,260) 100.0
연령 ( $\chi^2=25.565$ )						
20~24세	7.2	18.9	31.9	29.7	12.4	(445) 100.0
25~29세	8.7	19.5	30.5	25.7	15.6	(334) 100.0
30~34세	10.6	19.0	29.9	27.3	13.2	(385) 100.0
35~39세	11.1	18.2	31.0	25.6	14.1	(461) 100.0
40~44세	10.2	17.7	26.0	30.7	15.4	(423) 100.0
45~49세	10.8	19.2	36.3	23.2	10.4	(452) 100.0
지역 ( $\chi^2=39.507^{***}$ )						
대도시	8.4	14.7	31.4	30.5	14.9	(796) 100.0
대도시의 외곽	9.2	18.3	27.5	31.9	13.2	(448) 100.0
중소도시	10.3	21.1	33.1	24.4	11.0	(725) 100.0
농어촌	11.7	21.8	30.7	21.3	14.5	(531) 100.0

구 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동의한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합계
교육 ( $\chi^2=25.687$ )						
(2~7)	11.8	15.0	34.4	23.8	15.0	(567) 100.0
(8~13)	10.0	18.9	31.3	26.4	13.5	(720) 100.0
(14~17)	10.7	21.6	29.9	26.1	11.7	(505) 100.0
(18~25)	7.3	19.5	29.0	30.9	13.3	(708) 100.0
혼인상태 ( $\chi^2=35.091^{***}$ )						
미혼	8.2	16.5	38.3	25.6	11.5	(771) 100.0
동거/사실혼	9.6	21.4	28.1	27.7	13.2	(823) 100.0
법률혼	11.5	17.6	27.3	28.1	15.5	(729) 100.0
이혼/별거/사별	10.7	20.9	28.8	26.0	13.6	(177) 100.0
자녀 여부 ( $\chi^2=25.745^{***}$ )						
자녀 있음	11.8	19.8	27.3	27.4	13.7	(1,305) 100.0
자녀 없음	7.6	17.5	35.1	26.7	13.1	(1,195) 100.0
취업 여부 ( $\chi^2=5.704$ )						
취업	9.5	18.4	30.5	27.6	13.9	(2,035) 100.0
비취업	11.0	20.0	33.3	24.5	11.2	(465) 100.0
가구소득 ( $\chi^2=14.793$ )						
1500유로 미만	9.3	18.5	33.9	25.8	12.6	(493) 100.0
1500~2500유로 미만	8.4	16.4	32.2	27.7	15.2	(689) 100.0
2500~3500유로 미만	9.8	18.3	30.2	28.1	13.5	(569) 100.0
3500유로 이상	11.3	21.4	28.7	26.4	12.1	(749) 100.0
가구 유형 ( $\chi^2=48.699^{***}$ )						
무자녀 미혼	7.8	15.7	38.3	26.0	12.1	(676) 100.0
유자녀 미혼	10.5	22.1	37.9	22.1	7.4	(95) 100.0
무자녀 기혼 <sup>1)</sup>	7.3	19.8	31.0	27.6	14.3	(519) 100.0
유자녀 기혼(1자녀)	10.3	18.8	29.3	28.2	13.4	(515) 100.0
유자녀 기혼(2자녀 이상)	13.1	20.3	24.3	27.5	14.8	(695) 100.0

주: \* p<0.05, \*\* p<0.01, \*\*\* p<0.001

1) 미혼 이외의 모든 변수(법률혼/사실혼(동거)/사별/이혼/별거)를 포함함.

2)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chi^2$ 값을 제시하지 않음.

3) 각 항목의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출처: “결혼, 출산, 육아에 관한 인식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원자료 분석.

‘자녀를 갖게 된다면 배우자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는 견해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자녀를 갖게 된다면 배우자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는 의견에 전체 응답자의 40.4% 동의(동의한다+매우 동의한다)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국보다 11.0%p 낮은 수준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세부 집단별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

성(49.2%)이 여성(31.8%)보다 자녀로 인해 배우자의 일할 기회가 제한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도시와 대도시 외곽 거주자의 45.1~45.4%, 농어촌과 중소도시 거주자의 35.4~35.8%가 자녀를 갖게 되면 배우자의 일할 기회가 줄어든다는 의견에 동의하였다. 또한, 대체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혼인상태별로 살펴보면, 법률혼은 43.6%, 동거/사실혼은 40.9%, 이혼/별거/사별은 39.6% 미혼은 37.1%가 동의하여 차이를 보였다. 자녀 여부별로는 유자녀 가구(41.1%)가 무자녀 가구(39.8%)보다 배우자의 일할 기회가 축소된다는 데 동의하였다. 가구 유형별로는 유자녀 기혼(2자녀 이상)의 42.3%, 무자녀 기혼과 유자녀 기혼(1자녀)의 41.6~41.9%, 무자녀 미혼의 38.1%, 유자녀 미혼의 29.5%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1〉 자녀 출산 시 삶의 영향력\_5) 노년기에 받을 수 있는 보살핌과 안정감이 커진다

(단위: %, 명)

구 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동의한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합계	
프랑스	4.0	10.5	38.9	32.0	14.6	(2,500)	100.0
한국	7.6	20.8	36.8	26.8	8.0	(2,500)	100.0
성별 ( $\chi^2=12.692$ )							
남성	3.5	9.2	37.4	34.8	15.1	(1,240)	100.0
여성	4.4	11.8	40.3	29.3	14.2	(1,260)	100.0
연령 ( $\chi^2=44.107$ )							
20~24세	3.1	9.9	32.8	35.3	18.9	(445)	100.0
25~29세	4.5	9.9	34.4	34.7	16.5	(334)	100.0
30~34세	5.2	10.6	36.1	31.2	16.9	(385)	100.0
35~39세	3.9	11.3	43.2	31.9	9.8	(461)	100.0
40~44세	2.4	12.3	39.5	31.7	14.2	(423)	100.0
45~49세	4.9	9.1	45.6	27.9	12.6	(452)	100.0
지역 ( $\chi^2=29.997$ )							
대도시	3.1	9.5	35.4	36.2	15.7	(796)	100.0
대도시의 외곽	5.1	8.3	37.1	35.7	13.8	(448)	100.0
중소도시	4.4	11.7	41.2	29.4	13.2	(725)	100.0

구 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동의한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합계	
농어촌 교육 ( $\chi^2=39.250^{***}$ )	3.6	12.2	42.4	26.2	15.6	(531)	100.0
(2~7)	5.8	8.5	38.6	27.3	19.8	(567)	100.0
(8~13)	4.0	10.0	39.9	30.8	15.3	(720)	100.0
(14~17)	3.8	12.7	39.2	32.7	11.7	(505)	100.0
(18~25)	2.5	11.2	37.9	36.4	12.0	(708)	100.0
혼인상태 ( $\chi^2=17.293$ )							
미혼	4.4	10.2	41.5	30.0	13.9	(771)	100.0
동거/사실혼	2.8	10.9	37.9	35.1	13.2	(823)	100.0
법률혼	4.3	9.9	37.4	31.3	17.1	(729)	100.0
이혼/별거/사별	6.2	12.4	37.9	29.4	14.1	(177)	100.0
자녀 여부 ( $\chi^2=4.527$ )							
자녀 있음	3.3	10.2	38.6	32.6	15.3	(1,305)	100.0
자녀 없음	4.7	10.9	39.2	31.4	13.9	(1,195)	100.0
취업 여부 ( $\chi^2=13.750^{**}$ )							
취업	3.5	10.7	37.7	33.1	14.9	(2,035)	100.0
비취업	5.8	9.9	43.9	27.1	13.3	(465)	100.0
가구소득 ( $\chi^2=13.690$ )							
1500유로 미만	6.1	9.5	41.8	28.6	14.0	(493)	100.0
1500~2500유로 미만	3.6	9.6	38.9	32.7	15.2	(689)	100.0
2500~3500유로 미만	3.2	11.4	37.8	33.7	13.9	(569)	100.0
3500유로 이상	3.5	11.3	37.8	32.3	15.1	(749)	100.0
가구 유형 ( $\chi^2=12.776$ )							
무자녀 미혼	4.4	10.5	41.1	29.4	14.5	(676)	100.0
유자녀 미혼	4.2	8.4	44.2	33.7	9.5	(95)	100.0
무자녀 기혼 <sup>1)</sup>	5.0	11.4	36.6	33.9	13.1	(519)	100.0
유자녀 기혼(1자녀)	3.3	10.1	38.1	32.2	16.3	(515)	100.0
유자녀 기혼(2자녀 이상)	3.2	10.5	38.3	32.7	15.4	(695)	100.0

주: \* p<0.05, \*\* p<0.01, \*\*\* p<0.001

1) 미혼 이외의 모든 변수(법률혼/사실혼(동거)/사별/이혼/별거)를 포함함.

2)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chi^2$ 값을 제시하지 않음.

3) 각 항목의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출처: “결혼, 출산, 육아에 관한 인식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원자료 분석.

‘자녀를 갖게 된다면 노년기에 받을 수 있는 보살핌과 안정감이 커진 다’는 견해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46.6%가 동의(동의한다+매우 동의한다)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국(34.8%)보다 11.8%p 높은 수준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세부 집단별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

성(49.9%)이 여성(43.5%)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높았고, 연령이 낮을수록 자녀로 인해 동의하는 비율이 높았다. 20대는 51.2~54.2%, 30대는 41.7~48.1%, 40대는 40.5~45.9%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도시와 대도시의 외곽인 경우 49.5~51.9%, 농어촌과 중소도시인 경우 41.8~42.6%가 동의하였다. 취업자(48.0%)가 비취업자(40.4%)보다 ‘자녀를 갖게 된다면 노년기에 받을 수 있는 보살핌과 안정감이 커진다’는 견해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이 높았다.

〈표 5-22〉 자녀 출산 시 삶의 영향력\_6) 배우자(파트너 포함)와의 친밀감이 높아진다

(단위: %, 명)

구 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동의한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합계	
프랑스	9.0	20.2	33.4	23.6	13.7	(2,500)	100.0
한국	3.1	8.7	35.5	39.8	12.9	(2,500)	100.0
성별 ( $\chi^2=31.772^{***}$ )							
남성	7.3	18.1	32.2	27.1	15.3	(1,240)	100.0
여성	10.7	22.3	34.6	20.2	12.1	(1,260)	100.0
연령 ( $\chi^2=45.710^{***}$ )							
20~24세	4.7	18.0	34.8	24.9	17.5	(445)	100.0
25~29세	7.8	17.4	32.3	26.3	16.2	(334)	100.0
30~34세	10.4	17.4	32.7	23.6	15.8	(385)	100.0
35~39세	10.0	24.7	32.3	22.6	10.4	(461)	100.0
40~44세	8.7	21.3	33.1	22.7	14.2	(423)	100.0
45~49세	12.2	21.5	34.7	22.3	9.3	(452)	100.0
지역 ( $\chi^2=57.755^{***}$ )							
대도시	6.7	16.8	30.7	28.0	17.8	(796)	100.0
대도시의 외곽	11.4	18.8	32.1	27.7	10.0	(448)	100.0
중소도시	9.2	23.4	34.6	20.1	12.6	(725)	100.0
농어촌	10.2	22.2	36.9	18.5	12.2	(531)	100.0
교육 ( $\chi^2=55.409^{***}$ )							
(2~7)	7.9	14.3	34.0	23.6	20.1	(567)	100.0
(8~13)	9.0	19.2	35.0	23.3	13.5	(720)	100.0
(14~17)	8.9	25.9	35.2	22.0	7.9	(505)	100.0
(18~25)	9.9	22.0	29.9	25.1	13.0	(708)	100.0
혼인상태 ( $\chi^2=17.665$ )							
미혼	8.8	17.9	37.2	22.8	13.2	(771)	100.0
동거/사실혼	8.7	22.8	32.6	22.6	13.2	(823)	100.0

구 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동의한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합계
법률혼	8.5	19.5	31.1	25.7	15.2	(729) 100.0
이혼/별거/사별	13.0	21.5	29.9	23.7	11.9	(177) 100.0
자녀 여부 ( $\chi^2=2.816$ )						
자녀 있음	8.5	20.5	32.4	24.6	13.9	(1,305) 100.0
자녀 없음	9.5	19.9	34.5	22.6	13.5	(1,195) 100.0
취업 여부 ( $\chi^2=6.406$ )						
취업	8.7	20.7	32.5	24.2	13.9	(2,035) 100.0
비취업	10.3	18.1	37.2	21.3	13.1	(465) 100.0
가구소득 ( $\chi^2=15.476$ )						
1500유로 미만	9.9	17.2	33.9	21.9	17.0	(493) 100.0
1500~2500유로 미만	8.7	18.7	35.7	23.8	13.1	(689) 100.0
2500~3500유로 미만	9.8	21.3	31.6	24.8	12.5	(569) 100.0
3500유로 이상	8.0	22.8	32.3	23.8	13.1	(749) 100.0
가구 유형 ( $\chi^2=29.320$ )						
무자녀 미혼	8.7	18.3	36.7	21.9	14.3	(676) 100.0
유자녀 미혼	9.5	14.7	41.1	29.5	5.3	(95) 100.0
무자녀 기혼 <sup>1)</sup>	10.6	22.0	31.6	23.5	12.3	(519) 100.0
유자녀 기혼(1자녀)	6.2	19.0	34.4	25.6	14.8	(515) 100.0
유자녀 기혼(2자녀 이상)	10.1	22.4	29.8	23.2	14.5	(695) 100.0

주: \* p<0.05, \*\* p<0.01, \*\*\* p<0.001

1) 미혼 이외의 모든 변수(법률혼/사실혼(동거)/사별/이혼/별거)를 포함함.

2)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chi^2$ 값을 제시하지 않음.

3) 각 항목의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출처: “결혼, 출산, 육아에 관한 인식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원자료 분석.

‘자녀를 갖게 된다면 배우자와의 친밀감이 높아진다’는 견해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37.3%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한국은 52.7%가 동의(동의한다+매우 동의한다)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국보다 15.4%p 낮은 수준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세부 집단별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성(42.4%)이 여성(32.3%)보다, 연령이 낮을수록 자녀로 인해 배우자 친밀감이 높아질 것이라는 데 동의하였다. 20대는 42.4~42.5%, 30대는 33.0~39.4%, 40대 31.6~36.9% 순이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도시 거주자의 45.8%, 대도시 외곽 거주자의 37.7%, 중소도시 거주자의 32.7%, 농어촌 거주자의 30.7%가 동의하여 차이를 보였다. 가구 유형별로는 유자녀 기혼(1자녀)

자의 동의 비율이 40.4%로 가장 높았고, 유자녀 기혼(2자녀 이상)(37.7%), 무자녀 미혼(36.2%), 무자녀 기혼(35.8%), 유자녀 미혼(34.8%) 순으로 ‘자녀를 갖게 된다면 배우자와의 친밀감이 높아진다’는 견해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3〉 자녀 출산 시 삶의 영향력\_7) 경제적 부담이 늘어난다

(단위: %, 명)

구 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동의한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합계	
프랑스	2.5	4.3	17.7	39.9	35.6	(2,500)	100.0
한국	0.3	0.6	6.4	32.8	59.9	(2,500)	100.0
성별 ( $\chi^2=8.602$ )							
남성	2.4	5.0	18.7	40.6	33.3	(1,240)	100.0
여성	2.6	3.6	16.7	39.2	37.9	(1,260)	100.0
연령 ( $\chi^2=45.347^{**}$ )							
20~24세	2.9	7.4	20.7	38.2	30.8	(445)	100.0
25~29세	3.9	5.7	14.4	38.0	38.0	(334)	100.0
30~34세	2.9	5.2	17.4	36.9	37.7	(385)	100.0
35~39세	2.4	3.5	18.0	44.0	32.1	(461)	100.0
40~44세	1.2	3.1	17.0	40.0	38.8	(423)	100.0
45~49세	2.2	1.3	17.7	41.2	37.6	(452)	100.0
지역 ( $\chi^2=8.761$ )							
대도시	2.4	5.4	18.2	39.3	34.7	(796)	100.0
대도시의 외곽	2.2	4.2	15.0	42.4	36.2	(448)	100.0
중소도시	3.0	3.9	18.2	38.9	36.0	(725)	100.0
농어촌	2.3	3.2	18.5	39.9	36.2	(531)	100.0
교육 ( $\chi^2=83.165^{***}$ )							
(2~7)	3.9	6.0	25.0	34.7	30.3	(567)	100.0
(8~13)	3.2	4.6	20.4	38.2	33.6	(720)	100.0
(14~17)	1.8	4.8	13.5	45.0	35.0	(505)	100.0
(18~25)	1.3	2.3	12.0	42.1	42.4	(708)	100.0
혼인상태 ( $\chi^2=27.710^*$ )							
미혼	2.1	4.0	19.8	37.4	36.7	(771)	100.0
동거/사실혼	2.6	5.3	18.1	39.4	34.6	(823)	100.0
법률혼	2.5	2.6	15.4	44.7	34.8	(729)	100.0
이혼/별거/사별	4.5	7.3	15.8	33.3	39.0	(177)	100.0
자녀 여부 ( $\chi^2=22.064^{**}$ )							
자녀 있음	2.8	3.5	15.7	43.7	34.3	(1,305)	100.0
자녀 없음	2.2	5.1	19.8	35.7	37.2	(1,195)	100.0

구 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동의한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합계
취업 여부 ( $\chi^2=19.296^*$ )						
취업	2.2	4.5	16.5	40.3	36.6	(2,035) 100.0
비취업	4.1	3.2	23.0	38.1	31.6	(465) 100.0
가구소득 ( $\chi^2=33.900^*$ )						
1500유로 미만	4.3	4.3	21.9	33.9	35.7	(493) 100.0
1500~2500유로 미만	1.7	3.8	19.2	37.6	37.7	(689) 100.0
2500~3500유로 미만	1.6	4.6	13.7	45.7	34.4	(569) 100.0
3500유로 이상	2.8	4.5	16.6	41.5	34.6	(749) 100.0
가구 유형 ( $\chi^2=35.665^*$ )						
무자녀 미혼	2.1	4.4	20.4	35.5	37.6	(676) 100.0
유자녀 미혼	2.1	1.1	15.8	50.5	30.5	(95) 100.0
무자녀 기혼 <sup>1)</sup>	2.3	6.0	19.1	36.0	36.6	(519) 100.0
유자녀 기혼(1자녀)	2.7	4.7	18.1	43.7	30.9	(515) 100.0
유자녀 기혼(2자녀 이상)	3.0	3.0	14.0	42.7	37.3	(695) 100.0

주: \* p<0.05, \*\* p<0.01, \*\*\* p<0.001

- 1) 미혼 이외의 모든 변수(법률혼/사실혼(동거)/사별/이혼/별거)를 포함함.
- 2)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chi^2$ 값을 제시하지 않음.
- 3) 각 항목의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출처: “결혼, 출산, 육아에 관한 인식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원자료 분석.

자녀를 갖게 된다면 경제적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견해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75.5%가 동의(동의한다+매우 동의한다)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국보다 17.2%p 낮은 수준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세부 집단별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높아질 것이라는 데 동의하였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혼인상태별로는 법률혼이 79.5%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이 미혼과 동거/사실혼이 74.0~74.1%, 이혼/별거/사별이 72.3% 순으로 동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는 2,500~3,500유로 가구의 80.1%가 동의하였고, 그다음으로 3,500유로 이상 가구(76.1%), 1,500~2,500유로 가구(75.3%), 1,500유로 미만(69.6%)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 유형별로는 유자녀 미혼 가구의 81%가 동의하였고, 이어 유자녀 기혼(2자녀 이

상)(80.0%), 유자녀 기혼(1자녀)(74.6%), 무자녀 미혼(73.1%), 무자녀 기혼(72.6%) 순으로 동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제3절 성역할 및 가사·육아 분담에 관한 인식

### 1. 성역할

성역할에 관한 인식으로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일하면서 돈을 버는 일’, ‘음식 준비, 청소, 빨래 등 일상적 가사일’, ‘어린 자녀를 돌보는 일’과 관련된 역할을 남성과 여성 중 누가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일하면서 돈을 버는 일’에 대해 남성의 일(확실히 남성+대체로 남성)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4.3%로 한국(29.3%)과 비교하여 15.5%p 낮게 응답하여 차이를 보인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세부 집단별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5-24〉 남성과 여성 역할 수행에 대한 인식\_1)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일하면서 돈을 버는 일

(단위: %, 명)

구 분	확실히 남성	대체로 남성	남성과 여성 모두	대체로 여성	확실히 여성	합계
프랑스	6.4	7.9	69.2	9.6	6.9	(2,500) 100.0
한국	6.4	23.4	67.6	1.8	0.8	(2,500) 100.0
성별 ( $\chi^2=38.498^{***}$ )						
남성	7.9	9.1	63.5	11.0	8.4	(1,240) 100.0
여성	4.8	6.7	74.8	8.2	5.5	(1,260) 100.0
연령 ( $\chi^2=91.016^{***}$ )						
20~24세	11.9	11.0	56.6	10.6	9.9	(445) 100.0
25~29세	9.0	7.2	63.5	9.6	10.8	(334) 100.0
30~34세	4.9	8.3	68.3	10.6	7.8	(385) 100.0
35~39세	4.8	6.5	75.5	7.8	5.4	(461) 100.0

구 분	확실히 남성	대체로 남성	남성과 여성 모두	대체로 여성	확실히 여성	합계	
40~44세	4.3	7.3	72.3	10.6	5.4	(423)	100.0
45~49세	3.8	6.9	77.4	8.6	3.3	(452)	100.0
지역 ( $\chi^2=48.519^{***}$ )							
대도시	8.9	7.3	63.9	10.8	9.0	(796)	100.0
대도시의 외곽	7.1	10.7	65.0	11.4	5.8	(448)	100.0
중소도시	5.8	7.4	73.1	7.7	5.9	(725)	100.0
농어촌	2.6	7.0	75.5	8.9	6.0	(531)	100.0
교육 ( $\chi^2=55.871^{***}$ )							
(2~7)	10.1	9.3	58.4	12.2	10.1	(567)	100.0
(8~13)	6.7	8.5	70.7	7.9	6.3	(720)	100.0
(14~17)	5.1	6.3	75.2	8.5	4.8	(505)	100.0
(18~25)	4.0	7.2	72.2	10.0	6.6	(708)	100.0
혼인상태 ( $\chi^2=18.929$ )							
미혼	7.0	7.7	72.4	7.3	5.7	(771)	100.0
동거/사실혼	6.2	7.9	69.4	10.2	6.3	(823)	100.0
법률혼	5.3	7.8	67.1	11.5	8.2	(729)	100.0
이혼/별거/사별	8.5	9.0	63.8	9.0	9.6	(177)	100.0
자녀 여부 ( $\chi^2=10.841$ )							
자녀 있음	5.4	8.2	68.4	11.0	7.0	(1,305)	100.0
자녀 없음	7.4	7.5	70.2	8.0	6.8	(1,195)	100.0
취업 여부 ( $\chi^2=6.582$ )							
취업	6.0	7.7	69.9	9.9	6.5	(2,035)	100.0
비취업	7.7	8.6	66.5	8.4	8.8	(465)	100.0
가구소득 ( $\chi^2=30.054^{**}$ )							
1500유로 미만	8.9	8.5	66.3	6.9	9.3	(493)	100.0
1500~2500유로 미만	6.1	7.7	67.5	10.9	7.8	(689)	100.0
2500~3500유로 미만	6.5	8.3	68.4	12.0	4.9	(569)	100.0
3500유로 이상	4.8	7.3	73.4	8.4	6.0	(749)	100.0
가구 유형 ( $\chi^2=25.053$ )							
무자녀 미혼	7.2	7.5	71.7	7.0	6.5	(676)	100.0
유자녀 미혼	5.3	8.4	76.8	9.5	0.0	(95)	100.0
무자녀 기혼 <sup>1)</sup>	7.7	7.5	68.2	9.4	7.1	(519)	100.0
유자녀 기혼(1자녀)	6.0	8.2	65.4	11.8	8.5	(515)	100.0
유자녀 기혼(2자녀 이상)	4.9	8.2	69.4	10.6	6.9	(695)	100.0

주: \* p<0.05, \*\* p<0.01, \*\*\* p<0.001

- 1) 미혼 이외의 모든 변수(법률혼/사실혼(동거)/사별/이혼/별거)를 포함함.
- 2)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chi^2$ 값을 제시하지 않음.
- 3) 각 항목의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출처: "결혼, 출산, 육아에 관한 인식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원자료 분석.

남성(17.0%)이 여성(11.5%)보다 그리고 연령이 낮을수록 가족의 생계를 위해 돈 버는 일은 남성의 역할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대도시 외곽 거주자의 17.8%, 대도시 거주자의 16.2%, 중소도시 거주자의 13.2%, 농어촌 거주자의 9.6%가 남성의 역할이라고 응답하였다. 즉 농어촌보다 도시에 거주하는 응답자들이 가족의 생계를 위해 돈 버는 일이 남성의 역할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또한, 무자녀 가구(14.9%)가 유자녀 가구(13.6%)보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돈 버는 일이 남성의 일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가구소득별로는 1,500유로 미만 가구(17.4%), 2,500~3,500유로 가구(14.8%), 1,500~2,500유로(13.8%), 3,500유로 이상 가구(12.1%) 순으로 가족의 생계를 위해 돈 버는 일이 남성의 역할이라고 응답하였다. 한편,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에 비해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이 가족의 생계를 위해 돈 버는 일은 남성과 여성 모두의 일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표 5-25〉 남성과 여성 역할 수행에 대한 인식\_2) 음식 준비, 청소, 빨래 등 일상적 가사일  
(단위: %, 명)

구 분	확실히 남성	대체로 남성	남성과 여성 모두	대체로 여성	확실히 여성	합계
프랑스	1.6	3.4	72.4	15.4	7.2	(2,500) 100.0
한국	0.2	0.9	76.1	19.6	3.2	(2,500) 100.0
성별 ( $\chi^2=27.902^{***}$ )						
남성	2.2	4.0	67.9	17.4	8.5	(1,240) 100.0
여성	1.0	2.8	76.9	13.4	6.0	(1,260) 100.0
연령 ( $\chi^2=67.969^{***}$ )						
20~24세	2.5	5.6	66.1	14.2	11.7	(445) 100.0
25~29세	3.3	5.4	66.2	19.5	5.7	(334) 100.0
30~34세	2.1	3.6	69.1	17.4	7.8	(385) 100.0
35~39세	0.2	2.0	76.6	15.4	5.9	(461) 100.0
40~44세	1.2	2.6	76.4	13.5	6.4	(423) 100.0
45~49세	0.7	1.8	78.3	13.7	5.5	(452) 100.0
지역 ( $\chi^2=45.567^{***}$ )						
대도시	2.4	5.4	66.1	17.1	9.0	(796) 100.0
대도시의 외곽	1.6	3.6	70.1	18.1	6.7	(448) 100.0

구 분	확실히 남성	대체로 남성	남성과 여성 모두	대체로 여성	확실히 여성	합계
중소도시	1.4	2.1	77.7	13.4	5.5	(725) 100.0
농어촌	0.6	2.1	76.8	13.4	7.2	(531) 100.0
교육 ( $\chi^2=51.051^{***}$ )						
(2~7)	2.5	5.8	62.6	18.5	10.6	(567) 100.0
(8~13)	1.3	3.5	73.9	14.7	6.7	(720) 100.0
(14~17)	1.6	2.4	78.4	11.5	6.1	(505) 100.0
(18~25)	1.1	2.1	74.6	16.4	5.8	(708) 100.0
혼인상태 ( $\chi^2=24.287$ )						
미혼	1.7	2.3	76.3	14.0	5.7	(771) 100.0
동거/사실혼	1.7	5.0	70.5	15.3	7.5	(823) 100.0
법률혼	1.1	2.5	71.3	16.2	8.9	(729) 100.0
이혼/별거/사별	2.3	4.5	69.5	18.6	5.1	(177) 100.0
자녀 여부 ( $\chi^2=10.365$ )						
자녀 있음	1.2	3.4	70.4	17.1	7.9	(1,305) 100.0
자녀 없음	1.9	3.4	74.6	13.6	6.4	(1,195) 100.0
취업 여부 ( $\chi^2=4.098$ )						
취업	1.6	3.5	73.1	14.8	7.0	(2,035) 100.0
비취업	1.3	3.0	69.7	17.8	8.2	(465) 100.0
가구소득 ( $\chi^2=20.960$ )						
1500유로 미만	2.4	2.6	68.6	16.0	10.3	(493) 100.0
1500~2500유로 미만	0.6	3.2	73.7	15.2	7.3	(689) 100.0
2500~3500유로 미만	1.6	4.4	73.6	14.8	5.6	(569) 100.0
3500유로 이상	1.9	3.3	72.9	15.6	6.3	(749) 100.0
가구 유형 ( $\chi^2=27.420$ )						
무자녀 미혼	1.6	2.4	76.3	13.8	5.9	(676) 100.0
유자녀 미혼	2.1	2.1	75.8	15.8	4.2	(95) 100.0
무자녀 기혼 <sup>1)</sup>	2.3	4.8	72.4	13.3	7.1	(519) 100.0
유자녀 기혼(1자녀)	1.7	4.7	68.0	17.5	8.2	(515) 100.0
유자녀 기혼(2자녀 이상)	0.7	2.6	71.5	17.0	8.2	(695) 100.0

주: \* p<0.05, \*\* p<0.01, \*\*\* p<0.001

1) 미혼 이외의 모든 변수(법률혼 /사실혼(동거)/사별/이혼/별거)를 포함함.

2)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chi^2$ 값을 제시하지 않음.

3) 각 항목의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출처: “결혼, 출산, 육아에 관한 인식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원자료 분석.

‘일상적인 가사일’에 대해 여성의 역할(대체로 여성+확실히 여성)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2.6%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국(22.8%)과 비슷한 수준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세부 집단별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성(25.9%)이 여성(19.4%)보다, 연령이 낮을수록 일상적인 가사일은

여성의 역할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20대 25.2~25.9%, 30대 21.3~25.2%, 40대 19.2~19.9%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도시 거주자의 26.1%, 대도시 외곽 거주자의 24.8%, 농어촌 거주자의 20.6%, 중소도시 거주자의 18.9%가 일상적인 가사일은 여성의 역할이라고 응답하였다. 혼인상태별로 살펴보면, 법률혼인 경우(25.1%), 이혼/별거/사별인 경우(23.7%), 동거/사실혼인 경우(22.8%), 미혼인 경우(19.7%) 순으로 일상적인 가사일은 여성의 역할이라고 응답하였다. 자녀 여부별로 살펴보면, 유자녀 가구(25.0%)가 무자녀 가구(20.0%)보다 가사는 여성의 일이라고 응답하였다. 가구 유형별로는 유자녀 기혼(1자녀)(25.7%), 유자녀 기혼(2자녀 이상)(25.2%), 무자녀 기혼(20.4%), 유자녀 미혼(20.0%), 무자녀 미혼(19.7%) 순으로 일상적인 가사일은 여성의 역할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5-26〉 남성과 여성 역할 수행에 대한 인식\_3) 어린 자녀를 돌보는 일

(단위: %, 명)

구 분	확실히 남성	대체로 남성	남성과 여성 모두	대체로 여성	확실히 여성	합계
프랑스	1.5	2.1	72.0	16.0	8.4	(2,500) 100.0
한국	0.3	1.0	77.4	18.0	3.4	(2,500) 100.0
성별 ( $\chi^2=19.127^{**}$ )						
남성	2.0	2.5	68.2	17.7	9.5	(1,240) 100.0
여성	1.0	1.7	75.7	14.3	7.2	(1,260) 100.0
연령 ( $\chi^2=62.098^{***}$ )						
20~24세	2.7	4.3	64.7	16.9	11.5	(445) 100.0
25~29세	3.0	2.1	67.1	16.5	11.4	(334) 100.0
30~34세	1.3	2.6	69.9	16.1	10.1	(385) 100.0
35~39세	0.9	1.3	77.2	14.8	5.9	(461) 100.0
40~44세	1.2	1.9	74.0	14.9	8.0	(423) 100.0
45~49세	0.4	0.7	77.4	17.0	4.4	(452) 100.0
지역 ( $\chi^2=42.296^{***}$ )						
대도시	2.5	2.9	66.1	17.1	11.4	(796) 100.0
대도시의 외곽	1.6	2.0	69.9	19.9	6.7	(448) 100.0
중소도시	1.1	1.8	77.0	13.4	6.8	(725) 100.0
농어촌	0.6	1.5	75.9	14.7	7.3	(531) 100.0

구 분	확실히 남성	대체로 남성	남성과 여성 모두	대체로 여성	확실히 여성	합계
교육 ( $\chi^2=36.658^{***}$ )						
(2~7)	2.3	3.5	65.1	16.6	12.5	(567) 100.0
(8~13)	1.8	1.7	74.2	15.3	7.1	(720) 100.0
(14~17)	1.6	2.0	75.2	14.3	6.9	(505) 100.0
(18~25)	0.6	1.6	73.0	17.5	7.3	(708) 100.0
혼인상태 ( $\chi^2=28.613^{**}$ )						
미혼	1.8	2.3	75.4	14.5	6.0	(771) 100.0
동거/사실혼	1.5	2.3	69.9	17.4	9.0	(823) 100.0
법률혼	1.1	1.0	71.5	15.9	10.6	(729) 100.0
이혼/별거/사별	2.3	5.1	69.5	16.4	6.8	(177) 100.0
자녀 여부 ( $\chi^2=10.926^*$ )						
자녀 있음	1.1	1.9	70.4	17.7	8.9	(1,305) 100.0
자녀 없음	2.0	2.3	73.7	14.1	7.8	(1,195) 100.0
취업 여부 ( $\chi^2=1.338$ )						
취업	1.5	2.2	71.6	16.3	8.3	(2,035) 100.0
비취업	1.5	1.7	73.5	14.6	8.6	(465) 100.0
가구소득 ( $\chi^2=9.075$ )						
1500유로 미만	2.4	2.0	70.6	15.2	9.7	(493) 100.0
1500~2500유로 미만	1.0	2.2	71.0	16.8	9.0	(689) 100.0
2500~3500유로 미만	1.6	1.6	73.6	15.8	7.4	(569) 100.0
3500유로 이상	1.3	2.5	72.6	15.9	7.6	(749) 100.0
가구 유형 ( $\chi^2=29.001^*$ )						
무자녀 미혼	1.8	2.5	75.3	13.9	6.5	(676) 100.0
유자녀 미혼	2.1	1.1	75.8	18.9	2.1	(95) 100.0
무자녀 기혼 <sup>1)</sup>	2.3	2.1	71.7	14.5	9.4	(519) 100.0
유자녀 기혼(1자녀)	1.6	2.3	70.3	15.3	10.5	(515) 100.0
유자녀 기혼(2자녀 이상)	0.6	1.7	69.8	19.3	8.6	(695) 100.0

주: \* p<0.05, \*\* p<0.01, \*\*\* p<0.001

1) 미혼 이외의 모든 변수(법률혼/사실혼(동거)/사별/이혼/별거)를 포함함.

2)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chi^2$ 값을 제시하지 않음.

3) 각 항목의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출처: “결혼, 출산, 육아에 관한 인식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원자료 분석.

‘어린 자녀를 돌보는 일’에 대해 여성의 역할(대체로 여성+확실히 여성)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4.4%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국(21.4%)과 비교하여 3.0%p 높은 수준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세부 집단별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연령이 낮을수록 자녀양육은 여성의 일이라고 응답하였다. 20~24세(28.4%), 25~29세(27.9%), 30~34세(26.2%),

40~44세(22.9%), 45~49세(21.4%), 35~39세(20.7%) 순으로 자녀양육은 여성의 일이라고 응답하였다. 혼인상태별로 살펴보면, 법률혼과 동거/사실혼 응답자의 약 26%, 이혼/별거/사별 응답자의 23.2%, 미혼 응답자의 20.5%가 자녀양육은 여성의 일이라고 응답하여 차이를 보였다. 자녀여부별로는 유자녀 가구(26.6%)가 무자녀 가구(21.9%)보다 자녀양육은 여성의 역할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가구 유형별로는 유자녀 기혼(2자녀 이상)과 유자녀 기혼(1자녀) 응답자의 25.8~27.9%, 무자녀 기혼 응답자의 23.9%, 유자녀 미혼 응답자의 21.0%, 무자녀 미혼 응답자의 20.4%가 자녀양육은 여성의 일이라고 응답하여 가구 유형에 따라 인식의 차이가 나타났다.

## 2. 가사분담

본인과 배우자·애인·파트너 간의 실제 가사분담 비율에 관해 조사한 결과, 36.7%가 50:50으로 가사분담을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한국(23.7%)보다 13.0%p 높은 수준이다. 50:50으로 가사분담을 한다는 응답은 남성의 44.5%, 여성의 29.4% 수준으로 것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본인이 더 많은 가사분담을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이 26.6%, 여성이 64.5%인 것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적절한 가사분담 비율에 대해 조사한 결과, 본인과 배우자·애인·파트너 간 50:50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7.0%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국(43.4%)과 비슷한 수준이다. 적절한 가사분담과 실제 가사분담과의 차이는 10.3%p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국(19.7%)과 비교해서 거의 절반 수준이다.

본인과 배우자·애인·파트너 간 적절한 가사분담 비율에 대해 50:50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 52.7%, 여성 41.8%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본인이 더 많은 가사분담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남성이 26.2%, 여성이 50.7%인 것으로 비교적 크게 차이가 나타났다.

〈표 5-27〉 기사분담 비율

구 분	본인										합계	
	0% - 배우자 아인. 파트너 100%	10% - 배우자 아인. 파트너 90%	20% - 배우자 아인. 파트너 80%	30% - 배우자 아인. 파트너 70%	40% - 배우자 아인. 파트너 60%	50% - 배우자 아인. 파트너 50%	60% - 배우자 아인. 파트너 40%	70% - 배우자 아인. 파트너 30%	80% - 배우자 아인. 파트너 20%	90% - 배우자 아인. 파트너 10%		100% - 배우자 아인. 파트너 0%
〈실제 기사분담 비율〉												
프랑스	0.7	0.8	1.9	5.0	8.7	36.7	10.3	11.8	12.2	7.3	4.6	(1,552) 100.0
한국	0.2	3.1	6.3	11.4	9.8	23.7	11.3	12.7	11.0	8.0	2.5	(1,430) 100.0
성별 ( $\chi^2=279.287$ )												
남성	0.7	1.1	2.9	9.4	14.8	44.5	7.1	7.1	7.4	2.5	2.5	(748) 100.0
여성	0.7	0.6	1.0	0.9	3.0	29.4	13.3	16.2	16.7	11.7	6.6	(804) 100.0
〈작별한 기사분담 비율〉												
프랑스	0.4	0.9	1.9	4.1	6.8	47.0	11.1	9.4	9.2	5.3	3.9	(1,552) 100.0
한국	0.2	1.3	3.6	8.7	11.1	43.4	15.5	7.6	4.2	3.2	1.1	(1,430) 100.0
성별 ( $\chi^2=126.115$ )												
남성	0.5	0.9	2.5	6.0	11.1	52.7	7.4	6.8	6.1	3.2	2.7	(748) 100.0
여성	0.2	0.9	1.4	2.4	2.7	41.8	14.6	11.8	12.1	7.2	5.0	(804) 100.0

주: \* p<0.05, \*\* p<0.01, \*\*\* p<0.001

- 1) 미혼 이외의 모든 변수(배우자/사실혼/사별/이혼/별거)를 포함함.
- 2)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chi^2$ 값을 제시하지 않음.
- 3) 각 항목의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출처: “결혼, 출산, 육아에 관한 인식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원자료 분석.

(단위: %, 명)

### 3. 육아 분담

본인과 배우자·애인·파트너 간의 실제 육아분담 비율에 관해 조사한 결과, 39.1%가 50:50으로 육아분담을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한국(14.9%)보다 24.2%p 높은 수준이다. 50:50으로 육아분담을 한다는 응답은 남성의 44.9%, 여성의 34.0% 수준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본인이 더 많은 육아분담을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이 28.7%, 여성이 59.4%인 것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적절한 육아분담 비율에 대해 조사한 결과, 본인과 배우자·애인·파트너 간 50:50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8.3%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국(37.4%)보다 10.9%p 높은 수준이다. 적절한 육아분담과 실제 육아분담과의 차이는 9.2%p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국(22.5%)과 비교해서 매우 낮은 수준이다.

본인과 배우자·애인·파트너 간 적절한 육아분담 비율에 대해 50:50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은 52.7%, 여성은 44.3%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본인이 더 많은 육아분담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남성이 23.4%, 여성이 50.0%인 것으로 비교적 크게 차이가 나타났다.

〈표 5-28〉 육아분담 비율

구분	본인										합계	
	0% - 100%	0% - 90%	10% - 80%	20% - 70%	30% - 60%	40% - 50%	50% - 40%	60% - 30%	70% - 20%	80% - 10%	90% - 0%	본인 100% - 배우자 0%
〈실제 육아분담 비율〉												
프랑스	0.6	0.3	1.7	4.6	8.7	39.1	10.9	11.0	10.6	7.5	4.9	(864) 100.0
한국	0.3	5.2	9.5	15.2	9.9	14.9	10.4	10.7	10.9	9.9	3.1	(676) 100.0
성별 ( $\chi^2=279.287^*$ )												
남성	0.5	0.7	2.7	7.6	15.0	44.9	8.6	7.8	7.4	2.2	2.7	(408) 100.0
여성	0.7	0.0	0.9	2.0	3.1	34.0	12.9	13.8	13.6	12.3	6.8	(456) 100.0
〈적절한 육아분담 비율〉												
프랑스	0.3	0.6	1.3	4.2	8.0	48.3	10.6	9.3	8.4	5.3	3.7	(864) 100.0
한국	0.1	1.5	3.7	11.7	16.1	37.4	13.9	8.6	3.4	2.5	1.0	(676) 100.0
성별 ( $\chi^2=126.115^*$ )												
남성	0.5	0.7	2.2	7.1	13.5	52.7	6.9	7.4	5.1	1.5	2.5	(408) 100.0
여성	0.2	0.4	0.4	1.5	3.1	44.3	14.0	11.0	11.4	8.8	4.8	(456) 100.0

주: \* p<0.05, \*\* p<0.01, \*\*\* p<0.001

- 1) 미혼 이외의 모든 변수(벌살혼/사실혼(동거)/사별/이혼/별거)를 포함함.
- 2)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chi^2$ 값을 제시하지 않음.
- 3) 각 항목의 수치(비율)은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출처: “결혼, 출산, 육아에 관한 인식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원자료 분석.

#### 4. 일과 가사 및 육아 병행의 어려움

일과 가사 및 육아 병행(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의 정도를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47.3%가 어렵다(어려운 편이다+매우 어렵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57.6%)과 비교해서 10.3%p 낮은 수준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세부 집단별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성(55.0%)이 남성(39.1%)보다 일·가정 양립이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35~39세(55.0%), 40~44세(51.8%), 45~49세(49.8%), 30~34세(49.0%), 25~29세(38.6%), 20~24세(29.9%) 순으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크다고 응답하였다. 지역별로는 대도시 외곽이 50.3%, 중소도시 49.2%, 농어촌이 48.1%, 대도시는 43.4% 순으로 나타나, 비교적 대도시에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상대적으로 작게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녀 여부별로는 유자녀 가구(49.8%)가 무자녀 가구(41.5%)보다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더 크다고 응답하였다. 취업 여부별로는 취업한 경우(48.1%)가 취업하지 않은 경우(42.2%)보다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더 느끼고 있었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느끼는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가구 유형별로는 유자녀 기혼(2자녀 이상)(51.7%), 유자녀 기혼(1자녀)(47.3%), 무자녀 기혼(41.5%) 순으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9〉 일과 가사 및 육아 병행 시 어려움 정도

(단위: %, 명)

구 분	전혀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어려운 편이다	매우 어렵다	합계
프랑스	5.2	18.9	28.5	38.9	8.4	(1,552) 100.0
한국	2.5	12.3	27.6	43.5	14.1	(1,430) 100.0
성별 ( $\chi^2=41.527^{***}$ )						
남성	6.6	22.2	32.1	33.0	6.1	(748) 100.0

구 분	전혀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어려운 편이다	매우 어렵다	합계	
여성	4.0	15.8	25.2	44.4	10.6	(804)	100.0
연령 ( $\chi^2=58.498^{***}$ )							
20~24세	10.3	21.2	38.6	26.1	3.8	(184)	100.0
25~29세	4.5	22.8	34.2	31.2	7.4	(202)	100.0
30~34세	7.2	19.1	24.7	38.6	10.4	(251)	100.0
35~39세	3.8	15.9	25.3	44.7	10.3	(340)	100.0
40~44세	4.6	20.6	23.0	42.9	8.9	(282)	100.0
45~49세	3.1	16.4	30.7	42.0	7.8	(293)	100.0
지역 ( $\chi^2=26.082$ )							
대도시	8.1	20.7	27.8	34.2	9.2	(479)	100.0
대도시의 외곽	3.4	22.2	24.1	43.2	7.1	(266)	100.0
중소도시	4.0	15.1	31.6	41.0	8.2	(449)	100.0
농어촌	4.2	18.7	29.1	39.4	8.7	(358)	100.0
교육 ( $\chi^2=75.566^{***}$ )							
(2~7)	10.7	17.7	36.9	24.6	10.1	(317)	100.0
(8~13)	4.8	19.3	30.3	39.0	6.6	(456)	100.0
(14~17)	3.2	15.8	30.2	42.8	8.0	(311)	100.0
(18~25)	3.2	21.4	20.1	45.9	9.4	(468)	100.0
혼인상태 ( $\chi^2=4.531$ )							
동거/사실혼	5.5	17.3	29.9	39.5	7.9	(823)	100.0
법률혼	4.9	20.7	27.0	38.3	9.1	(729)	100.0
자녀 여부 ( $\chi^2=17.105^{**}$ )							
자녀 있음	4.4	19.5	26.3	41.2	8.6	(1,089)	100.0
자녀 없음	7.1	17.5	33.9	33.5	8.0	(463)	100.0
취업 여부 ( $\chi^2=33.055^{***}$ )							
취업	5.2	19.8	26.9	40.6	7.5	(1,349)	100.0
비취업	5.4	12.8	39.4	27.6	14.8	(203)	100.0
가구소득 ( $\chi^2=51.599^{***}$ )							
1500유로 미만	11.2	10.7	36.7	28.4	13.0	(169)	100.0
1500~2500유로 미만	6.5	19.0	30.4	35.0	9.2	(306)	100.0
2500~3500유로 미만	4.3	16.9	29.5	40.0	9.2	(437)	100.0
3500유로 이상	3.6	22.3	24.8	42.8	6.4	(640)	100.0
가구 유형 ( $\chi^2=21.110^{**}$ )							
무자녀 기혼 <sup>1)</sup>	7.1	17.5	33.9	33.5	8.0	(463)	100.0
유자녀 기혼(1자녀)	5.3	21.1	26.2	38.6	8.7	(469)	100.0
유자녀 기혼(2자녀 이상)	3.7	18.2	26.3	43.2	8.5	(620)	100.0

주: \* p<0.05, \*\* p<0.01, \*\*\* p<0.001

1) 미혼 이외의 모든 변수(법률혼/사실혼(동거)/사별/이혼/별거)를 포함함.

2)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chi^2$ 값을 제시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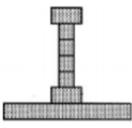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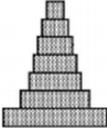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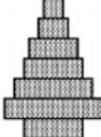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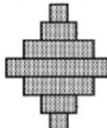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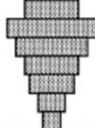
3) 각 항목의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출처: "결혼, 출산, 육아에 관한 인식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원자료 분석.

## 제4절 사회에 관한 인식

### 1. 사회 구조

프랑스 사회 구조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아래 그림과 같은 다양한 사회 구조의 유형 중 프랑스를 가장 잘 묘사하는 유형에 대한 응답으로 유형 B가 36.5%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A형 22.1%, 유형 C형 16.7%, 모르겠음 12.2%, D형 9.5%, E형 3.0% 순이었다. 한국은 B형(22.1%), E형(21.7%), C형(20.8%)이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A형(18.4%), D형(12.1%), 모르겠음(4.8%)이 뒤를 이어 국가 간에 비교적 큰 인식 차이가 나타났다.

유형A	유형B	유형C	유형D	유형E
				
상단은 소수의 엘리트, 중간에는 극소수의 사람들, 하단에 수 많은 사람	피라미드처럼 상단에는 소수의 엘리트, 중간에는 더 많은 사람들, 맨 아래에는 대다수가 있는 사회	피라미드(유형 B)와 유사하지만, 하단에 상대적으로 소수의 사람이 있다는 점이 다름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간에 있는 사회	상단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하단에는 소수의 사람들만 있음

〈표 5-30〉 사회 구조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구 분	유형A	유형B	유형C	유형D	유형E	모르겠음	합계
프랑스	22.1	36.5	16.7	9.5	3.0	12.2	(2,500) 100.0
한국	18.4	22.1	20.8	12.1	21.7	4.8	(2,500) 100.0

주: 각 항목의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출처: “결혼, 출산, 육아에 관한 인식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원자료 분석.

프랑스 사회가 전반적으로 공정한 사회라는 의견에 동의하는 정도를 조사한 결과 조사 응답자의 29.0%가 동의(동의한다+매우 동의한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9.6%)과 비교하여 19.4%p 높은 수준이다.

〈표 5-31〉 ‘전반적으로 공정한 사회이다’라는 의견에 동의하는 정도

(단위: %, 명)

구 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합계
프랑스	12.6	29.4	29.0	22.8	6.2	(2,500) 100.0
한국	18.1	39.3	33.0	9.0	0.6	(2,500) 100.0
성별 ( $\chi^2=55.889^{***}$ )						
남성	11.4	25.8	27.1	28.0	7.7	(1,240) 100.0
여성	13.8	32.9	31.0	17.6	4.7	(1,260) 100.0
연령 ( $\chi^2=47.436^{***}$ )						
20~24세	14.2	24.3	31.2	20.9	9.4	(445) 100.0
25~29세	9.6	31.7	27.2	21.9	9.6	(334) 100.0
30~34세	11.7	29.6	26.5	25.7	6.5	(385) 100.0
35~39세	10.6	33.4	29.9	22.6	3.5	(461) 100.0
40~44세	12.8	32.2	28.6	21.5	5.0	(423) 100.0
45~49세	15.9	25.9	29.9	24.1	4.2	(452) 100.0
지역 ( $\chi^2=57.173^{***}$ )						
대도시	11.8	25.3	29.0	24.0	9.9	(796) 100.0
대도시의 외곽	11.2	29.9	24.8	29.0	5.1	(448) 100.0
중소도시	13.1	30.2	30.9	21.4	4.4	(725) 100.0
농어촌	14.3	34.1	30.1	17.5	4.0	(531) 100.0
교육 ( $\chi^2=42.863^{***}$ )						
(2~7)	13.8	26.3	32.8	18.0	9.2	(567) 100.0
(8~13)	14.3	30.7	28.3	21.0	5.7	(720) 100.0
(14~17)	12.7	32.9	27.3	23.0	4.2	(505) 100.0

구 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합계	
(18~25)	9.9	28.1	28.0	28.2	5.8	(708)	100.0
혼인상태 ( $\chi^2=50.695^{***}$ )							
미혼	12.5	29.4	33.2	19.8	5.1	(771)	100.0
동거/사실혼	12.6	32.0	26.9	23.3	5.2	(823)	100.0
법률혼	10.2	26.9	27.6	26.7	8.6	(729)	100.0
이혼/별거/사별	23.2	27.7	27.1	16.4	5.6	(177)	100.0
자녀 여부 ( $\chi^2=10.119^*$ )							
자녀 있음	11.9	30.0	27.0	24.5	6.7	(1,305)	100.0
자녀 없음	13.4	28.8	31.3	20.8	5.7	(1,195)	100.0
취업 여부 ( $\chi^2=14.404^{**}$ )							
취업	12.6	29.8	27.8	23.9	5.9	(2,035)	100.0
비취업	12.7	27.7	34.6	17.6	7.3	(465)	100.0
가구소득 ( $\chi^2=44.283^{***}$ )							
1500유로 미만	15.6	26.8	31.6	17.4	8.5	(493)	100.0
1500~2500유로 미만	12.6	30.2	31.3	20.5	5.4	(689)	100.0
2500~3500유로 미만	14.2	31.1	27.6	22.1	4.9	(569)	100.0
3500유로 이상	9.3	29.1	26.3	28.8	6.4	(749)	100.0
가구 유형 ( $\chi^2=31.491^*$ )							
무자녀 미혼	12.3	28.0	33.6	20.9	5.3	(676)	100.0
유자녀 미혼	13.7	40.0	30.5	12.6	3.2	(95)	100.0
무자녀 기혼 <sup>1)</sup>	14.8	29.9	28.3	20.8	6.2	(519)	100.0
유자녀 기혼(1자녀)	11.3	26.6	28.3	26.8	7.0	(515)	100.0
유자녀 기혼(2자녀 이상)	12.1	31.1	25.5	24.5	6.9	(695)	100.0

주: \* p<0.05, \*\* p<0.01, \*\*\* p<0.001

1) 미혼 이외의 모든 변수(법률혼/사실혼(동거)/사별/이혼/별거)를 포함함.

2)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chi^2$ 값을 제시하지 않음.

3) 각 항목의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출처: “결혼, 출산, 육아에 관한 인식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원자료 분석.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세부 집단별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성(35.7%)이 여성(22.3%)보다 공정한 사회라고 응답(동의한다+매우 동의한다)한 비율이 높았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0~34세(32.2%), 25~29세(31.5%), 20~24세(30.3%), 45~49세(28.3%), 40~44세(26.5%), 35~39세(26.1%) 순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와 대도시 외곽 거주자의 동의 비율이 33.9~34.1%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중소도시와 농어촌 거주자의 동의 비율이 21.5~25.8%로 비교적 낮

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별로는 법률혼 응답자의 동의 비율이 35.3%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동거/사실혼(28.5%), 미혼(24.9%), 이혼/별거/사별(22.0%) 순이었다. 자녀 여부별로는 유자녀 가구(31.2%)가 무자녀 가구(26.5%)보다, 취업자(29.8%)가 비취업자(24.9%)보다, 그리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사회가 공정하다는 의견에 동의한 비율이 높았다. 가구 유형별로는 유자녀 기혼(1자녀)(33.8%), 유자녀 기혼(2자녀 이상)(31.4%), 무자녀 기혼(27.0%), 무자녀 미혼(26.2%), 유자녀 미혼(15.8%) 순으로 사회가 공정하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2〉 ‘소득격차가 너무 크다’라는 의견에 동의하는 정도

(단위: %, 명)

구 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합계	
프랑스	2.4	6.6	21.6	39.1	30.3	(2,500)	100.0
한국	0.6	3.0	16.5	52.2	27.8	(2,500)	100.0
성별 ( $\chi^2=12.755$ )							
남성	2.5	7.9	22.8	38.9	27.9	(1,240)	100.0
여성	2.2	5.3	20.5	39.4	32.6	(1,260)	100.0
연령 ( $\chi^2=60.930^{***}$ )							
20~24세	3.8	12.4	23.6	35.7	24.5	(445)	100.0
25~29세	2.1	7.2	22.2	38.9	29.6	(334)	100.0
30~34세	2.1	6.8	19.7	35.8	35.6	(385)	100.0
35~39세	1.5	3.9	24.1	43.4	27.1	(461)	100.0
40~44세	1.4	5.0	20.8	40.2	32.6	(423)	100.0
45~49세	3.1	4.6	19.2	40.0	33.0	(452)	100.0
지역 ( $\chi^2=14.616$ )							
대도시	2.6	7.9	23.5	37.4	28.5	(796)	100.0
대도시의 외곽	2.5	6.5	19.6	42.4	29.0	(448)	100.0
중소도시	2.5	6.9	21.5	37.9	31.2	(725)	100.0
농어촌	1.7	4.3	20.7	40.5	32.8	(531)	100.0
교육 ( $\chi^2=20.309$ )							
(2~7)	3.0	7.8	24.7	34.2	30.3	(567)	100.0
(8~13)	2.6	4.2	21.0	41.8	30.4	(720)	100.0
(14~17)	1.8	6.9	21.4	39.8	30.1	(505)	100.0
(18~25)	2.0	7.9	20.1	39.8	30.2	(708)	100.0
혼인상태 ( $\chi^2=13.336$ )							

구 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합계	
미혼	3.0	6.1	21.4	39.2	30.4	(771)	100.0
동거/사실혼	1.7	7.9	21.6	40.3	28.4	(823)	100.0
법률혼	2.3	5.1	22.2	39.0	31.4	(729)	100.0
이혼/별거/사별	2.8	9.0	20.3	33.9	33.9	(177)	100.0
자녀 여부 ( $\chi^2=12.019$ )							
자녀 있음	1.8	5.7	20.4	40.7	31.4	(1,305)	100.0
자녀 없음	3.0	7.5	23.0	37.4	29.0	(1,195)	100.0
취업 여부 ( $\chi^2=0.823$ )							
취업	2.3	6.6	21.6	39.0	30.6	(2,035)	100.0
비취업	2.8	6.7	21.7	39.8	29.0	(465)	100.0
가구소득 ( $\chi^2=15.361$ )							
1500유로 미만	3.4	5.7	22.1	37.7	31.0	(493)	100.0
1500~2500유로 미만	2.5	5.2	21.5	37.6	33.2	(689)	100.0
2500~3500유로 미만	1.6	7.2	20.9	42.4	27.9	(569)	100.0
3500유로 이상	2.1	8.0	22.0	39.0	28.8	(749)	100.0
가구 유형 ( $\chi^2=26.783$ )							
무자녀 미혼	3.1	6.4	22.3	38.5	29.7	(676)	100.0
유자녀 미혼	2.1	4.2	14.7	44.2	34.7	(95)	100.0
무자녀 기혼 <sup>1)</sup>	2.9	9.1	23.9	36.0	28.1	(519)	100.0
유자녀 기혼(1자녀)	1.6	7.6	22.7	37.3	30.9	(515)	100.0
유자녀 기혼(2자녀 이상)	1.9	4.6	19.4	42.7	31.4	(695)	100.0

주: \* p<0.05, \*\* p<0.01, \*\*\* p<0.001

1) 미혼 이외의 모든 변수(법률혼/사실혼(동거)/사별/이혼/별거)를 포함함.

2)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chi^2$ 값을 제시하지 않음.

3) 각 항목의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출처: “결혼, 출산, 육아에 관한 인식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원자료 분석.

프랑스 사회는 ‘소득격차가 너무 크다’라는 의견에 동의 정도를 살펴본 결과, 69.4%가 동의(동의한다+매우 동의한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80.0%)과 비교하여 10.6%p 낮은 수준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세부 집단별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성(72.0%)이 남성(66.8%)보다 소득격차가 크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격차가 크다는 데 동의한 비율이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유자녀 가구(72.1%)가 무자녀 가구(66.4%)보다 소득격차가 크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가구소득별로는 소득이 높을수록 소득격

차가 크다는 것에 동의한 비율이 높았다. 가구 유형별로는 유자녀 미혼의 동의 비율이 78.9%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유자녀 기혼(2자녀 이상)(74.1%), 유자녀 기혼(1자녀)과 무자녀 미혼(68.2%), 무자녀 기혼(64.1%) 순이었다.

〈표 5-33〉 '가장 부유한 1%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너무 많다'라는 의견에 동의하는 정도

(단위: %, 명)

구 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합계	
프랑스	3.6	6.1	22.1	28.6	39.6	(2,500)	100.0
한국	1.3	2.6	16.0	36.2	43.9	(2,500)	100.0
성별 ( $\chi^2=14.641^{**}$ )							
남성	4.7	6.9	20.6	27.2	40.6	(1,240)	100.0
여성	2.6	5.3	23.6	29.9	38.6	(1,260)	100.0
연령 ( $\chi^2=55.627^{***}$ )							
20~24세	6.5	8.8	26.7	25.6	32.4	(445)	100.0
25~29세	4.8	9.0	19.2	30.5	36.5	(334)	100.0
30~34세	3.4	6.8	20.5	29.9	39.5	(385)	100.0
35~39세	1.5	4.1	22.6	29.9	41.9	(461)	100.0
40~44세	3.1	5.0	21.5	29.3	41.1	(423)	100.0
45~49세	2.9	4.0	21.2	26.8	45.1	(452)	100.0
지역 ( $\chi^2=33.635^{**}$ )							
대도시	4.8	7.5	20.9	28.9	37.9	(796)	100.0
대도시의 외곽	4.9	6.9	16.3	29.9	42.0	(448)	100.0
중소도시	2.9	4.4	26.6	27.3	38.8	(725)	100.0
농어촌	1.9	5.6	22.8	28.6	41.1	(531)	100.0
교육 ( $\chi^2=32.936^{**}$ )							
(2~7)	3.5	5.8	28.7	26.3	35.6	(567)	100.0
(8~13)	3.1	5.7	22.4	29.7	39.2	(720)	100.0
(14~17)	5.1	4.8	20.8	28.9	40.4	(505)	100.0
(18~25)	3.2	7.8	17.5	29.0	42.5	(708)	100.0
혼인상태 ( $\chi^2=14.206$ )							
미혼	4.3	6.5	24.3	25.2	39.8	(771)	100.0
동거/사실혼	3.8	6.0	21.7	29.0	39.5	(823)	100.0
법률혼	3.3	5.5	21.3	31.6	38.4	(729)	100.0
이혼/별거/사별	1.7	7.9	18.1	28.8	43.5	(177)	100.0
자녀 여부 ( $\chi^2=29.672^{***}$ )							
자녀 있음	2.2	5.8	20.1	31.6	40.3	(1,305)	100.0

구 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합계
자녀 없음	5.2	6.4	24.4	25.3	38.7	(1,195) 100.0
취업 여부 ( $\chi^2=3.145$ )						
취업	3.4	6.3	21.9	28.8	39.6	(2,035) 100.0
비취업	4.7	5.2	23.0	27.5	39.6	(465) 100.0
가구소득 ( $\chi^2=30.795^{**}$ )						
1500유로 미만	4.5	4.3	27.0	24.1	40.2	(493) 100.0
1500~2500유로 미만	2.5	4.9	22.9	28.2	41.5	(689) 100.0
2500~3500유로 미만	3.2	7.9	19.5	32.5	36.9	(569) 100.0
3500유로 이상	4.5	7.1	20.2	28.8	39.4	(749) 100.0
가구 유형 ( $\chi^2=39.055^{***}$ )						
무자녀 미혼	4.7	6.7	24.9	24.9	38.9	(676) 100.0
유자녀 미혼	1.1	5.3	20.0	27.4	46.3	(95) 100.0
무자녀 기혼 <sup>1)</sup>	5.8	6.2	23.7	25.8	38.5	(519) 100.0
유자녀 기혼(1자녀)	2.1	5.6	22.5	33.4	36.3	(515) 100.0
유자녀 기혼(2자녀 이상)	2.4	6.0	18.3	30.8	42.4	(695) 100.0

주: \*  $p<0.05$ , \*\*  $p<0.01$ , \*\*\*  $p<0.001$

1) 미혼 이외의 모든 변수(법률혼/사실혼(동거)/사별/이혼/별거)를 포함함.

2)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chi^2$ 값을 제시하지 않음.

3) 각 항목의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출처: “결혼, 출산, 육아에 관한 인식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원자료 분석.

프랑스 사회에서 ‘가장 부유한 1%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너무 많다’라는 의견에 대해 68.2%가 동의(동의한다+매우 동의한다)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국(80.1%)과 비교하여 11.9%p 낮은 수준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세부 집단별 차이를 살펴보면, 여성(68.5%)이 남성(67.8%)보다, 유자녀 가구(71.9%)가 무자녀 가구(64.0%)보다, 그리고 비교적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구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가장 부유한 1%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너무 많다’라는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의 외곽(71.9%), 농어촌(69.7%), 대도시(66.8%), 중소도시(66.1%)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 유형별로는 유자녀 미혼(73.7%), 유자녀 기혼(2자녀 이상)(73.2%), 유자녀 기혼(1자녀)(69.7%), 무자녀 기혼(64.3%), 무자녀 미혼(63.8%) 순으로 ‘가장 부유한 1%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너무 많다’라는 의견에 동의하여 세부 집단별 차이를 보였다.

## 2. 사회에서 성공(출세)하기 위해 중요한 요인

프랑스 사회에서 개인이 성공(출세)하기 위해 고려하는 요인들에 대해 중요도를 5점 척도(1점: 전혀 중요하지 않다~5점: 필수적이다)로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프랑스에서 성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는 것은 개인의 노력(3.98점)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좋은 교육을 받은 부모(3.90점), 부유한 가정(3.50점), 인종이나 민족적 배경(3.09점), 성별(3.01) 순이었다. 한국 사회에서도 성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는 것은 개인의 노력(4.04)으로 나타났다. 이어 부유한 가정(3.91점), 좋은 교육을 받은 부모(3.83점), 정치적 인맥(3.29점) 순이었다.

〈표 5-34〉 성공(출세)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

(단위: 점, 명)

구분	부유한 가정	좋은 교육을 받은 부모	개인의 노력	정치적 인맥	성별	인종이나 민족적 배경	사례 수
프랑스	3.50	3.90	3.98	2.98	3.01	3.09	2,500
한국	3.91	3.83	4.04	3.29	2.70	2.81	2,500
성별							
남자	3.61	3.88	3.98	3.11	3.06	3.14	1,240
여자	3.39	3.92	3.99	2.86	2.95	3.04	1,260
연령							
20~24세	3.36	3.84	3.94	3.13	3.10	3.14	445
25~29세	3.61	3.92	4.03	3.09	3.02	3.19	334
30~34세	3.54	3.92	3.98	3.01	3.02	3.06	385
35~39세	3.52	3.86	3.93	2.89	2.94	3.07	461
40~44세	3.58	3.96	3.99	3.05	3.07	3.13	423
45~49세	3.42	3.92	4.04	2.79	2.90	2.97	452
지역							
대도시	3.56	3.89	3.98	3.13	3.13	3.19	796
대도시의 외곽	3.47	3.91	4.01	3.03	3.04	3.15	448
중소도시	3.46	3.86	3.95	2.86	2.93	3.00	725
농어촌	3.48	3.97	4.01	2.89	2.90	3.01	531
교육							
(2~7)	3.44	3.81	3.87	3.06	3.16	3.18	567
(8~13)	3.43	3.88	3.99	2.96	2.98	3.03	720
(14~17)	3.48	3.96	4.04	2.83	2.90	2.97	505

구분	부유한 가정	좋은 교육을 받은 부모	개인의 노력	정치적 인맥	성별	인종이나 민족적 배경	사례 수
(18~25)	3.63	3.96	4.02	3.06	2.98	3.17	708
혼인상태							
미혼	3.43	3.87	3.95	2.93	2.94	3.02	771
동거/사실혼	3.49	3.86	3.94	2.98	3.01	3.09	823
법률혼	3.61	4.01	4.08	3.02	3.05	3.13	729
이혼/별거/사별	3.38	3.78	3.92	3.10	3.11	3.25	177
자녀 여부							
자녀 있음	3.56	3.94	4.05	3.01	3.06	3.13	1,305
자녀 없음	3.43	3.86	3.91	2.95	2.95	3.05	1,195
취업 여부							
취업	3.52	3.91	4.01	3.00	3.00	3.10	2,035
비취업	3.42	3.87	3.88	2.91	3.04	3.07	465
가구소득							
1500유로 미만	3.41	3.76	3.81	2.98	3.04	3.12	493
1500~2500유로 미만	3.54	3.93	4.03	3.02	3.08	3.16	689
2500~3500유로 미만	3.46	3.85	3.95	2.99	2.99	3.04	569
3500유로 이상	3.55	4.00	4.08	2.94	2.94	3.05	749
가구 유형							
무자녀 미혼	3.45	3.88	3.95	2.93	2.93	3.02	676
유자녀 미혼	3.33	3.81	4.00	2.89	2.98	3.06	95
무자녀 기혼1)	3.41	3.82	3.87	2.97	2.98	3.10	519
유자녀 기혼(1자녀)	3.58	3.95	4.01	3.08	3.08	3.13	515
유자녀 기혼(2자녀 이상)	3.58	3.96	4.08	2.98	3.05	3.13	695

주: 1) 미혼 이외의 모든 변수(법률혼/사실혼(동거)/사별/이혼/별거)를 포함함.

2) 전혀 중요하지 않다(1점)~필수적이다(5점)으로 평균 점수 산출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문항이 중요 정도가 높고 필수적인 요인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함.

출처: “결혼, 출산, 육아에 관한 인식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원자료 분석.

### 3. 현재 및 미래 생활 수준에 관한 인식

현재의 생활 수준이 부모님 세대(부모님이 응답자의 나이였을 때)와 비교해서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조사한 결과, 조사 응답자의 28.8%가 생활 수준이 악화되었다(약간 나빠졌다+훨씬 나빠졌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한국(18.7%)과 비교하여 10.1%p 높은 수준이다.

〈표 5-35〉 부모님 세대 대비 현재 생활 수준 변화

(단위: %, 명)

구 분	훨씬 좋아졌다	약간 좋아졌다	차이가 거의 없다	약간 나빠졌다	훨씬 나빠졌다	합계
프랑스	16.0	27.6	27.7	17.6	11.2	(2,500) 100.0
한국	26.5	34.6	20.2	10.4	8.3	(2,500) 100.0
성별 ( $\chi^2=28.772^{***}$ )						
남성	18.2	29.9	27.4	14.9	9.5	(1,240) 100.0
여성	13.7	25.3	27.9	20.2	12.8	(1,260) 100.0
연령 ( $\chi^2=102.211^{***}$ )						
20~24세	22.5	31.7	27.2	12.4	6.3	(445) 100.0
25~29세	15.9	33.2	31.1	13.2	6.6	(334) 100.0
30~34세	19.5	26.5	26.5	17.7	9.9	(385) 100.0
35~39세	10.8	24.7	33.4	20.2	10.8	(461) 100.0
40~44세	15.4	26.0	24.3	20.1	14.2	(423) 100.0
45~49세	12.4	24.8	23.9	21.0	17.9	(452) 100.0
지역 ( $\chi^2=72.828^{***}$ )						
대도시	21.9	30.8	25.3	13.9	8.2	(796) 100.0
대도시의 외곽	14.5	29.9	26.8	19.9	8.9	(448) 100.0
중소도시	12.4	28.0	28.3	18.8	12.6	(725) 100.0
농어촌	13.2	20.3	31.3	19.6	15.6	(531) 100.0
교육 ( $\chi^2=37.857^{***}$ )						
(2~7)	18.7	24.0	26.5	16.6	14.3	(567) 100.0
(8~13)	14.0	25.6	31.5	18.5	10.4	(720) 100.0
(14~17)	14.5	28.7	26.5	16.4	13.9	(505) 100.0
(18~25)	16.8	31.8	25.6	18.4	7.5	(708) 100.0
혼인상태 ( $\chi^2=37.567^{***}$ )						
미혼	14.1	27.1	26.2	19.3	13.2	(771) 100.0
동거/사실혼	15.9	26.9	30.4	18.2	8.6	(823) 100.0
법률혼	18.1	30.6	26.9	14.5	9.9	(729) 100.0
이혼/별거/사별	15.3	20.9	24.9	19.8	19.2	(177) 100.0
자녀 여부 ( $\chi^2=2.976$ )						
자녀 있음	16.9	27.7	27.0	16.9	11.6	(1,305) 100.0
자녀 없음	15.0	27.5	28.5	18.3	10.7	(1,195) 100.0
취업 여부 ( $\chi^2=32.260^{***}$ )						
취업	16.8	28.5	28.0	17.1	9.6	(2,035) 100.0
비취업	12.3	23.9	26.5	19.6	17.8	(465) 100.0
가구소득 ( $\chi^2=104.413^{***}$ )						
1500유로 미만	14.4	20.5	26.4	20.1	18.7	(493) 100.0
1500~2500유로 미만	13.5	24.8	28.6	20.3	12.8	(689) 100.0
2500~3500유로 미만	13.0	29.0	31.6	17.0	9.3	(569) 100.0
3500유로 이상	21.5	33.8	24.7	13.9	6.1	(749) 100.0
가구 유형 ( $\chi^2=35.666^{***}$ )						

구 분	훨씬 좋아졌다	약간 좋아졌다	차이가 거의 없다	약간 나빠졌다	훨씬 나빠졌다	합계
무자녀 미혼	14.6	27.1	27.5	18.5	12.3	(676) 100.0
유자녀 미혼	10.5	27.4	16.8	25.3	20.0	(95) 100.0
무자녀 기혼 <sup>1)</sup>	15.4	28.1	29.7	18.1	8.7	(519) 100.0
유자녀 기혼(1자녀)	18.4	29.1	30.3	13.6	8.5	(515) 100.0
유자녀 기혼(2자녀 이상)	16.5	26.6	25.9	18.3	12.7	(695) 100.0

주: \* p<0.05, \*\* p<0.01, \*\*\* p<0.001

1) 미혼 이외의 모든 변수(법률혼/사실혼(동거)/사별/이혼/별거)를 포함함.

2)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chi^2$ 값을 제시하지 않음.

3) 각 항목의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출처: “결혼, 출산, 육아에 관한 인식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원자료 분석.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세부 집단별 차이를 살펴보면, 남성(24.4%)보다 여성(33.0%)이, 유자녀 가구(28.5%)에 비해 무자녀 가구(29.0%)가, 취업자(26.7%)보다 비취업자(37.4%)가 부모세대보다 생활 수준이 악화되었다(약간 나빠졌다+훨씬 나빠졌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비교적 연령이 높을수록 부모세대보다 생활 수준이 악화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45~49세(38.9%), 40~44세(34.3%), 35~39세(31.0%), 30~34세(27.6%), 25~29세(19.8%), 20~24세(18.7%) 순이다. 지역별로는 농어촌(35.2%), 중소도시(31.4%), 대도시 외곽(28.8%), 대도시(22.1%) 순으로 대도시 보다 농어촌에서 부모세대보다 생활 수준이 악화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별로는 이혼/별거/사별(39.0%), 미혼(32.5%), 동거/사실혼(26.8%), 법률혼(24.4%)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 유형별로는 유자녀 미혼(45.3%), 유자녀 기혼(2자녀 이상)(31.0%), 무자녀 미혼(30.8%), 무자녀 기혼(26.8%), 유자녀 기혼(1자녀)(22.1%) 순으로 부모세대보다 생활 수준이 악화되었다고 응답하였다.

〈표 5-36〉 본인 대비 자녀들의 생활 수준 변화(예상)

(단위: %, 명)

구 분	훨씬 좋아질 것이다	약간 좋아질 것이다	차이가 거의 없을 것이다	약간 나빠질 것이다	훨씬 나빠질 것이다	합계	
프랑스	13.4	28.9	29.9	16.2	11.6	(2,500)	100.0
한국	14.1	28.2	28.8	17.4	11.5	(2,500)	100.0
성별 ( $\chi^2=55.149^{***}$ )							
남성	17.1	31.8	26.5	15.5	9.1	(1,240)	100.0
여성	9.8	26.1	33.2	16.9	14.0	(1,260)	100.0
연령 ( $\chi^2=173.790^{***}$ )							
20~24세	20.4	37.5	29.4	8.8	3.8	(445)	100.0
25~29세	19.2	31.1	30.8	12.0	6.9	(334)	100.0
30~34세	13.5	31.2	28.6	14.3	12.5	(385)	100.0
35~39세	8.7	24.7	35.8	16.7	14.1	(461)	100.0
40~44세	11.3	29.6	24.8	22.9	11.3	(423)	100.0
45~49세	8.8	20.6	29.4	21.5	19.7	(452)	100.0
지역 ( $\chi^2=81.411^{***}$ )							
대도시	18.3	33.2	27.1	12.3	9.0	(796)	100.0
대도시의 외곽	12.5	34.6	24.3	17.6	10.9	(448)	100.0
중소도시	12.1	25.7	32.6	16.6	13.1	(725)	100.0
농어촌	8.5	22.2	35.0	20.3	13.9	(531)	100.0
교육 ( $\chi^2=33.841^{**}$ )							
(2~7)	18.0	26.1	28.0	13.9	13.9	(567)	100.0
(8~13)	13.9	28.5	30.4	16.1	11.1	(720)	100.0
(14~17)	9.1	28.1	31.7	17.6	13.5	(505)	100.0
(18~25)	12.3	32.2	29.5	17.1	8.9	(708)	100.0
혼인상태 ( $\chi^2=13.013$ )							
미혼	14.3	27.6	28.7	16.6	12.8	(771)	100.0
동거/사실혼	12.2	30.3	31.7	14.6	11.3	(823)	100.0
법률혼	13.9	29.4	29.6	17.6	9.6	(729)	100.0
이혼/별거/사별	13.6	26.6	27.7	16.4	15.8	(177)	100.0
자녀 여부 ( $\chi^2=6.371$ )							
자녀 있음	13.4	29.8	29.1	17.2	10.4	(1,305)	100.0
자녀 없음	13.4	27.9	30.7	15.1	12.9	(1,195)	100.0
취업 여부 ( $\chi^2=12.657$ )							
취업	12.5	29.7	29.5	16.9	11.4	(2,035)	100.0
비취업	17.2	25.6	31.6	13.1	12.5	(465)	100.0
가구소득 ( $\chi^2=58.322^{***}$ )							
1500유로 미만	19.5	26.0	27.8	11.2	15.6	(493)	100.0
1500~2500유로 미만	11.6	27.1	29.6	17.1	14.5	(689)	100.0
2500~3500유로 미만	10.4	30.6	32.9	17.0	9.1	(569)	100.0
3500유로 이상	13.4	31.2	29.2	18.0	8.1	(749)	100.0
가구 유형 ( $\chi^2=35.893^{***}$ )							

구 분	훨씬 좋아질 것이다	약간 좋아질 것이다	차이가 거의 없을 것이다	약간 나빠질 것이다	훨씬 나빠질 것이다	합계
무자녀 미혼	14.8	27.8	29.3	15.8	12.3	(676) 100.0
유자녀 미혼	10.5	26.3	24.2	22.1	16.8	(95) 100.0
무자녀 기혼 <sup>1)</sup>	11.6	28.1	32.6	14.1	13.7	(519) 100.0
유자녀 기혼(1자녀)	15.9	33.4	29.7	13.0	8.0	(515) 100.0
유자녀 기혼(2자녀 이상)	11.9	27.6	29.4	19.7	11.4	(695) 100.0

주: \* p<0.05, \*\* p<0.01, \*\*\* p<0.001

1) 미혼 이외의 모든 변수(법률혼/사실혼(동거)/사별/이혼/별거)를 포함함.

2)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chi^2$ 값을 제시하지 않음.

3) 각 항목의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출처: “결혼, 출산, 육아에 관한 인식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원자료 분석.

응답자 본인의 생활 수준과 비교해서 자녀들의 미래(자녀가 응답자의 현재 나이가 되었을 때) 생활 수준이 어떻게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조사 응답자의 27.8%가 생활 수준이 악화될 것(약간 나빠질 것이다+훨씬 나빠질 것이다)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한국(28.9%)과 유사한 수준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세부 집단별 차이를 살펴보면, 여성(30.9%)이 남성(24.6%)보다, 그리고 비교적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들의 미래 생활 수준이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45~49세(41.2%), 40~44세(34.2%), 35~39세(30.8%), 30~34세(26.8%), 25~29세(18.9%), 20~24세(12.6%)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농어촌(34.2%), 중소도시(29.7%), 대도시 외곽(28.5%), 대도시(21.3%) 순으로 대도시보다 농어촌에서 자녀들의 생활 수준이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는 1,500~2,500유로 미만 집단이 31.6%로 다른 세부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가구 유형별로는 유자녀 미혼(38.9%), 유자녀 기혼(2자녀 이상)(31.1%), 무자녀 미혼(28.1%), 무자녀 기혼(27.8%), 유자녀 기혼(1자녀)(21.0%) 순으로 자녀들의 미래 생활 수준이 현재 생활 수준보다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 제5절 인구 변화 및 인구 정책에 관한 인식

### 1. 인구 변화

프랑스 사회에서 인구 변화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최근 출산율은 적당한 수준이다’라는 의견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조사한 결과, 조사 응답자의 34.7%가 동의(동의한다+매우 동의한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7.8%)과 비교하여 26.9%p 높은 수준이다.

〈표 5-37〉 인구 변화에 대한 동의 여부\_1) 최근 출산율은 적당한 수준이다

(단위: %, 명)

구 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합계	
프랑스	4.8	19.0	41.6	27.0	7.7	(2,500)	100.0
한국	44.7	34.5	13.0	6.0	1.8	(2,500)	100.0
성별 ( $\chi^2=15.372^{**}$ )							
남성	4.8	20.3	37.8	28.4	8.6	(1,240)	100.0
여성	4.7	17.6	45.3	25.6	6.8	(1,260)	100.0
연령 ( $\chi^2=41.361^{***}$ )							
20~24세	6.1	15.1	40.4	27.9	10.6	(445)	100.0
25~29세	4.2	17.1	41.6	28.4	8.7	(334)	100.0
30~34세	4.7	16.4	40.3	30.1	8.6	(385)	100.0
35~39세	2.6	23.4	40.3	27.5	6.1	(461)	100.0
40~44세	7.1	20.6	40.7	23.9	7.8	(423)	100.0
45~49세	4.0	20.4	46.0	24.6	5.1	(452)	100.0
지역 ( $\chi^2=30.828^{**}$ )							
대도시	5.5	18.0	38.1	28.1	10.3	(796)	100.0
대도시의 외곽	4.2	18.1	38.4	31.7	7.6	(448)	100.0
중소도시	5.1	20.4	43.3	25.2	5.9	(725)	100.0
농어촌	3.6	19.2	47.3	23.5	6.4	(531)	100.0
교육 ( $\chi^2=47.764^{***}$ )							
(2~7)	7.1	14.5	42.5	24.2	11.8	(567)	100.0
(8~13)	4.2	17.6	44.9	26.3	7.1	(720)	100.0
(14~17)	4.0	20.8	42.4	26.3	6.5	(505)	100.0

구 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합계	
(18~25)	4.1	22.6	37.0	30.4	5.9	(708)	100.0
혼인상태 ( $\chi^2=26.905^*$ )							
미혼	5.1	18.3	47.2	22.7	6.7	(771)	100.0
동거/사실혼	5.1	18.6	40.1	29.6	6.6	(823)	100.0
법률혼	4.0	19.5	38.7	28.7	9.2	(729)	100.0
이혼/별거/사별	5.1	21.5	36.2	26.0	11.3	(177)	100.0
자녀 여부 ( $\chi^2=19.615^*$ )							
자녀 있음	3.5	20.3	39.2	28.7	8.4	(1,305)	100.0
자녀 없음	6.1	17.5	44.3	25.1	7.0	(1,195)	100.0
취업 여부 ( $\chi^2=9.707^*$ )							
취업	4.6	19.1	41.0	28.1	7.3	(2,035)	100.0
비취업	5.6	18.3	44.3	22.2	9.7	(465)	100.0
가구소득 ( $\chi^2=21.001$ )							
1500유로 미만	6.7	16.4	42.4	24.5	9.9	(493)	100.0
1500~2500유로 미만	3.8	18.3	44.8	25.5	7.5	(689)	100.0
2500~3500유로 미만	4.2	18.8	41.7	28.1	7.2	(569)	100.0
3500유로 이상	4.8	21.4	38.1	29.0	6.8	(749)	100.0
가구 유형 ( $\chi^2=38.510^*$ )							
무자녀 미혼	5.3	18.0	47.2	22.3	7.1	(676)	100.0
유자녀 미혼	3.2	20.0	47.4	25.3	4.2	(95)	100.0
무자녀 기혼 <sup>1)</sup>	7.1	16.8	40.5	28.7	6.9	(519)	100.0
유자녀 기혼(1자녀)	3.5	18.6	37.9	31.8	8.2	(515)	100.0
유자녀 기혼(2자녀 이상)	3.6	21.6	39.0	26.8	9.1	(695)	100.0

주: \* p<0.05, \*\* p<0.01, \*\*\* p<0.001

1) 미혼 이외의 모든 변수(법률혼/사실혼(동거)/사별/이혼/별거)를 포함함.

2)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chi^2$ 값을 제시하지 않음.

3) 각 항목의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출처: “결혼, 출산, 육아에 관한 인식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원자료 분석.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세부 집단별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남성(37.0%)이 여성(32.4%)보다 최근의 출산율이 적당한 수준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또한 대체로 연령이 낮을수록 최근의 출산율이 적당한 수준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와 대도시 외곽의 동의 비율이 38.4~39.3%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중소도시와 농어촌이 29.9~31.1%로 비교적 대도시에서 최근의 출산율이 적당한 수준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혼인상태별로는 법률혼이

37.9%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이혼/별거/사별 37.3%, 동거/사실혼 36.2%, 미혼 29.4% 순이었다. 또한 유자녀 가구(37.1%)가 무자녀 가구(32.1%)보다, 취업자(35.4%)가 비취업자(31.9%)보다 최근의 출산율이 적당한 수준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가구 유형별로는 유자녀 기혼(1자녀)이 40.0%로 동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다음이 유자녀 기혼(2자녀 이상)이 35.9%, 무자녀 기혼은 35.6%, 유자녀 미혼 29.5%, 무자녀 미혼은 29.4% 순으로 최근의 출산율이 적당한 수준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5-38〉 인구 변화에 대한 동의 여부\_2) 출산율 감소는 나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단위: %, 명)

구 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합계	
프랑스	17.1	19.9	36.9	18.7	7.4	(2,500)	100.0
한국	10.3	20.5	33.4	23.9	11.9	(2,500)	100.0
성별 ( $\chi^2=38.072^{***}$ )							
남성	13.5	18.5	37.6	21.6	8.7	(1,240)	100.0
여성	20.6	21.3	36.2	15.9	6.0	(1,260)	100.0
연령 ( $\chi^2=41.205^{***}$ )							
20~24세	14.6	20.0	36.6	18.4	10.3	(445)	100.0
25~29세	14.7	19.2	35.3	21.3	9.6	(334)	100.0
30~34세	17.1	19.7	33.8	20.0	9.4	(385)	100.0
35~39세	16.9	19.5	38.0	21.5	4.1	(461)	100.0
40~44세	16.5	20.6	38.3	17.3	7.3	(423)	100.0
45~49세	22.1	20.4	38.5	14.6	4.4	(452)	100.0
지역 ( $\chi^2=22.273^*$ )							
대도시	15.3	19.7	34.4	20.9	9.7	(796)	100.0
대도시의 외곽	17.6	21.4	34.6	18.5	7.8	(448)	100.0
중소도시	18.2	18.6	39.0	17.7	6.5	(725)	100.0
농어촌	17.9	20.7	39.5	17.1	4.7	(531)	100.0
교육 ( $\chi^2=18.285^*$ )							
(2~7)	15.2	16.0	40.2	19.8	8.8	(567)	100.0
(8~13)	16.7	20.3	38.2	18.8	6.1	(720)	100.0
(14~17)	19.8	21.0	35.2	17.4	6.5	(505)	100.0
(18~25)	17.2	21.9	34.0	18.8	8.1	(708)	100.0
혼인상태 ( $\chi^2=21.473^*$ )							
미혼	19.5	20.8	37.6	15.6	6.6	(771)	100.0
동거/사실혼	17.5	21.3	36.3	18.3	6.6	(823)	100.0

구 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합계
법률혼	14.3	18.0	36.8	22.1	8.9	(729) 100.0
이혼/별거/사별	16.9	18.1	36.7	20.3	7.9	(177) 100.0
자녀 여부 ( $\chi^2=2.027$ )						
자녀 있음	16.3	19.8	36.8	19.5	7.6	(1,305) 100.0
자녀 없음	18.0	20.0	37.0	17.9	7.1	(1,195) 100.0
취업 여부 ( $\chi^2=3.966$ )						
취업	16.4	20.1	37.2	18.8	7.5	(2,035) 100.0
비취업	20.2	19.1	35.3	18.5	6.9	(465) 100.0
가구소득 ( $\chi^2=14.509$ )						
1500유로 미만	17.4	17.2	37.5	19.3	8.5	(493) 100.0
1500~2500유로 미만	17.9	18.0	37.9	19.2	7.1	(689) 100.0
2500~3500유로 미만	15.8	20.9	39.9	16.5	6.9	(569) 100.0
3500유로 이상	17.2	22.7	33.2	19.6	7.2	(749) 100.0
가구 유형 ( $\chi^2=20.525$ )						
무자녀 미혼	19.1	20.3	38.0	15.8	6.8	(676) 100.0
유자녀 미혼	22.1	24.2	34.7	13.7	5.3	(95) 100.0
무자녀 기혼 <sup>1)</sup>	16.6	19.7	35.6	20.6	7.5	(519) 100.0
유자녀 기혼(1자녀)	12.8	21.2	37.7	19.6	8.7	(515) 100.0
유자녀 기혼(2자녀 이상)	18.1	18.3	36.4	20.1	7.1	(695) 100.0

주: \* p<0.05, \*\* p<0.01, \*\*\* p<0.001

1) 미혼 이외의 모든 변수(법률혼/사실혼(동거)/사별/이혼/별거)를 포함함.

2)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chi^2$ 값을 제시하지 않음.

3) 각 항목의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출처: “결혼, 출산, 육아에 관한 인식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원자료 분석.

‘출산율 감소는 나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의견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조사한 결과, 조사 응답자의 26.1%가 동의(동의한다+매우 동의한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35.8%)과 비교하여 9.7%p 낮은 수준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세부 집단별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성(30.3%)이 여성(21.9%)보다, 법률혼(31.0%)이 다른 혼인상태(이혼/별거/사별 28.2%, 동거/사실혼 24.9%, 미혼 22.2%)에 비해 ‘출산율 감소는 나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의견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연령이 낮을수록 ‘출산율 감소는 나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의견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25~29세(30.9%), 30~34세(29.4%), 20~24세

(28.7%), 35~39세(25.6%), 40~44세(24.6%), 45~49세(19.0%) 순으로 나타났다.

〈표 5-39〉 인구 변화에 대한 동의 여부\_3) 출산을 감소는 미래 세대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단위: %, 명)

구 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합계	
프랑스	6.9	10.8	33.2	35.8	13.4	(2,500)	100.0
한국	3.3	5.5	15.6	38.4	37.2	(2,500)	100.0
성별 ( $\chi^2=20.944^{***}$ )							
남성	5.8	10.3	30.6	37.7	15.6	(1,240)	100.0
여성	7.9	11.3	35.7	33.8	11.3	(1,260)	100.0
연령 ( $\chi^2=50.149^{***}$ )							
20~24세	6.5	11.5	30.8	33.5	17.8	(445)	100.0
25~29세	4.2	11.4	30.8	41.3	12.3	(334)	100.0
30~34세	7.5	14.3	30.6	33.8	13.8	(385)	100.0
35~39세	6.1	8.5	37.1	37.7	10.6	(461)	100.0
40~44세	6.1	9.5	31.0	36.9	16.5	(423)	100.0
45~49세	10.2	10.4	37.4	32.5	9.5	(452)	100.0
지역 ( $\chi^2=17.622$ )							
대도시	6.5	9.9	32.4	35.7	15.5	(796)	100.0
대도시의 외곽	8.0	9.8	29.9	39.1	13.2	(448)	100.0
중소도시	6.3	12.1	33.4	34.1	14.1	(725)	100.0
농어촌	7.2	11.1	36.7	35.4	9.6	(531)	100.0
교육 ( $\chi^2=34.053^{***}$ )							
(2~7)	7.4	10.4	37.0	28.4	16.8	(567)	100.0
(8~13)	6.9	10.8	35.3	36.4	10.6	(720)	100.0
(14~17)	6.9	11.5	33.1	36.6	11.9	(505)	100.0
(18~25)	6.4	10.6	28.0	40.4	14.7	(708)	100.0
혼인상태 ( $\chi^2=14.548$ )							
미혼	7.3	12.1	34.6	33.5	12.6	(771)	100.0
동거/사실혼	6.9	11.1	33.3	36.2	12.5	(823)	100.0
법률혼	6.3	8.9	30.6	38.4	15.8	(729)	100.0
이혼/별거/사별	7.3	11.9	36.7	32.8	11.3	(177)	100.0
자녀 여부 ( $\chi^2=16.936^{**}$ )							
자녀 있음	6.1	9.0	32.3	37.9	14.6	(1,305)	100.0
자녀 없음	7.7	12.7	34.1	33.4	12.1	(1,195)	100.0
취업 여부 ( $\chi^2=16.285^{**}$ )							
취업	6.2	10.6	32.5	37.3	13.4	(2,035)	100.0

구 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합계	
비취업	9.7	11.8	36.1	28.8	13.5	(465)	100.0
가구소득 ( $\chi^2=19.906$ )							
1500유로 미만	8.9	10.1	35.9	31.4	13.6	(493)	100.0
1500~2500유로 미만	6.1	10.9	35.4	35.3	12.3	(689)	100.0
2500~3500유로 미만	6.3	12.7	33.2	34.8	13.0	(569)	100.0
3500유로 이상	6.7	9.7	29.2	39.8	14.6	(749)	100.0
가구 유형 ( $\chi^2=36.251$ )							
무자녀 미혼	6.8	12.7	36.2	31.8	12.4	(676)	100.0
유자녀 미혼	10.5	7.4	23.2	45.3	13.7	(95)	100.0
무자녀 기혼 <sup>1)</sup>	8.9	12.7	31.2	35.5	11.8	(519)	100.0
유자녀 기혼(1자녀)	5.2	11.3	33.2	37.7	12.6	(515)	100.0
유자녀 기혼(2자녀 이상)	6.2	7.6	32.9	37.1	16.1	(695)	100.0

주: \* p<0.05, \*\* p<0.01, \*\*\* p<0.001

1) 미혼 이외의 모든 변수(법률혼/사실혼(동거)/사별/이혼/별거)를 포함함.

2)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chi^2$ 값을 제시하지 않음.

3) 각 항목의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출처: “결혼, 출산, 육아에 관한 인식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원자료 분석.

‘출산율 감소는 미래 세대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의견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조사한 결과 조사 응답자의 49.2%가 동의(동의한다+매우 동의한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75.6%)과 비교하여 26.4%p 낮은 수준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세부 집단별 차이를 살펴보면, 남성(53.3%)이 여성(45.1%)보다, 유자녀 가구(52.5%)가 무자녀 가구(45.5%)보다, 취업자(50.7%)가 비취업자(42.3%)보다 ‘출산율 감소는 미래 세대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의견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5~29세(53.6%), 40~44세(53.4%), 20~24세(51.3%), 35~39세(48.3%), 30~34세(47.6%), 45~49세(42.0%) 순으로 ‘출산율 감소는 미래 세대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의견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유형별로는 유자녀 미혼의 동의 비율이 59.0%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이 유자녀 기혼(2자녀 이상) 53.2%, 유자녀 기혼(1자녀) 50.3%, 무자녀 기혼 47.3%, 무자녀 미혼은 44.2% 순으로 나타나, 혼인 여부보다 자녀 여부가 출산율 감소가 미

래 세대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에 더 크게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 2. 인구정책에 대한 인지도 및 정부의 노력도

### 가. 인구정책 인지도

프랑스의 다양한 인구정책에 대한 프랑스인의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 응답자의 76.3%가 알고 있다(조금 안다+상당히 안다+ 매우 잘 안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한국(70.4%)과 비교하여 5.9%p 높은 수준이다.

〈표 5-40〉 인구정책에 대한 인지도\_1) 임신, 출산 지원(의료보험 등)

(단위: %, 명)

구 분	전혀 모른다	거의 모른다	조금 안다	상당히 안다	매우 잘 안다	합계	
프랑스	10.2	13.5	36.8	28.0	11.5	(2,500)	100.0
한국	6.9	22.8	49.2	18.0	3.2	(2,500)	100.0
성별 ( $\chi^2=4.483$ )							
남성	11.0	13.8	36.3	28.5	10.4	(1,240)	100.0
여성	9.4	13.2	37.3	27.5	12.5	(1,260)	100.0
연령 ( $\chi^2=33.447$ )							
20~24세	11.7	12.6	38.0	23.6	14.2	(445)	100.0
25~29세	12.3	13.8	36.8	24.0	13.2	(334)	100.0
30~34세	11.2	12.2	34.0	30.1	12.5	(385)	100.0
35~39세	9.3	12.4	34.9	31.9	11.5	(461)	100.0
40~44세	6.1	14.2	40.4	30.0	9.2	(423)	100.0
45~49세	11.1	15.7	36.5	27.9	8.8	(452)	100.0
지역 ( $\chi^2=14.653$ )							
대도시	10.3	12.1	35.7	27.6	14.3	(796)	100.0
대도시의 외곽	9.6	15.6	35.3	29.5	10.0	(448)	100.0
중소도시	10.9	13.2	37.0	28.0	10.9	(725)	100.0
농어촌	9.6	14.1	39.5	27.5	9.2	(531)	100.0
교육 ( $\chi^2=40.359$ )							

구 분	전혀 모른다	거의 모른다	조금 안다	상당히 안다	매우 잘 안다	합계	
(2~7)	11.6	12.5	35.6	23.5	16.8	(567)	100.0
(8~13)	10.6	14.0	38.3	26.3	10.8	(720)	100.0
(14~17)	11.3	13.5	38.8	27.7	8.7	(505)	100.0
(18~25)	7.9	13.7	34.7	33.8	9.9	(708)	100.0
혼인상태 ( $\chi^2=97.391^{***}$ )							
미혼	14.4	16.6	39.3	20.4	9.3	(771)	100.0
동거/사실혼	10.4	12.8	38.9	28.1	9.8	(823)	100.0
법률혼	5.3	10.2	33.2	36.1	15.2	(729)	100.0
이혼/별거/사별	10.7	16.9	31.1	28.2	13.0	(177)	100.0
자녀 여부 ( $\chi^2=171.780^{***}$ )							
자녀 있음	5.4	10.2	34.1	36.2	14.1	(1,305)	100.0
자녀 없음	15.5	17.1	39.7	19.1	8.6	(1,195)	100.0
취업 여부 ( $\chi^2=30.349^{***}$ )							
취업	9.7	13.3	37.1	29.8	10.2	(2,035)	100.0
비취업	12.5	14.4	35.7	20.4	17.0	(465)	100.0
가구소득 ( $\chi^2=52.405^{***}$ )							
1500유로 미만	13.4	16.6	36.5	19.7	13.8	(493)	100.0
1500~2500유로 미만	12.3	13.5	36.9	27.1	10.2	(689)	100.0
2500~3500유로 미만	9.3	12.8	39.7	27.8	10.4	(569)	100.0
3500유로 이상	6.8	11.9	34.7	34.6	12.0	(749)	100.0
가구 유형 ( $\chi^2=175.467^{***}$ )							
무자녀 미혼	15.8	17.3	39.3	18.8	8.7	(676)	100.0
유자녀 미혼	4.2	11.6	38.9	31.6	13.7	(95)	100.0
무자녀 기혼 <sup>1)</sup>	15.0	16.8	40.3	19.5	8.5	(519)	100.0
유자녀 기혼(1자녀)	6.2	10.1	34.8	35.5	13.4	(515)	100.0
유자녀 기혼(2자녀 이상)	4.9	10.1	32.9	37.4	14.7	(695)	100.0

주: \* p<0.05, \*\* p<0.01, \*\*\* p<0.001

1) 미혼 이외의 모든 변수(법률혼/사실혼(동거)/사별/이혼/별거)를 포함함.

2)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chi^2$ 값을 제시하지 않음.

3) 각 항목의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출처: "결혼, 출산, 육아에 관한 인식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원자료 분석.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세부 집단별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40~44세(79.6%), 35~39세(78.3%), 30~34세(76.6%), 20~24세(75.8%), 25~29세(74.0%), 45~49세(73.2%) 순으로 제도를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별로는 법률혼의 84.5%가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그다음으로 동거/사실혼(76.8%), 이혼/별거/사별(72.3%), 미혼(69.0%) 순이었다. 또한 유자녀 가구(84.4%)가 무자녀 가

구(67.4%)보다, 취업자(77.1%)가 비취업자(73.1%)보다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는 정책을 인지하는 정도가 높았다. 가구소득별로는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임신 출산 지원 정책의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유형별로는 유자녀 기혼(2자녀 이상) 85.0%, 유자녀 미혼 84.2%, 유자녀 기혼(1자녀) 83.7%, 무자녀 기혼 68.3% 무자녀 미혼 66.8% 순으로 나타나 혼인상태보다 자녀 여부가 임신 출산 지원 정책의 인지도에 더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1〉 인구정책에 대한 인지도\_2) 출산을 하였을 경우 수당이나 물품 지급(출산장려금, 출산용품 지원 등)

(단위: %, 명)

구 분	전혀 모른다	거의 모른다	조금 안다	상당히 안다	매우 잘 안다	합계	
프랑스	11.8	18.5	35.2	24.1	10.3	(2,500)	100.0
한국	6.9	20.8	47.1	20.8	4.4	(2,500)	100.0
성별 ( $\chi^2=4.047$ )							
남성	10.7	18.7	35.6	25.1	9.9	(1,240)	100.0
여성	12.9	18.3	34.9	23.2	10.7	(1,260)	100.0
연령 ( $\chi^2=36.409$ )							
20~24세	7.2	21.6	34.8	23.4	13.0	(445)	100.0
25~29세	10.8	19.5	32.0	25.7	12.0	(334)	100.0
30~34세	12.5	15.6	35.8	23.1	13.0	(385)	100.0
35~39세	12.1	18.7	34.9	24.7	9.5	(461)	100.0
40~44세	12.3	17.3	37.6	24.3	8.5	(423)	100.0
45~49세	15.9	18.1	35.6	23.7	6.6	(452)	100.0
지역 ( $\chi^2=31.785$ )							
대도시	10.1	19.0	30.5	27.9	12.6	(796)	100.0
대도시의 외곽	13.4	19.6	33.5	23.4	10.0	(448)	100.0
중소도시	11.7	16.7	38.8	23.9	9.0	(725)	100.0
농어촌	13.4	19.2	39.0	19.4	9.0	(531)	100.0
교육 ( $\chi^2=39.360$ )							
(2~7)	9.7	15.5	36.5	25.9	12.3	(567)	100.0
(8~13)	12.9	16.7	36.1	24.9	9.4	(720)	100.0
(14~17)	14.7	20.8	38.6	16.8	9.1	(505)	100.0
(18~25)	10.5	21.0	30.9	27.1	10.5	(708)	100.0
혼인상태 ( $\chi^2=77.992$ )							
미혼	16.3	22.8	34.2	18.2	8.4	(771)	100.0

구 분	전혀 모른다	거의 모른다	조금 안다	상당히 안다	매우 잘 안다	합계	
동거/사실혼	11.2	18.3	36.9	23.9	9.6	(823)	100.0
법률혼	8.2	12.9	35.5	30.6	12.8	(729)	100.0
이혼/별거/사별	10.2	23.2	30.5	24.3	11.9	(177)	100.0
자녀 여부 ( $\chi^2=119.043^{***}$ )							
자녀 있음	7.7	14.3	35.3	30.0	12.7	(1,305)	100.0
자녀 없음	16.3	23.1	35.1	17.7	7.7	(1,195)	100.0
취업 여부 ( $\chi^2=2.297$ )							
취업	11.5	18.7	35.7	23.7	10.4	(2,035)	100.0
비취업	13.1	17.6	33.3	25.8	10.1	(465)	100.0
가구소득 ( $\chi^2=22.105$ )							
1500유로 미만	13.4	18.7	33.3	22.1	12.6	(493)	100.0
1500~2500유로 미만	13.8	19.4	35.6	21.6	9.6	(689)	100.0
2500~3500유로 미만	9.8	16.7	39.7	24.6	9.1	(569)	100.0
3500유로 이상	10.5	18.8	32.8	27.4	10.4	(749)	100.0
가구 유형 ( $\chi^2=137.459^{***}$ )							
무자녀 미혼	17.9	24.0	33.3	17.5	7.4	(676)	100.0
유자녀 미혼	5.3	14.7	41.1	23.2	15.8	(95)	100.0
무자녀 기혼 <sup>1)</sup>	14.3	22.0	37.6	18.1	8.1	(519)	100.0
유자녀 기혼(1자녀)	7.4	14.0	39.0	28.9	10.7	(515)	100.0
유자녀 기혼(2자녀 이상)	8.3	14.4	31.8	31.7	13.8	(695)	100.0

주: \* p<0.05, \*\* p<0.01, \*\*\* p<0.001

1) 미혼 이외의 모든 변수(법률혼/사실혼(동거)/사별/이혼/별거)를 포함함.

2)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chi^2$ 값을 제시하지 않음.

3) 각 항목의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출처: '결혼, 출산, 육아에 관한 인식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원자료 분석.

‘출산수당 및 출산용품 지급 정책’에 대한 인지 정도를 살펴본 결과, 응답자의 69.6%가 알고 있다(조금 안다+상당히 안다+ 매우 잘 안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한국(72.3%)과 비교하여 2.7%p 낮은 수준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세부 집단별 차이를 살펴보면, 30~34세(71.9%), 20~24세(71.2%), 40~44세(70.4%), 25~29세(69.7%), 35~39세(69.1%), 45~49세(65.9%)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중소도시 71.7%, 대도시 71.0%, 농어촌이 67.4%, 대도시 외곽 66.9% 순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별로는 법률혼 응답자의 78.9%가 출산수당 및 출산용품 지원 관련 정책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다른 세부 집단과 비교해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동거/사실혼(70.4%), 이

혼/별거/사별(66.7%), 미혼(60.8%) 순이었다. 자녀 여부별로는 유자녀 가구(78.0%)가 무자녀 가구(60.5%)보다 인지도가 높았다. 가구소득별로는 2,500~3,500유로 가구(73.4%), 3,500유로 가구(70.6%), 1,500유로 미만(68.0%), 1,500~2,500유로(66.8%)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 유형별로는 유자녀 미혼(80.1%), 유자녀 기혼(1자녀)(78.6%), 유자녀 기혼(2자녀 이상)(77.6%), 무자녀 기혼(63.8%) 무자녀 미혼(58.2%) 순으로 나타나 혼인상태보다 자녀 여부가 출산수당 및 출산용품 지원 관련 정책의 인지도에 더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2〉 인구정책에 대한 인지도\_3 출산 및 육아 휴직제도

(단위: %, 명)

구 분	전혀 모른다	거의 모른다	조금 안다	상당히 안다	매우 잘 안다	합계	
프랑스	5.7	9.9	38.4	32.0	14.0	(2,500)	100.0
한국	4.4	15.6	49.2	25.1	5.6	(2,500)	100.0
성별 ( $\chi^2=0.915$ )							
남성	5.9	9.7	37.7	32.6	14.1	(1,240)	100.0
여성	5.5	10.2	39.0	31.3	14.0	(1,260)	100.0
연령 ( $\chi^2=36.763$ )							
20~24세	4.0	9.2	40.0	29.0	17.8	(445)	100.0
25~29세	6.0	12.3	34.7	30.8	16.2	(334)	100.0
30~34세	6.0	11.7	34.5	33.0	14.8	(385)	100.0
35~39세	4.8	10.4	36.0	35.8	13.0	(461)	100.0
40~44세	5.2	7.6	41.1	34.5	11.6	(423)	100.0
45~49세	8.2	9.1	42.7	28.5	11.5	(452)	100.0
지역 ( $\chi^2=23.322$ )							
대도시	5.0	10.8	34.9	32.7	16.6	(796)	100.0
대도시의 외곽	4.9	11.8	37.9	31.0	14.3	(448)	100.0
중소도시	6.8	7.2	40.6	32.0	13.5	(725)	100.0
농어촌	5.8	10.7	41.1	31.6	10.7	(531)	100.0
교육 ( $\chi^2=39.494^{***}$ )							
(2~7)	5.8	11.1	41.6	23.6	17.8	(567)	100.0
(8~13)	6.8	10.6	37.8	31.3	13.6	(720)	100.0
(14~17)	6.3	10.1	37.2	34.9	11.5	(505)	100.0
(18~25)	4.0	8.2	37.3	37.3	13.3	(708)	100.0
혼인상태 ( $\chi^2=87.815^{***}$ )							
미혼	9.6	11.4	41.6	26.2	11.2	(771)	100.0

구 분	전혀 모른다	거의 모른다	조금 안다	상당히 안다	매우 잘 안다	합계	
동거/사실혼	5.6	11.3	38.4	31.6	13.1	(823)	100.0
법률혼	2.2	6.9	34.0	39.2	17.7	(729)	100.0
이혼/별거/사별	3.4	9.6	42.4	28.8	15.8	(177)	100.0
자녀 여부 ( $\chi^2=105.316^{***}$ )							
자녀 있음	2.5	7.5	36.0	37.3	16.6	(1,305)	100.0
자녀 없음	9.1	12.6	41.0	26.1	11.2	(1,195)	100.0
취업 여부 ( $\chi^2=12.929^*$ )							
취업	5.5	9.8	37.7	33.5	13.5	(2,035)	100.0
비취업	6.7	10.3	41.5	25.2	16.3	(465)	100.0
가구소득 ( $\chi^2=46.723^{***}$ )							
1500유로 미만	8.5	10.8	43.4	22.3	15.0	(493)	100.0
1500~2500유로 미만	5.7	10.6	40.6	31.2	11.9	(689)	100.0
2500~3500유로 미만	5.4	9.3	37.3	34.8	13.2	(569)	100.0
3500유로 이상	4.0	9.2	33.9	36.8	16.0	(749)	100.0
가구 유형 ( $\chi^2=115.862^{***}$ )							
무자녀 미혼	10.5	11.8	42.0	24.9	10.8	(676)	100.0
유자녀 미혼	3.2	8.4	38.9	35.8	13.7	(95)	100.0
무자녀 기혼 <sup>1)</sup>	7.3	13.5	39.7	27.7	11.8	(519)	100.0
유자녀 기혼(1자녀)	2.3	7.2	36.9	38.3	15.3	(515)	100.0
유자녀 기혼(2자녀 이상)	2.6	7.6	35.0	36.8	18.0	(695)	100.0

주: \* p<0.05, \*\* p<0.01, \*\*\* p<0.001

1) 미혼 이외의 모든 변수(법률혼/사실혼(동거)/사별/이혼/별거)를 포함함.

2)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chi^2$ 값을 제시하지 않음.

3) 각 항목의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출처: ‘결혼, 출산, 육아에 관한 인식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원자료 분석.

‘출산 및 육아 휴직제도’에 대한 인지도 정도를 살펴본 결과, 응답자의 84.4%가 알고 있다(조금 안다+상당히 안다+ 매우 잘 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한국(79.9%)과 비교하여 4.5%p 높은 수준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세부 집단별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40~44세(87.2%), 20~24세(86.8%), 35~39세(84.8%), 30~34세(82.3%), 45~49세(82.7%), 25~29세(81.7%)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중소도시 86.1%, 대도시 84.2%, 농어촌이 83.4%, 대도시 외곽 83.2% 순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별로는 법률혼 응답자의 90.9%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인지도가 세부 집단 중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이혼/별거/사별 87.0%, 동거/사실혼 83.1%, 미혼 79.0% 순이다. 또한, 유

자녀 가구(89.9%)가 무자녀 가구(78.3%)보다, 취업자(84.7%)가 비취업자(83.0%)보다 제도의 인지도가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는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출산 및 육아 휴직제도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유형별로는 유자녀 기혼(1자녀) 90.5%, 유자녀 기혼(2자녀 이상) 89.8%, 유자녀 미혼 88.4%, 무자녀 기혼 79.2%, 무자녀 미혼은 77.7% 순으로 나타나 혼인 여부보다 자녀 여부가 출산 및 육아 휴직제도'의 인지도에 더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3〉 인구정책에 대한 인지도\_4) 보육 지원(보육시설 확충, 보육료 지원 등)

(단위: %, 명)

구 분	전혀 모른다	거의 모른다	조금 안다	상당히 안다	매우 잘 안다	합계	
프랑스	10.6	19.3	36.8	23.7	9.6	(2,500)	100.0
한국	7.8	23.2	44.6	20.6	3.8	(2,500)	100.0
성별 ( $\chi^2=6.494$ )							
남성	9.9	18.1	36.8	25.4	9.8	(1,240)	100.0
여성	11.3	20.6	36.8	22.0	9.3	(1,260)	100.0
연령 ( $\chi^2=37.419$ )							
20~24세	7.4	18.9	33.5	26.1	14.2	(445)	100.0
25~29세	10.2	18.3	38.6	24.0	9.0	(334)	100.0
30~34세	11.9	18.7	33.0	24.9	11.4	(385)	100.0
35~39세	9.5	20.0	39.0	23.6	7.8	(461)	100.0
40~44세	11.1	18.0	39.5	24.1	7.3	(423)	100.0
45~49세	13.7	21.7	37.2	19.7	7.7	(452)	100.0
지역 ( $\chi^2=21.065$ )							
대도시	9.2	18.0	35.9	24.6	12.3	(796)	100.0
대도시의 외곽	10.3	21.0	33.7	25.4	9.6	(448)	100.0
중소도시	11.4	18.8	38.2	22.9	8.7	(725)	100.0
농어촌	12.1	20.7	38.8	21.8	6.6	(531)	100.0
교육 ( $\chi^2=36.061$ )							
(2~7)	10.4	15.2	36.7	24.2	13.6	(567)	100.0
(8~13)	12.1	19.2	35.7	23.9	9.2	(720)	100.0
(14~17)	11.5	21.8	40.6	18.6	7.5	(505)	100.0
(18~25)	8.8	21.0	35.3	26.7	8.2	(708)	100.0
혼인상태 ( $\chi^2=57.333$ )							
미혼	13.9	22.7	37.1	18.4	7.9	(771)	100.0
동거/사실혼	10.8	20.9	35.5	24.2	8.6	(823)	100.0
법률혼	7.3	14.5	37.6	29.1	11.5	(729)	100.0

구 분	전혀 모른다	거의 모른다	조금 안다	상당히 안다	매우 잘 안다	합계
이혼/별거/사별	9.6	16.9	38.4	22.0	13.0	(177) 100.0
자녀 여부 ( $\chi^2=94.082^{***}$ )						
자녀 있음	7.0	15.3	38.2	29.0	10.5	(1,305) 100.0
자녀 없음	14.6	23.7	35.3	17.8	8.5	(1,195) 100.0
취업 여부 ( $\chi^2=10.746$ )						
취업	10.3	19.6	36.4	24.7	9.0	(2,035) 100.0
비취업	12.0	18.1	38.7	19.1	12.0	(465) 100.0
가구소득 ( $\chi^2=19.692$ )						
1500유로 미만	12.4	19.9	34.5	21.1	12.2	(493) 100.0
1500~2500유로 미만	12.2	20.0	37.2	22.1	8.6	(689) 100.0
2500~3500유로 미만	10.2	17.4	39.2	25.3	7.9	(569) 100.0
3500유로 이상	8.4	19.8	36.2	25.6	10.0	(749) 100.0
가구 유형 ( $\chi^2=109.020^{***}$ )						
무자녀 미혼	14.9	23.1	37.1	17.0	7.8	(676) 100.0
유자녀 미혼	6.3	20.0	36.8	28.4	8.4	(95) 100.0
무자녀 기혼 <sup>1)</sup>	14.3	24.5	32.9	18.9	9.4	(519) 100.0
유자녀 기혼(1자녀)	5.8	14.4	43.1	27.6	9.1	(515) 100.0
유자녀 기혼(2자녀 이상)	7.9	15.4	34.7	30.2	11.8	(695) 100.0

주: \* p<0.05, \*\* p<0.01, \*\*\* p<0.001

1) 미혼 이외의 모든 변수(법률혼/사실혼(동거)/사별/이혼/별거)를 포함함.

2)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chi^2$ 값을 제시하지 않음.

3) 각 항목의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출처: “결혼, 출산, 육아에 관한 인식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원자료 분석.

‘보육 지원 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살펴본 결과, 응답자의 70.1%가 알고 있다(조금 안다+상당히 안다+ 매우 잘 안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한국(69.0%)과 유사한 수준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세부 집단별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24세(73.8%), 25~29세(71.6%), 40~44세(70.9%), 35~39세(70.4%), 30~34세(69.3%), 45~49세(64.6%)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도시 72.8%, 중소도시 69.8%, 대도시 외곽 68.7%, 농어촌이 67.2% 순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별로는 법률혼이 78.2%로 인지도가 가장 높았고, 이어 이혼/별거/사별 73.4%, 동거/사실혼은 68.3%, 미혼이 63.4% 순으로 보육 지원 제도를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여부별로는 유자녀 가구(77.7%)가 무자녀 가구(61.6%)보다 그리고 취업자(70.1%)가 비취업자(69.8%)보다

보육 지원 제도의 인지도가 높았다. 가구 유형별로는 보육 지원제도의 인지 비율이 유자녀 기혼(1자녀) 79.8%, 유자녀 기혼(2자녀 이상) 76.7%, 유자녀 미혼 73.6%, 무자녀 미혼 61.9%, 무자녀 기혼 61.2% 순으로 나타나, 혼인 여부보다 자녀 여부가 보육 지원 제도의 인지도에 더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4〉 인구정책에 대한 인지도\_5) 자녀에 대한 수당(아동수당, 가족수당 등)

(단위: %, 명)

구 분	전혀 모른다	거의 모른다	조금 안다	상당히 안다	매우 잘 안다	합계	
프랑스	6.2	11.0	37.2	30.4	15.2	(2,500)	100.0
한국	7.2	20.9	42.3	24.3	5.4	(2,500)	100.0
성별 ( $\chi^2=2.127$ )							
남성	6.5	10.2	36.8	31.0	15.5	(1,240)	100.0
여성	6.0	11.7	37.6	29.8	14.9	(1,260)	100.0
연령 ( $\chi^2=61.225^{***}$ )							
20~24세	5.6	9.2	33.9	26.7	24.5	(445)	100.0
25~29세	6.9	14.4	34.7	30.8	13.2	(334)	100.0
30~34세	7.3	11.2	35.1	30.9	15.6	(385)	100.0
35~39세	3.9	10.2	43.0	30.6	12.4	(461)	100.0
40~44세	5.2	10.6	35.7	35.2	13.2	(423)	100.0
45~49세	8.6	11.3	39.6	28.5	11.9	(452)	100.0
지역 ( $\chi^2=26.686^{**}$ )							
대도시	6.3	11.9	32.4	30.7	18.7	(796)	100.0
대도시의 외곽	5.4	12.1	37.7	30.6	14.3	(448)	100.0
중소도시	6.1	8.7	40.7	29.7	14.9	(725)	100.0
농어촌	7.0	11.9	39.2	30.9	11.1	(531)	100.0
교육 ( $\chi^2=31.771^{**}$ )							
(2~7)	6.2	8.6	35.3	28.9	21.0	(567)	100.0
(8~13)	6.9	11.7	37.2	30.6	13.6	(720)	100.0
(14~17)	6.5	13.9	39.8	27.3	12.5	(505)	100.0
(18~25)	5.2	10.2	36.9	33.6	14.1	(708)	100.0
혼인상태 ( $\chi^2=58.723^{***}$ )							
미혼	9.5	14.1	35.9	26.3	14.1	(771)	100.0
동거/사실혼	6.4	11.3	37.9	30.1	14.2	(823)	100.0
법률혼	2.9	7.7	36.6	35.9	16.9	(729)	100.0
이혼/별거/사별	4.5	9.6	41.8	26.6	17.5	(177)	100.0
자녀 여부 ( $\chi^2=121.331^{***}$ )							
자녀 있음	2.5	7.7	36.8	36.0	17.0	(1,305)	100.0

구 분	전혀 모른다	거의 모른다	조금 안다	상당히 안다	매우 잘 안다	합계
자녀 없음	10.2	14.6	37.7	24.3	13.2	(1,195) 100.0
취업 여부 ( $\chi^2=9.600^*$ )						
취업	5.9	11.3	37.3	31.1	14.3	(2,035) 100.0
비취업	7.5	9.7	36.6	27.3	18.9	(465) 100.0
가구소득 ( $\chi^2=31.958^*$ )						
1500유로 미만	8.5	9.7	40.6	22.3	18.9	(493) 100.0
1500~2500유로 미만	6.1	12.2	35.1	32.7	13.9	(689) 100.0
2500~3500유로 미만	4.7	10.4	39.7	30.8	14.4	(569) 100.0
3500유로 이상	5.9	11.2	35.0	33.4	14.6	(749) 100.0
가구 유형 ( $\chi^2=139.332^{***}$ )						
무자녀 미혼	10.4	15.5	36.5	24.3	13.3	(676) 100.0
유자녀 미혼	3.2	4.2	31.6	41.1	20.0	(95) 100.0
무자녀 기혼 <sup>1)</sup>	10.0	13.5	39.1	24.3	13.1	(519) 100.0
유자녀 기혼(1자녀)	2.7	10.9	38.8	33.2	14.4	(515) 100.0
유자녀 기혼(2자녀 이상)	2.3	5.8	36.0	37.4	18.6	(695) 100.0

주: \*  $p<0.05$ , \*\*  $p<0.01$ , \*\*\*  $p<0.001$

1) 미혼 이외의 모든 변수(법률훈/사실혼(동거)/사별/이혼/별거)를 포함함.

2)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chi^2$ 값을 제시하지 않음.

3) 각 항목의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출처: “결혼, 출산, 육아에 관한 인식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원자료 분석.

자녀에 대한 수당 정책에 대한 인지도를 살펴본 결과, 프랑스의 응답자의 82.8%가 알고 있다(조금 안다+상당히 안다+ 매우 잘 안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한국(72.0%)과 비교하여 10.8%p 높은 수준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세부 집단별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5~39세(86.0%), 20~24세(85.1%), 40~44세(84.1%), 30~34세(81.6%), 45~49세(80.0%), 25~29세(78.7%) 순으로 자녀에 대한 수당 정책을 안다고 응답하였다. 지역별로는 중소도시 85.3%, 대도시 외곽 82.6%, 대도시 81.8%, 농어촌이 81.2% 순으로 자녀에 대한 수당 정책을 안다고 응답하였다. 혼인상태별로는 법률훈 89.4%, 이혼/별거/사별 85.9%, 동거/사실혼은 82.2%, 미혼이 76.3% 순으로 자녀에 대한 수당 정책을 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유자녀 가구(89.8%)가 무자녀 가구(75.2%)보다 자녀에 대한 수당 정책을 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

났다. 취업자(82.7%)와 비취업자(82.8%)의 인지도는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가구 유형별로는 유자녀 미혼 92.7%, 유자녀 기혼(2자녀 이상) 92.0%, 유자녀 기혼(1자녀) 86.4%, 무자녀 기혼 76.5%, 무자녀 미혼 74.1% 순으로 나타나 혼인 여부보다 자녀 여부가 자녀에 대한 수당의 인지도에 더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5〉 인구정책에 대한 인지도\_6) 조세 혜택(세금 경감)

(단위: %, 명)

구 분	전혀 모른다	거의 모른다	조금 안다	상당히 안다	매우 잘 안다	합계
프랑스	10.1	15.8	35.4	27.0	11.7	(2,500) 100.0
한국	10.9	32.9	39.0	15.0	2.2	(2,500) 100.0
성별 ( $\chi^2=1.462$ )						
남성	9.7	15.9	34.8	27.4	12.3	(1,240) 100.0
여성	10.5	15.7	36.0	26.6	11.2	(1,260) 100.0
연령 ( $\chi^2=39.782^{**}$ )						
20~24세	11.9	17.3	31.0	24.3	15.5	(445) 100.0
25~29세	9.6	19.5	32.3	26.3	12.3	(334) 100.0
30~34세	11.7	14.8	31.9	29.6	11.9	(385) 100.0
35~39세	7.6	14.3	38.6	27.5	11.9	(461) 100.0
40~44세	8.3	13.0	38.5	31.2	9.0	(423) 100.0
45~49세	11.5	16.6	38.7	23.5	9.7	(452) 100.0
지역 ( $\chi^2=11.587$ )						
대도시	9.5	15.1	32.8	29.6	12.9	(796) 100.0
대도시의 외곽	10.9	16.1	35.5	27.0	10.5	(448) 100.0
중소도시	11.2	15.2	37.2	25.0	11.4	(725) 100.0
농어촌	8.7	17.5	36.7	25.8	11.3	(531) 100.0
교육 ( $\chi^2=30.319^{**}$ )						
(2~7)	11.1	14.1	35.8	25.0	13.9	(567) 100.0
(8~13)	11.5	16.7	35.7	24.7	11.4	(720) 100.0
(14~17)	10.3	18.8	37.0	24.0	9.9	(505) 100.0
(18~25)	7.6	14.1	33.6	33.1	11.6	(708) 100.0
혼인상태 ( $\chi^2=120.354^{***}$ )						
미혼	15.8	20.8	35.7	18.7	9.1	(771) 100.0
동거/사실혼	9.2	16.2	34.6	29.4	10.6	(823) 100.0
법률혼	5.9	9.9	35.0	34.0	15.2	(729) 100.0
이혼/별거/사별	6.2	16.9	39.5	23.2	14.1	(177) 100.0
자녀 여부 ( $\chi^2=152.563^{***}$ )						
자녀 있음	5.1	12.0	35.0	34.0	13.9	(1,305) 100.0

구 분	전혀 모른다	거의 모른다	조금 안다	상당히 안다	매우 잘 안다	합계
자녀 없음	15.5	20.0	35.8	19.3	9.4	(1,195) 100.0
취업 여부 ( $\chi^2=22.128^{***}$ )						
취업	9.1	15.2	36.1	28.3	11.3	(2,035) 100.0
비취업	14.2	18.3	32.5	21.3	13.8	(465) 100.0
가구소득 ( $\chi^2=49.275^{***}$ )						
1500유로 미만	14.6	16.6	35.1	20.7	13.0	(493) 100.0
1500~2500유로 미만	10.7	17.0	38.2	23.9	10.2	(689) 100.0
2500~3500유로 미만	8.8	17.6	34.8	28.6	10.2	(569) 100.0
3500유로 이상	7.5	12.8	33.5	32.7	13.5	(749) 100.0
가구 유형 ( $\chi^2=172.295^{***}$ )						
무자녀 미혼	17.2	21.0	35.8	17.2	8.9	(676) 100.0
유자녀 미혼	6.3	18.9	34.7	29.5	10.5	(95) 100.0
무자녀 기혼 <sup>1)</sup>	13.3	18.7	35.8	22.2	10.0	(519) 100.0
유자녀 기혼(1자녀)	4.9	10.7	34.4	37.7	12.4	(515) 100.0
유자녀 기혼(2자녀 이상)	5.2	11.9	35.5	31.9	15.4	(695) 100.0

주: \*  $p<0.05$ , \*\*  $p<0.01$ , \*\*\*  $p<0.001$

1) 미혼 이외의 모든 변수(법률혼/사실혼(동거)/사별/이혼/별거)를 포함함.

2)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chi^2$ 값을 제시하지 않음.

3) 각 항목의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출처: “결혼, 출산, 육아에 관한 인식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원자료 분석.

조세 혜택(세금 경감)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응답자의 74.1%가 알고 있다(조금 안다+상당히 안다+ 매우 잘 안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한국(56.2%)과 비교하여 17.9%p 높은 수준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세부 집단별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40~44세(78.7%), 35~39세(78.0%), 30~34세(73.4%), 45~49세(71.9%), 25~29세(70.9%), 20~24세(70.8%) 순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별로는 법률혼 응답자의 84.2%가 조세 혜택(세금 경감)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이어 이혼/별거/사별 76.8%, 동거/사실혼 74.6%, 미혼 63.5%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자녀 가구(82.9%)가 무자녀 가구(64.5%)보다 그리고 취업자(75.7%)가 비취업자(67.6%)보다 조세 혜택(세금 경감)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가구소득 수준별로는 가구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세금 감면 제도의 인지도

가 높았다. 가구 유형별로는 유자녀 기혼(1자녀) 84.5%, 유자녀 기혼(2자녀 이상) 82.8%, 유자녀 미혼이 74.7%, 무자녀 기혼 68.0%, 무자녀 미혼 61.9% 순으로 나타나 혼인 여부보다 자녀 여부가 조세 혜택(세금 감감)과 관련된 정책의 인지도에 더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6〉 인구정책에 대한 인지도\_7) 다자녀 가구 추가 지원

(단위: %, 명)

구 분	전혀 모른다	거의 모른다	조금 안다	상당히 안다	매우 잘 안다	합계	
프랑스	9.9	14.0	35.9	27.8	12.4	(2,500)	100.0
한국	8.1	22.4	43.9	21.0	4.5	(2,500)	100.0
성별 ( $\chi^2=5.610$ )							
남성	9.7	12.8	35.2	29.0	13.2	(1,240)	100.0
여성	10.2	15.2	36.5	26.7	11.5	(1,260)	100.0
연령 ( $\chi^2=56.817^{***}$ )							
20~24세	6.3	10.6	32.8	32.1	18.2	(445)	100.0
25~29세	8.7	13.5	31.7	30.5	15.6	(334)	100.0
30~34세	11.9	13.0	34.5	27.8	12.7	(385)	100.0
35~39세	9.1	15.2	39.5	25.4	10.8	(461)	100.0
40~44세	10.4	15.4	37.4	27.4	9.5	(423)	100.0
45~49세	13.1	16.2	38.1	24.6	8.2	(452)	100.0
지역 ( $\chi^2=28.110^{**}$ )							
대도시	8.4	11.8	35.2	29.8	14.8	(796)	100.0
대도시의 외곽	9.2	12.5	36.2	29.0	13.2	(448)	100.0
중소도시	11.0	14.5	34.9	28.4	11.2	(725)	100.0
농어촌	11.3	17.9	38.0	23.2	9.6	(531)	100.0
교육 ( $\chi^2=42.864^{***}$ )							
(2~7)	9.5	12.5	35.4	24.3	18.2	(567)	100.0
(8~13)	10.8	13.6	36.3	28.8	10.6	(720)	100.0
(14~17)	11.1	17.6	38.0	23.8	9.5	(505)	100.0
(18~25)	8.5	13.0	34.3	32.6	11.6	(708)	100.0
혼인상태 ( $\chi^2=36.954^{***}$ )							
미혼	13.9	14.0	37.2	24.8	10.1	(771)	100.0
동거/사실혼	9.6	14.2	36.1	28.1	12.0	(823)	100.0
법률혼	6.4	13.3	34.6	30.2	15.5	(729)	100.0
이혼/별거/사별	8.5	15.8	34.5	30.5	10.7	(177)	100.0
자녀 여부 ( $\chi^2=36.290^{***}$ )							
자녀 있음	7.2	13.3	35.6	31.7	12.3	(1,305)	100.0
자녀 없음	12.9	14.8	36.2	23.6	12.5	(1,195)	100.0
취업 여부 ( $\chi^2=7.050$ )							

구 분	전혀 모른다	거의 모른다	조금 안다	상당히 안다	매우 잘 안다	합계	
취업	9.7	13.9	36.1	28.6	11.7	(2,035)	100.0
비취업	11.0	14.4	34.8	24.5	15.3	(465)	100.0
가구소득 ( $\chi^2=14.404$ )							
1500유로 미만	12.0	14.0	35.5	24.5	14.0	(493)	100.0
1500~2500유로 미만	11.2	12.3	36.3	29.0	11.2	(689)	100.0
2500~3500유로 미만	7.4	14.8	37.1	29.0	11.8	(569)	100.0
3500유로 이상	9.3	15.0	34.8	28.0	12.8	(749)	100.0
가구 유형 ( $\chi^2=53.455^{***}$ )							
무자녀 미혼	14.5	13.8	37.1	24.1	10.5	(676)	100.0
유자녀 미혼	9.5	15.8	37.9	29.5	7.4	(95)	100.0
무자녀 기혼 <sup>1)</sup>	10.8	16.2	35.1	22.9	15.0	(519)	100.0
유자녀 기혼(1자녀)	7.2	11.5	37.7	31.5	12.2	(515)	100.0
유자녀 기혼(2자녀 이상)	6.9	14.2	33.7	32.2	12.9	(695)	100.0

주: \* p<0.05, \*\* p<0.01, \*\*\* p<0.001

1) 미혼 이외의 모든 변수(법률혼/사실혼(동거)/사별/이혼/별거)를 포함함.

2)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chi^2$ 값을 제시하지 않음.

3) 각 항목의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출처: “결혼, 출산, 육아에 관한 인식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원자료 분석.

다자녀 가구 추가 지원 정책에 대해 인지하는 정도를 살펴본 결과, 응답자의 76.1%가 알고 있다(조금 안다+상당히 안다+ 매우 잘 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한국(69.4%)과 비교하여 6.7%p 높은 수준인데, 특히 ‘매우 잘 안다’의 비율은 7.9%p 높게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세부 집단별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령이 낮을수록 다자녀 가구 추가 지원 정책의 인지 비율이 높아졌다. 20~24세(83.1%), 25~29세(77.8%), 35~39세(75.7%), 30~34세(75.0%), 40~44세(74.3%), 45~49세(70.9%)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도시 79.8%, 대도시 외곽 78.4%, 중소도시 74.5%, 농어촌 70.8% 순으로 다자녀 가구 추가 지원 정책에 대해 인지한다고 응답하였다. 혼인상태별로는 법률혼이 80.3%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동거/사실혼 76.2%, 이혼/별거/사별 75.7%, 미혼 72.1% 순이다. 자녀 여부별로는 유자녀 가구(79.6%)가 무자녀 가구(72.3%)보다 인지 정도가 높았다. 가구 유형별로는 유자녀 기혼(1자녀)

81.4%, 유자녀 기혼(2자녀 이상) 78.8%, 유자녀 미혼이 74.8%, 무자녀 기혼은 73.0%, 무자녀 미혼 71.7% 순으로 나타나 혼인 여부보다 자녀 여부가 조세 혜택(세금 경감)과 관련된 정책의 인지도에 더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7) 인구정책에 대한 인지도\_8) 지역 인구 균형을 위한 정책

(단위: %, 명)

구 분	전혀 모른다	거의 모른다	조금 안다	상당히 안다	매우 잘 안다	합계	
프랑스	19.7	18.6	32.5	19.4	9.8	(2,500)	100.0
한국	19.6	38.4	30.0	9.7	2.2	(2,500)	100.0
성별 ( $\chi^2=28.188^{***}$ )							
남성	16.7	17.9	31.9	21.9	11.6	(1,240)	100.0
여성	22.7	19.3	33.0	17.0	8.0	(1,260)	100.0
연령 ( $\chi^2=50.008^{***}$ )							
20~24세	16.4	16.4	32.1	20.2	14.8	(445)	100.0
25~29세	16.5	19.8	30.8	20.4	12.6	(334)	100.0
30~34세	20.8	16.6	27.8	24.7	10.1	(385)	100.0
35~39세	19.3	18.4	36.4	18.4	7.4	(461)	100.0
40~44세	21.3	20.1	32.4	18.2	8.0	(423)	100.0
45~49세	23.5	20.4	34.1	15.5	6.6	(452)	100.0
지역 ( $\chi^2=46.971^{***}$ )							
대도시	16.6	16.6	30.0	22.7	14.1	(796)	100.0
대도시의 외곽	22.1	17.2	31.7	20.3	8.7	(448)	100.0
중소도시	21.1	20.3	32.7	18.1	7.9	(725)	100.0
농어촌	20.5	20.5	36.5	15.4	7.0	(531)	100.0
교육 ( $\chi^2=53.201^{***}$ )							
(2~7)	15.0	14.6	32.8	21.7	15.9	(567)	100.0
(8~13)	20.0	19.2	33.1	19.4	8.3	(720)	100.0
(14~17)	23.0	21.0	34.1	16.0	5.9	(505)	100.0
(18~25)	20.9	19.5	30.5	19.9	9.2	(708)	100.0
혼인상태 ( $\chi^2=60.214^{***}$ )							
미혼	25.9	19.7	32.9	14.4	7.0	(771)	100.0
동거/사실혼	19.2	18.6	31.1	21.0	10.1	(823)	100.0
법률혼	14.5	16.9	33.2	23.9	11.5	(729)	100.0
이혼/별거/사별	16.4	20.9	33.9	15.3	13.6	(177)	100.0
자녀 여부 ( $\chi^2=56.090^{***}$ )							
자녀 있음	15.0	17.4	34.2	23.2	10.2	(1,305)	100.0
자녀 없음	24.9	19.9	30.6	15.2	9.4	(1,195)	100.0
취업 여부 ( $\chi^2=4.145$ )							

구 분	전혀 모른다	거의 모른다	조금 안다	상당히 안다	매우 잘 안다	합계	
취업	19.2	18.7	33.0	19.6	9.5	(2,035)	100.0
비취업	22.2	18.1	30.1	18.5	11.2	(465)	100.0
가구소득 ( $\chi^2=25.152$ )							
1500유로 미만	22.5	15.6	32.0	17.2	12.6	(493)	100.0
1500~2500유로 미만	21.9	19.6	32.1	18.7	7.7	(689)	100.0
2500~3500유로 미만	15.8	18.3	34.1	22.8	9.0	(569)	100.0
3500유로 이상	18.8	19.9	31.9	18.8	10.5	(749)	100.0
가구 유형 ( $\chi^2=79.611$ )							
무자녀 미혼	26.9	20.0	32.0	13.8	7.4	(676)	100.0
유자녀 미혼	18.9	17.9	40.0	18.9	4.2	(95)	100.0
무자녀 기혼 <sup>1)</sup>	22.2	19.8	28.9	17.1	11.9	(519)	100.0
유자녀 기혼(1자녀)	12.2	16.5	35.5	24.7	11.1	(515)	100.0
유자녀 기혼(2자녀 이상)	16.5	18.0	32.4	22.7	10.4	(695)	100.0

주: \* p<0.05, \*\* p<0.01, \*\*\* p<0.001

1) 미혼 이외의 모든 변수(법률혼/사실혼(동거)/사별/이혼/별거)를 포함함.

2)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chi^2$ 값을 제시하지 않음.

3) 각 항목의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출처: “결혼, 출산, 육아에 관한 인식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원자료 분석.

지역 인구 균형 정책에 대한 인지 정도를 살펴본 결과, 응답자의 61.7%가 정책을 알고 있다(조금 안다+상당히 안다+ 매우 잘 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한국(41.9%)과 비교하여 19.8%p 높은 수준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세부 집단별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남성(65.4%)이 여성(58.0%)보다, 그리고 유자녀 가구(67.6%)가 무자녀 가구(55.2%)보다 지역 인구 균형 정책을 인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지역 인구 균형 정책을 인지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20~24세(67.1%), 25~29세(63.8%), 30~34세(62.6%), 35~39세(62.2%), 40~44세(58.6%), 45~49세(56.2%)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도시 66.8%, 대도시 외곽 60.7%, 농어촌 58.9%, 중소도시 58.7% 순으로, 대도시 거주자의 인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별로는 법률혼 68.6%, 이혼/별거/사별 62.8%, 동거/사실혼 62.2%, 미혼이 54.3% 순으로 지역 인구 균형 정책을 인지한다고 응답하

였다. 가구소득 수준별로는 2,500~3,500유로 미만 65.9%, 1,500유로 미만 61.8%, 3,500유로 이상 61.2%, 1,500~2,500유로 58.5% 순으로 인지도가 높게 나타났다. 가구 유형별로는 유자녀 기혼(1자녀) 71.3%, 유자녀 기혼(2자녀 이상) 65.5%, 유자녀 미혼이 63.1%, 무자녀 기혼 57.9%, 무자녀 미혼 53.2% 순으로 나타나 혼인 여부보다 자녀 여부가 지역 인구 균형 정책의 인지도에 더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 나. 인구정책에 대한 정부의 노력도

‘프랑스 정부는 출산율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정도를 살펴본 결과, 응답자의 27.9%가 동의(동의한다+매우 동의한다)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한국(7.7%)과 비교하여 20.2%p 높은 수준이다.

〈표 5-48〉 ‘정부는 출산율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다’에 대한 동의 정도

(단위: %, 명)

구 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합계	
프랑스	12.1	18.6	41.4	19.1	8.8	(2,500)	100.0
한국	43.5	28.2	20.6	6.3	1.4	(2,500)	100.0
성별 ( $\chi^2=39.093^{***}$ )							
남성	11.5	16.9	38.1	22.8	10.7	(1,240)	100.0
여성	12.8	20.3	44.5	15.5	6.9	(1,260)	100.0
연령 ( $\chi^2=60.932^{***}$ )							
20~24세	6.1	19.1	42.9	18.9	13.0	(445)	100.0
25~29세	11.1	19.2	37.1	21.3	11.4	(334)	100.0
30~34세	12.5	18.4	39.0	19.5	10.6	(385)	100.0
35~39세	15.2	16.9	39.3	21.5	7.2	(461)	100.0
40~44세	15.8	18.9	40.2	18.4	6.6	(423)	100.0
45~49세	11.9	19.2	48.2	15.7	4.9	(452)	100.0

구 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합계	
지역 ( $\chi^2=32.833$ )							
대도시	10.3	17.7	39.7	22.4	9.9	(796)	100.0
대도시의 외곽	10.7	19.0	38.4	23.0	8.9	(448)	100.0
중소도시	13.5	20.0	40.8	17.0	8.7	(725)	100.0
농어촌	14.1	17.7	47.1	13.9	7.2	(531)	100.0
교육 ( $\chi^2=30.415$ )							
(2~7)	8.6	14.6	42.7	22.0	12.0	(567)	100.0
(8~13)	12.5	19.7	41.1	17.9	8.8	(720)	100.0
(14~17)	14.1	20.4	42.0	16.0	7.5	(505)	100.0
(18~25)	13.1	19.4	40.1	20.2	7.2	(708)	100.0
혼인상태 ( $\chi^2=14.947$ )							
미혼	12.2	18.5	44.5	17.8	7.0	(771)	100.0
동거/사실혼	11.7	19.4	41.6	19.0	8.4	(823)	100.0
법률혼	12.8	18.2	37.6	21.0	10.4	(729)	100.0
이혼/별거/사별	11.3	16.4	42.4	18.1	11.9	(177)	100.0
자녀 여부 ( $\chi^2=9.453$ )							
자녀 있음	13.5	19.2	38.9	19.8	8.6	(1,305)	100.0
자녀 없음	10.6	17.9	44.0	18.4	9.0	(1,195)	100.0
취업 여부 ( $\chi^2=2.119$ )							
취업	11.9	19.0	41.0	19.0	9.0	(2,035)	100.0
비취업	12.9	16.8	42.8	19.6	8.0	(465)	100.0
가구소득 ( $\chi^2=15.432$ )							
1500유로 미만	12.6	15.2	42.2	19.9	10.1	(493)	100.0
1500~2500유로 미만	12.6	16.1	43.5	19.3	8.4	(689)	100.0
2500~3500유로 미만	11.4	20.2	42.0	18.3	8.1	(569)	100.0
3500유로 이상	11.9	21.9	38.3	19.1	8.8	(749)	100.0
가구 유형 ( $\chi^2=25.999$ )							
무자녀 미혼	11.2	18.3	45.4	17.8	7.2	(676)	100.0
유자녀 미혼	18.9	20.0	37.9	17.9	5.3	(95)	100.0
무자녀 기혼 <sup>1)</sup>	9.8	17.3	42.2	19.3	11.4	(519)	100.0
유자녀 기혼(1자녀)	11.1	19.4	38.3	21.6	9.7	(515)	100.0
유자녀 기혼(2자녀 이상)	14.5	19.0	39.6	18.7	8.2	(695)	100.0

주: \* p<0.05, \*\* p<0.01, \*\*\* p<0.001

1) 미혼 이외의 모든 변수(법률혼/사실혼(동거)/사별/이혼/별거)를 포함함.

2)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chi^2$ 값을 제시하지 않음.

3) 각 항목의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출처: “결혼, 출산, 육아에 관한 인식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원자료 분석.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세부 집단별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남성(33.5%)이 여성(22.4%)보다 정부가 출산율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았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비교적 연령이 낮을수록 정부가 출산율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한다는 의견에 동의한 비율이 높았다. 25~29세(32.7%), 20~24세(31.9%), 30~34세(30.1%), 35~39세(28.7%), 40~44세(25.0%), 45~49세(20.6%)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와 대도시 외곽 거주자의 동의 비율이 31.9~32.3%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중소도시와 농어촌 거주자의 동의 비율이 21.1~25.7%로 비교적 대도시에서 정부가 출산율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였다.

### 3. 일·생활 균형 정책 활용 가능성

프랑스에서 일·생활 균형 정책의 활용 가능성에 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여성의 육아휴직은 응답자의 63.7%가 활용 가능(매우 자유롭게 활용 가능+비교적 자유롭게 활용 가능+어느 정도 활용 가능)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한국(59.4%)과 비교하여 4.3%p 높은 수준이다.

〈표 5-49〉 일·생활 균형 정책의 활용 가능성\_1) 여성의 육아휴직

(단위: %, 명)

구 분	매우 자유롭게 활용 가능	비교적 자유롭게 활용 가능	어느 정도 활용 가능	대체로 활용하지 못함	전혀 활용하지 못함	전혀 모르겠음	합계
프랑스	19.6	17.8	26.3	15.0	8.9	12.4	(2,500) 100.0
한국	6.0	17.1	36.3	24.8	10.2	5.6	(2,500) 100.0
성별 ( $\chi^2=14.674$ )							
남성	18.1	16.8	26.7	14.9	10.8	12.7	(1,240) 100.0
여성	21.2	18.7	25.9	15.1	7.1	12.1	(1,260) 100.0
연령 ( $\chi^2=52.427$ )							
20~24세	16.9	17.3	21.8	17.3	11.9	14.8	(445) 100.0
25~29세	16.8	19.5	22.2	17.4	10.5	13.8	(334) 100.0
30~34세	17.7	18.2	24.7	16.6	11.4	11.4	(385) 100.0

구 분	매우 자유롭게 활용 가능함	비교적 자유롭게 활용 가능함	어느 정도 활용 가능함	대체로 활용하지 못함	전혀 활용하지 못함	모르겠음	합계
35~39세	22.8	16.7	29.3	14.5	8.0	8.7	(461) 100.0
40~44세	20.8	17.0	29.6	13.2	7.1	12.3	(423) 100.0
45~49세	21.9	18.4	29.0	11.7	5.3	13.7	(452) 100.0
지역 ( $\chi^2=29.282$ )							
대도시	17.5	17.0	28.0	16.1	8.9	12.6	(796) 100.0
대도시의 외곽	19.6	21.7	24.1	11.4	12.7	10.5	(448) 100.0
중소도시	22.3	17.0	25.7	15.9	6.8	12.4	(725) 100.0
농어촌	19.2	16.8	26.4	15.3	8.7	13.7	(531) 100.0
교육 ( $\chi^2=54.573$ )							
(2~7)	18.2	11.1	26.1	18.3	11.3	15.0	(567) 100.0
(8~13)	17.1	17.2	28.9	16.3	7.9	12.6	(720) 100.0
(14~17)	23.4	19.4	25.1	13.9	7.3	10.9	(505) 100.0
(18~25)	20.8	22.5	24.6	11.9	9.2	11.2	(708) 100.0
혼인상태 ( $\chi^2=59.484$ )							
미혼	17.3	17.9	24.6	14.3	7.1	18.8	(771) 100.0
동거/사실혼	18.7	17.1	26.2	17.5	10.1	10.3	(823) 100.0
법률혼	23.2	18.4	28.0	12.9	9.6	8.0	(729) 100.0
이혼/별거/사별	19.8	17.5	26.6	15.3	8.5	12.4	(177) 100.0
자녀 여부 ( $\chi^2=64.709$ )							
자녀 있음	22.1	19.0	27.2	15.1	9.0	7.5	(1,305) 100.0
자녀 없음	16.9	16.4	25.3	14.9	8.8	17.7	(1,195) 100.0
취업 여부 ( $\chi^2=53.199$ )							
취업	20.4	18.4	26.7	14.9	9.3	10.2	(2,035) 100.0
비취업	16.1	14.8	24.3	15.5	7.1	22.2	(465) 100.0
가구소득 ( $\chi^2=58.264$ )							
1500유로 미만	16.2	14.8	25.8	16.4	8.1	18.7	(493) 100.0
1500~2500유로 미만	20.0	16.8	24.7	15.1	8.6	14.8	(689) 100.0
2500~3500유로 미만	17.2	17.2	30.2	16.0	10.0	9.3	(569) 100.0
3500유로 이상	23.4	21.0	25.1	13.2	8.9	8.4	(749) 100.0
가구 유형 ( $\chi^2=93.653$ )							
무자녀 미혼	17.5	17.0	24.4	13.5	7.4	20.3	(676) 100.0
유자녀 미혼	15.8	24.2	26.3	20.0	5.3	8.4	(95) 100.0
무자녀 기혼 <sup>1)</sup>	16.2	15.6	26.4	16.8	10.6	14.5	(519) 100.0
유자녀 기혼(1자녀)	22.1	15.9	27.0	16.7	9.5	8.7	(515) 100.0
유자녀 기혼(2자녀 이상)	23.0	20.6	27.5	13.2	9.2	6.5	(695) 100.0

주: \* p<0.05, \*\* p<0.01, \*\*\* p<0.001

1) 미혼 이외의 모든 변수(법률혼/사실혼(동거)/사별/이혼/별거)를 포함함.

2)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chi^2$ 값을 제시하지 않음.

3) 각 항목의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출처: “결혼, 출산, 육아에 관한 인식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원자료 분석.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세부 집단별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여성(65.8%)이 남성(61.6%)보다, 유자녀 가구(68.3%)가 무자녀 가구(58.6%)보다, 그리고 취업자(65.5%)가 비취업자(55.2%)보다 여성의 육아휴직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여성의 육아휴직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45~49세(69.3%), 35~39세(68.8%), 40~44세(67.4%), 30~34세(60.6%), 25~29세(58.5%), 20~24세(56.0%)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도시 외곽 65.4%, 중소도시 65.0%, 대도시 62.5%, 농어촌 62.4% 순으로 여성의 육아휴직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혼인상태별로는 법률혼 69.6%, 이혼/별거/사별 63.9%, 동거/사실혼 62.0%, 미혼 59.8% 순으로 여성의 육아휴직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가구소득 수준별로는 가구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여성의 육아휴직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가구 유형별로는 유자녀 기혼(2자녀 이상) 71.1%, 유자녀 미혼 66.3%, 유자녀 기혼(1자녀) 65.0%, 무자녀 미혼 58.9%, 무자녀 기혼 58.2% 순으로 여성의 육아휴직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5-50〉 일·생활 균형 정책의 활용 가능성\_2) 남성의 육아휴직

(단위: %, 명)

구 분	매우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음	비교적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음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음	대체로 활용하지 못함	전혀 활용하지 못함	모르겠음	합계
프랑스	12.7	16.5	27.3	21.4	9.1	13.0	(2,500) 100.0
한국	1.9	6.6	21.2	39.2	25.4	5.8	(2,500) 100.0
성별 ( $\chi^2=9.053$ )							
남성	11.8	16.0	27.9	20.7	10.6	12.9	(1,240) 100.0
여성	13.6	16.9	26.7	22.1	7.6	13.2	(1,260) 100.0
연령 ( $\chi^2=61.639^{***}$ )							
20~24세	8.8	12.1	25.6	26.3	12.1	15.1	(445) 100.0
25~29세	11.4	16.8	26.6	21.0	10.8	13.5	(334) 100.0

구 분	매우 자유롭게 활용 가능함	비교적 자유롭게 활용 가능함	어느 정도 활용 가능함	대체로 활용하지 못함	전혀 활용하지 못함	모르겠음	합계
30~34세	10.9	15.6	26.5	24.9	10.1	11.9	(385) 100.0
35~39세	14.3	18.0	28.2	22.8	7.4	9.3	(461) 100.0
40~44세	15.8	18.0	28.4	17.3	9.0	11.6	(423) 100.0
45~49세	14.4	18.4	28.1	16.4	6.0	16.8	(452) 100.0
지역 ( $\chi^2=18.418$ )							
대도시	12.2	17.1	28.8	19.3	10.6	12.1	(796) 100.0
대도시의 외곽	11.2	17.4	25.7	20.8	10.9	14.1	(448) 100.0
중소도시	14.2	15.6	27.7	23.3	7.3	11.9	(725) 100.0
농어촌	12.6	16.0	25.8	22.4	7.9	15.3	(531) 100.0
교육 ( $\chi^2=23.952$ )							
(2~7)	11.1	14.5	25.2	23.8	11.5	13.9	(567) 100.0
(8~13)	11.0	15.3	29.3	21.4	9.2	13.9	(720) 100.0
(14~17)	14.9	16.8	26.5	22.2	7.1	12.5	(505) 100.0
(18~25)	14.1	19.1	27.4	18.9	8.6	11.9	(708) 100.0
혼인상태 ( $\chi^2=59.816^{***}$ )							
미혼	10.9	13.5	26.1	21.8	8.8	18.9	(771) 100.0
동거/사실혼	11.2	16.9	28.2	21.9	10.3	11.5	(823) 100.0
법률혼	16.7	19.1	26.7	20.7	8.5	8.2	(729) 100.0
이혼/별거/사별	10.7	16.9	30.5	20.3	7.3	14.1	(177) 100.0
자녀 여부 ( $\chi^2=71.872^{***}$ )							
자녀 있음	14.7	19.2	28.2	20.5	9.3	8.2	(1,305) 100.0
자녀 없음	10.5	13.6	26.3	22.4	9.0	18.3	(1,195) 100.0
취업 여부 ( $\chi^2=44.601^{***}$ )							
취업	13.6	17.0	27.5	21.6	9.3	11.0	(2,035) 100.0
비취업	8.6	14.4	26.5	20.4	8.2	21.9	(465) 100.0
가구소득 ( $\chi^2=68.527^{***}$ )							
1500유로 미만	11.2	11.6	25.2	23.3	8.7	20.1	(493) 100.0
1500~2500유로 미만	10.6	14.5	27.7	21.6	10.3	15.2	(689) 100.0
2500~3500유로 미만	12.5	18.1	27.9	23.4	8.8	9.3	(569) 100.0
3500유로 이상	15.8	20.3	27.8	18.4	8.5	9.2	(749) 100.0
가구 유형 ( $\chi^2=92.816^{***}$ )							
무자녀 미혼	11.2	12.6	26.0	21.0	8.7	20.4	(676) 100.0
유자녀 미혼	8.4	20.0	26.3	27.4	9.5	8.4	(95) 100.0
무자녀 기혼 <sup>1)</sup>	9.4	14.8	26.6	24.3	9.2	15.6	(519) 100.0
유자녀 기혼(1자녀)	14.0	17.5	29.5	22.5	9.5	7.0	(515) 100.0
유자녀 기혼(2자녀 이상)	16.1	20.3	27.5	18.0	9.1	9.1	(695) 100.0

주: \* p<0.05, \*\* p<0.01, \*\*\* p<0.001

1) 미혼 이외의 모든 변수(법률혼/사실혼(동거)/사별/이혼/별거)를 포함함.

2)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chi^2$ 값을 제시하지 않음.

3) 각 항목의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출처: “결혼, 출산, 육아에 관한 인식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원자료 분석.

남성의 육아휴직은 응답자의 56.5%가 활용 가능(매우 자유롭게 활용 가능+비교적 자유롭게 활용 가능+어느 정도 활용 가능)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한국(29.7%)과 비교하여 26.8%p로 높은 수준으로 국가 간 큰 차이를 보였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세부 집단별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연령별로 살펴보면, 40~44세(62.2%), 45~49세(60.9%), 35~39세(60.5%), 25~29세(54.8%), 30~34세(53.0%), 20~24세(46.5%) 순으로 남성의 육아휴직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혼인상태별로는 법률혼 62.5%, 이혼/별거/사별 58.1%, 동거/사실혼 56.3%, 미혼 50.5% 순으로 남성의 육아휴직제도 활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자녀 가구(62.1%)가 무자녀 가구(50.4%)보다, 그리고 취업자(58.1%)가 비취업자(49.5%)보다 남성의 육아휴직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가구소득 수준별로는 가구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남성의 육아휴직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가구 유형별로는 유자녀 기혼(2자녀 이상) 63.9%, 유자녀 기혼(1자녀) 61.0%, 유자녀 미혼 54.7%, 무자녀 기혼 50.8%, 무자녀 미혼 49.8% 순으로 남성의 육아휴직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5-51〉 일·생활 균형 정책의 활용 가능성\_3) 유연근로제

(단위: %, 명)

구 분	매우 자유롭게 활용 가능함	비교적 자유롭게 활용 가능함	어느 정도 활용 가능함	대체로 활용하지 못함	전혀 활용하지 못함	모르겠음	합계
프랑스	7.9	11.0	27.2	27.3	15.2	11.4	(2,500) 100.0
한국	2.7	7.8	26.1	35.8	19.5	8.1	(2,500) 100.0
성별 ( $\chi^2=2.809$ )							
남성	7.7	11.4	27.7	27.7	14.0	11.5	(1,240) 100.0
여성	8.1	10.6	26.8	26.9	16.3	11.3	(1,260) 100.0
연령 ( $\chi^2=46.079^*$ )							
20~24세	5.2	8.5	29.0	30.3	13.5	13.5	(445) 100.0

구 분	매우 자유롭게 활용 가능함	비교적 자유롭게 활용 가능함	어느 정도 활용 가능함	대체로 활용하지 못함	전혀 활용하지 못함	모르겠음	합계
25~29세	9.0	15.0	24.6	25.1	14.4	12.0	(334) 100.0
30~34세	8.1	12.5	28.8	26.0	14.5	10.1	(385) 100.0
35~39세	6.9	10.2	25.4	30.6	19.1	7.8	(461) 100.0
40~44세	9.0	9.7	27.7	28.1	15.6	9.9	(423) 100.0
45~49세	9.7	11.3	27.7	23.0	13.5	14.8	(452) 100.0
지역 ( $\chi^2=15.496$ )							
대도시	8.5	12.1	28.8	25.3	14.4	10.9	(796) 100.0
대도시의 외곽	8.3	11.4	28.1	26.6	16.1	9.6	(448) 100.0
중소도시	8.1	10.2	27.0	29.1	14.9	10.6	(725) 100.0
농어촌	6.4	10.2	24.5	28.6	15.8	14.5	(531) 100.0
교육 ( $\chi^2=38.702^{**}$ )							
(2~7)	7.8	8.5	26.6	26.6	17.3	13.2	(567) 100.0
(8~13)	6.5	9.0	28.5	28.6	14.3	13.1	(720) 100.0
(14~17)	10.1	9.9	26.5	27.9	16.2	9.3	(505) 100.0
(18~25)	7.9	15.8	27.0	26.1	13.6	9.6	(708) 100.0
혼인상태 ( $\chi^2=39.541^{**}$ )							
미혼	7.7	10.1	28.3	26.7	11.7	15.6	(771) 100.0
동거/사실혼	6.4	12.0	26.6	28.9	16.3	9.7	(823) 100.0
법률혼	10.2	11.2	27.3	26.1	16.5	8.8	(729) 100.0
이혼/별거/사별	6.8	9.0	25.4	27.7	19.8	11.3	(177) 100.0
자녀 여부 ( $\chi^2=40.602^{**}$ )							
자녀 있음	8.5	11.3	27.4	28.9	16.3	7.6	(1,305) 100.0
자녀 없음	7.3	10.6	27.1	25.6	13.9	15.5	(1,195) 100.0
취업 여부 ( $\chi^2=41.937^{**}$ )							
취업	8.3	11.9	27.4	27.7	15.1	9.6	(2,035) 100.0
비취업	6.2	6.9	26.5	25.8	15.5	19.1	(465) 100.0
가구소득 ( $\chi^2=44.465^{**}$ )							
1500유로 미만	8.3	9.3	23.9	26.0	15.2	17.2	(493) 100.0
1500~2500유로 미만	7.1	10.3	25.7	29.8	14.5	12.6	(689) 100.0
2500~3500유로 미만	7.7	9.5	29.0	27.4	17.0	9.3	(569) 100.0
3500유로 이상	8.5	13.9	29.5	25.9	14.3	7.9	(749) 100.0
가구 유형 ( $\chi^2=74.185^{***}$ )							
무자녀 미혼	8.1	9.5	28.8	25.0	12.1	16.4	(676) 100.0
유자녀 미혼	4.2	14.7	24.2	38.9	8.4	9.5	(95) 100.0
무자녀 기혼 <sup>1)</sup>	6.2	12.1	24.9	26.4	16.2	14.3	(519) 100.0
유자녀 기혼(1자녀)	8.7	9.9	28.3	32.0	14.0	7.0	(515) 100.0
유자녀 기혼(2자녀 이상)	8.9	11.9	27.1	25.2	19.1	7.8	(695) 100.0

주: \* p<0.05, \*\* p<0.01, \*\*\* p<0.001

1) 미혼 이외의 모든 변수(법률혼/사실혼(동거)/사별/이혼/별거)를 포함함.

2)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chi^2$ 값을 제시하지 않음.

3) 각 항목의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출처: "결혼, 출산, 육아에 관한 인식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원자료 분석.

일·생활 균형 정책의 하나인 유연근로제는 응답자의 46.1%가 활용 가능(매우 자유롭게 활용 가능+비교적 자유롭게 활용 가능+어느 정도 활용 가능)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한국(36.6%)과 비교하여 9.5%p로 높은 수준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세부 집단별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연령 집단의 경우, 30~34세(49.4%), 45~49세(48.7%), 25~29세(48.6%), 40~44세(46.4%), 20~24세(42.7%), 35~39세(42.5%) 순으로 유연근로제가 활용 가능하다고 응답하였다. 혼인상태별로는 법률훈이 48.7%로 가장 높았고, 미혼 46.1%, 동거/사실혼 45.0%, 이혼/별거/사별 41.2% 순으로 유연근로제도 활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자녀 가구(47.2%)가 무자녀 가구(45.0%)보다, 그리고 취업자(47.6%)가 비취업자(39.6%)에 비해 유연근로제도가 활용 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가구소득 수준별로는 가구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유연근로제도가 활용 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가구 유형별로는 유자녀 기혼(2자녀 이상) 47.9%, 유자녀 기혼(1자녀) 46.9%, 무자녀 미혼 46.4%, 무자녀 기혼 43.2%, 유자녀 미혼 43.1% 순으로 유연근로제도가 활용 가능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5-52〉 일·생활 균형 정책의 활용 가능성\_4) 출산휴가

(단위: %, 명)

구 분	매우 자유롭게 활용 가능함	비교적 자유롭게 활용 가능함	어느 정도 활용 가능함	대체로 활용하지 못함	전혀 활용하지 못함	모르겠음	합계
프랑스	15.5	18.1	27.6	17.1	9.4	12.4	(2,500) 100.0
한국	11.1	21.0	34.8	18.8	9.4	4.9	(2,500) 100.0
성별 ( $\chi^2=10.998$ )							
남성	14.7	19.6	25.6	17.2	10.6	12.3	(1,240) 100.0
여성	16.3	16.6	29.4	17.0	8.3	12.5	(1,260) 100.0
연령 ( $\chi^2=58.696^{***}$ )							
20~24세	10.3	17.8	24.9	20.4	12.8	13.7	(445) 100.0
25~29세	16.5	15.9	23.1	16.8	12.6	15.3	(334) 100.0
30~34세	12.2	20.0	27.0	17.9	9.9	13.0	(385) 100.0
35~39세	18.0	17.6	28.9	18.7	8.2	8.7	(461) 100.0
40~44세	17.5	17.7	31.9	14.9	7.3	10.6	(423) 100.0
45~49세	18.1	19.2	28.5	13.7	6.4	13.9	(452) 100.0
지역 ( $\chi^2=13.778$ )							
대도시	13.6	17.6	29.6	16.7	10.6	11.9	(796) 100.0
대도시의 외곽	16.7	16.7	27.9	15.8	11.2	11.6	(448) 100.0
중소도시	16.4	19.7	25.7	17.5	8.1	12.6	(725) 100.0
농어촌	16.0	17.7	26.7	18.1	7.9	13.6	(531) 100.0
교육 ( $\chi^2=34.554^{**}$ )							
(2~7)	14.1	13.4	26.5	21.7	10.8	13.6	(567) 100.0
(8~13)	13.3	18.5	29.6	16.9	9.6	12.1	(720) 100.0
(14~17)	17.8	19.4	26.3	17.2	7.1	12.1	(505) 100.0
(18~25)	17.1	20.5	27.3	13.4	9.7	12.0	(708) 100.0
혼인상태 ( $\chi^2=61.093^{***}$ )							
미혼	13.1	17.1	28.3	16.2	7.3	18.0	(771) 100.0
동거/사실혼	13.9	17.1	27.0	19.0	11.7	11.4	(823) 100.0
법률혼	19.9	20.0	27.6	15.9	8.4	8.2	(729) 100.0
이혼/별거/사별	15.3	18.6	27.1	16.9	12.4	9.6	(177) 100.0
자녀 여부 ( $\chi^2=69.049^{***}$ )							
자녀 있음	18.3	19.1	28.4	17.3	9.4	7.5	(1,305) 100.0
자녀 없음	12.4	17.0	26.7	16.8	9.4	17.7	(1,195) 100.0
취업 여부 ( $\chi^2=38.428^{***}$ )							
취업	16.4	18.6	27.9	17.0	9.6	10.6	(2,035) 100.0
비취업	11.4	15.9	26.2	17.6	8.4	20.4	(465) 100.0
가구소득 ( $\chi^2=48.180^{***}$ )							
1500유로 미만	14.0	15.2	25.2	18.5	9.7	17.4	(493) 100.0
1500~2500유로 미만	13.9	17.6	27.0	17.9	8.7	14.9	(689) 100.0
2500~3500유로 미만	13.4	19.0	30.2	18.3	9.0	10.2	(569) 100.0
3500유로 이상	19.5	19.8	27.6	14.6	10.1	8.4	(749) 100.0

구 분	매우 자유롭게 활용 가능함	비교적 자유롭게 활용 가능함	어느 정도 활용 가능함	대체로 활용하지 못함	전혀 활용하지 못함	모르겠음	합계
가구 유형 ( $\chi^2=97.313^{***}$ )							
무자녀 미혼	13.2	17.0	27.2	15.4	7.4	19.8	(676) 100.0
유자녀 미혼	12.6	17.9	35.8	22.1	6.3	5.3	(95) 100.0
무자녀 기혼 <sup>1)</sup>	11.4	17.0	26.0	18.7	11.9	15.0	(519) 100.0
유자녀 기혼(1자녀)	18.3	16.5	28.2	18.8	10.7	7.6	(515) 100.0
유자녀 기혼(2자녀 이상)	19.1	21.2	27.5	15.5	8.9	7.8	(695) 100.0

주: \* p<0.05, \*\* p<0.01, \*\*\* p<0.001

1) 미혼 이외의 모든 변수(법률훈/사실혼(동거)/사별/이혼/별거)를 포함함.

2)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chi^2$ 값을 제시하지 않음.

3) 각 항목의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출처: “결혼, 출산, 육아에 관한 인식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원자료 분석.

일·생활 균형 정책의 하나인 출산휴가는 응답자의 61.2%가 활용 가능(매우 자유롭게 활용 가능+비교적 자유롭게 활용 가능+어느 정도 활용 가능)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한국(66.9%)과 비교하여 5.7%p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다른 일·생활 균형 정책과 다르게 한국보다 제도의 활용도에 대한 인식이 낮았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세부 집단별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연령이 높을수록 활용 가능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는데, 40~44세(67.1%), 45~49세(65.8%), 35~39세(64.5%) 30~34세(59.2%), 25~29세(55.5%), 20~24세(53.0%) 순으로 출산휴가가 활용 가능하다고 응답하였다. 혼인상태별로는 법률훈의 경우가 67.5%로 가장 높았고, 이혼/별거/사별 61.0%, 미혼 58.5%, 동거/사실혼 58.0% 순으로 출산휴가를 활용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유자녀 가구(65.8%)가 무자녀 가구(56.1%)보다, 그리고 취업자(62.9%)가 비취업자(53.5%)에 비해 출산휴가를 활용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가구 유형별로는 유자녀 기혼(2자녀 이상) 67.8%, 유자녀 미혼 66.3%, 유자녀 기혼(1자녀) 63.0%, 무자녀 미혼 57.4%, 무자녀 기혼 54.4% 순으로 출산휴가를 활용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5-53〉 일·생활 균형 정책의 활용 가능성\_5) 가족돌봄휴가

(단위: %, 명)

구 분	매우 자유롭게 활용 가능함	비교적 자유롭게 활용 가능함	어느 정도 활용 가능함	대체로 활용하지 못함	전혀 활용하지 못함	모르겠음	합계
프랑스	10.2	13.4	27.3	23.7	10.8	14.5	(2,500) 100.0
한국	3.4	7.5	22.0	34.5	22.6	10.0	(2,500) 100.0
성별 ( $\chi^2=1.740$ )							
남성	9.8	13.5	28.0	23.3	11.3	14.2	(1,240) 100.0
여성	10.7	13.3	26.7	24.1	10.4	14.8	(1,260) 100.0
연령 ( $\chi^2=77.699^{***}$ )							
20~24세	7.2	9.0	23.4	27.0	16.9	16.6	(445) 100.0
25~29세	10.8	13.8	22.2	25.4	11.1	16.8	(334) 100.0
30~34세	9.1	15.8	24.4	26.8	10.1	13.8	(385) 100.0
35~39세	10.4	14.3	29.3	26.0	9.3	10.6	(461) 100.0
40~44세	11.3	13.2	31.7	21.5	9.9	12.3	(423) 100.0
45~49세	12.6	14.6	31.4	16.4	7.7	17.3	(452) 100.0
지역 ( $\chi^2=28.197$ )							
대도시	10.7	12.7	30.3	20.1	12.3	13.9	(796) 100.0
대도시의 외곽	9.2	13.4	28.1	21.7	13.2	14.5	(448) 100.0
중소도시	9.5	14.3	25.5	27.9	9.2	13.5	(725) 100.0
농어촌	11.5	13.2	24.7	25.2	8.9	16.6	(531) 100.0
교육 ( $\chi^2=21.704$ )							
(2~7)	10.6	10.9	25.4	24.0	14.1	15.0	(567) 100.0
(8~13)	9.7	12.2	28.2	24.6	10.1	15.1	(720) 100.0
(14~17)	11.5	12.9	27.3	24.4	9.5	14.5	(505) 100.0
(18~25)	9.6	16.9	28.0	22.2	9.9	13.4	(708) 100.0
혼인상태 ( $\chi^2=65.631^{***}$ )							
미혼	8.6	12.6	27.4	23.3	7.9	20.2	(771) 100.0
동거/사실혼	8.7	12.5	25.6	27.3	12.6	13.1	(823) 100.0
법률혼	13.4	15.5	29.8	20.3	11.0	10.0	(729) 100.0
이혼/별거/사별	11.3	12.4	24.9	22.6	14.7	14.1	(177) 100.0
자녀 여부 ( $\chi^2=68.388^{***}$ )							
자녀 있음	12.1	14.3	29.8	23.7	10.8	9.3	(1,305) 100.0
자녀 없음	8.2	12.4	24.6	23.8	10.9	20.2	(1,195) 100.0
취업 여부 ( $\chi^2=34.032^{***}$ )							
취업	10.9	14.1	27.9	23.8	10.6	12.7	(2,035) 100.0
비취업	7.3	10.3	24.9	23.2	12.0	22.2	(465) 100.0
가구소득 ( $\chi^2=36.037^{***}$ )							
1500유로 미만	10.8	11.2	23.9	24.5	9.9	19.7	(493) 100.0
1500~2500유로 미만	8.1	13.6	27.3	23.8	10.7	16.4	(689) 100.0
2500~3500유로 미만	10.0	13.2	27.4	26.0	10.5	12.8	(569) 100.0
3500유로 이상	12.0	14.8	29.5	21.4	11.7	10.5	(749) 100.0

구 분	매우 자유롭게 활용 가능함	비교적 자유롭게 활용 가능함	어느 정도 활용 가능함	대체로 활용하지 못함	전혀 활용하지 못함	모르겠음	합계
가구 유형 ( $\chi^2=105.492^{**}$ )							
무자녀 미혼	8.9	12.3	25.7	22.9	8.1	22.0	(676) 100.0
유자녀 미혼	6.3	14.7	38.9	26.3	6.3	7.4	(95) 100.0
무자녀 기혼 <sup>1)</sup>	7.3	12.5	23.1	24.9	14.5	17.7	(519) 100.0
유자녀 기혼(1자녀)	13.4	11.7	28.5	26.8	11.8	7.8	(515) 100.0
유자녀 기혼(2자녀 이상)	11.9	16.3	29.5	21.0	10.6	10.6	(695) 100.0

주: \* p<0.05, \*\* p<0.01, \*\*\* p<0.001

1) 미혼 이외의 모든 변수(법률훈/사실혼(동거)/사별/이혼/별거)를 포함함.

2)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chi^2$ 값을 제시하지 않음.

3) 각 항목의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출처: “결혼, 출산, 육아에 관한 인식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원자료 분석.

가족돌봄휴가는 응답자의 50.9%가 활용 가능(매우 자유롭게 활용 가능+비교적 자유롭게 활용 가능+어느 정도 활용 가능)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한국(32.9%)과 비교하여 18%p 높은 수준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세부 집단별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연령이 높을수록 가족돌봄휴가를 활용을 활용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45~49세(58.6%), 40~44세(56.2%), 35~39세(54.0%) 30~34세(49.3%), 25~29세(46.8%), 20~24세(39.6%) 순이다. 지역별로는 대도시 53.7%, 대도시 외곽 50.7%, 농어촌 49.4%, 중소도시 49.3% 순으로 나타나 대도시 거주자가 다른 지역 거주자에 비해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혼인상태별로는 법률혼인 경우(58.7%)가 다른 세부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고, 이어 이혼/별거/사별 48.6%, 미혼 48.6%, 동거/사실혼 46.8% 순으로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유자녀 가구(56.2%)가 무자녀 가구(45.2%)보다, 그리고 취업자(52.9%)가 비취업자(42.5%)에 비해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가구소득 수준별로는 가구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

고, 가구 유형별로는 유자녀 미혼 59.9%, 유자녀 기혼(2자녀 이상) 57.7%, 유자녀 기혼(1자녀) 53.6%, 무자녀 미혼 46.9%, 무자녀 기혼 42.9% 순으로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 4 돌봄의 책임

한 사회에서 자녀 돌봄의 책임과 관련된 견해는 다양하다. 이에 프랑스 사회에서 자녀 돌봄의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와 관련하여 조사하였다. 미취학 아동에 대한 돌봄의 책임에 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2.6%가 사회와 가족 모두가 해야 할 일이라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한국(66.4%)보다 23.8%p 낮은 수준이다. 사회보다 가족이(사회보다는 가족이+주로 가족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4.4%로 한국(28.7%)과 비교하여 15.7%p 높은 수준이었다. 즉, 한국과 비교할 때 프랑스에서는 미취학 아동에 대한 돌봄을 가족의 역할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5-54〉 우리 사회 돌봄에 대한 인식\_1) 미취학 아동에 대한 돌봄

(단위: %, 명)

구 분	주로 사회가 해야 할 일	가족 보다는 사회가 해야 할 일	사회와 가족 모두가 해야 할 일	사회 보다는 가족이 해야 할 일	주로 가족이 해야 할 일	합계
프랑스	4.2	8.8	42.6	26.6	17.8	(2,500) 100.0
한국	1.6	3.2	66.4	18.7	10.0	(2,500) 100.0
성별 ( $\chi^2=16.633^*$ )						
남성	5.0	9.7	39.3	28.8	17.3	(1,240) 100.0
여성	3.5	7.9	45.8	24.5	18.3	(1,260) 100.0
연령 ( $\chi^2=29.230$ )						
20~24세	6.3	9.4	37.8	30.6	16.0	(445) 100.0
25~29세	6.3	9.0	41.9	26.3	16.5	(334) 100.0
30~34세	4.4	7.8	42.3	29.1	16.4	(385) 100.0

328 프랑스의 인구정책 사례 연구

구 분	주로 사회가 해야 할 일	가족 보다는 사회가 해야 할 일	사회와 가족 모두가 해야 할 일	사회 보다는 가족이 해야 할 일	주로 가족이 해야 할 일	합계
35~39세	3.3	8.2	46.4	23.4	18.7	(461) 100.0
40~44세	2.8	10.4	42.3	26.0	18.4	(423) 100.0
45~49세	2.9	7.7	44.2	24.8	20.4	(452) 100.0
지역 ( $\chi^2=25.803$ )						
대도시	5.5	10.4	39.1	27.8	17.2	(796) 100.0
대도시의 외곽	3.6	8.9	41.5	29.9	16.1	(448) 100.0
중소도시	4.6	8.6	43.0	24.4	19.4	(725) 100.0
농어촌	2.4	6.4	48.0	25.2	17.9	(531) 100.0
교육 ( $\chi^2=24.267$ )						
(2~7)	5.8	9.0	39.2	25.7	20.3	(567) 100.0
(8~13)	4.7	9.2	44.3	25.1	16.7	(720) 100.0
(14~17)	4.2	8.7	46.3	23.4	17.4	(505) 100.0
(18~25)	2.5	8.2	40.8	31.2	17.2	(708) 100.0
혼인상태 ( $\chi^2=25.968$ )						
미혼	4.5	6.5	43.5	26.3	19.2	(771) 100.0
동거/사실혼	4.7	9.2	45.3	26.5	14.2	(823) 100.0
법률혼	3.3	9.9	38.5	28.4	19.9	(729) 100.0
이혼/별거/사별	4.5	11.9	42.4	21.5	19.8	(177) 100.0
자녀 여부 ( $\chi^2=5.368$ )						
자녀 있음	4.0	9.7	41.0	26.8	18.5	(1,305) 100.0
자녀 없음	4.5	7.8	44.3	26.4	17.0	(1,195) 100.0
취업 여부 ( $\chi^2=5.146$ )						
취업	4.2	9.1	42.9	26.7	17.1	(2,035) 100.0
비취업	4.3	7.3	41.1	26.2	21.1	(465) 100.0
가구소득 ( $\chi^2=14.495$ )						
1500유로 미만	4.5	7.3	41.8	25.6	20.9	(493) 100.0
1500~2500유로 미만	4.2	7.5	43.8	25.8	18.6	(689) 100.0
2500~3500유로 미만	4.2	11.6	41.5	26.0	16.7	(569) 100.0
3500유로 이상	4.1	8.7	42.7	28.6	15.9	(749) 100.0
가구 유형 ( $\chi^2=31.564$ )						
무자녀 미혼	4.4	6.7	43.5	26.5	18.9	(676) 100.0
유자녀 미혼	5.3	5.3	43.2	25.3	21.1	(95) 100.0
무자녀 기혼 <sup>1)</sup>	4.6	9.2	45.3	26.4	14.5	(519) 100.0
유자녀 기혼(1자녀)	5.0	12.4	42.3	25.6	14.6	(515) 100.0
유자녀 기혼(2자녀 이상)	3.0	8.2	39.7	27.9	21.2	(695) 100.0

주: \* p<0.05, \*\* p<0.01, \*\*\* p<0.001

1) 미혼 이외의 모든 변수(법률혼/사실혼(동거)/사별/이혼/별거)를 포함함.

2)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chi^2$ 값을 제시하지 않음.

3) 각 항목의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출처: "결혼, 출산, 육아에 관한 인식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원자료 분석.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세부 집단별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성(46.1%)이 여성(42.8%)에 비해 미취학 아동의 돌봄이 가족이 해야 할 일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대도시 외곽 46.0%, 대도시 45.0% 중소도시 43.8%, 농어촌 43.1% 순으로 미취학 아동의 돌봄이 가족이 해야 할 일이라고 응답하였다. 혼인상태별로는 법률혼, 48.3%, 미혼 45.5%, 이혼/별거/사별 41.3%, 동거/사실혼 40.7% 순으로 미취학 아동의 돌봄이 가족이 해야 할 일이라고 응답하였다. 가구 유형별로는 유자녀 기혼(2자녀 이상) 49.1%, 유자녀 미혼 46.4%, 무자녀 미혼은 45.4%, 무자녀 기혼 40.9%, 유자녀 기혼(1자녀)은 40.2% 순으로 미취학 아동의 돌봄이 가족이 해야 할 일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5-55〉 우리 사회 돌봄에 대한 인식\_2) 취학 아동에 대한 방과 후 돌봄

(단위: %, 명)

구 분	주로 사회가 해야 할 일	가족 보다는 사회가 해야 할 일	사회와 가족 모두가 해야 할 일	사회 보다는 가족이 해야 할 일	주로 가족이 해야 할 일	합계
프랑스	2.8	8.4	40.2	28.0	20.6	(2,500) 100.0
한국	3.7	12.4	66.6	11.8	5.4	(2,500) 100.0
성별 ( $\chi^2=2.515$ )						
남성	3.0	8.1	39.5	29.3	20.2	(1,240) 100.0
여성	2.7	8.7	40.9	26.7	21.1	(1,260) 100.0
연령 ( $\chi^2=18.774$ )						
20~24세	3.8	9.2	38.2	29.0	19.8	(445) 100.0
25~29세	3.3	7.8	35.6	32.0	21.3	(334) 100.0
30~34세	3.1	8.6	42.1	26.5	19.7	(385) 100.0
35~39세	2.2	8.5	43.2	26.2	20.0	(461) 100.0
40~44세	2.4	8.7	37.8	31.2	19.9	(423) 100.0
45~49세	2.4	7.3	43.1	23.9	23.2	(452) 100.0
지역 ( $\chi^2=18.260$ )						
대도시	2.8	9.5	37.6	29.5	20.6	(796) 100.0
대도시의 외곽	4.5	8.5	41.3	27.2	18.5	(448) 100.0
중소도시	3.0	8.1	39.4	28.1	21.2	(725) 100.0

구 분	주로 사회가 해야 할 일	가족 보다는 사회가 해야 할 일	사회와 가족 모두가 해야 할 일	사회 보다는 가족이 해야 할 일	주로 가족이 해야 할 일	합계	
농어촌	1.3	6.8	44.3	26.0	21.7	(531)	100.0
교육 ( $\chi^2=24.480$ )							
(2~7)	4.4	7.1	39.2	27.3	22.0	(567)	100.0
(8~13)	3.3	7.5	39.4	27.6	22.1	(720)	100.0
(14~17)	3.0	9.7	43.0	25.5	18.8	(505)	100.0
(18~25)	1.0	9.3	39.8	30.5	19.4	(708)	100.0
혼인상태 ( $\chi^2=23.663$ )							
미혼	2.5	6.9	39.2	28.0	23.5	(771)	100.0
동거/사실혼	3.6	9.7	40.7	29.3	16.6	(823)	100.0
법률혼	2.2	7.4	41.0	27.2	22.2	(729)	100.0
이혼/별거/사별	3.4	12.4	39.0	24.9	20.3	(177)	100.0
자녀 여부 ( $\chi^2=1.787$ )							
자녀 있음	2.5	8.7	40.3	27.8	20.8	(1,305)	100.0
자녀 없음	3.3	8.0	40.1	28.1	20.5	(1,195)	100.0
취업 여부 ( $\chi^2=6.688$ )							
취업	2.8	8.7	41.0	27.7	19.9	(2,035)	100.0
비취업	3.2	6.9	36.8	29.2	23.9	(465)	100.0
가구소득 ( $\chi^2=20.350$ )							
1500유로 미만	4.1	6.1	39.8	24.9	25.2	(493)	100.0
1500~2500유로 미만	2.8	7.7	39.8	28.3	21.5	(689)	100.0
2500~3500유로 미만	2.6	9.3	40.2	28.1	19.7	(569)	100.0
3500유로 이상	2.3	9.7	40.9	29.5	17.6	(749)	100.0
가구 유형 ( $\chi^2=32.030$ )							
무자녀 미혼	2.7	6.7	38.9	29.0	22.8	(676)	100.0
유자녀 미혼	1.1	8.4	41.1	21.1	28.4	(95)	100.0
무자녀 기혼 <sup>1)</sup>	4.0	9.8	41.6	27.0	17.5	(519)	100.0
유자녀 기혼(1자녀)	2.3	9.5	43.3	29.7	15.1	(515)	100.0
유자녀 기혼(2자녀 이상)	2.7	8.1	38.0	27.3	23.9	(695)	100.0

주: \* p<0.05, \*\* p<0.01, \*\*\* p<0.001

1) 미혼 이외의 모든 변수(법률혼/사실혼(동거)/사별/이혼/별거)를 포함함.

2)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chi^2$ 값을 제시하지 않음.

3) 각 항목의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출처: “결혼, 출산, 육아에 관한 인식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원자료 분석.

취학 아동의 방과 후 돌봄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에 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0.2%가 사회와 가족 모두가 해야 할 일이라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한국(66.6%)보다 26.4%p 낮은 수준이다. 사회보다 가족이(사

회보다는 가족이+주로 가족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8.6%로 한국(17.2%)과 비교하여 31.4%p 높은 수준이었다. 즉, 한국과 비교할 때 프랑스에서는 취학 아동의 방과 후 돌봄을 가족의 역할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별로는 미혼 응답자의 경우가 51.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법률혼 49.4%, 동거/사실혼 45.9%, 이혼/별거/사별 45.2%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가구 유형별로는 무자녀 미혼과 유자녀 기혼(2자녀 이상)의 경우 51.2~51.8%, 유자녀 미혼 49.5%, 무자녀 기혼과 유자녀 기혼(1자녀) 44.5~44.8% 순으로 취학 아동의 방과 후 돌봄이 사회보다 가족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응답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 5. 정부의 예산 투입 방향

자녀 출산과 양육 지원을 위해 정부가 예산 투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1.1%는 예산을 증액(대폭 늘려야 한다+조금 늘려야 한다)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한국(79.3%)과 비교하여 18.2%p 낮은 수준이다. 한편, 전체 응답자의 30.9%는 관련 예산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한국(15.3%)과 비교하여 15.6%p 낮은 수준이다.

〈표 5-56〉 자녀 출산과 양육을 위한 정부 예산 투입 방향

(단위: %, 명)

구 분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	관련 예산을 조금 늘려야 한다	관련 예산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관련 예산을 조금 줄여야 한다	관련 예산을 대폭 줄여야 한다	합계
프랑스	25.9	35.2	30.9	4.6	3.4	(2,500) 100.0
한국	51.7	27.6	15.3	3.2	2.2	(2,500) 100.0
성별 ( $\chi^2=11.491$ )						
남성	25.0	35.6	32.4	3.3	3.6	(1,240) 100.0
여성	26.8	34.7	29.4	5.8	3.3	(1,260) 100.0
연령 ( $\chi^2=44.394$ )						
20~24세	24.9	39.6	27.0	4.5	4.0	(445) 100.0
25~29세	29.3	39.5	26.3	3.9	0.9	(334) 100.0
30~34세	28.6	36.4	27.8	4.2	3.1	(385) 100.0
35~39세	23.4	31.7	37.1	4.8	3.0	(461) 100.0
40~44세	26.5	36.4	28.4	4.3	4.5	(423) 100.0
45~49세	24.1	29.0	36.9	5.5	4.4	(452) 100.0
지역 ( $\chi^2=23.464$ )						
대도시	28.5	35.4	29.8	3.3	3.0	(796) 100.0
대도시의 외곽	22.3	40.4	28.6	6.0	2.7	(448) 100.0
중소도시	26.6	33.1	30.6	5.5	4.1	(725) 100.0
농어촌	24.1	33.1	35.0	4.0	3.8	(531) 100.0
교육 ( $\chi^2=29.757$ )						
(2~7)	33.3	30.7	28.4	3.9	3.7	(567) 100.0
(8~13)	26.3	36.7	29.7	4.2	3.2	(720) 100.0
(14~17)	23.6	34.5	32.5	5.7	3.8	(505) 100.0
(18~25)	21.3	37.7	33.1	4.7	3.2	(708) 100.0
혼인상태 ( $\chi^2=20.275$ )						
미혼	26.2	35.4	30.2	4.0	4.2	(771) 100.0
동거/사실혼	26.1	37.8	30.0	3.8	2.3	(823) 100.0
법률혼	26.1	33.3	32.1	5.1	3.4	(729) 100.0
이혼/별거/사별	23.2	29.4	33.3	8.5	5.6	(177) 100.0
자녀 여부 ( $\chi^2=10.387$ )						
자녀 있음	27.5	34.9	31.0	4.1	2.5	(1,305) 100.0
자녀 없음	24.2	35.5	30.9	5.0	4.4	(1,195) 100.0
취업 여부 ( $\chi^2=9.451$ )						
취업	25.2	35.7	31.4	4.7	3.0	(2,035) 100.0
비취업	29.2	32.7	28.8	4.1	5.2	(465) 100.0
가구소득 ( $\chi^2=39.017$ )						
1500유로 미만	29.6	30.8	28.0	5.5	6.1	(493) 100.0
1500~2500유로 미만	28.9	35.3	30.2	2.9	2.8	(689) 100.0

구 분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	관련 예산을 조금 늘려야 한다	관련 예산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관련 예산을 조금 줄여야 한다	관련 예산을 대폭 줄여야 한다	합계
2500~3500유로 미만	24.6	37.8	31.5	4.0	2.1	(569) 100.0
3500유로 이상	21.8	35.9	33.1	5.9	3.3	(749) 100.0
가구 유형 ( $\chi^2=20.610$ )						
무자녀 미혼	25.0	36.2	30.5	4.0	4.3	(676) 100.0
유자녀 미혼	34.7	29.5	28.4	4.2	3.2	(95) 100.0
무자녀 기혼 <sup>1)</sup>	23.1	34.5	31.4	6.4	4.6	(519) 100.0
유자녀 기혼(1자녀)	24.9	36.7	31.3	4.3	2.9	(515) 100.0
유자녀 기혼(2자녀 이상)	28.5	34.2	31.1	4.0	2.2	(695) 100.0

주: \* p<0.05, \*\* p<0.01, \*\*\* p<0.001

1) 미혼 이외의 모든 변수(법률훈/사실혼(동거)/사별/이혼/별거)를 포함함.

2)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chi^2$ 값을 제시하지 않음.

3) 각 항목의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출처: “결혼, 출산, 육아에 관한 인식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원자료 분석.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령에 있어서, 25~29세(68.8%), 20~24세(64.5%), 30~34세(65.0%), 40~44세(62.9%), 35~39세(55.1%), 45~49세(53.1%)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도시 63.9%, 대도시 외곽 62.7%, 중소도시 59.7%, 농어촌 57.2% 순으로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교육수준에 있어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관련 예산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비율이 높은 반면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비율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자녀 여부별로는 유자녀 가구(62.4%)가 무자녀 가구(59.7%)보다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가구소득 수준별로는 1,500~2,500유로 집단 64.2%, 2,500~3,500유로 집단 62.4%, 1,500유로 미만 집단이 60.4%, 3500유로 이상 집단 57.7% 순으로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응답하여 집단별 차이를 보인다.

## 제6절 소결

본 장에서는 프랑스 인구정책을 이해하기 위해 프랑스인의 관련 인식과 가치관을 알아보고자 프랑스에 거주하는 20~49세 이하 성인 남녀 2,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조사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프랑스인의 인식과 가치관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에 거주하는 20~49세 이하 성인 남녀 2,500명을 대상으로 동일한 문항을 가지고 조사를 실시하여 비교하였다.

주요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우선, 출산 시 고려하는 사항에 있어서 '전혀 중요하지 않다'부터 '매우 중요하다'까지 5점 척도로 분석한 결과, 배우자의 건강이 4.37점으로 가장 높게 응답되었다. 이어 본인의 건강(4.35점), 주거(4.26점), 일생활 균형(4.23점), 본인의 취업 상태(4.15점), 가정의 경제적 여건(4.14점), 배우자의 취업 상태(4.08점),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3.91점), 보육/양육 서비스 이용 가능성(3.77점), 경력 단절의 가능성(3.63점), 정부의 충분한 지원(3.52점) 순이었다. 동일한 문항에 대해 한국인은 가정의 경제적 여건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4.56점). 다음으로 배우자의 건강(4.56점), 본인의 건강(4.54점), 주거(4.37점), 본인의 취업 상태(4.37점), 일생활 균형(4.35점),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4.35점), 정부의 충분한 지원(4.29점), 배우자의 취업 상태(4.24점), 보육/양육 서비스 이용 가능성(4.19점), 경력 단절의 가능성(3.98점) 순으로 출산을 결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자녀가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프랑스인은 경제적 부담 증가(4.02점)를 가장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요인의 영향력은 4.0점 미만으로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기쁨

과 만족(3.87점), 자유의 제한(3.74점), 노년기 부양(3.43점), 본인 일할 기회 축소(3.31점), 파트너 일할 기회 축소(3.16점), 파트너 친밀감 증가(3.13점) 순이다. 한국인도 경제적 부담 증가(4.51점)를 가장 큰 영향으로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자유의 제한(4.19점)도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응답하였다. 이어, 다른 요인의 영향력은 4.0점 미만으로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기쁨과 만족(3.98점), 본인 일할 기회 축소(3.69점), 파트너 친밀감 증가(3.51점), 파트너 일할 기회 축소(3.40점), 노년기 부양(3.07점) 순으로 평가하였다. 프랑스인은 대체로 자녀가 본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한국인보다 작게 느끼고 있다.

프랑스 사회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프랑스인은 프랑스 사회에 대해 한국인과 비교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사회는 ‘소득격차가 너무 크다’라는 의견에 동의한 정도를 살펴본 결과, 69.4%가 동의(동의한다+매우 동의한다)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프랑스 사회가 전반적으로 공정한 사회라는 의견에는 29.0%가 동의하였다. 인구의 변화와 관련된 인식과 의견에 대한 동의 정도를 조사한 결과, ‘최근 출산율은 적당한 수준이다’라는 의견에 대해 조사 응답자의 34.7%가 동의(동의한다+매우 동의한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율 감소는 나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26.1%가 동의하였고, ‘출산율 감소는 미래 세대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의견에 동의하는 정도를 조사한 결과 조사 응답자의 49.2%가 동의하였다.

프랑스의 인구정책에 대한 프랑스인의 인지도는 비교적 높은 편으로 나타났고, 프랑스 정부가 ‘출산율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 27.9%가 동의(동의한다+매우 동의한다)한다고 응답하였다. 자녀 출산과 양육 지원을 위해 정부가 예산 투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1.1%는 예산을 증

액(대폭 늘려야 한다+조금 늘려야 한다)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프랑스인은 비교적 인구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느끼고 있지는 않으나 사회에 대한 신뢰가 높고 정부가 예산을 증액해서 출산율 감소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프랑스인과 비교하여 한국인은 인구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느끼고 있으며 한국 사회에 대한 신뢰가 낮게 나타났다, 정부가 예산을 증액해서 출산율 감소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프랑스인보다 크게 나타났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제6장

## 결론

제1절 프랑스 인구와 인구정책

제2절 시사점



## 제 6 장 결론

### 제1절 프랑스의 인구와 인구정책

프랑스는 일찍이 저출산과 인구의 고령화라는 인구 현상을 겪었고 이러한 인구 변화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나라로 잘 알려져 있다. 반면, 한국은 고착화된 저출산 현상과 급속화된 인구의 고령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국가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프랑스의 인구 변화와 이에 대응한 인구정책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객관적인 인구 현상뿐만 아니라 인구와 인구정책을 바라보는 프랑스인의 인식을 살펴보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프랑스의 총인구는 2024년 1월 1일 현재 6,840만 명으로 2023년 대비 0.3% 증가한 수준이다. 반면, 한국의 2024년 현재 인구는 5,175만 명으로 2023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한국의 인구는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프랑스의 2023년 출생아 수는 67만 8,000명으로 2022년 대비 약 6.6% 감소한 수준이고, 한국의 2023년 출생아 수는 23만 명으로 2022년 대비 약 7.7% 감소한 수준이다. 프랑스의 인구 천 명당 출생아 수인 조출생률은 2023년 현재 9.9명으로 한국(4.5명)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다. 프랑스의 가임기(15~49세) 여성 1명이 가임 기간 동안 출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2023년 약 1.68명으로 한국(0.72명)의 약 2.3배이다. 프랑스에서 출생의 대부분은 프랑스인 부모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혼외 출산이 2022기준 약 64%이다. 프랑스의 평균 출산 연령은 2023년 31.0세로 한국(33.6세)보다 5.6

세 낮은 수준이다.

프랑스에서 인구정책은 가족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다. 1932년 랑드리법 도입으로 가족수당기금이 의무화되면서 국가의 공식적인 인구정책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39년 가족 및 출산법 제정으로 가족정책은 친출산주의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하였고, 1945년 가족수당기금이 사회보장제도에 통합되면서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세금 감면을 통해 보상해 주는 제도가 형성되었다. 1975년 이후 인구정책은 출산 장려에서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중심으로, 그리고 불평등 해소를 위한 사회정책의 성격으로 추진되었다. 그리고 2024년 현재 더 강한 프랑스를 위한 '인구재정비 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다.

프랑스는 아동 양육과 관련된 직간접적인 비용의 경감을 위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족에게 다양한 수당을 지급하고 자녀 양육으로 인해 직업이 없는 전업주부에게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를 지원하며 소득세의 가족계수를 통해 세금을 경감시키도록 지원하는 등 포괄적인 가족 지원 정책을 통해 출산율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출생 보너스(Prime de naissance) 및 입양 보너스(prime à l'adoption), 기초수당(Allocation de base), 가족수당(Allocations familiales), 가족보충수당(Complément familial: Cf), 가족지원수당(L'allocation de soutien familial, Asf), 공동양육수당(Prestation partagée d'éducation de l'enfant, PreParE), 신학기수당(Allocation de rentrée scolaire: Ars), 장애아동양육수당(l'allocation d'éducation de l'enfant handicapé), 일일 부모동반수당(l'allocation journalière de présence parental, AJPP) 등의 수당을 지원한다. 중요한 점은 가족수당을 제외하고는 일정 소득 이상의 가구에게까지 지원되는 수당이 없다는 것과 수당 금액이 소득 수준과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는 점이다. 또한 세금 감

면을 위한 가족계수(quotient familial)를 설정하고 많은 지원 정책에 활용하고 있으며 전업주부(parent au foyer)가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전업주부(재택부모) 노령보험(L'assurance vieillesse du parent au foyer, AVPF)이 추진되고 있다.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이사지원금(La prime de déménagement)과 다자녀 가구 카드(Carte familles nombreuses)가 지원되고 있다. 주거 지원 정책으로 개인 맞춤형 주거 지원(Aide personnalisée au logement, APL), 가족주거수당(Allocation de logement familiale, ALF), 사회주택수당(Allocation de logement sociale, ALS) 등이 청년을 포함하여, 젊은 세대,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출산휴가(Congé de maternité), 배우자 출산휴가 및 자녀돌봄휴가(Congé de paternité et d'accueil de l'enfant), 입양휴가(Congé d'adoption), 육아휴직(Congé parental d'éducation) 등이 체계적으로 설계되어 추진되고 있다. 보육 지원 정책으로 단일서비스수당(PSU) 및 보육유형 자유선택 보조금(CMS) 정책과 세액 공제(impôt sur le revenu-Crédit d'impôt) 등이 추진되고 있다. 임신과 출산 관련 비용은 건강보험(Assurance maladie)에서 100% 보장된다. 난임 퇴치를 위해 20세 전후 '난임 검사'를 모든 사람에게 제공하고, 의료 보조(Procréation médicalement assistée, 이하 PMA)를 통한 출산은 현재 16~24개월을 병원에서만 지원하고 있는데, 향후 민간센터까지 확대하여 건강보험에서 100%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프랑스에서도 지역 인구 불균형 문제는 존재한다. 2018년 기준 프랑스 대도시 22개에 전체 인구의 29%가 거주하고 있으며, 파리가 속해 있는 일드프랑스에는 프랑스 전체 인구의 18%, 전체 일자리의 21%가 집중되어 있다. 지역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프랑스에서는 여러 정책을 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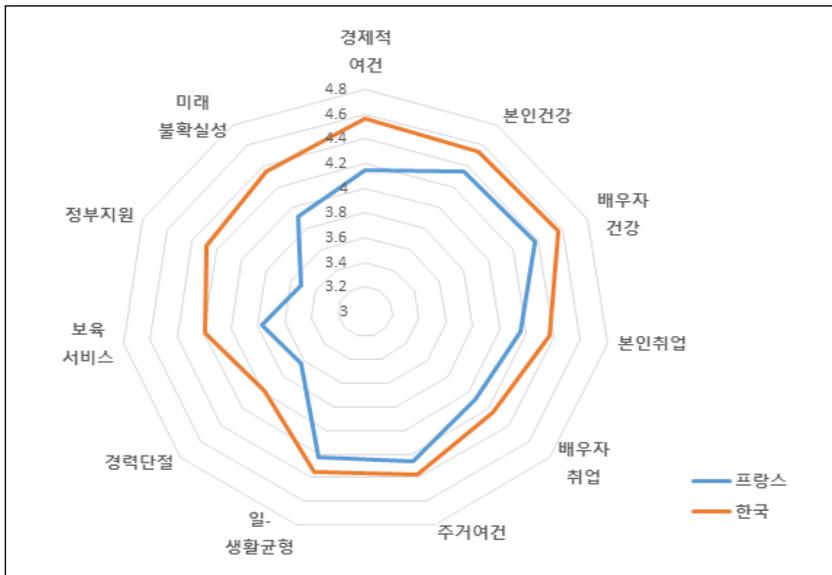
치고 있다. 취약한 지역 및 인구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역별 65세 이상 인구 비중, 사회주택에 대한 접근성, 지역별 실업률을 점검하고, 인프라 및 삶의 질 개선과 관련해서는 지역별 소득 수준, 빈곤 및 사망률, 청년 고용, 주거의 질 등을 측정한다. 그 외에 지역 재정 통합계수나 지역별 경제 의존도, 지역별 협회 고용률 및 선거 참여율, 지역별 구매력, 창업률, 교육수준, 거주지 매력도, 환경보존, 순이동에 따른 인구증가율 등을 모니터링하며 지역 인구 변화 대응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의 연금제도는 노후의 경제적 안전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게 되면서 연금개혁이 추진되어 법정 퇴직연령은 2023년 9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늘어나 2030년에 64세가 적용되는 한편 최소 연금 수령액은 최저임금의 75%에서 85%로 확대되었다. 프랑스 사회보장 재정(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의 개혁에 있어서 일반사회기여금(CSG) 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CSG는 근로소득을 기반으로 하는 부담금뿐만 아니라 모든 가용 소득에 대해 부담금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되었고, 점진적으로 증가해 오면서 프랑스 복지재정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자산 및 투자상품 소득에 대한 7.5%의 연대징수(Prélèvement de solidarité)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프랑스는 소득에 대해 높은 누진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CSG의 경우 부자들에 대한 부담은 크지 않고,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부담이 더 크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프랑스의 사회보장을 위한 재원은 인구 고령화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인해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CSG와 조세의 기여가 증가하고 있다.

결혼과 출산, 인구 변화와 인구정책에 대한 프랑스인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우선 출산 시 고려하는 사항에 있어서 '전혀 중요하지 않다'부터 '매우 중요하다'까지 5점 척도로 분석한 결

과, 배우자의 건강이 4.37점으로 가장 높게 응답되었다. 이어 본인의 건강(4.35점), 주거(4.26점), 일생활 균형(4.23점), 본인의 취업 상태(4.15점), 가정의 경제적 여건(4.14점), 배우자의 취업 상태(4.08점),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3.91점), 보육·양육서비스 이용 가능성(3.77점), 경력 단절의 가능성(3.63점), 정부의 충분한 지원(3.52점) 순이었다.

[그림 6-1] 출산을 결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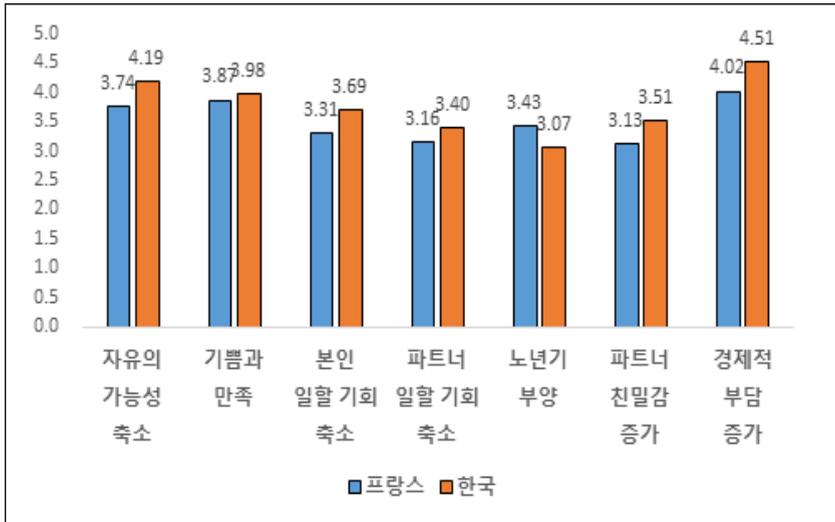


출처: “결혼, 출산, 육아에 관한 인식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원자료 분석.

한국인은 가정의 경제적 여건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4.56점). 다음으로 배우자의 건강(4.56점), 본인의 건강(4.54점), 주거(4.37점), 본인의 취업 상태(4.37점), 일·생활 균형(4.35점),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4.35점), 정부의 충분한 지원(4.29점), 배우자의 취업 상태(4.24점), 보육·양육서비스 이용 가능성(4.19점), 경력 단절의 가능성

(3.98점) 순으로 출산을 결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나 프랑스와 차이를 보였다. 한국인은 가정의 경제적 여건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 프랑스인은 정부의 충분한 지원을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 한국인은 모든 항목의 중요도를 프랑스인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주목할 만한 차이이다.

[그림 6-2] 자녀가 삶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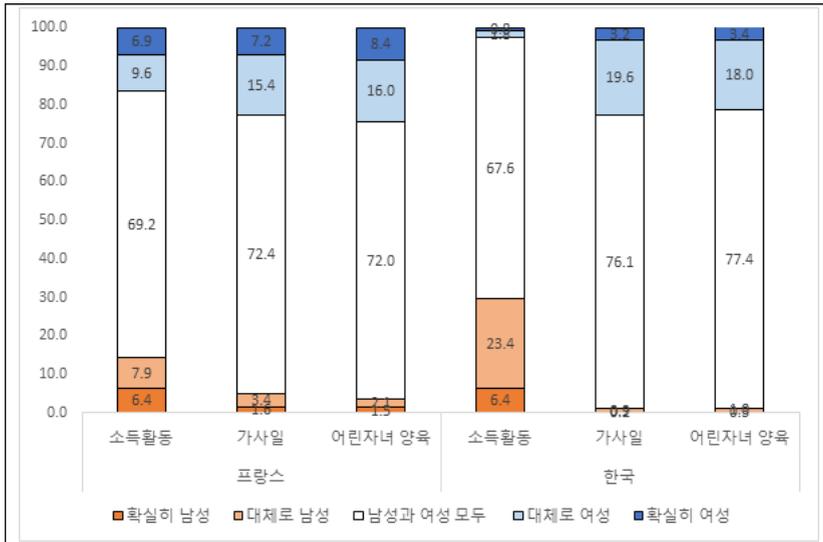


출처: “결혼, 출산, 육아에 관한 인식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원자료 분석.

자녀가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프랑스인과 한국인 모두 경제적 부담 증가를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프랑스인의 경우 경제적 부담 증가(4.02점), 기쁨과 만족(3.87점), 자유의 제한(3.74점), 노년기 부양(3.43점), 본인 일할 기회 축소(3.31점), 파트너 일할 기회 축소(3.16점), 파트너 친밀감 증가(3.13) 순이다. 이에 비해 한국인은 경제적 부담 증가(4.51점), 자유의 제한(4.19점), 기쁨과 만족(3.98점),

본인 일할 기회 축소(3.69점), 파트너 친밀감 증가(3.51점), 파트너 일할 기회 축소(3.40점), 노년기 부양(3.07점) 순으로 응답하였다. 프랑스인은 ‘노년기에 받을 수 있는 보살핌과 안정감이 커진다’의 항목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항목에서 한국인과 비교해 자녀가 삶에 미치는 영향을 작게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6-3] 성역할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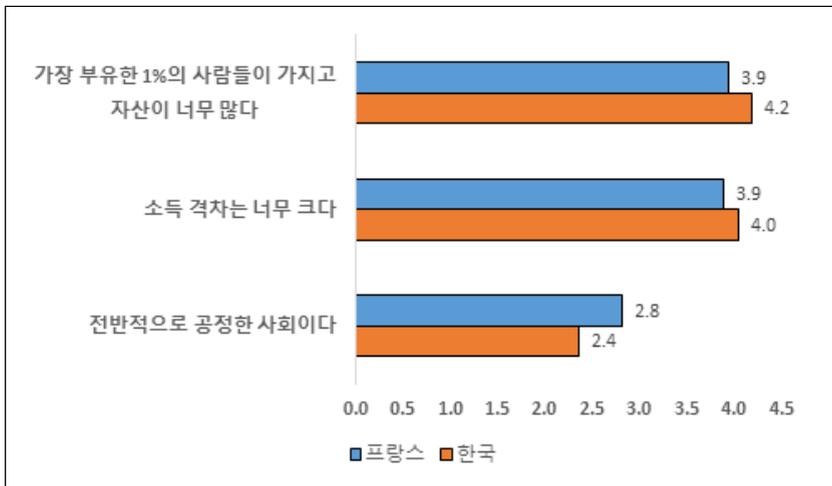


출처: “결혼, 출산, 육아에 관한 인식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원자료 분석.

성역할에 관한 인식으로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일하면서 돈을 버는 일’, ‘음식 준비, 청소, 빨래 등 일상적 가사일’, ‘어린 자녀를 돌보는 일’과 관련된 역할을 남성과 여성 중 누가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해 조사한 결과 대체로 프랑스와 한국의 차이가 크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프랑스인의 사회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사회에 대한 평가 의견에 대해 5점 척도로 동의 정도를 파악한 결과, 프랑스인은 프랑스 사회에 대해 한국인과 비교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현재의 생활 수준이 부모님 세대(부모님이 응답자의 나이였을 때)와 비교해서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조사한 결과, 조사 응답자의 28.8%가 생활 수준이 악화되었다(약간 나빠졌다+훨씬 나빠졌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한국(18.7%)과 비교하여 10.1%p 높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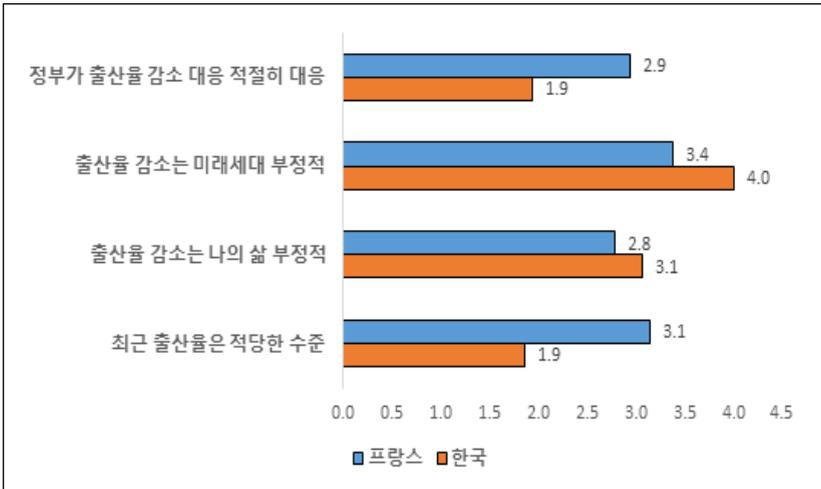
[그림 6-4] 사회에 대한 인식



출처: “결혼, 출산, 육아에 관한 인식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원자료 분석.

인구의 변화와 관련된 인식과 의견을 조사한 결과, 프랑스인은 한국인보다 '정부가 출산율 감소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으며, '최근의 출산율은 적당한 수준'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또한, 출산율 감소가 본인과 미래 세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인식이 한국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이는 프랑스인이 인구 현상과 정부의 인구정책 추진에 관해 비교적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반영한 결과이다.

[그림 6-5] 인구 변화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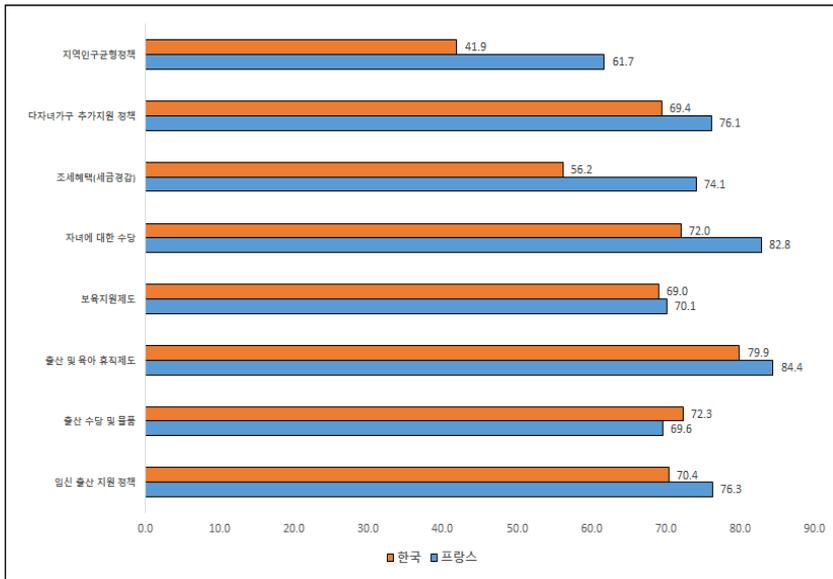


출처: “결혼, 출산, 육아에 관한 인식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원자료 분석.

프랑스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인구정책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모든 정책에 대해 프랑스인의 약 70% 이상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는 정책, 출산 및 육아 휴직제도, 자녀에 대한 수당, 다자녀 가구 추가 지원 정책, 조세 혜택(세금 경감), 지역 인구 균형 정책에 있어서 한국인과 비교해서 상당히 인지도가 높았다. 한국인은 보육 지원 제도와 출산수당 및 출산용품 지급 정책에 대한 인지도

가 다른 정책에 비해 높았는데, 해당 정책의 인지도는 프랑스의 경우와 유사한 수준이다.

[그림 6-6] 인구 변화에 대한 인지도



출처: “결혼, 출산, 육아에 관한 인식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원자료 분석.

‘프랑스 정부는 출산을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의견에 27.9%가 동의하였는데, 이는 한국(7.7%)과 비교하여 20.2%p 높은 수준이다. 자녀 출산과 양육 지원을 위해 61.1%가 정부가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30.9%는 관련 예산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한국은 약 80%가 정부가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종합해 보면, 프랑스의 인구 현상은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의 관점에서 한국과 비교해서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프랑스인은 자녀 출산을 결정할 때 한국인에 비해 여러 조건들을 덜 고려하는

편인데 이는 프랑스 사회와 정부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체계적인 정책의 추진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 제2절 시사점

한국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초저출산 국가이다. 더 나아가 2018년부터 합계출산율이 1.0명 미만으로 떨어졌고 2023년은 0.72명이었다. 이러한 지속되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여 정부는 최근(2024년 6월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며,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에 집중적인 정책 지원을 예고한 상황이다. 프랑스는 과거에 저출산을 극복하였고 최근 프랑스 자국의 출산율 감소에 대한 사회적 염려와 대조적으로 출산율은 2023년 현재 1.68명으로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프랑스가 비교적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프랑스인의 관련 인식과 무관하지 않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인식 조사 결과는 한국과 비교해서 프랑스인이 자녀 출산 및 인구와 인구정책에 있어서 보다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우선, 출산 시 고려하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한국인보다 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특히 충분한 지원을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프랑스 사회에 대해서도 한국인과 비교해서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인은 한국인에 비해 출산율은 적당한 수준이며 정부가 출산율 감소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다. 이에 따라 세부적인 인구정책에 대해서 약 70% 이상이 인지하고 있고 한국인에 비해 정부가 출산율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다. 실제로 프랑스에서는 상당한 수준의 예산을 투입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

해 법과 제도를 구축하고 보완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결혼과 관계없이 자녀가 태어났을 때 2005년 7월 5일 발효된 법령(Ordonnance n° 2005-759 du 4 juillet 2005 portant réforme de la filiation)에 따라 혼인 외 출생 자녀(enfants nés hors mariage)의 권리가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enfants nés de couples mariés)의 권리와 동일하기 때문에 민법에서 이 두 가지 용어를 삭제하였다. 또한 프랑스 사회의 인식이 전환되어 결혼하지 않고 출산한 여성에 대해 사용하던 부정적 의미의 단어인 ‘미혼모(filles-mères)’를 ‘독신모(mère célibataire)’로 바꿔서 사용하고 있다. 행정적으로는 한부모 가족(famille monoparentale)으로 부르고 있다. 프랑스는 사회에서 가족의 다양성을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프랑스에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 부담은 크지 않다. 이는 앞에서 제시하였듯이 프랑스 정부의 출산과 관련된 현금지원의 규모가 크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프랑스의 저출산 대책의 핵심 가치는 가톨릭 문화에 기반한 가족주의로, 전통적으로 가족과 모성을 중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강력한 가족수당 정책 이상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가족과 모성을 중시하는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기 때문이다(강명원, 2024). 이에 따라 프랑스의 인구정책은 생애주기 중 출산 시기에만 집중되어 있지 않고, 아동이 자라서 독립적으로 사회활동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세밀하게 지원되고 있다. 예를 들어 앞에서 제시하였듯이 학교 개학을 맞아 필요한 준비를 하도록 지원하는 신학기수당(Allocation de rentrée scolaire, Ars)은 1974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이외에도 최근에는 스포츠 패스, 문화패스 등 청소년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끊임없이 구축하고 있다.

물론 프랑스 정부가 오랜 기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출산율은 최근 들어 감소하였다는 사실은 간과할 수 없다. 이는 출산과 관련된 경제적 지원이나 아동 돌봄에 대한 지원 정책이 확대된다고 해서 그에 상응하는 만큼 출산율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에서 출산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프랑스의 출산 지원정책이나 돌봄 정책에서 많은 시사점을 찾는다. 프랑스가 투입하는 아동 돌봄과 양육에 대한 예산을 동일하게 투입하기도 어렵지만,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고 해서 출산율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프랑스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러나 프랑스는 과거에 저출산을 극복한 바 있고, 여전히 유럽 내에서는 가장 출산율이 높은 국가이다(Eurostat, 2021). 이것이 가능한 것은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과 책임을 사회가 함께 나눠지고 있다는 것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다양한 지원 정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프랑스의 인구정책은 소득과 자녀 수를 기준으로 차등적으로 지원하여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정책이 체계적이고 촘촘하게 구성되어 있다. 실제로 프랑스의 안정적인 출산율은 일·가정 양립 지원을 통해 출산과 양육이 여성의 고용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했기 때문으로 평가된다(Salles & Letablier, 2013). Piketty(2005)는 육아휴직수당(APE)이 1994년과 2001년 사이 출산율에 20~30% 기여했다고 입증하였고, Luci-Greulich와 Thevenon(2013)은 가족정책 중 출산휴가, 영아 돌봄서비스 그리고 직접적 재정 지원이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한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출산율 추이를 가진 프랑스도 2023년 합계출산율이 1.68명으로 감소하자 선제적으로 국가 차원의 인구재정비 계획을 발표하였다. 출산 장려에서 시작하여 일·가정 양립

을 지원하고, 이제는 양성평등의 기초하에 가족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앞에서 제시하였듯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마크롱의 인구재정비 계획의 핵심은 실효성 있는 출생휴가(Conge de naissance)와 난임 근절을 위한 지원이다. 2025년부터 변경되어 추진될 출생휴가는 급여 기간을 짧게 하되, 급여액은 더 높게 책정하여 정책제에서 월급 비례 보상제를 도입하여 월급의 최대 50%를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난임을 예방하고 치료를 위해 교육 및 정보의 제공부터 생식 건강 상담과 보조생식술 지원, 국립 난임연구소의 설립까지 다방면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즉 가정 내 돌봄의 양성평등을 위해 기존 정책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출생휴가를 도입하고, 국민 누구나 희망하는 자녀 수를 실제 자녀 수로 실현할 수 있도록 출산 격차를 줄이는 난임 근절 대책을 추진하는 등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프랑스의 선제적 인구 대응 정책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 즉,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음에도 인구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변동에 즉각 대응하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인구재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등 프랑스 인구정책의 추진력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프랑스는 1930년대부터 인구정책을 추진하였고, 출산을 장려하는 기초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인구 억제에서 출산 장려로 상반되게 정책의 기초를 전환한 바 있다. 또한 범정부의 인구 변화 대응 중장기 계획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까지 합계출산율이라는 양적 목표를 전면내세워서 추진하다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에서 출산율 목표 대신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인구 변화 대응 사회 혁신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다시 2024년 6월 19일에 발표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은 2030년

까지 합계출산율 1.0명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인구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장기적 시계를 가지고 꾸준하고 일관되게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에 더해 정책에 대한 실효성 있는 평가가 필요하다. 프랑스 정부는 매년 가족정책의 효과성을 모니터링 및 평가하기 위해 가족의 양육부담 경감, 취약 가정 지원, 일가정 균형 촉진, 가족정책 재정의 지속가능성이라는 4가지 가족정책의 목표별 성과 달성도를 분석하여 보고하고 있다. 즉, 사회적 공감대를 얻은 인구정책의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추가로, 인식 조사 결과에서도 살펴볼 수 있었듯이 저출산의 근본적 요인인 한국 사회의 근본적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완화하기 위해 불평등을 완화하고, 노동시장과 교육에서의 경쟁을 완화하며,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강명원. (2024). 주요국의 저출생 대응 법제동향. **국회도서관-한국법제연구원 공동세미나 자료집**. 96-98.
- 국가지표체계. (2024). 기대수명,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8016>에서 24.8.30.인출함.
- 김수진. (2021). **프랑스 지역인구감소 대응정책과 시사점**. 국토연구원, 대한민국 정부. (2020).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인구정책50년사편찬위원회. (2016). **한국 인구정책 50년 출산억제에서 출산장려로**.
- 이소영, 최인선, 정은희, 이삼식, Anne H. Gauthier. (2021). 인구조사 데이터 생산체계 개편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소영. (2023). 2023년 인구정책의 전망과 과제. 보건복지포럼(2023.1).
- 통계인구지리정보서비스. (2024). 인구피라미드. . <https://sgis.kostat.go.kr/jsp/pyramid/pyramid1.jsp>에서 2024.3.16.인출함.
- 통계청. (2021).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
- 통계청. (2023a). **인구자연증감율**. [https://sgis.kostat.go.kr/view/thematicMap/thematicMapMain?stat\\_thema\\_map\\_id=szJnFHvnFv20160202203129221JKtxLLtCLz&theme=CTGR\\_001&mapType=03&CTGRS=CTGR\\_001:recommend,CTGR\\_002:recommend,CTGR\\_003:recommend,CTGR\\_004:recommend,CTGR\\_005:recommend,CTGR\\_006:recommend](https://sgis.kostat.go.kr/view/thematicMap/thematicMapMain?stat_thema_map_id=szJnFHvnFv20160202203129221JKtxLLtCLz&theme=CTGR_001&mapType=03&CTGRS=CTGR_001:recommend,CTGR_002:recommend,CTGR_003:recommend,CTGR_004:recommend,CTGR_005:recommend,CTGR_006:recommend)에서 2024.7.7.인출함.
- 통계청. (2023b). **장래인구추계(2022~2027년) 보도자료**.
- 통계청. (2023c). **2022년 출생통계**.
- 통계청. (2023d). **장래인구추계(주요 인구지표(성비, 인구성장률, 인구구조, 부양비 등)/시도)**.

통계청. (2024a). 2023년 출생통계.

통계청. (2024b). 2023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

프랑스 사회보장국. (2024a). 2023년 사회보장정책평가보고서-자율성.

프랑스 사회보장국. (2024b). 2023년 사회보장정책평가보고서-가족.

프랑스 사회보장국. (2024c). 2023년 사회보장정책평가보고서-연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결혼, 출산, 육아에 관한 인식 조사 원자료.

Aide-sociale. (2024a). Prime de naissance CAF en 2024 : combien allez-vous percevoir pour la naissance ou l'adoption de votre enfant. [https://www.aide-sociale.fr/la-prime-a-la-naissance-et-adoption-caf/#CAF\\_prime\\_de\\_naissance\\_Quels\\_sont\\_les\\_beneficiaires](https://www.aide-sociale.fr/la-prime-a-la-naissance-et-adoption-caf/#CAF_prime_de_naissance_Quels_sont_les_beneficiaires)에서 2024.6.5.인출함.

Aide-sociale. (2024b). RSA pour femme enceinte (en couple ou seule) : Sous quelles conditions?. Quel montant avant et après l'accouchement?. <https://www.aide-sociale.fr/rsa-enceinte>에서 2024.6.5.인출함.

Aide-sociale. (2024c). "Montant du RSA pour une femme enceinte et célibataire," <https://www.aide-sociale.fr/rsa-enceinte/#montants>.

Aide-sociale. (2024d). Quel est le plafond de revenu pour toucher l'APL ? Comment se calcule le montant de l'aide au logement?. <https://www.aide-sociale.fr/montant-apl/>에서 2024.8.20. 인출함.

Aide-sociale. (2024e). Congé parental : à temps plein ou à temps partiel, dans le secteur privé, dans la fonction publique ou en tant que indépendant. <https://www.aide-sociale.fr/conge-parental-caf/>에서 2024.8.20. 인출함.

Aide-sociale. (2024e). Conditions d'attribution de l'allocation de base. <https://www.aide-sociale.fr/allocation-base-caf/#conditions>에서 2024.6.5.인출함.

- Aide-sociale, (2024f). Quelle est la différence entre le minimum contributif et l'ASPA ? À quoi servent ces 2 compléments retraite ?. <https://www.aide-sociale.fr/difference-aspa-minimum-contributif> 에서 2024.5.6.인출함.
- Aide-sociale. (2024h). Minimum vieillesse (ASPA) : un minima social pour les personnes n'ayant pas ou peu cotisé à la retraite. [https://www.aide-sociale.fr/minimum-retraite-aspa/#Quest\\_ce\\_que\\_l\\_Allocation\\_de\\_solidarite\\_aux\\_personnes\\_agees](https://www.aide-sociale.fr/minimum-retraite-aspa/#Quest_ce_que_l_Allocation_de_solidarite_aux_personnes_agees) 에서 2024.5.6.인출함.
- Aide-sociale. (2024i). L'allocation de solidarité aux personnes âgées (Aspa) revalorisée de 5,3 %.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actualites/A15712> 에서 2024.5.6.인출함.
- Algava E., Bressé S. (2005). Les bénéficiaires de l'allocation parentale d'éducation : trajectoires d'activité et retour à l'emploi , Etudes et résultats, DREES, No. 399.
- Allègre, G., Simonnet, V., & Sofer, C. (2015). Child Care and Labour Market Participation in France: Do Monetary Incentives Matter?. *Annals of Economics and Statistics*, 117/118, 115-139.
- Ameli. (2023). Prise en charge de l'assistance médicale à la procréation (AMP). <https://www.ameli.fr/assure/remboursements/rembourse/assistance-medicale-la-procreation-amp/prise-en-charge-de-l-assistance-medicale-la-procreation-amp> 에서 2024.8.20.인출함.
- Ameli. (2024). Qu'est-ce que l'assistance médicale à la procréation (AMP) ? [https://www.ameli.fr/assure/sante/devenir-parent/concevoir-un-enfant/procreation-medicalement-assistee-pma-amp/qu-est-ce-que-l-assistance-medicale-la-procreation-amp#text\\_187249](https://www.ameli.fr/assure/sante/devenir-parent/concevoir-un-enfant/procreation-medicalement-assistee-pma-amp/qu-est-ce-que-l-assistance-medicale-la-procreation-amp#text_187249) 에서 2024.8.20.인출함.

- ANCT. (2021). le baromètre de la cohésion des territoires.
- ANCT. (2024). Répartition des dotations d'investissement de l'État en 2019. [https://anct-carto.github.io/dotations\\_investissement\\_2019/](https://anct-carto.github.io/dotations_investissement_2019/)에서 2024. 8. 7. 인출함
- Auzel, G., Rance, E., & Remay, F. (2019). Mission d'évaluation du congé parental d'éducation et de la prestation partagée d'éducation de l'enfant(PreParE). Rapport IGAS No. 2018-124R. Inspection generale des affaires sociales.
- Bayrou. François (2021). Démographie : la clé pour préserver notre modèle social. OUVERTURE, 5. Haut-Commissariat au Plan.
- Breton, D. & Prioux, F. (2005). Deux ou trois enfants ?. Population. 2005/4, 60, 415-445. DOI : 10.3917/popu.504.0489
- Caf. (2023). La PSU Prestation de service unique Guide pratique.
- Caf. (2024a). La prestation d'accueil du jeune enfant (Paje). <https://www.caf.fr/allocataires/aides-et-demarches/droits-et-prestations/vie-personnelle/la-prestation-d-accueil-du-jeune-enfant-paje>에서 2024.6.1. 인출함.
- Caf. (2024b). Le complément familial (Cf). <https://www.caf.fr/allocataires/aides-et-demarches/droits-et-prestations/vie-personnelle/le-complement-familial-cf>에서 2024.6.5. 인출함.
- Caf. (2024c). L'allocation de soutien familial(Asf). <https://www.caf.fr/allocataires/aides-et-demarches/droits-et-prestations/vie-personnelle/l-allocation-de-soutien-familial-asf>에서 2024.6.5. 인출함.
- Caf. (2024d). Prestation partagée d'éducation de l'enfant, (PreParE). <https://www.caf.fr/allocataires/aides-et-demarches/droits-et-prestations/vie-personnelle/la-prestation-partagee-d-education-de-l-enfant-prepare>에서 2024.6.5. 인출함.
- Caf. (2024e). Allocation de rentrée scolaire(Ars). <https://www.caf.fr/all>

- ocataires/aides-et-demarches/droits-et-prestations/vie-personnelle/l-allocation-de-rentree-scolaire-ars에서 2024.6.5. 인출함.
- Caf. (2024f). Allocation d'éducation de l'enfant handicapé. <https://www.caf.fr/allocataires/aides-et-demarches/droits-et-prestations/handicap/l-allocation-d-education-de-l-enfant-handicape-aeeh>에서 2024.7.10. 인출함.
- Caf. (2024g). L'allocation versée en cas de décès d'enfant. <https://www.caf.fr/allocataires/aides-et-demarches/droits-et-prestations/accident-de-vie/l-allocation-versee-en-cas-de-deces-d-enfant>에서 2024.7.10. 인출함.
- Caf. (2024h). L'assurance vieillesse du parent au foyer(AVPF) <https://www.caf.fr/allocataires/aides-et-demarches/droits-et-prestations/handicap/assurance-vieillesse-du-parent-au-foyer-avpf>에서 2024.7.10. 인출함.
- Caf. (2024i). ALF - Allocation de logement familial. <https://www.caf.fr/node/45407>에서 2024.8.20. 인출함.
- Caf. (2024j). Allocation de logement social. <https://www.caf.fr/professionnels/offres-et-services/accompagnement-des-allocataires/allocation-de-logement-social>에서 2024.8.20. 인출함.
- Cdg35. (n.d). Les différents types de collectivités locales et leurs attribution [https://www.cdg35.fr/accueil\\_internet/rechercher\\_un\\_emploi/travailler\\_pour\\_le\\_service\\_public\\_local/les\\_diffrentes\\_collectivites\\_locales\\_et\\_leurs\\_attributions](https://www.cdg35.fr/accueil_internet/rechercher_un_emploi/travailler_pour_le_service_public_local/les_diffrentes_collectivites_locales_et_leurs_attributions)에서 2024.6.5. 인출함.
- Cazaubiel, Amel El Guendouz. (2022). D'ici 2070, un tiers des régions perdraient des habitants. PREMIERE, 1930. INSEE.
- CGET. (2018). Rapport sur la cohésion des territoires.
- Choné, P., Le Blanc, D., Robert-Bobée, I. (2004). Offre de travail féminine et garde des jeunes enfants. Économie & prévision 2004/1.

162, 23-50.

CNAF. (2023). L'accueil du jeune enfant en 2023.

Cour des comptes. (2022). Rapport sur l'application des lois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https://www.ccomptes.fr/sites/default/files/2023-10/20221004-rapport-securite-sociale-2022.pdf> 에서 2023.10.6. 인출함.

Davie E. et Mazuy M. (2010), Fécondité et niveau d'études des femmes en France à partir des enquêtes annuelles du recensement. *Population*, 3, 475-511.

De Luca Barrusse. (2016). *La Population de la France*. La Decouverte.

Didier Reynaud. (2023). Combien les femmes immigrées ont-elles d'enfants ?. *INSEE PREMIÈRE*, 1939. INSEE

Direction de la sécurité sociale(DSS). (2024a). Rapport d'Evaluation de s Politiques de Securite Social(REPSS)-Autonomie.

Direction de la sécurité sociale. (2024b). Rapport d'Evaluation des Politiques de Securite Social(REPSS)-Famille.

Direction de la sécurité sociale(DSS). (2024c). Rapport d'Evaluation de s Politiques de Securite Social(REPSS)-Retraites.

DREES. (2022a). Les retraités et les retraites.

DREES. (2022b). Les établissements de santé. <https://drees.solidarites-sante.gouv.fr/publications-communique-de-presse-documents-de-reference/panoramas-de-la-drees/les-etablissements> 에서 2023.5.2. 인출함.

Ekert, O. (1986). Effets et limites des aides financières aux familles : une expérience et un modèle. *Population*, 41(2), 327-348.

Elmallakh, N. (2021). Fertility, Family Policy, and Labor Supply: Quasi-Experimental Evidence from France. GLO Discussion Paper. No. 984. Global Labor Organization (GLO). Essen.

- Elmallakh, N. (2023). Fertility and Labor Supply Responses to Child Allowances: The Introduction of Means-Tested Benefits in France. *Demography*, 60(5), 1493-1522. DOI 10.1215/00703370-10965926
- Fagnani, J. (1996). L'allocation parentale d'éducation: Contraintes et limites du choix d'une prestation, *Lien social et Politiques*, 36, 111-121. DOI: <https://doi.org/10.7202/005101ar>
- Fesseau, M. & Ricroch, L. (2005). Politiques familiale et taille de la famille. *Diagnostics Prévisions et Analyses Économiques*, 81.
- Eurostat. (2021). Fertility in Europe: Which countries have the highest and lowest numbers of live births per woman? <https://www.euronews.com/next/2023/03/17/fertility-in-europe-which-countries-have-the-highest-and-lowest-numbers-of-live-births-per> 2024.1.12. 인출함.
- Gamblin V. (2024). De 2 à 6 millions de ménages supplémentaires en France entre 2018 et 2050. *Insee Focus*. 317.
- Gauthier, A. H., & Hatzius, J. (1997). Family Benefits and Fertility: An Econometric Analysis. *Population Studies*, 51(3), 295-306. DOI: 10.1080/0032472031000150066
- Givord, P. & Marbot, C. (2014). Les aides financières à la garde des enfants favorisent-elles l'activité féminine? L'exemple de la création de la Paje. *Insee Analyses*, 18.
- Givord, P. & Marbot, C. (2015). Does the cost of child care affect female labor market participation? An evaluation of a French reform of childcare subsidies. *Labour Economics*, 36, 99-111.
- Goux, D. & Maurin, E. (2010). Public school availability for two-year olds and mothers' labour supply, *Labour Economics*, 17, 951-962.
- INSEE. (2021). Revenus et patrimoine des ménages. *Insee Références*.

- INSEE. (2022). Indicateur conjoncturel de fécondité - France métropolitaine-. SÉRIES CHRONOLOGIQUES.
- INSEE, (2023). Combien les femmes immigrées ont-elles d'enfants ? <https://www.insee.fr/fr/statistiques/6801884>에서 23.2.1. 인출함.
- INSEE. (2024a). Population estimates, vital statistics and baseline population projection scenario 2021-2070." 1881,
- INSEE. (2024b). French Economy Dashboard. Insee Références. [https://www.insee.fr/en/outil-interactif/5543645/details/20\\_DEM/22\\_NAI](https://www.insee.fr/en/outil-interactif/5543645/details/20_DEM/22_NAI)에서 24.1.16. 인출함.
- INSEE. (2024c). Emploi selon le sexe et l'âge Données annuelles de 1975 à 2023. [https://www.insee.fr/fr/statistiques/2490449#figure1\\_radio4](https://www.insee.fr/fr/statistiques/2490449#figure1_radio4)에서 2024.8.20. 인출함.
- INSEE. (2024d). Demographic Report 2023. Insee Références.
- INSEE, (2024e). Statistiques d'état civil sur les naissances et Bilan démographique.
- INSEE. (2024f). Rapport sur les causes d'infertilité. Insee Références. [https://www.lemonde.fr/politique/article/2024/01/22/demographie-les-enjeux-economiques-d-un-sujet-politique\\_6212337\\_823448.html](https://www.lemonde.fr/politique/article/2024/01/22/demographie-les-enjeux-economiques-d-un-sujet-politique_6212337_823448.html)에서 2024. 5. 2. 인출함.
- J.D. (2024.5.8.) Check-up à 20 ans, meilleur accès à la PMA... Le plan de Macron contre l'infertilité. 20minutes. <https://www.20minutes.fr/sante/4090248-20240508-check-up-20-ans-meilleur-acces-pma-plan-macron-contre-infertilite> 에서 2024.6.5. 인출함.
- Joseph, O., Pailhé, A., Recotillet I., & Solaz, A. (2013). The economic impact of taking short parental leave: Evaluation of a French reform. *Labour Economics*, 25, 63-75.
- La Finance pour tous. (2024) Contribution sociale généralisée (CSG). <https://www.lafinancepourtous.com/decryptages/finance-perso/>

- revenus-et-fiscalite/csg/에서 2024.4.2. 인출함.
- La Rédaction. (2023). Après 75 ans : un niveau de vie plus faible mais moins de pauvreté. Vie publique. <https://www.vie-publique.fr/en-bref/288646-apres-75-ans-un-niveau-de-vie-plus-faible-mais-moins-de-pauvrete> 에서 2023.6.22. 인출함.
- La Rédaction. (2024a). Bilan démographique 2023 : la France compte 68,4 millions d'habitants. <https://www.vie-publique.fr/en-bref/292665-bilan-demographique-la-baisse-des-naissances-continue-en-2023>에서 2024.6.1. 인출함.
- La Rédaction. (2024b). Tout savoir sur les aides au logement 2024 ! <https://www.mes-allocs.fr/guides/aide-logement/>에서 2024.6.8. 인출함.
- Landais, C. (2003). Le quotient familial a-t-il stimulé la natalité française?. *Économie publique/Public economics*, 13, 3-31.
- Laroque, G. & Salanié, B. (2003). Fertility and Financial Incentives in France. 2003-32. INSEE.
- Laroque, G. & Salanié, B. (2005). Does Fertility respond to Financial Incentives. CEPR Discussion Paper. 5007.
- Laroque, G. & Salanié, B. (2008). Does Fertility Respond to Financial Incentives?. IZA Discussion Paper. 3575.
- Laroque, G. & Salanié, B. (2014). Identifying the Response of Fertility to Financial Incentives. *Journal of Applied Econometrics*, 29, 314-332.
- Le Monde. (2024). Après l'échec de la motion de censure à l'Assemblée nationale Le premier ministre ne promet rien d'autre qu'une rigueur maintenue.
- Legalplace (n.d). Le PACS. <https://www.legalplace.fr/guides/pacs/>
- Lequien, L. (2012). Parental Leave Duration and Wages: A Structural A

- pproach. Serie de Documents de Travail. no. 2012-04. CREST.
- Letablier, M.-T. (2003). Work and family balance: A new challenge for policies in France. *Advances in Life Course Research* 8, 189-209. DOI: [https://doi.org/10.1016/S1040-2608\(03\)08009-2](https://doi.org/10.1016/S1040-2608(03)08009-2).
- Luci Greulich, A. and O. Thévenon. (2013). The impact of family policies on fertility trends in developed countries.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
- Marianne Muller. (2017). 728 000 résidents en établissements d'hébergement pour personnes âgées en 2015. <https://drees.solidarites-sante.gouv.fr/sites/default/files/er1015.pdf> 검색일: 2024년 6월 60일 인출함.
- Masson, L. (2015). La fécondité en France résiste à la crise. France, portraitsocial, édition 2015. Paris: INSEE Références, 11-23.
- Maurin, E. & Roy, D. (2008). The effect of obtaining a crèche place on mothers' return to work and their perception of their children's development. CEPREMAP.
- Milewski, F., Dauphin, S., Kesteman, N., Letablier, M.-T., and Meda, D. (2005). Les inégalités entre les femmes et les hommes: Les facteurs de précarité. la Documentation française, impr.
- Monenfant. (2019). L'accueil en crèche. <https://monenfant.fr/web/guest/l-accueil-en-creche>에서 2024.8.20. 인출함.
- Moschion, J. (2007). Reconciling work and family life: the effect of French family policies. Documents de travail du Centre d'Economie de la Sorbonne. halshs-00203211.
- Moschion, J. (2010). Reconciling Work and Family Life: The Effect of the French Paid Parental Leave. *Annals of Economics and Statistics*, 99-100, 217-217.
- NíBhrolcháin M. et Beaujouan E. (2012). Fertility postponement is larg

- ely due to rison educational enrolment. *Population Studies*, 66, 311-327.
- Nieuwenhuis, R. & Van Lancher, W. (2020). *The Palgrave Handbook of Family Policy*. Palgrave Macmillan.
- OECD. (2021). *Health Data*.
- OECD. (2023). *OECD Family Database: PF1.1: Public Spending on Family benefits*.
- Pailhé A. et Solaz A. (2009). *Entre famille et travail. Des arrangements de couples aux pratiques des employeurs*. La Découverte, Paris.
- Pailhé, A. & Solaz, A. (2006). *Vie professionnelle et naissance : la charge de la conciliation repose essentiellement sur les femmes*. *Population et Société*. Ined. 426.
- Papon, S. (2024). *Bilan démographique 2023 Combien les femmes immigrées ont-elles d'enfants?*. INSEE PREMIÈRE, 1978. INSEE.
- Par Elsa Conesa. (2024.1.22). *Démographie : les enjeux économiques d'un sujet politique*. lemonde. [https://www.lemonde.fr/politique/article/2024/01/22/demographie-les-enjeux-economiques-d-un-sujet-politique\\_6212337\\_823448.html](https://www.lemonde.fr/politique/article/2024/01/22/demographie-les-enjeux-economiques-d-un-sujet-politique_6212337_823448.html)
- Pauline Verge. (2024.1.14.). *Démographie : les Français vivent de plus en plus seuls*. Lesechos.
- Pérvier, H. & Verdugo, G. (2021). *Can Parental Leave Be Shared?*. Working Paper. 06/2021. Paris: Sciences Po OFCE. <https://sciencespo.hal.science/hal-03364048>
- Pérvier, H. & Verdugo, G. (2024). *Where are the Fathers? Effects of Earmarking Parental Leave for Fathers in France*. *ILR Review*. 77(1), 88-118.
- Personnes-agees. (2022). *APA* . <https://www.pour-les-personnes-agees.gouv.fr/preserver-son-autonomie/perte-d-autonomie-evaluati>

- on-et-droits/comment-fonctionne-la-grille-aggir에서 2024.6.30. 인출함.
- Personnes-agees.(2024). Aide à l'autonomie des personnes âgées. <http://www.pour-les-personnes-agees.gouv.fr/>에서 2024.9.2. 인출함.
- Piketty, T. (1998). L'impact des incitations financières au travail sur les comportements individuels : une estimation pour le cas français. *Économie & prévision*, n°132-133, 1998-1-2, 1-35.
- Piketty, T. (2002). L'impact de l'allocation parentale d'éducation sur l'activité féminine et la fécondité, 1982-2002. CEPREMAP, 2003-09.
- Piketty, T. (2005). L'impact de l'allocation parentale d'éducation sur l'activité féminine et la fécondité, 1982-2002. In Lefèvre, C., & Filhon, A.(Eds.). *Histoires de Familles, Histoires Familiales*, 156, 79-109. Paris: Institut national d'études démographiques.
- Pison, G. & Dauphin, S. (2020). Enjeux et perspectives démographiques en France 2020-2050. Documents de travail, 259. Paris : Ined.
- Pison, G. (2009). France 2008: why are birth numbers still rising?. *Population & Societies*, 454. Ined.
- Pison, G. (2012). France and Germany: a history of criss-crossing demographic curves. *Population & Societies*, 487. Ined.
- Pison, G. (2017). Fewer births in France in 2016. *Population & Societies*, 542. Ined.
- Pora, P. (2020). Keep Working and Spend Less? Collective Childcare and Parental Earnings in France. INSEE. G2020/05.
- Quelle creche. (2022). La crèche multi accueil, c'est quoi ?. <https://quellecreche.fr/la-creche-multi-accueil-c-est-quoi/>에서 2024.8.20. 인출함.
- Samir Hamamah, Salomé Berliou. (2022). Rapport sur les causes d'infé

- rtilité. [https://www.lemonde.fr/politique/article/2024/01/22/demographie-les-enjeux-economiques-d-un-sujet-politique\\_6212337\\_823448.html](https://www.lemonde.fr/politique/article/2024/01/22/demographie-les-enjeux-economiques-d-un-sujet-politique_6212337_823448.html)에서 2024. 5.2. 인출함.
- Salles, A., & Letablier, M.-T. (2013). La raison démographique dans les réformes de politiques familiales en France et en Allemagne. *Politiques Sociales et Familiales*, 112, 73-88.
- Salomé Robles (2024.1.17.) Emmanuel Macron veut un "plan" contre l'infertilité: comment expliquer sa hausse en France? BFMTV. [https://www.bfmtv.com/societe/emmanuel-macron-veut-un-plan-contre-l-infertilite-comment-expliquer-sa-hausse-en-france\\_AV-202401170538.html](https://www.bfmtv.com/societe/emmanuel-macron-veut-un-plan-contre-l-infertilite-comment-expliquer-sa-hausse-en-france_AV-202401170538.html)에서 2024.6.5. 인출함.
- Samir Hamamah, Salomé Berlioux. (2022). Rapport sur les causes d'infertilité vers une stratégie nationale de lutte contre l'infertilité. Ministère des Solidarités et de la Santé.
- Sarah Meyssonier (2024. 1. 16). Dans les pages de «Elle», Emmanuel Macron se prétend porte-étendard pour la cause des femmes. <https://www.vie-publique.fr/en-bref/292665-bilan-demographique-la-baisse-des-naissances-continue-en-2023>에서 2024.6.1. 인출함.
- Séraphin, G. (2013). Comprendre la politique familiale. Dunod : La Gazette santé social.
- Service-public. (2024a). Family allowances (family of 2 or more children).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13213?lang=en>에서 2024.6.5. 인출함.
- Service-public. (2024b). 가족수당(2명 이상) .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13213/personnalisation/resultat?lang=en&quest2=0&quest=>에서 2024.6.5. 인출함.
- Service-public. (2024c) l'allocation journalière de présence parental,

- (AJPP).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15132>에서 2024.7.10.인출함
- Service-public. (2024d). Quotient familial.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2705>에서 2024.7.10.인출함
- Service-public. (2024e). La prime de déménagement.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2008>에서 2024.7.10.인출함
- Service-public. (2024f). Carte familles nombreuses.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15292>에서 2024.7.10.인출함
- Service-public. (2024h). Aide personnalisée au logement (APL).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12006/personnalisation/resultat?lang=&quest0=0&quest1=0&quest=>에서 2024.8.20. 인출함.
- Service-public. (2024i). Allocation de logement familiale (ALF),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13132> 에서 2024.8.20. 인출함.
- Service-public. (2024j). Un étudiant peut-il toucher une aide au logement (APL, ALS, ALF) ?.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1563> 에서 2024.8.20. 인출함.
- Service-public. (2024k). Congé de maternité d'une salariée du secteur privé .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2265>에서 2024.8.20. 인출함.
- Service-public. (2024l). Congé de maternité dans la fonction publique.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519>에서 2024.8.20. 인출함.
- Service-public. (2024m). Congé de 3 jours pour la naissance ou pour l'arrivée d'un enfant en vue de son adoption dans le secteur privé.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2266> 에서 2024.8.20. 인출함.

- Service-public. (2024n). Congé de paternité et d'accueil de l'enfant d'un salarié du secteur privé.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3156>에서 2024.8.20. 인출함.
- Service-public. (2024o). Congé de paternité et d'accueil de l'enfant dans la fonction publique.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583>에서 2024.8.20. 인출함.
- Service-public. (2024p). Congé d'adoption dans le secteur privé.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2268>에서 2024.8.20. 인출함.
- Service-public. (2024q). Congé parental d'éducation à temps plein pour un salarié du secteur privé.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2280>에서 2024.8.20. 인출함.
- Service-public. (2024r). Congé parental dans la fonction publique.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517>에서 2024.8.20. 인출함.
- Service-public. (2024s). Salaire de l'assistante maternelle employée par un particulier employeur.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12812?lang=fr>에서 2024.8.20. 인출함.
- Service-public. (2024t). Impôt sur le revenu - Frais de garde d'enfant hors du domicile (crédit d'impôt).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8>에서 2024.4.9. 인출함.
- Service-public. (2024u). IFemme enceinte : prise en charge à 100 % (Assurance maladie).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164>에서 2024.6.5. 인출함.
- Service-public. (2024v). Procréation médicalement assistée (PMA).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31462>에서 2024.6.5. 인출함.
- Service-public. (2024w). Don d'ovules (ovocytes). <https://www.service>

- 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24586 에서 2024.8.20. 인출함.
- Service-public. (2024x). Free choice of mode of care (CMG) supplement - Home care.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31101?lang=en>에서 2024.4.9. 인출함.
- Silvex. (2024). L'emploi des Seniors en Europe Tour d'horizon. <https://www.silvex.io/blog/lemploi-des-seniors-en-europe>에서 2024.8.20. 인출함.
- Solaz, A., Toulemon, L., & Pison, G. (2024). Is France still a demographic outlier in Europe?. *Population & Societies*, 620. INED.
- Solidarites. (2022a). L'accueil collectif. <https://solidarites.gouv.fr/laccueil-collectif>에서 24.4.29. 인출함.
- Solidarites. (2022b). Assistant maternel (AM). <https://solidarites.gouv.fr/assistant-maternel-am>에서 2024.8.20. 인출함.
- Solidarites. (2024). Garde d'enfants à domicile. <https://solidarites.gouv.fr/garde-denfants-domicile>에서 2024.8.20. 인출함.
- Thévenon, O. (1999). La durée du travail féminin en Europe : entre flexibilité et conformité. Une comparaison des relations emploi/famille en Allemagne de l'Ouest, Espagne, France, aux Pays-Bas et Royaume-Uni. *Recherches et Prévisions*, 56, 47-66.
- Thévenon, O. (2006). Régimes d'Etat Social et convention familiale : une analyse des régulations emploi-famille. *Economies et Société*, Série Socio-Economie du Travail, 27(6), 1137-1171.
- Thévenon, O. (2007). L'activité féminine après l'arrivée d'enfants. *Documents de Travail*, 148. INED.
- Thévenon, O. (2008). Family policies in developed countries: contrasting models. *Population & Societies*, 448. INED.
- Thévenon, O. (2009). Does fertility respond to work and family reconciliation policies in France?. hal-00424832.

- Thévenon, O. (2013). Family fertility and women's employment: value and limitations of national comparisons. Documents de Travail 200. INED.
- Thévenon, O. (2014). Évaluer l'impact des politiques familiales sur la fécondité. Informations Sociales 2014/3, 183, 50-62.
- Thévenon, O., Adma, W., & Ali, N. (2014). Family policy in France and Europe: recent changes and effects of the crisis. Population & Societies, 512. INED.
- Toulemon, L., Pailhé, A., & Rossier, C. (2008). France: High and stable fertility. Demographic Research, 19, 503-556. DOI: <https://doi.org/10.4054/DemRes.2008.19.16>
- Villaume, S. & Legendre, E. (2014). Modes de garde et d'accueil des jeunes enfants en 2013. Études et résultats, 896.
- Virginie Ballet. (2024.1.3). Réarmement démographique : Emmanuel Macron sur de fausses pistes ?. [https://www.liberation.fr/societe/rearmement-demographique-emmanuel-macron-sur-de-fauss-es-pistes-20240117\\_AMEU5X5A4RHJ7J4DVWP25SZWCQ/](https://www.liberation.fr/societe/rearmement-demographique-emmanuel-macron-sur-de-fauss-es-pistes-20240117_AMEU5X5A4RHJ7J4DVWP25SZWCQ/)에서 2024.6.1. 인출함
- Virginie De., Luca Barrusse. (2016). La population de la France. La Découverte.
- Volant, S., G. Pison, H. Francois. (2019). French fertility is the highest in Europe. Because of its immigrants?. Population & Societies, 568.
- World bank DATA, (2021). Death rate, crude (per 1,000 people) - OECD members.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SP.DYN.CDR.T.IN?locations=OE>에서 2023. 1. 10. 인출함.
- World bank DATA. (2024). Fertility rate, total (births per woman) - OECD members.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SP.DYN.TFRT.IN?locations=OE>에서 2024. 1. 10. 인출함.



## [부록 1] 설문지

응답자 ID

## 결혼, 출산, 육아에 관한 인식 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국무총리 산하의 국책연구기관으로 2024년 일반과제로 「주요국의 인구정책 비교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본 연구는 주요국의 인구정책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인구 현상, 결혼, 출산 및 육아, 인구정책에 관한 인식조사를 시행하려 합니다.

본 조사는 **성인남녀 (만 20~49세)** 약 2,500명을 대상으로 하며, 소요시간은 약 15분 내외로 예상됩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향후 인구정책 수립에 귀한 자료로 활용되오니, 적극적인 참여와 솔직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귀하가 주신 의견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개인정보는 코드화되며, 통계 산출에만 사용되며, 비밀은 반드시 보장됩니다.

바쁘시겠지만 잠시 시간을 내어 조사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6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 통계의 작성 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 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K I H A S 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Q10. (SQ6의 ① 응답자만) 파트너 또는 배우자는 지난 1주일 동안 주로 무엇을 하였습니까?

\* 자신이 아닌, 함께 사는 가족이나 친인척의 사업체 또는 농장에서 보수를 받지 않고 18시간(주당) 이상 일한 경우, '일하였음'입니다.

- ① 일하였음 → (SQ10-1로 이동)
- ② 일시 휴직 (일거리나 직업이 있는 상태에서 사정상 일을 잠시 중단) → (SQ10-1로 이동)
- ③ 교육·훈련 (일거리나 직업이 있는 상태에서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 ④ 일하지 않았지만, 구직 활동을 했음
- ⑤ 일하지 않고, 구직 활동도 하지 않았음
- ⑥ 장애가 있어 일할 수 없음
- ⑦ 사회복무 또는 군복무(임대 예정 포함)
- ⑧ 가사, 육아 또는 가족 돌봄

SQ10-1. (SQ10의 ①, ② 응답자만) 식사·휴식 시간을 제외하고, 지난 1주일 동안의 파트너 또는 배우자의 근로시간은 총 몇 시간입니까?

\_\_\_\_\_ 시간

※ 지난 1주일 동안 일시 휴직에 해당할 경우, 그 이전 근로했던 마지막 1주일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최소 1시간 ~ 최대 140시간)

SQ10-2. (SQ9의 ①, ② 응답자만) 파트너 또는 배우자의 일자리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 ② 계약직
- ③ 종업원이 있는 자영업자
- ④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
- ⑤ 제로아워계약(zero-hours contract)
- ⑥ 프리랜서(freelancer) 또는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
- ⑦ 인턴십(internship) 또는 연수(traineeship)
- ⑧ 기타 (\_\_\_\_\_)

SQ11. 귀하 가구의 세후 월 소득은 얼마입니까?

※ 정확한 금액을 모를 경우, 추정치를 바탕으로 하나의 항목만 선택하십시오.

- ① 100만원 미만 / 월
- ② 100 ~ 199만원 / 월
- ③ 200 ~ 299만원 / 월
- ④ 300 ~ 399만원 / 월
- ⑤ 400 ~ 499만원 / 월
- ⑥ 500 ~ 599만원 / 월

376 프랑스의 인구정책 사례 연구

- ⑦ 600 ~ 699만원 / 월
- ⑧ 700 ~ 799만원 / 월
- ⑨ 800 ~ 899만원 / 월
- ⑩ 900만원 이상 / 월

SQ12. 귀하는 현재 월소득으로 생활하시기에 얼마나 여유가 있으십니까?

※ '가구란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생활 단위입니다.'

- ① 현재 가구 소득으로 넉넉하게 생활할 수 있음
- ② 현재 가구 소득으로 부족하지 않게 생활할 수 있음
- ③ 현재 가구 소득으로 생활하기는 어려움
- ④ 현재 가구 소득으로 생활하기 매우 어려움
- ⑤ 모르겠음

SQ13. (현재의 고용상태와 관계없이) 귀하는 향후 12개월 이내에 실업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실업할 가능성 전혀 없음
- ② 실업할 가능성 작음
- ③ 실업할 가능성 있음
- ④ 실업할 가능성 큼
- ⑤ 실업할 가능성 매우 큼
- ⑥ 일할 계획 없음/구직 활동하지 않음
- ⑦ 모르겠음

### A. 결혼 및 출산, 성역할에 대한 인식

※ 다음은 결혼 및 출산과 관련된 귀하의 생각에 대한 질문입니다.

AQ1. (SQ6의 ②, SQ6-1의 ①,② 응답자만) 귀하는 앞으로 결혼할 생각이 있습니까?

- ① 결혼할 생각이 있다                      ② 결혼할 생각이 없다  
③ 생각해본 적 없다                        ④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모르겠다)

AQ2. 귀하는 앞으로 자녀를 낳을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낳을 생각이다 → (AQ2-1로 이동)  
② 낳지 않을 생각이다 → (AQ3으로 이동)  
③ 생각해본 적 없다 → (AQ3으로 이동)  
④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모르겠다) → (AQ3으로 이동)

AQ2-1. (AQ2의 ① 응답자만) 낳을 생각이시면, 몇 명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_\_\_\_\_명

AQ3. 일반적으로 자녀를 둔다면, 몇 명의 자녀를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0부터 입력 가능)

\_\_\_\_\_명

AQ4. 귀하가 가족(자녀 출산)계획을 세울 때 다음의 사항을 얼마나 중요하게 고려하십니까? [

구 분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1) 가정의 경제적 여건	①	②	③	④	⑤
2) 본인의 건강	①	②	③	④	⑤
3) 배우자의 건강	①	②	③	④	⑤
4) 본인의 취업 상태	①	②	③	④	⑤
5) 배우자의 취업 상태	①	②	③	④	⑤
6) 주거 여건	①	②	③	④	⑤
7) 일-생활 균형	①	②	③	④	⑤
8) 경력 단절의 가능성	①	②	③	④	⑤
9) 보육/양육 서비스 이용 가능성	①	②	③	④	⑤
10) 정부의 충분한 지원	①	②	③	④	⑤
11)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 불확실성	①	②	③	④	⑤

378 프랑스의 인구정책 사례 연구

AQ5 자녀를 가질 계획이 없더라도 이 가능성에 대한 약을 듣고자 합니다. 자녀를 갖게 된다면 귀하의 삶의 다양한 측면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전적으로 동의한다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진다.	①	②	③	④
2) 삶에서 얻는 기쁨과 만족이 커진다.	①	②	③	④
3) 나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	①	②	③	④
4) 배우자(파트너 포함)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	①	②	③	④
5) 노년기에 받을 수 있는 보살핌과 안정감이 커진다.	①	②	③	④
6) 배우자(파트너 포함)와의 친밀감이 높아진다.	①	②	③	④
7) 경제적 부담이 늘어난다.	①	②	③	④

AQ6. 귀하는 다음의 역할을 남성과 여성 중 누가 수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확실히 남성	대체로 남성	남성과 여성 모두	대체로 여성	확실히 여성
1)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일하면서 돈을 버는 일	①	②	③	④	⑤
2) 음식준비, 청소, 빨래 등 일상적 가사일	①	②	③	④	⑤
3) 어린 자녀를 돌보는 일	①	②	③	④	⑤

## B. 가사 및 자녀 육아 분담

BQ1. (SQ6의 ① 응답자만) 귀하와 배우자/애인/파트너의 실제 가사분담 비율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보기 중에서 선택해 주십시오.

구분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
본인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배우자/애인·파트너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BQ2. (SQ6의 ① 응답자만) 귀하와 배우자/애인/파트너의 적절한 가사분담 비율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보기 중에서 선택해 주십시오.

구분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
본인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배우자/애인·파트너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BQ3. (SQ6에 ①을 응답하고, SQ7-1의 막내 자녀 나이가 12세 이하인 경우) 귀하와 배우자의 실제 육아분담 비율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보기 중에서 선택해 주십시오.

※ '육아'란 **만 0세 ~ 만 12세 자녀를 직접 돌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분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
본인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배우자/애인·파트너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BQ4. (SQ6에 ①을 응답하고, SQ7-1의 막내 자녀 나이가 12세 이하인 경우) 귀하와 배우자의 적절한 육아분담 비율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보기 중에서 선택해 주십시오.

※ '육아'란 **만 0세 ~ 만 12세 자녀를 직접 돌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분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
본인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배우자/애인·파트너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380 프랑스의 인구정책 사례 연구

BQ5. 귀하는 일과 가사 및 육아를 병행하는 데 어려움을 얼마나 느끼십니까?

- ① 전혀 어렵지 않다                      ② 어렵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어려운 편이다                      ⑤ 매우 어렵다

BQ6. 우리 사회에서 돌봄에 대한 견해는 다양합니다. 아래에 언급된 각 항목에 대해 사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가족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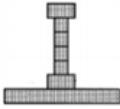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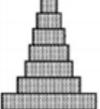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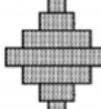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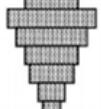
구 분	주로 사회가 해야 할 일	가족보다는 사회가 해야 할 일	사회와 가족 모두가 해야 할 일	사회보다는 가족이 해야 할 일	주로 가족이 해야 할 일
1) 미취학 이동에 대한 돌봄	①	②	③	④	⑤
2) 방과 후 시간 중 취학 이동 에 대한 돌봄	①	②	③	④	⑤

### C 인구 변화 및 사회에 대한 인식

CQ1. 인구 변화에 대한 아래 의견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또는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표시해주시시오.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1) 한국의 최근 출산율은 적당한 수준이다.	①	②	③	④	⑤
2) 출산율 감소는 나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①	②	③	④	⑤
3) 출산율 감소는 미래 세대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①	②	③	④	⑤
4) 정부는 출산율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CQ2. 아래 다섯 그림은 다양한 사회의 구조를 보여줍니다. 각 그림에 대한 설명을 읽으신 후, 한국을 가장 잘 묘사하고 있는 그림을 선택해 주십시오.

				
유형A	유형B	유형C	유형D	유형E
상단은 소수의 엘리트, 중간에는 극소수의 사람들, 하단에 수많은 사람	피라미드처럼 상단에는 소수의 엘리트, 중간에는 더 많은 사람들, 맨 아래에는 대다수가 있는 사회	피라미드(유형B)와 유사하지만, 하단에 상대적 소수의 사람이 있다는 점이 다름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간에 있는 사회	상단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하단에는 소수의 사람들만 있음

- ① 유형 A                      ② 유형 B                      ③ 유형 C  
 ④ 유형 D                      ⑤ 유형 E                      ⑥ 모르겠음

382 프랑스의 인구정책 사례 연구

CQ3. 아래 의견에 얼마나 동의하시는지 또는 동의하지 않으시는지 표시해 주십시오.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한국은 전반적으로 공정한 사회이다.	①	②	③	④	⑤
한국의 소득 격차는 너무 크다.	①	②	③	④	⑤
한국에서 가장 부유한 1%의 사람들이 가지고 자산이 너무 많다.	①	②	③	④	⑤
기후변화는 한국에 심각한 위협이다.	①	②	③	④	⑤

CQ4. 한국에서 개인이 성공(출세)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요인들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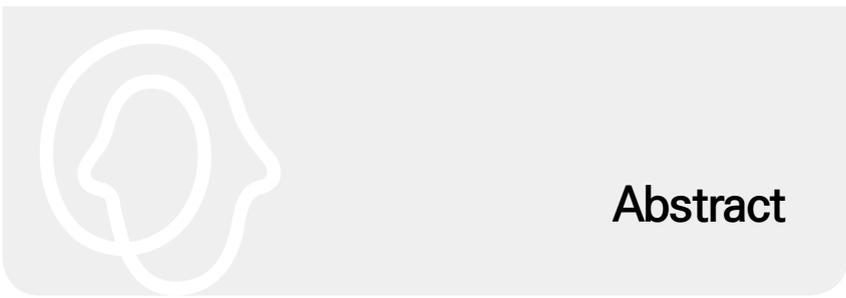
구분	전혀 중요하지 않다	매우 중요하지는 않다	상당히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필수적이다
1) 부유한 가정	①	②	③	④	⑤
2) 좋은 교육을 받은 부모	①	②	③	④	⑤
3) 개인의 노력	①	②	③	④	⑤
4) 정치적 인맥	①	②	③	④	⑤
5) 성별	①	②	③	④	⑤
6) 인종이나 민족적 배경	①	②	③	④	⑤

CQ5. 귀하의 현 생활 수준은 부모님께서 귀하의 현재 나이였을 때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좋아졌다고 또는 나빠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훨씬 좋아졌다      ② 약간 좋아졌다      ③ 차이가 거의 없다  
 ④ 약간 나빠졌다      ⑤ 훨씬 나빠졌다

CQ6. 귀하의 자녀들이 귀하의 현재 나이가 될 때 자녀들의 생활수준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녀가 없더라도 있다고 가정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 ① 훨씬 좋아질 것이다      ② 약간 좋아질 것이다      ③ 차이가 거의 없을 것이다  
 ④ 약간 나빠질 것이다      ⑤ 훨씬 나빠질 것이다



## Abstract

### Population Policy in France

Project Head: Lee, So-Young

Korea has been undergoing a demographic transition for an extended period of time, characterized by a decline in the birth rate and an aging population. In response to this shift, a range of policies has been implemented. Nevertheless, as birthrates in Korea have remained low, growing scepticism surrounds the efficacy of these policies. Concurrently, efforts are underway to identify and benchmark efficacious policies abroad. France is renowned for its successful response to the declining birthrate. Although the country's total fertility rate has declined somewhat in recent years, it remains relatively high. This study aims to examine population changes in France, which has actively addressed population issues and implemented a range of policies over many years, and to provide a foundation for establishing population policies in Korea.

In France, population policy is integrated within the broader framework of family policy. As of 2024, a “demographic reorganization plan (réarmement démographique)” is being implemented to foster “a stronger France.” France's relatively high fertility rate is associated with the country's prevailing attitudes

---

Co-Researchers: Choi insun, Lee Jihye, Son Dongki, Kim Younga

and perceptions. In comparison to the Korean population, the French population exhibits a more favorable attitude toward childbearing, population, and population policy. France is investing in significant financial resources to implement its policies and is developing and enhancing legislation and institutions to increase public awareness. France has had a population policy since the 1930s and has consistently encouraged births. For population policies to be effective, they must be implemented in a gradual and consistent manner with a long-term perspective. Additionally, addressing and alleviating the underlying structural issues of Korean society is essential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Key words: France, Demographic Change, Family Policy, Population Policy